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 (上)

1994. 9.

金 瑩 允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諸 成 鎬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朴 德 圭	(韓國教育開發院 企劃處長)
朴 秀 赫	(서울市立大 教授)
李 基 秀	(高麗大 教授)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신장된 國力을 바탕으로 和解·協力을 지향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부응하여 自由民主主義 理念의 구현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統一方案에 따라 향후 추진해나아갈 통일은 남북한의 相異한 法體系를 自由民主主義에 기반한 법체계로 統合·再編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서독의 법체계로 통일을 이룩한 동·서독의 法制 統合過程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통일대비 연구에 꼭 필요한 資料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당 연구원은 法制的인 측면에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基礎資料開發을 위하여 독일통일조약 및 법령의 翻譯書를 시리즈로 발간한다는 계획하에 지난해에는 『독일통일조약 비준법률』을 발간한 바 있으며, 금번 그 후속 시리즈로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을 翻譯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翻譯書가 남북한 統一問題를 연구하시는 사계의 전문가들과 統一政策 입안자들에게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研究調整室

목 차

〈전문부분〉

I. 전문	3
II. 지도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	25
III. 부속문서	30
1. 화폐통합과 통화전환에 관한 규정	30
2. 동독이 시행할 법률	40
3. 동독이 폐지 또는 변경할 법규정	45
4. 동독이 신규 제정해야 할 법률	54
5. 서독이 개정해야 할 법률	59
6. 동독이 향후 제정해야 할 규정	67
7. 조약 시행을 위한 개인 신상정보 전달에 관한 기본원칙	68
8. 중재법원에 대한 일반규정	69
9. 고용창출 투자사업을 위한 지원수단으로서의 토지, 대지 및 생산재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소유권 취득	72

〈화폐통합부분〉

I. 독일연방은행법	77
II. 신용조직법	101
III. 신용조직법에 따른 특정의무의 면제에 관한 명령	173
IV. 등기된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의 책임자기자본의 계산에 있어 부가액의 확정에 관한 규정	178
V. 저당은행법	180
VI. 공공신용기관의 채권증서 및 유사 채무에 관한 법률	198
VII. 공공금융기관의 질권증서와 유사채권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제2차 시행령	204
VIII. 주택저축은행법	207
IX. 투자신탁회사법	219
X. 유가증권의 보관 및 豫受에 관한 법률	276
XI. 보험감독법	295
XII. 보험회사의 재원에 관한 설명	368

전 문

빈 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I. 전 문

조약 당사자(이하 쌍방: 역자주)는

1989년 가을 독일민주공화국(이하 동독:DDR)에서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혁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힘입어,

독일 통일을 유럽 평화질서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속·완수할 것을 결의한 가운데,

사회적 평등과 사회보장 및 환경보전과 함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동독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동독 주민의 삶과 고용조건을 향상시키려는 조약체결 당사자의 공동의지로서,

또한 화폐, 경제, 사회통합을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이하 서독: BRD, 역자주)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한 국가통일 실현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 유럽통합에도 기여하려는 쌍방의 희망을 실현시키려는 데서 출발하며, 통일의 외적 조건은 프랑스·소련·영국·미국과의 협의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통일은 또한 국가통일의 달성과 함께 동독을 연방구조체제로 발전시키려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본 조약의 규정들은 국가통일 후 유럽공동체법의 적용을 받을 것을 보장하는 가운데,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갖는 조약을 체결하는데 합의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조 조약의 목적

- (1) 쌍방은 화폐·경제·사회통합을 달성한다.
- (2) 쌍방은 1990년 7월 1일부로 서독마르크가 공통으로 통용되는 단일 통화권역으로서의 화폐통합을 이룩한다.
서독연방은행은 이 通貨地域의 통화은행 및 발권은행이 된다. 동독마르크로 표시된 채권·채무는 본 조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독마르크 표시로 대체된다.
- (3) 경제통합의 기초는 사회적 시장경제로서 쌍방이 이를 공동의 경제질서로 수용한다. 경제통합을 통해서 특히 사유재산제와 경쟁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가격형성과 원칙적으로 노동·자본·재화 및 용역의 완전한 자유이동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공공기관, 기타 유사기관이 참여함에 있어, 이를 통해 민간 권리권자가 차별을 받지 않는 한, 특별한 재산형태를 법률의 허가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보호의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화폐통합 및 경제통합과 더불어 쌍방은 사회통합을 달성한다. 사회통합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상응하는 노동법 질서와 업적비례 및 사회적 보상의 원칙에 근거하는 포괄적 사회적 안전체계를 통해 형성된다.

제2조 원 칙

- (1) 쌍방은 자유, 민주, 연방, 법치국가 및 사회적 기본질서의 수용을 승인한다. 쌍방은 본 조약에 명시되었거나 본 조약의 실시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계약체결의 자유, 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독일화폐가 통용되는 전 지역에서의 이전의 자유, 노동 및 경제적인 조건 유지 및 지원을 위한 단체를 구성할 자유를 보장하며, 본 조약의 부속문서 IX장에 의거, 민간투자자의 경작지와 토지 및 생산수단의 취득을 보장한다.

- (2) 지금까지 동독사회 및 국가질서를 규정한 동독헌법의 규정은 본 조약과 상치될 경우 더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법적 기초

화폐통합에 따른 화폐교환을 위해 부속문서 I에서 정한 합의 규정이 적용된다. 경제통합 및 사회통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속문서 II에 규정된 서독의 법령은 화폐통합시까지 동독의 통화·신용·지폐 및 주화제도에 그 효력을 미친다. 이는 본 조약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서독 법령이 부속문서 II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맞추어 전 통화지역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독일연방은행, 연방신용감독청, 연방보험감독청은 본 조약과 본 규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본 조약이 효력을 미치는 전 지역에 행사한다.

제 4 조 法律의 改廢

- (1) 화폐·경제·사회통합에 따른 필요한 동독법의 조정은 본 조약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원칙과 공동의정서에서 합의된 준칙에 따른다. 存續하는 法律도 상기 기본원칙과 준칙에 의거 해석·적용된다. 화폐통합시까지 동독은 부속문서 III에 명시된 법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며, 본 조약이나 부속문서에서 그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문서 IV에 명시된 새로운 법규를 화폐통합시까지 제정한다.
- (2) 서독이 개정할 법규는 부속문서 V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독이 향후 제정해야 할 규정은 부속문서 VI에 명시되어 있다.
- (3) 인사 관련 정보의 移轉에는 부속문서 VII에 포함된 기본원칙을 적용한다.

제 5 조 관청간의 노력

쌍방 관청은 본 조약을 시행함에 있어, 국내법 기준에 따라 관청간에 공조한다. 이 경우 제32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 조 권리 보호

- (1) 본 조약이 보장하거나 본 조약을 시행함에 있어 보장되는 권리가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다른 특별 관할에 따라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2) 동독은 실질적이며 일시적 법적 보호를 포함한 법원에서의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공법적인 분쟁을 관장하는 법원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한 관할권은 특별 구역법원(Kreisgericht)과 지역법원(Bezirksgericht)이 담당한다.
- (3) 노동법원에 특별 재판권이 부여될 때까지 노동문제로 발생한 노사간의 법적 분쟁은 노사의 수가 동등하고 중립적인 대표로 구성되는 중립 중재기관에 의해 조정된다. 이 중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4) 동독은 私法分野에 자유 중재재판권을 허용한다.

제 7 조 중재법원

- (1) 본 조약 및 공동의정서와 부속문서에 대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쌍방 정부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 (2) 이 방식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쌍방은 중재법원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뢰는 의뢰 사안의 관할권이 본 조약 제6조에 의거 국내법원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 (3) 중재법원은 1명의 재판장과 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본 조약 발효 후 1개월 내에 쌍방 정부는 각각 2명의 정식재판관과 2명의 대리재판관을 임명한다. 또한 위와 동일한 기간 내에 쌍방 정부는 합의하에 1명의 재판장과 재판장 직무대리를 임명하되, 상기 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유럽공동체(EC)의 재판소장이 임명한다.
- (4) 법관의 임기는 2년이다.
- (5) 중재법원의 재판장과 재판관은 외부지시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 재판장과 재판관은 직무개시와 함께 독립적이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 및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진다.
- (6) 중재법원의 소집과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은 부속문서 VIII에서 규정한다.

제 8 조 공동정부위원회

쌍방은 공동정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조약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필요할 경우-합의를 도출한다. 본 위원회에 부여된 과제에는 본 조약 제7조 제1항의 분쟁해결도 포함된다.

제 9 조 조약개정

본 조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조약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쌍방 정부는 이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화폐통합에 관한 규정

제 10 조 조건과 원칙

- (1) 쌍방간에 화폐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독마르크는 화폐통용 전지역에 지급수단, 결제수단, 가치보전수단의 기능을 가진다. 이를 위해 마

르크화의 유일한 발권은행인 독일연방은행이 갖는 화폐정책적 책임은 화폐통용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주화발행권은 오직 서독정부의 책임하에 있다.

- (2) 화폐통합이 지니는 장점의 效用性은 동독경제를 위해 동독화폐가치의 안정을 전제로 하며, 서독에서의 화폐가치 안정도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쌍방은 독일 전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는 동시에 동독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통화교환방식을 채택한다.
- (3) 독일연방은행은-연방은행법 제12조에 따라 쌍방 정부의 지시로부터 독립적으로-자신의 책임하에 전 통화지역의 화폐유통과 신용공급을 관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통화가치안정의 목표를 달성한다.
- (4) 통화정책은 동독지역에 시장경제적인 금융신용제도의 정착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시장경제적 금융신용제도는 민간은행과 협동조합적 은행 및 공공은행들이 서로 경쟁관계를 이루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은행제도의 확립과 자유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조성되고 금융시장에서의 자유금리가 형성됨으로써 성립된다.
- (5) 제(1) 내지 제(4)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쌍방은 부속문서 I 에 상세하게 명시된 규정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화폐통합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합의한다.
 - 1990년 7월 1일부로 서독마르크가 동독의 통화로 도입된다. 서독연방은행이 발행한 서독마르크 표시 화폐와 서독이 발행한 마르크(DM) 표시 주화와 페니히(Pfenning) 주화는 1990년 7월 1일부터 유일한 법적 지불수단이다.
 - 임금, 급여, 장학금, 연금, 집세, 지대 그리고 기타 정기적 지불금에 대해서는 1:1 비율로 교환된다.
 - 동독마르크로 표시된 다른 모든 채권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1:2 동독마르크의 비율로 교환된다.
 - 동독의 지폐와 주화의 교환은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동독에 본부를 둔 기관들을 대상으로 교환되는 금액이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설되어 있는 동독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 동독에 거주하는 자연인의 금융기관예금은 신청에 의해 연령별로 다른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여 1:1 비율로 교환된다.
 - 동독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의 예금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 본 규정을 악용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 (6) 동독은 예금이 2:1 비율로 교환됨으로써 금액감소의 피해를 입게 되는 저축자들에 대해서는 舊국유재산의 수용상황과 그 수익성 및 경제구조 적용, 그리고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산의 우선적인 이용이 이루어진 다음 舊국유자산에 대한 지분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7) 서독연방은행은 본 조약과 연방은행법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전 통화지역에 행사한다. 이를 위하여 동 은행은 동독 내 동독의 국립은행지점을 이용하여 15개 까지의 지점개설과 더불어 베를린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한다.

제 3 장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

제 11 조 경제정책의 기본방침

- (1) 동독이 취하는 경제·재정정책적 조치들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경제질서 아래에서 가격안정, 높은 수준의 고용, 대외경제균형과 함께 적정규모의 경제성장을 달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2) 동독은 경제의 구조적 조정, 근대적인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활동을 위한 저변확대 및 자유직업과 환경보호를 위해 자유시장이 가지고 있는 힘과 민간주도적인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기업조직은 본 조약 제1조에 명시된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화의 종류, 수량, 생산과정, 투자, 노동관계, 가격 및 이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 스스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형성된다.
- (3) 동독은 현재 진전되어 있는 코메콘(COMECON) 국가들과의 대외경제

관계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유럽공동체(EC)의 법규정과 경제정책적인 목표에 부합되는 정책을 추진한다.

- (4) 동독은 前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경제정책상의 원칙에 저촉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제8조에 의한 공동정부위원회에서 서독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12 조 내독교역

- (1) 쌍방이 1951년 9월 20일 체결한 「베를린협정」은 화폐통합 및 경제통합에 부합되도록 조정된다. 「베를린협정」에서 적용된 결제방식은 종료되며 청산계정(Swing)의 잔고도 결산된다. 현재 동독이 가지고 있는 계정상의 채무액은 서독마르크로 대체된다.
- (2) 쌍방은 원산지가 서독이나 동독이 아닌 상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취한 후 양독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 (3) 쌍방은 가능한 한 조속히 양독국경에서의 통제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그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 노력한다.

제 13 조 대외경제

- (1) 자유 대외교역을 추진함에 있어 동독은 특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교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인식한다. 서독은 동독이 보다 용이하게 세계경제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경험을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 (2) 동독의 기존 대외경제관계, 특히 코메콘(COMECON)제국과 현재 체결되어 있는 대외경제조약상의 의무는 그 이행이 보장된다. 이러한 대외경제적 의무는 화폐 및 경제연합상의 여건과 조약체결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 더욱 발전시켜 이행될 것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동독이 체결하고 있는 조약상 의무는 조약체결 당사자의 동의 하에 화폐 및 경제연합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 (3) 대외경제적 이해관계 표방을 위해 쌍방은 유럽공동체(EC)의 관할하

에 긴밀하게 협력한다.

제 14 조 기업의 구조조정

동독기업의 필수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동독정부는 국가재정정책의 범위 내에서 기업이 새로운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과도기적 조치를 취한다. 조치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쌍방 정부가 서로 협의한다. 이와 같은 조치가 지향하는 목표는 동독의 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 하에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미래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민간주도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여러 부문에서 다양하고, 가능한 한 수많은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근대적 경제구조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제 15 조 농업 및 식량경제

- (1) 농업 및 식량경제가 유럽공동체에 의해 일괄조정되는 상황에 맞추어 동독은 유럽공동체 시장질서체제에 부응하는 價格支持制 및 대외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동독에서 생산된 농산품가격을 서독 농산품가격에 일치시킨다.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동독은 유럽공동체에 대해 자국의 농산품이 유럽공동체 역내로 수입될 경우 부담하는 상계관세(Abschoepfungen)를 납부하거나 배상(Erstattungen)할 필요가 없다.
- (2) 본 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완전한 가격유지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적 조치를 취한다. 「유럽공동체」 농업시장에 동독의 농업 및 식량경제가 법적으로 통합될 때까지는 양독간 교역시에 일부 민감한 농산품이 거래될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양적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제14조의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독은 과도기간중 농기업체의 경쟁력 제고, 환경보호와 품질개선 및 과잉생산의 방지를 위해 국가재정의 한도 내에서 농업·식량경제상의 필요한 구조적 조정과정

을 지원할 수 있다.

- (4) 前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한 조치들의 구체적 형태에 관해서는 쌍방 정부가 협의한다.

제 16 조 환경보호

- (1) 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부터 인간, 동식물, 토지, 물, 공기, 기후, 경관과 문화재 및 그밖의 유형물의 보호는 쌍방에 주어진 특별 과제이다.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해 쌍방은 사전예방원칙, 환경파괴자 책임원칙과 협력원칙을 적용한다. 쌍방은 독일환경연합설립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2) 동독은 본 조약 발효와 더불어 동독지역 내의 신규 설비나 시설물 설치에 현재 서독에서 적용되고 있는 안전기준과 환경보호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 비로소 허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3) 동독은 주정부로 구성되는 연방국가 건설 및 행정관할지역의 설정과 병행하여 서독의 환경법을 그대로 引受한다.
- (4) 향후 환경법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동서독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현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호준칙의 수준을 향상·일치시키고 향후 계속 발전시킨다.
- (5) 동독은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지원에 관한 규정을 서독의 규정과 조화시킨다.

제 4 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

제 17 조 노동법질서상의 기본원칙

동독지역에 단결권, 임금자율결정권, 노동쟁의권, 경영조직법, 공동결정권,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은 서독법이 유효하게 된다. 이의 상세한 내용은 본 조약의 실행을 위해 합의한 공동의정서와 부속문서 II와 III에

서 규정한다.

제 18 조 사회보험 원칙

- (1) 동독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세분화된 사회보장체제를 도입한다.
 1. 연금·의료·산재·실업보험은 국가의 법률적 감독하에 공공법상의 각 자치행정기관을 통해 실시된다.
 2. 연금·의료·산재보험 및 고용축진을 포함한 실업보험은 무엇보다도 보험료 징수를 통해 그 재정이 충당된다. 연금·의료·실업보험의 보험료는 서독의 보험료 분담기준에 준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원칙적으로 각각 반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임금대체급부(Lohnersatzleistungen)는 피보험자로부터 각출되는 보험료 수준에 맞추어 지급된다.
- (2) 연금·의료·산재보험의 업무는 우선적으로 공동 운영기관에 의해 실시된다. 보험료의 수취와 급여지급은 보험형태에 따라 별도로 분리하여 취급·결제된다. 가능한 한 1991년 1월 1일까지 연금·의료·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각각 독자적인 운영체를 설립한다. 이 운영체 설립은 서독의 사회보험제도와 조직적으로 일치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둔다.
- (3)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도기간 동안 동독은 기존의 포괄적 사회보장에 대한 보험료 납입의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 형태의 사회보험제도에 충분히 가입되어 있다는 증거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보험과 관련된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연금보험 외에 직업형태에 맞춘 별도 부양기관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
- (4) 1990년 7월 1일 이전 최종 근로소득정산기간 동안의 임금소득이 근로소득 과세에 관한 1990년 12월 22일 명령 제10조에 명시하고 있는 특별 과세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월금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금보험료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 600서독마르크 이하 근로소득자: 30서독마르크

- 600 이상 700서독마르크 이하 근로소득자: 20서독마르크
 - 700 이상 800서독마르크 이하 근로소득자: 10서독마르크
- 다수 근로소득원에서 발생한 임금소득은 총괄하여 계산된다. 보조금은 사용자를 경유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된다. 사용자는 위의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9 조 失業保險과 고용촉진

동독은 서독의 고용촉진법 규정과 동등한 실업보험제도를 고용촉진제도를 포함한 형태로 도입한다. 도입되는 실업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직업교육이나 직업전환교육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조치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도기적 단계에 있어서 동독이 처해있는 특수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쌍방 정부는 고용촉진책을 포함한 실업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 20 조 연금보험

- (1) 동독은 서독의 연금보험법상의 임금과 보험료부담 원칙과 동일한 동독연금법의 제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연금법에는 5년의 과도기간을 연금수취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후부터는 신뢰보호(Vertrauensschutz)의 원칙을 적용한다.
- (2) 연금보험은 재활, 상해, 노령 및 사망 등 단지 연금보험법상 주어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 연금보험법상의 재원을 사용한다. 기존의 추가부양제도 및 특별생계부양제도는 원칙적으로 1990년 7월 1일부로 폐지된다. 이미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전망이 있는 연금수령권은 새 연금보험제도에 이전된다. 이 경우 특별금부규정에 의거 불공정한 급부는 폐지되고 과잉급부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연금보험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적 지출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 (3) 연금보험 가입자의 보험급여를 서독마르크로 전환·책정함에 있어 그

기준은 평균 국민소득 수준의 수입을 가진 근로자가 45년 동안 근무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후 받는 과세 후 연금액이 동독 노동자 전체 평균수입의 70%가 되는 수준으로 확정한다. 보험료 납부기간의 장단에 따라 연금보험산정 비율은 그만큼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개인별 연금액 산정은 동독의 평균소득 노동자가 사회보험제도상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이외에 자유 추가보험에 가입하여 소득의 일부를 납부한 금액 전체를 보험가입 연도에 누적시켜 산출된 금액을 기준한다. 위 기준에 의하더라도 연금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연금은 동독마크로 지급된 이전 수준에 맞춰 서독마크로 지불한다.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연금지급수준이 전환된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 기준한다.

- (4) 연금보험의 급여는 동독에서 과세 후의 임금 및 과세 후의 봉급액의 증가에 상응하여 조정된다.
- (5) 동독에서 임의적으로 가입한 추가연금보험제도는 폐지된다.
- (6) 동독은 국가보조금을 포함시켜 연금보험급여를 지급한다.
- (7) 1990년 5월 18일 이후 일방 조약당사자의 지역에서 타방 조약당사자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에 대한 연금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법규에 의거하여 책정되고 구 거주지의 체류기간을 감안한 금액을 종래의 관할연금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제 21 조 의료보험

- (1) 동독은 동독 의료보험법을 서독의 의료보험법에 일치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2) 종래 동독의 법규에 따라 의료보험에서 지급되었으나 서독법규에 의해서는 의료보험급여 형태에 속하지 않는 급여는 우선 동독 국가재정에서 지급된다.
- (3) 동독은 질병의 경우 서독의 계속보상 지불방식과 동일한 계속지불방식을 도입한다.

- (4) 연금수령자들은 의료보험에 가입된다. 의료보험에 있어 개별적인 의료보험 부담요율이 결정된다. 연금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연금에서 의료보험으로 일괄 공제된다. 일괄공제되는 금액의 규모는 의료보험금 공제전 연금자에게 할당된 전체 연금액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서독마르크 전환 후 취득하게 되는 순연금 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 (5) 동독의 상설 및 이동보건소 시설 투자는 국가재정으로 충당되며 의료보험료에 의하지 않는다.

제 22 조 보건위생

- (1) 의료보호와 질병보호는 쌍방이 가지는 중요 과제이다.
- (2) 동독은 동독주민들의 의료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현 의료체제를 당분간 존속시켜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의료공급체제를 민간의료공급체제로 전환한다. 개업의, 개업치과의, 약사 및 독자적 민간요법이나 보조약품의 공급, 공공목적에 위한 사적 병원시설은 서독의 의료공급체제에 준해 허가한다.
- (3) 동독은 의료보험업자와 의료기관간에 요구되는 계약규정, 특히 醫療酬價法上 필요한 관계규정의 제정을 위해 법적 여건을 마련한다.

제 23 조 산재보험연금

- (1) 동독은 산재보험법을 서독의 산재보험법에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2) 산재보험가입자의 연금은 동독에서의 세금공제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서독마르크로 전환하여 확정·지급된다.
- (3) 서독마르크로 전환·책정되는 산재연금액은 산재 발생 전 12개월 동안의 월평균임금을 기초로 확정된다.
- (4) 본 조약 제20조 제4항과 제7항의 규정이 산재보험연금에 적용된다.

제 24 조 社會扶助

동독은 서독의 사회부조(Sozialhilfegesetz)법에 상응하는 사회부조체제를 도입한다.

제 25 조 재정지원

과도기간중 동독의 실업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초기 보험급여를 완전히 충당치 못할 경우 서독은 본 조약 제28조에 명시된 국가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동독에 잠정적인 초기 재정지원(Anschubfinanzierung)을 실시한다.

제 5 장 국가예산과 재정에 관한 규정

제 1 절 국가예산

제 26 조 동독 재정정책의 기본원칙

- (1) 동독의 공공재정은 경제전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행정 단위별로 독자적 책임의 원칙하에 수립된다. 공공예산수립이 지향하는 목표는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예산경제를 운용하는데 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모든 예산수입과 지출은 개별 예산계획에 의해 집행된다.
- (2) 동독예산구조는 서독의 예산구조에 일치시킨다. 화폐연합의 창설과 더불어 동독은 1990년도 부분예산을 편성하되 특히 다음에 명시한 분야는 예산편성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 서독에서 전부 또는 대부분 보험료에 의해서나 세금에 의해 재정이 운영되는 사회분야
 - 법적, 경제적 독립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
 - 독립법인인 운수업체

- 특별자산인 동독 국영철도와 동독우편의 운영
 - 공공주택건설을 위한 국가용자는 개별대상의 실정에 맞게 배정한다.
- (3) 동독의 지방행정기관들은 예산편성과 집행시 공공적자를 축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예산지출과 관련 이에 속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예산보조금 감축, 특히 공산품과 농산품 및 유럽공동체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 가격유지를 허용하는 식료품에 대해 단기적인 예산보조금 감축과 관련된 분야, 전체 국민소득향상을 고려해야 하는 교통부문과 민간 가계용 에너지 부문 및 주택
 - 공공부문에서의 인건비 추가감축
 - 범규정상의 예산지출과 관련 그 타당성과 자금조달 능력여부에 대한 검토
 - 교육제도의 구조적 개혁과 연방구조에 상응하여 교육 세분화(연구분야 포함)
- 예산수입부문에 있어서도 적자축소를 위해 본 장의 제2절에 명시한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서독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법과 같은 대민봉사와 관련, 요금 및 수수료 징수제도를 도입한다.
- (4) 국유재산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국유재산은 우선적으로 동독의 경제구조 조정과 국가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이용되도록 한다.

제 27 조 기채와 부채

- (1) 동독 지방행정기관이 예산과 관련하여 起債할 수 있는 受權의 한도는 1990년 100억 마르크, 1991년 140억 마르크이며 서독재무장관의 동의하에 각 지방행정기관으로 할당된다. 국가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자산평가에 따른 예상수익을 감안, 기채할 수 있는 한도는 1990년 70억 마르크, 1991년 100억 마르크로 정한다. 서독의 재무장관은 주어진 여건이 현저히 변화할 경우 그 상한선의 초과를 허용할 수 있다.

- (2) 기채와 조정채권의 발행은 동서독 재무장관의 상호 합의에 의해 행해진다. 인적보증, 물적담보의 인수 및 국가예산의 부담으로 하는 위임에 의한 기채의 총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3) 동독이 서독에 편입된 후 누적되는 동독의 예산상 적자는 국가신탁자산의 매각에서 오는 예상수익으로 변제되지 않는 한 그 금액대로 신탁청의 부채로 이전된다. 이 부채는 향후 독일의 연방정부와 동독지역에 새로 편성되는 주정부가 반반씩 분담한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무는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존재한다.

제 28 조 서독의 재정보전

- (1) 서독은 동독의 예산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990년 하반기에 220억 마르크, 1991년에 350억 마르크의 재정보전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본 조약 제25조에 의거 연금보험의 초기기금으로 1990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7억 5천만 마르크, 실업보험금을 위해 1990년 하반기 20억 마르크, 1991년 30억 마르크를 지원한다. 실제지급은 수요액에 따라 수시 지급한다.
- (2) 쌍방은 본 조약의 발효와 함께 1971년 12월 17일 체결된 서독과 서베를린간 민간인과 화물의 통과에 관한 협정 제18조에 따라 동독에 일괄 지급되는 통행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데 합의한다.
동독은 본 조약의 발효와 함께 상기협정과 1979년 10월 31일 도로운송수단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면제에 관한 협정에 명시된 수수료규정을 폐지한다. 1989년 12월 5일의 합의서는 쌍방이 1990년 7월 1일부터 여행환기금(Reise-Devisenfonds)을 더 이상 납입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데 합의한다. 화폐연합의 출범과 함께 기존의 여행환기금에 의한 대충자금(Gegenwertmittel)의 사용에 대해서는 쌍방 재무장관이 적절한 합의를 도출한다.

제 29 조 공무집행상의 과도규정

본 조약 제2조 제1항 제1문에 의거 동독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임금계약 또는 새로운 복무법상 규정의 제한을 받는 기타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동독지역의 일반적 경제상황과 재정상황 및 국가재정의 긴축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것을 약속한다. 연방인사대표법(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은 그 취지에 맞추어 적용한다.

제 2 절 재 정

제 30 조 관세와 특별소비세

- (1) 동독은 본 조약 제11조 제3항의 원칙에 따라 공동관세를 포함한 「유럽공동체」의 관세법과 부속문서 IV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한 특별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수용한다.
- (2) 쌍방은 관세 적용영역이 본 조약 적용영역을 포괄하는데 합의한다.
- (3) 소비세 부과지역간의 국경청산(Grenzausgleich)은 煙草를 제외하고는 소멸된다. 쌍방의 조세 자주권은 침해받지 않는다. 조세납부액이전(Aufkommensverlängerungen)에 관한 조정은 별도 합의를 통해 규제된다.
- (4) 과세지역간 소비세 미부과 상품 발송은 과세되는 일방 지역의 비과세 상품거래 규정을 따른다.
- (5) 수출상품에 대한 면세는 쌍방 조세징수지역이 아닌 타방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명될 때만 허용된다.

제 31 조 취득세와 유통세

- (1) 동독은 부속문서 IV에 따라 취득세와 유통세를 관장한다.
- (2) 쌍방간 상품매출액에 대한 과세한도는 두지 않는다. 또한 상품판매세에 대한 한도조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세주권은 침해받지 않는다.

사전조세공제(Vorsteuerabzug)에 대한 권리는 타방에서 매출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매출액에 대한 세급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야기되는 조세감소액은 별도합의를 통해 보전된다.

- (3) 조약당사자 일방지역에서 재산세 납부의무(Vermögenssteuerpflicht)가 독립적으로 부과될 경우 해당 조약당사자에게는 독점적 과세권(ausschließliche Besteuerungsrecht)이 부여된다. 재산세 납부의무가 조약당사자 쌍방지역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는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비자연인으로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조약당사자에게 부과된다. 타방 조약당사자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은 해당지역 국내자산 유효규정에 의거 평가된다.
- (4) 조약당사자 일방지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의무가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후 유효하는 상속에 해당되는 조약당사자에게는 독점적 과세법이 적용된다. 조약당사자 쌍방지역에서 납세의무가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는 상속자나 피상속자가 조세채무성립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비자연인으로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상속세의 평가에는 제3항 제2문이 준용된다.
- (5)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세가 1990년 6월 30일 이후부터 1991년 1월 1일 이전에 부과되는 경우, 제4항이 적용된다. 1989년 11월 8일 이후 타계약 당사자지역을 거주지로 등록하였거나 그 지역에 최초로 일상적 체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해당지역에 거주 또는 일상적인 체류상태인 경우 이전의 조약당사자 지역에서 의무납세액보다 고율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없다.
- (6) 본 조약당사자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서 발생하는 통지 및 공시의무는 타방 지역 조약당사자의 재무관청에 대해서도 공히 부과된다.

제 32 조 정보교환

- (1) 쌍방은 조세 및 독점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의 관할은 쌍방의 재무장관과 이의 위임을 받은 관청이다. 조약당사자 일방이 취득한 모든 정보는 국내법을 근거로 입수한 정보와 같이 비밀에 부쳐져야 하며, 취득한 정보는 세금의 확정, 징수, 집행이나 형사소추, 또는 본 절에서 다루는 조세 및 독점과 관련된 공소결정과 관계된 개인이나 관청(법원과 행정관청을 포함하여)에 대해서만 공개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정보를 단지 상기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 재판절차(gerichtsverfahren)나 법정판결(Gerichtsentcheidung)상으로도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 (2) 前 제1항에도 不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의 당사자도 그 실시 의무가 없다.
- 어느 일방 당사자의 법률과 행정관행을 위반하는 행정조치를 집행할 경우
 - 어느 일방 당사자의 법률 또는 일반적 행정적인 절차상 금지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 거래상, 산업상, 영업상 및 직업상의 비밀 또는 업무상의 절차를 폭로하거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 33 조 협의절차

- (1) 쌍방은 과세대상에 대한 한계를 엄격히 설정할 수 있도록 상호 의사소통을 증진시킴으로써 재산세 및 상품 유통세(verkehrssteuer)를 부과하는데 있어 이중과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쌍방은 본 절에서 다루는 세금과 독점에 관한 법률해석과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하여 상호양해를 얻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전 항의 합의 도출을 위해 서독의 재무장관과 동독의 재무장관은 직접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 34 조 租稅기관의 설립

- (1) 동독은 본 조약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 처리를 위해 서독 재무행정기관에 관한 법에 상응하는 3단계 재무행정적 법률기초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을 설립한다.
- (2) 화폐·경제·사회연합의 설립에 앞서 기능적인 조세 및 관세 행정관청을 설립한다.

제 6 장 종결규정

제 35 조 국제법상 조약

본 조약은 서독과 동독이 제3국과 체결한 국제법상 조약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36 조 조약의 재검토

본 조약의 규정은 주어진 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경우 재검토된다.

제 37 조 베를린조항

본 조약의 서베를린 지역에서의 확대·적용을 위해 1971년 9월 3일 체결한 4대국협정의 소정 절차를 거친다.

제 38 조 발 효

공동의정서 및 부속문서 I-IX를 포함하여 본 조약은 쌍방 정부가 조약 발효를 위해 상호 필요한 헌법 및 기타 국내법적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통고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0년 5월 18일 본(Bonn)에서 독일어로 된 2개의 정본을 작성한다

서독측 대표

테오 바이겔 박사

(Dr. Theo Waigel)

동독측 대표

발터 롬베르그 박사

(Dr. Walter Romberg)

Ⅱ. 지도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본 조약의 보충을 위해 조약체결을 위한 고위당국자는 본 조약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도원칙에 합의하였다.

A. 일반적 지도원칙

I. 총 칙

1. 동독지역의 법은 자유, 민주, 연방, 법치국가 및 사회질서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정되며, 유럽공동체의 법질서를 지향한다.
2. 사회주의 법치성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률, 판결을 포함한 개별적 국가권력이나 국가권력기구, 사회주의 국가질서 및 사회질서, 사회주의 국민경제의 중앙통제와 계획에 의해 수립한 목표, 사회주의적 세계관, 사회주민계층이나 정당이 개별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세계관, 사회주의적 도덕관이나 이와 유사한 개념을 정립하였던 규정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자의 권리와 의무는 선량한 風俗,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경제적 弱者保護의 원칙에 拘束된다.
3. 허가유보(Genehmigungsvorbehalte)는 전반적인 사회복지를 위해 불가항력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조건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한다.

Ⅱ. 경제통합

1. 경제적 활동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사경제와 경쟁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2. 계약의 자유를 보장한다.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기업운영에 대한 결정(예를 들어 생산, 구매, 인도, 투자, 노동환경, 가격 및 잉여처분 등)은 주어진 계획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4. 사기업과 자유업이 국영기업이나 조합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5. 가격은 경제전반을 고려 불가항력적인 이유에서 국가가 결정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6. 土地 및 그밖의 生産手段에 대한 取得, 處分 또는 利用의 自由는 경제적 활동을 위해 보장된다.
7. 직·간접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동 기업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경쟁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이루며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사유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경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사유화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8. 우편제도 및 통신부문에 대해서도 서독 체신조직법상의 정책과 구조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III. 사회통합

1. 모든 사람은 노동 및 임금조건의 보장과 개선을 위해 서로 연합하거나 기 조직된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 가입한 단체로부터 탈퇴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그와 같은 연합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단체의 구성, 존속, 조직상의 자율과 연합 등에 있어 보호된다.
2. 임금협상권을 소유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자유롭게 구성되고, 적대자가 없는 초기업적 차원에서 조직됨으로써 독립성을 견지하며 현행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자체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임금협상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Tarifabschluss)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3. 임금 및 기타 노동조건들은 국가가 아닌 노동조합, 사용자연합체, 사용자 자유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4.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 산별노동조합, 기업의 노조지도부의 특별 협력

권을 인정한 법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B. 개별적 법분야에 대한 지도원칙

I. 소 송

1. 소송 및 소송절차의 통고와 관련된 집단, 사회기관, 노동조합, 기업, 사회를 대표한 원고와 피고의 협력을 규정하는 법규정은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자문과 소송변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
2. 법원과 지방의회 및 기타 기관과의 협력, 법원비판(Gerichtskritik) 및 이에 대한 판사들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법규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3. 소송사건에 있어 검찰청 협조(Mitwirkung)에 관한 법규는 그것이 형사소송절차, 가족법상의 사건, 친자관계사건, 금치산자사건일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4. 동독형법에 있어 사회주의 법치성과 사회주의 국가질서 및 사회질서에 기초한 원칙과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거나, 향후의 양독 통일을 저해하거나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이념에 배치되는 규정은 본 조약의 발효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5.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와 관련된 법규정은 본 조약의 발효 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나 개인 또는 사적 소유와 관련된 법규를 비롯한 기타 소유형태나 자산과 관련된 법규들은 본 조약의 발효 이후 계속 적용된다.
6. 본 조약 부속문서 II의 규정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벌금이 부과되어야 하나 동독의 제재체제에 상응하지 않을 경우, 동독은 그 부과규정을 서독의 법에 의거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II. 경제법

1. 신용담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독에 서독과 동일한 권리, 특히 토지

저당권을 설정한다.

2. 동독에 자유 자본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利子率을 자율화시키고 자본시장에 매매가능한 유가증권(주식 및 채권)을 유통시킨다.
3. 본 조약 제3조 제3항에 열거된 관청의 행정행위 및 기타 명령이 동독에 주소 또는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행사될 수 있도록,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적 발동도 가능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강구한다.
4. 동독의 현행 보험독점은 폐지되며, 보험업 사업계획에 보험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험금지급을 통제하는 행위는 철폐된다. 또한 보험가입의 일반조건에 대한 현행 법규정 및 규칙들도 폐지된다.
5. 동독이 규정하고 있는 지불거래(Zahlungverkehr)와 관련된 현행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나 私法的 지불거래 규정은 장려된다.
6. 대외경제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이의 제한은 국민경제상의 긴급한 이유 또는 양독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동독은 대외무역독점을 폐지한다.
7. 비교가능한 통계자료의 생산을 위해 동독은 통계수치를 서독통계에 일치시킨다. 동독은 서독의 연방통계청 또는 독일연방은행과 합의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범위의 통계자료를 서독의 통계기준에 의거 작성 제공한다: 노동시장, 물가, 생산량, 판매량, 무역량, 소매업.

III. 건축법

동독은 건축사업의 계획 및 투자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서독의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Raumordnungsgesetz)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한다.

IV.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1. 동독의 사용자는 동독지역에 임시로 근무하는 서독지역의 노동자에 대해 서독의 노동법을 적용하는데 합의한다.

2. 노동력을 임시로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으로 파생되는 사회보험법상의 의무적 보험가입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상기의무는 본 고용과 독립적인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면제된다.
3. 산업재해로부터의 노동자 안전과 질병보호를 위한 동독 규정은 적절한 과도기간을 거쳐 현행 서독 노동보호법에 일치시킨다.
4. 동독은 노사관계와 관련, 법률상 최소한의 해고 고지기간을 변경할 경우 서독의 임금노동자와 고용근로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최소한의 해고 고지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동독은 중대 사유로 인한 무기한 해고예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서독민법 제626조 및 제628조에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Ⅲ. 부 속 문 서

부속문서 I 화폐통합과 통화전환에 관한 규정

통일조약 제3조 제1항에 의거 화폐통합에 따른 통화전환을 위하여 이하 기술하는 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 장 동독지역의 마르크화(DM) 도입에 관한 규정

제 1 조 마르크화의 도입

- (1) 1990년 7월 1일부로 서독마르크가 동독지역의 통화로서 도입된다. 그 계산단위는 서독마르크이며, 1 마르크는 100 페니히(Pf)다.
- (2) 동독의 유일한 법정지불수단은 1990년 7월 1일부터 연방은행이 마르크로 표시하여 발행한 은행권과 서독정부 발행 마르크 또는 페니히로 표시된 연방정부 주화이다.
- (3) 연방은행 발행 은행권은 지불수단으로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서독정부 발행 주화와 관련, 마르크화 표시 주화 20마르크 이상 또는 페니히 표시 주화 5마르크 이상을 주화로 지불하는 경우, 수취를 거부할 수 있다.
- (4) 제2항 및 제3항과 별도로 통용되고 있는 1, 5, 10, 20 및 50페니히 단위 동독주화는 이에 상응하는 연방주화로 대체될 때까지 법정지불수단이다. 동독은 서독의 재무부장관이 정한 시점에 이 주화들의 통용을 중지시킨다.
- (5) 서독의 재무부장관은 동독이 주조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할 경우 동독 주화제작소에 통상적인 조건에 의거하여 연방주화를 주조토록 조치한다.

제 2 조 명칭변경

법, 규칙, 명령, 판례, 행정처분, 계약 그리고 기타 법 운용상의 설명과 관련, 동독마크가 계산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별도 규정을 두어 동독마크 대신 서독마크가 계산단위로 사용된다. 동독마크 표시 채무와 채권전환에 관한 규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3 조 승인에 관한 특별규정

동독거주자가 서독 또는 동독거주자에 대하여 서독마크가 아닌 여타 통화로 채무를 지게 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서독마크로 표시된 여타 통화의 교환율이나 금의 가격 또는 기타 재화나 용역의 채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승인여부는 연방은행이 결정한다.

제 4 조 지불기한 유예

모든 동독마크 표시 채무는 본 부속문서 제11조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이후부터 1990년 7월 1일까지 그 지불기한이 유예된다.

제 2 장 동독지역에서의 화폐교환

제 5 조 화폐교환일 및 금융기관계좌를 통한 교환

- (1) 본 조 제3항에 명시한 개인 또는 기관이 소지하는 동독마크 표시 은행권과 동독마크 또는 페니히 표시 주화는 본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교환을 위하여 1990년 7월 6일까지 동독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시킬 수 있다.
- (2) 본 조 제3항에 명시한 개인 또는 기관은 1990년 7월 6일까지 동독마크 표시 화폐자산의 교환을 계좌개설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3) 금융기관을 제외한, 동독에 거주지 및 소재지 또는 점포를 갖는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기관은 화폐교환을 위해 동독통화를 입금시키

고 화폐교환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개인이나 기관은 교환신청서 제출시, 신청하는 금액이 동독의환법을 위반하지 않고 동독으로 반입 또는 취득한 동독마크 표시 은행권이나 주화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금된 것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 (4) 동독 이외의 지역에 거주지나 소재지를 갖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은 7월 13일까지 계좌가 개설된 동독소재 금융기관에 동독마크로 표시된 화폐자산에 대해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의 제2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5) 동독 이외 지역 거주자로 통화전환 시점에 동독에 체류하는 자연인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동독마크 표시 은행권과 주화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동독금융기관에 입증할 경우, 1990년 6월 30일에 적용되는 의화환전율에 따라 1990년 7월 6일까지 동독 이외 지역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 (6) 상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명시한 기한만료와 함께 동독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은행권과 주화 및 동독 금융기관에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권리는 소멸된다.
- (7) 상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명시한 기한을 엄수하지 못한 경우, 1990년 11월 30일까지 이전 상태로의 환원(Wiedereinsetzung)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 상태로의 환원 신청은 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화폐자산 교환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은행권 및 주화를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환원신청은 화폐자산 교환과 관련된 장애요소가 제거된지 2주 이내에 계좌개설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6 조 금융기관에서의 화폐자산 교환

- (1) 동독지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은 이하 열거하는 금액에 대해서 1동독마크에 대하여 1서독마크로 교환될 수 있도록 계좌개설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1976년 이후 출생한 자 1인당 2천 마르크까지
- 1931년 7월 2일부터 1976년 사이 출생한 자 1인당 4천 마르크까지
- 1931년 7월 2일 이전 출생한 자 1인당 6천 마르크까지

신청은 금융기관 1곳에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 (2) 상기 제1항에 명시한 금액의 동독마르크를 초과하는 자연인의 화폐자산이나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의 화폐자산은 2동독마르크에 대하여 1서독마르크의 비율로 교환된다.
- (3) 동독이외의 지역에 거주지나 소재지를 갖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관의 1989년 12월 31일 현재 화폐자산은 2동독마르크에 대하여 1서독마르크의 비율로 교환된다. 제1항에 명시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관의 1989년 12월 31일 이후의 화폐자산은 3동독마르크에 대하여 1서독마르크의 비율로 전환된다.
- (4) 본 법규를 위반하는 거래(Umgehungsgeschäfte)는 무효다.

제 7 조 동독마르크 표시 채무와 채권의 서독마르크 전환:

개시대차대조표

제 1 항

- (1) 제2절과 제3절에 의거 1990년 7월 1일 이전 발생하였거나 본 규정 시행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모든 동독마르크 표시 채무와 채권은 2동독마르크에 대하여 1서독마르크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 (2) 제1절과는 별도로 아래 명시하는 경우의 동독마르크 표시 채무와 채권에 대해서는 1동독마르크에 1서독마르크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1. 1990년 5월 1일 체결된 임금 및 급여와 1990년 6월 30일 이후 지불되는 장학금
 2. 1990년 6월 1일 이후 지불되는 연금. 통일조약 제20조에 명시된 규정은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
 3. 생명보험이나 민간 연금보험에 의한 정기지불금 이외 1990년 6월

30일 이후 지불되는 월세, 임차료 및 기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지불금

- (3) 제5조 제3항과 제4항에 명시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의 동독 마르크 표시 채권에 대해서는 본 부속문서 제6조를 적용한다.

제 2 항

- (1) 1990년 7월 1일 이전 발생한 채무로서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나타낸 계산서류를 1990년 6월 30일 이후 제시하여도 동독마르크로 표시된 채권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 (2) 1990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간 계좌사이에 아직 지불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거래는 1990년 6월 30일 이후 우선 동독마르크로 양쪽 계좌에 기장처리하고 화폐교환 신청시 화폐자산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 3 항

- (1) 동독은 통일조약 효력 발생 3개월 이내, 동독 소재 모든 상행위 종사자와 콤비나트(Kombynat), 협동농장(Kombinat), 협동기업(Kombinatbetrieb)을 포함한 법인 및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서독마르크에 의한 개시대차대조표(Eröffnungsbilanz) 및 자본금 신규확정(Kapitalneufestsetzung)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
- (2) 상기 법은 이하 명시한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제정한다.
- a) 자산항목(Vermögensgegenstände)과 부채(Schulden)는 개시대차대조표에 의거 새로 평가된다.
 - b) 재평가액은 대차대조표 개시일 현재 재구입하거나 재생산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신규가치액:Neuwert)을 초과할 수 없다. 신규가치액에서 자산의 감가상각과 기술진보에 따른 가치감소분 만큼 삭감한다(시간가치액:Zeitwert). 개시대차대조표에 기장된 가액은 향후 신규 구입비 또는 생산비로 인정한다.
 - c) 제1절 및 제2절의 우선적 적용을 전제로, 전체 상행위 종사자들에게

유효한 경우에 한해 서독 상법 제3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d) 재무제표 개시일 이전 私法형태로 전환된 기업이 취득한 무형자산은 자산변에 부기할 수 없다.
- e) 재정항목조정(Ausgleichsposten) 또는 과도 부채방지 및 자본금 신규확정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신설은 서독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탁관리청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조정채권(Ausgleichforderungen)에 관한 규정제정도 동일하다.
- f) 토지와 대지는 실거래가격(Verkehrswert)으로 평가된다.

제 8 조 금융기관 및 무역상사에 관한 특별규정

제 1 항

금융기관의 동독마크 표시 채무 및 채권 그리고 동독소재 기타 금융기관의 화폐자산에 대한 청구권 전환은 본 부속문서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 2 항

- (1) 동독 국가은행을 제외한 제1항에 명시 금융기관들은 서독마크 도입과 통화전환으로 수취하거나 보유한 동독마크 표시 은행권 및 주화를 동독 국가은행 계좌에 입금시킬 의무를 진다.
- (2) 제3항 5절의 우선적 적용을 전제로 제1항에 명시된 금융기관들은 동독국가은행으로부터 화폐자산을 수령한다. 이에 따라 발생된 화폐자산도 2동독마크에 대하여 1서독마크의 비율로 전환된다.

제 3 항

- (1) 동독마크로 거래표시된 금융기관들의 장부들은 1990년 6월 30일자 현재 동독마크화로 손익계산서와 함께 결산재무제표 등을 통해 마감한다.

- (2) 1990년 7월 1일 이후 동독마르크로 계산되는 금융거래는 본 조약 또는 본 조약에 의거 제정되는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산재무재표 작성을 위한 기장의 경우에도 동독마르크로의 계산이 허용된다.
- (3) 금융기관들은 1990년 7월 1일부터 서독마르크로 장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모든 신규거래를 서독마르크로 기재하여야 한다.
- (4) 동독은 통화전환을 위해 재정조정기금(Ausgleichsfond)을 설치한다. 제4조에 의거 금융기관들과 대외무역기업들이 재정조정기금을 채권형태로 인수할 수 있는지 또는 부채형태로 재정조정기금에 지급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산출해내기 위해 특별 화폐전환계산(Umstellungsrechnung) 방법을 택한다. 이와 같은 특별전환 계산방법에 의해 동독지역에서의 서독마르크화 도입과 통화전환에 따른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의 자산(Aktiva)과 부채(Passiva)가 동독마르크로 표시되어 나타난다. 전환계산에 따른 일체의 기장처리 는 실제 화폐전환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상관없이 1990년 7월 1일 을 기준한다. 이와 같은 화폐전환계산은 1990년 7월 1일부 개시재무제표로 통용된다.
- (5) 금융기관의 현금보유고를 동독마르크 표시 은행권과 주화에 포함시켜 화폐전환하기 위해 연방은행이 제정하는 규정 및 명령을 적용한다.

제 4 항

- (1) 동독의 금융기관과 대외무역기업은 상법 제3편 규정에 의거 그들의 자산가치가 서독마르크 도입과 통화전환 결과 부채 변제에 불충분한 경우, 1990년 7월 1일부로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재정조정기금을 할 당받을 수 있다.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후지급한다. 이자율은 서독 마르크 표시 예금의 동기간에 대한 프랑크푸르트 은행간에 지급되는 이자율(3개월간의 FIBOR)을 기준한다.
- (2) 금융기관들에 대한 재정조정기금의 할당에 대한 결정은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동독에서 서독마르크 도입과 통화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와는 상관없이 자기자본이 재무제표상에 표시된 총자산의 100분의 4이상이 되며 금융기관 신용법 제10조에 명시된 기본율의 최고 13배까지 대여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지를 증명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대외무역상사에 할당되는 재정조정기금액은 동독지역에서 서독마르크 도입과 통화전환으로 일어나는 부채액의 변제에 충분한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 (3) 재정조정기금으로부터 할당된 금액은 1995년 7월 1일부터 매년말 액면가치의 100분의 2.5씩 변제한다.
- (4) 금융기관 및 대외무역상사가 재정조정기금으로부터 할당받은 금액은 재무제표상에 액면가치대로 기장한다.
- (5)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동독에서 서독마르크 도입과 통화전환으로 발생한 부채 및 제2절에 명시한 자기자본을 초과할 경우, 제1절에 의거 이자지급조건으로 재정조정기금을 할당한다. 대외무역상사의 자산가치가 동독에서 서독마르크 도입과 통화전환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초과할 경우, 제1절에 의거 이자지급조건으로 재정조정기금을 할당한다. 제2절부터 제4절까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6) 제5절에 의거 재정조정기금으로부터 할당받은 금액이 제1절에 명시된 부채변제에 불충분할 경우, 제1절에 의거 이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동독정부에 대해 이자지급조건부 할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과 제4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5 항

서독의 관할부서는 연방은행의 의견을 청문하여 전환계산서의 작성, 검사, 확인 및 재정조정기금의 할당과 할당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령을 통해 관장한다.

제 6 항

통화전환계산 확인 전 이익금처분에 관한 의결이나 명령은 무효다.

제 9 조 조사와 지급중지

동독정부는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소추기관으로 하여금 은행계좌의 화폐자산에 대해 그 취득의 적법성에 대해 조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의 거래동결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 시행규칙 제정권의 위임

- (1) 연방은행은 본 조약에 그 관할권을 여타기관에 따로 명시하여 위임하지 않는 한, 본 조약에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 (2) 연방은행 및 연방은행의 위임을 받은 자연인 또는 단체는 서독마르크 도입 및 통화전환과 관련하여 제정된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과 그 종사자들에게 모든 영업상황에 관한 정보, 장부 및 문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또한 특별한 동기에 구애됨이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연방은행의 임직원과 그 위임자는 금융기관의 영업장에 들어갈 수 있다. 본 규정과 상치되는 기본권은 이 경우 제한된다.

제 11 조 종결규정

동독지역에서의 서독마르크 도입과 통화전환 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장 동독지역에서의 연방은행의 책임과 권한

제 12 조 연방은행의 업무

연방은행의 통화지역에서 통화은행 및 발권은행 업무를 위하여 각각 유효한 형식의 연방은행법에 준하여 이하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 연방은행은 이사회 산하 행정사무처를 베를린에 한시적으로 설치하

고 그 아래 15개까지 지점을 개설하여 동독소재 신용기관 그리고 동독정부 및 공공행정기관들과의 금융거래를 관장한다. 임시행정사무소는 연방은행 이사 중 한 사람이 최고 책임자가 된다. 임시행정사무소의 자문기구는 동독정부가 지명하는 10명으로 구성된다.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3년이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금융산업의 각 분야에서, 여타 구성원은 제조업, 상업, 농업 및 임금 노동자와 사무직 근로자들로 지명된다.

자문기구는 임시사무소의 최고책임자를 포함하여 통화정책, 신용정책, 은행업무 및 지불거래업무에 대한 자문을 행한다.

- 동독은 연방은행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동독정부은행의 영업장과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와 건물을 연방은행의 지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연방은행은 동독정부에 현금 8억마르크까지 신용대부할 수 있다.
- 유동자금의 연방은행 예치는 동독정부와 그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동독정부와 그 지방자치단체 및 동독철도 그리고 동독체신 등은 우선적으로 연방은행을 통해,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 공채(Anleihen), 국고증권(Schatzanweisungen) 그리고 국고어음(Schatzwechsel)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제 13 조 협조사항

연방은행은 동독정부와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동독의 해당 장관은 금융정책 및 통화정책에 관한 중앙은행위원회(Zentralbankrat) 회의에 참석한다. 동독정부는 연방은행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한다.

제 14 조 임직원의 파견

- (1) 연방은행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을 동독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방은행은 동독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연방은행에 속해 있는 업무공간 및 문서교환에 대한 불가침권 및 공무수행을 위한 자유통행권
- 동독의 국가기관(특히 경찰기관)에 의한 연방은행 업무장소에 대한 피보호권
- 연방은행 임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무기소지권

(3) 연방은행에 의해 파견되지 않은 근로자와는 연방은행과 서독 및 동독법 또는 임금협약상의 규정과는 별도로 동독지역 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임시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방인사대리법(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은 본 부속문서 제12조에 의거 설치된 임시사무소 및 그 지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문서 II 동독이 시행할 법률

I. 총 칙(Allgemeines)

1. 본 조약 제3조 제2항에 의거 동독은 본 조약 효력발생시까지 이하 열거하는 서독 법률이나 법률의 일부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이에 필요한 경과규정을 제정한다.

상기 제1항의 법률 또는 법률의 일부에 대한 효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연방은행, 신용감독청 그리고 보험감독청의 명령 및 규칙 등에도 적용되어 발생된다.

상기 법률 및 법령이 타 법규정의 적용을 의뢰할 경우, 조약체결 쌍방은 이와 유사한 동독의 법률로 이를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서독의 규정으로 대체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2. 본 조약의 효력 발생 이후 이하 열거한 서독법 또는 서독법 일부가 변경될 경우 이와 관련된 동독법도 개정된다.

이와 같은 개정은 서독법 또는 서독법 일부에 의해 제정된 연방은행, 연

방신용 감독청 및 연방보험 감독청의 법령 및 규칙과 명령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독은 동독이 본 부속문서에 명시된 법과 법규정의 개정을 지도하며 이와 관련된 동독의 입장을 수렴한다.

동독은 법률 및 법령, 기타 규정 그리고 명령의 개정을 적절한 형식을 통해 공포한다.

3. 이하에 열거하는 법 또는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서독의 관공서 또는 기타 기관은 본 부속문서가 별도 확정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와 상응하는 동독의 관공서 또는 기관으로 대치한다. 그러나 본 조약 제3조 제3항은 이에 저촉받지 아니한다.

II. 화폐통합 관련

1.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7620-1에 의해 공포된 법률로 1986년 4월 24일 법 제32조(민법1. I, 560쪽)에 의거 최종개정된 연방은행법
2. 1985년 7월 11일 공포(민법1. I, 1472쪽)되고 1989년 12월 22일 법 제14조(민법1. I, 2408쪽)에 의거 최종개정된 신용업법

신용업법 제28조 제2항, 제46조 제2항 그리고 제46조 a에 명시된 업무가 동독 법원으로 위임되기 전까지는 샤로텐부르크(Charlottenburg) 법원이 이를 인수한다. 신용업법 제46조 b는 동독소재 신용기관에 적용하며, 파산절차는 1975년 12월 18일자 청산(Gesamtvollstreckung)에 관한 명령(민법1. 1976 I, 5쪽)으로 대치하며 청산은 연방신용감독청의 신청에 의해서만 시행된다.

연방행정법원은, 제조자가 동독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갖는 경우, 신용업법 또는 기타 신용관계법 관련 연방신용감독청 결정에 대한 항소 사항과 연방신용감독청의 직무유기(Untätigkeit)에 대하여 일심과 최종심을 통해 판결한다.

3.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7628-1에 의해 공포된 법률로 1988년 6월 8일 법 제1조(민법1. I, 710쪽)에 의거 최종개정된 저당은행법

4.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4135-1에 의해 공포된 법률로 1986년 4월 24일 법 제23조(민법1. I, 560쪽)에 의해 최종 개정된 공공법상의 신용업무기관의 저당증권(Pfanbriefe)법과 채무증서(Schuldverschreibung)에 관한 법
5. 1983년 3월 29일 법 제2조 제22항(민법1. I, 377쪽)에 의거 최종 개정된 1972년 11월 16일(민법1. I, 2097쪽)의 주택저축은행(Bausparkasse)에 관한 법
6. 1970년 1월 14일에 공포된(BGB1. I, 127쪽)법률로 1990년 2월 22일 법 제1조(민법1. I, 266쪽)에 의거하여 최종개정된 자본투자회사(Kapitalanlagegesellschaften: KAGG)에 관한 법
7.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4130-1에 의해 공포된 법률로 1985년 7월 17일 법 제1조(민법1. I, 1507쪽)에 의거 최종개정된 유가증권보호예수법(Depotgesetz)
8. 1983년 10월 13일 공포된(민법1. I, 1261쪽) 법률로 1986년 12월 19일 법 제6조(민법1. I, 2595쪽)에 의해 최종 개정된 보험감독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침.
 - a) 동독 재무부장관으로부터의 의견청문 후에
 - aa) 동독지역에서의 보험업무 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허가와
 - bb) 동독지역에 소재지나 지사를 갖는 보험회사들에 대한 보험감독업무를 허가한다.
 - 행정절차처리에 있어 동독의 이해관계 및 법규정을 참조한다.
 - b) 연방보험감독청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Anfechtungsklagen) 또는 연방보험감독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제소사항은 연방행정법원이 일심과 최종심에서 판결한다.

III. 경제통합 관련

1. 경쟁제한금지법 제24조부터 제24조 c 대신에 예방적이고 간략한 금지 절차로 대치한 1990년 2월 20일 공포된 경쟁제한금지법(민법1. I, 235쪽)
2. 1985년 7월 15일에 공포된 법률안(민법1. I, 1565쪽)으로 1990년 3월 14일(민법1. I 478쪽) 최종 개정된 원자력법. 이 경우 본 조약 효력 발생 시점상 유효한 원자력 및 방사능방지와 관련된 허가사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인가, 승인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기타 시설물과 업무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까지 그 효력을 발생하며, 원자력 시설물의 구축, 취소, 감독 및 근본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원자력법상의 감시규정을 적용한다. 동독은 세부사항 결정에 있어 서독 관할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를 갖는다.
3.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4100-1에 의해 공포된 법률로 1989년 10월 23일(민법1. I, 1910쪽) 최종 개정된 商法 제1편부터 제3편까지,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400-2에 의거 공포된 법률로 1989년 12월 18일 최종 개정(민법1. I, 721쪽)된 민법 제705조부터 제740조까지.
4.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4124-1에 의해 공포된 법률로 1986년 5월 15일(민법1. I, S.721) 최종 개정된 유한회사에 관한 법
5. 1965년 9월 6일 제정(민법1. I, 2312쪽)되고 1988년 12월 20일 최종개정(민법1. I, 1089쪽)된 주식법(Aktiengesetz)
6.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4125-1에 의해 공포된 법률로 1988년 7월 25일(민법1. I, 1039쪽) 최종 개정된 구매 및 공동경제협동조합(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에 관한 법
7.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4120-2로 공포된 법률로 1985년 12월 15일 법 제10조 제9항(민법1. I, 2355쪽)에 의거 최종 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증자와 합병에 관한 법
8. 1969년 11월 6일 공포된 법률(민법1. I, 2081쪽)로 1985년 12월

- 19일 최종 개정(민법1. I, 2355쪽)된 회사조직변경법(Umwandlungsgesetz)
9. 1976년 12월 9일(민법1. I, 3317쪽) 제정되고 1989년 12월 20일(민법1. I, 2486쪽) 최종 개정된 보통거래약관법(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10. 1986년 1월 16일 제정된 방문판매(Haustürgeschäften) 및 이와 유사한 판매의 허가취소에 관한 법(민법1. I, 122쪽)
 11.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402-2에 의해 공포된 법률로 1976년 12월 3일 법 제9조 3항(민법 1. I, 3281쪽)으로 최종 개정된 할부판매(Abzahlungsgeschäft) 관계법

IV. 사회통합 관련

1.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801-2에 의해 공포된 법률로 1985년 12월 19일(민법1. I, 2355쪽) 최종 개정된 광업 또는 철강산업의 감독위원회(Aufsichtsräten)와 이사회에 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공동결정(Mitbestimmung)에 관한 법
2.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801-3에 의해 공포된 법률로 1988년 12월 20일(민법1. I, 2312쪽) 최종 개정된 광업 또는 철강산업 감독위원회와 이사회에 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공동결정에 관한 법의 세부사항과 관련된 법
3. 1976년 5월 4일 제정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민법1. I, 1153쪽)
4. 1952년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801-1에 의해 공포된 법률로 1979년 5월 21일(민법1. I, 545쪽) 최종 개정된 영업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 제76조, 제77조, 제77조 a, 제81조, 제85조, 제87조
5. 1988년 12월 23일 공포된 영업기본법(민법1. I, 902쪽)
6. 1969년 8월 23일 공포된 법률로 1974년 10월 29일 법 제2조 제1항

- (민법 I, 2879쪽)에 의해 개정된 임금계약법(Tarifvertragsgesetz)
7. 1969년 8월 25일 공포된 법률로 1988년 7월 13일 최종 개정(민법 I, 1034, 1037쪽)된 해고방지법(Kündigungsschutzgesetz)

부속문서 III 동독이 폐지 또는 변경할 법규정

동독은 이하 열거하는 법규정을 본 부속문서에 준하여 본 조약 시행 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보증한다.

I. 화폐통합 관련

1. 1974년 12월 19일 제정(GBI. I 62호 580쪽)되고 1990년 3월 6일 (GBI. I 호 125쪽) 제정된 동독 국가은행 개정법에 의해 개정된 동독 국가은행에 관한 법은 동독 국가은행이 발권은행 및 은행감독은행으로서의 권한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2. 1979년 6월 28일 제정된 외환관리법(GBI. I 17호, 147호)을 개정·보완한 법률안으로 1973년 12월 19일 제정된 외환관리법(Devisengesetz)(GBI. I Nr. 58 S. 574)과 1988년 12월 14일 제정된 제5차 형법개정법(Strafrechtsänderungsgesetz)의 부속문서 5항(GBI. I 29호 335쪽)은 폐지된다.
3. 1949년 9월 23일 구화폐자산-변제채권(Altguthaben-Ablösungsanleihe)과 관련하여 제정된 명령(ZVOBL. 46호 475쪽)과 그 시행령은 현재 그 효력이 휴지된 구화폐자산-변제채권에 관한 청구와 1958년 이후 동독정부에 의해 지불 정지된 채권 소지자에 대한 이자를 서독마르크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4. 자금대출, 이자지급부 저축, 현금 또는 무현금거래 및 수수료산정과 관련하여 경제연합의 창설과 배치되는 동독의 법과 법령은 폐지되거나 개정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이자율을 시장가격에 준해 일방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채무자는 채무관계에 대해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II. 경제통합 관련

1. 1958년 1월 9일 제정된 동독의 대외무역법(GB1. I 6호 69쪽)과 이에 준해 제정된 명령은 폐지된다.
2. 1990년 1월 25일 제정된 동독지역에서 외국인의 참여하에 설립되었거나 영업활동을 규정한 법령(GB1. I 4호 16쪽)은 폐지된다.
3. 1990년 3월 25일 제정된 국유 농업용지의 농업생산 협동조합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법령(GB1. I. 17호 135쪽)은 폐지된다.
4. 1982년 7월 2일 제정된 농업생산 협동조합법(LPG-법) 제18조(GB1. I 25호 443쪽)는 폐지된다.
5. 1990년 3월 1일 제정된 국영기업연합(Kombinat), 기업, 시설물, 및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en)로의 전환과 관련된 명령(GB1. I 14호 107쪽)은 폐지된다.
6. 1975년 12월 18일자 제정된 청산(Gesamtvollstreckung)과 관련된 명령(GB1. I 1호 5쪽)은 기업의 파산에 관한 규정으로 보완한다.
7. 본 조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1988년 6월 1일 제정된 동독지역의 에너지경제에 관한 명령규정 -에너지명령- (GB1. I 10호 89쪽)은 폐지되거나 개정된다.
8. 1975년 6월 19일 제정된 동독민법(GB1. I 27호 465쪽)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a) 전문은 삭제된다.
 - b) 제6조 제1항, 제17조 및 20조, 제22조 제1항, 제46조, 제68조 제2항 2문, 제69조 제258조 그리고 제452조 제3항은 폐지된다.
 - c) 제23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aa) “주로 사람의 노동에 근거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
 - bb) 이하의 문장을 삽입한다.

“기타 사유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d) 제6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격은 당사자가 이룬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법규정은 이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e) 제448조 제1항의 “금융기관, 인민기업, 국가기관과 시설 및 사회주의 협동조합” 등의 단어는 삭제된다.

f) 제453조 제1항의 “그리고 금융기관의 편의를 위한 부동산 저당권이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는 한 국가의 허가는”이라는 표현은 삭제된다.

g) 제454조 제3항 2문에서 “그리고 국가의 허가”라는 표현은 삭제된다. 제454조 뒤에는 이하의 다음과 같은 신규 규정을 삽입한다.

“제 454 조 a

(1) (근)저당권은 토지가 책임지는 최고담보액만이 확정되고 그밖의 채무액은 확정이 유보되는 형식으로 설정될 수 있다. 담보 최고 가격은 반드시 토지등기부(Grundbuch)에 등재해야 한다.

(2) 채권에 이자가 부과될 경우 이자를 최고가격에 포함시킨다.

(3)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거 이루어질 수 있다. 채권양도 규정에 의해 채권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저당권(Hypothek)의 양도는 제외된다.”

h) 제456조 제3항과 제458조는 폐지된다.

본 규정에는 민법(ZGB)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둔다.

“제456조 제3항 및 제458조는 본 법 발효이후 발생하는 건축물저당권(Aufbauhypotheken)을 계속 적용한다.”

9. 어음법은 서독어음법(연방법률공보 제2편, 분류번호 4133-1에 의해 공표되고 1985년 7월 17일 법 제3조에 의거 최종 개정 -민법1. I, 1507쪽)에 일치시킨다.
10. 수표법은 서독수표법(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4132-1에 의해 공표되고 1985년 7월 17일 최종 개정된 수표법 -민법1. I, 1507쪽)에 일치시킨다.

11. 1976년 2월 5일 제정된 국제경제계약법 -GIW- (GB1. I 제5호 61 쪽)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a) 제목 “국제경제계약에 관한 법“을 “경제계약에 관한 법”으로 바꾼다.
 - b) 제1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aa)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본 법은 국내의 기업인, 사업장 및 이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경제주체들간의 경제계약에게 적용된다. 본 법은 당사자 중 한 쪽이 가내 수공업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bb) 기존의 제1항은 제2항이 된다.
 - cc) 기존의 제2항은 제3항이 된다.
 - c) 제2조 제2항에 “국제(internationalen)”라는 단어는 삭제된다.
 - d) 제3조 제3항에 “국제”라는 단어는 삭제된다.
 - e) 제200조부터 제217조까지 그리고 제331조는 폐지된다.
12. 1982년 3월 25일 제정된 사회주의 경제계약체제에 관한 법(GB1. 제 14호 293쪽)과 본 법 시행령은 폐지된다.
13. 동독 토지 및 토지권리의 국가문서에 관한 명령(GB1. I. 제43호 697쪽)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제8조 제1항 3절은 폐지된다.
14. 1977년 12월 15일 제정된 토지거래에 관한 명령 -토지거래령-(GB1. I 1978 제5호 73쪽)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a) 제2조 제1항에서 c와 h는 폐지된다.
 - b) 제3조 제5항은 폐지된다.
15. 1990년 3월 7일 제정된 민간기업의 설립과 활동 및 기업자본참여 (Unternehmensbeteiligung)에 관한 법(GB1. I 제17호 141쪽)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a) 제4조 제1항 3절을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사유화 또는 사용 목적에 한해 출연될 수 있다.

b) 제5조 제1항 1절과 2절은 아래와 같이 작성된다.

민간기업의 설립 및 영업확장을 위하여 국영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자본, 주식 또는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또는 기타의 기계설비를 판매할 수 있다. 국유지는 사유화 또는 사용목적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

c) 제10조는 폐지된다.

16. 1981년 2월 26일 제정된 토지사용수수료에 관한 명령(BG1. I 제10호 116쪽)은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 취득, 처분 및 사용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17. 1985년 7월 11일 제정된 계산처리(Rechnungsführung) 및 통계에 관한 명령(GB1. I 제23호 261쪽)과 본 명령으로부터 파생되어 제정된 모든 명령들은 폐지된다.

18. 1976년 5월 27일 제정된 선박의 국기계양 및 선박 소유권 및 선박등록에 관한 명령 -선박등록령- (BG1. I 제21호 285쪽)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a) 제11조 제2항의 “그리고 동독의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에 대해”라는 표현은 삭제된다.

b) 제13조 제2항은 폐지된다.

c) 제13조 다음에 이하의 규정을 삽입한다.

“제13조 a

(1) 선박저당권은 선박으로 책임지는 최고액만이 확정되고 그밖의 채무의 액수는 확정이 유보되는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담보 최고액은 반드시 선박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2) 상기 채권액에 이자가 부과될 경우 이자액을 담보 최고가격에 포함시킨다.

(3)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거 이루어질 수 있다. 채권양도 규정에 의해 채권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선박저당권(Hypothek) 양도는 제외된다.”

19. 형법전(Strafgesetzbuch)의 개정 및 보완

1988년 12월 14일 제정되고 1988년 12월 14일 개정된 동독 형법전(GB1. I 제3호 33쪽)은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되어 적용된다.

- a) 전문과 총칙 제1장은 폐지된다.
- b) 제32조, 제34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69조 제3항, 제70조 제2항 3절, 특별부문 제1장 전문, 제90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제213조, 제219조, 제249조는 폐지된다.
- c) 제17조 제1항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이라는 표현과 “사회주의 사회의 이해와 법칙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은 삭제된다.
- d) 제18조 제1항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 및 사회질서에”라는 문구는 삭제된다.
- e) 제35조 제2항 1절의 “피선고인이 속한 집단의 교육적 영향을 갖는 지도자(제32조) 또는 보증인의 신청으로”라는 문구는 삭제된다.
- f) 제110조 제1항의 “사회주의 국가 및 사회질서”라는 표현은 삭제된다.
- g) 새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제33조 제2항 7번째 항, 제96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및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h) 새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까지 본 조약 효력발생 이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제57조, 제165조, 제167조부터 171조까지, 제214조는 적용되나 제166조와 173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제 166 조 자료변조 및 컴퓨터 태업

- (1) 누구든지 불법으로 자료를 삭제, 은폐, 사용불능으로 만들거나 또는 변조하는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금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 형에 처한다.
- (2) 누구든지 외부사업장(Fremdbetrieb), 외부기업 또는 외부기관

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자료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교란할 경우 처벌 받는다.

1. 상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2. 정보처리시설이나 자료보관장치를 파괴, 손상, 사용불능으로 만들거나, 폐기 또는 변조하는 행위
- (3) 未遂犯도 處罰한다.
- (4) 제1항, 제1항과 관련된 제3항에 명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기소된다.

제 173 조 폭리행위

- (1) 누구든지 상대방이 처한 곤경상태, 상대방의 무경험, 판단능력의 부족 또는 상대방이 가진 의도의 약점을 이용

1. 거주 또는 거주와 수반된 행위를 위한 장소임대
2. 대출보장
3. 기타 급부 또는
4. 사전 명시한 급부행위를 알선 등에 대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자산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을 약속하거나 막대한 규모의 급부 또는 급부알선을 보장하는 경우,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 또는 3년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다수가 행위 주체자, 알선자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에 동참(mitwirken)한 결과 얻은 자산상의 이익이 제공한 급부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 타인의 부득이한 사정 또는 기타의 약점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은 모든 자에게 상기 1문에 명시된 처벌규정을 적용한다.

- (2)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최고 8년까지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심한 경우에 해당되는 행위로는 일반적으로

1. 타인을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2. 그러한 행위를 기업형태로 행하거나
3. 어음을 이용, 사행성의 자산이익을 약속하는 경우이다.”

20. 1977년 4월 7일 제정된 출소자 사회재적응 관련 법(GB1. I 제10호 98쪽)은 신규 규정의 발효시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21. 소송 관련 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된다.

a)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recht)

법원의 독립성과 권력분립 강화. 즉 소송에 대한 지시, 감독, 영향 그리고 법원과 지역주민 대표와의 협조 및 지역주민대표에 대한 판사의 보고의무 배제

b) 민사소송법

aa) 판결절차

사적자치(Privatautonomie) 저해규정 제거; 재산권분쟁에 있어 당사자주의(Parteimaxime) 인정; 소송절차의 사회교육적 목표 제거

bb) 집행절차

시장경제질서의 장애요소 제거; 국가영향력 축소; 기업을 통한 법원외적인 영향력 제거 및 기업활동 외의 과제부담 제거; 채무자의 경제적 및 인간적 존엄성을 위협하는 근로소득의 압류행위 금지

c) 사회적(gesellschaftliche)법원

노동법상의 분쟁 관할권 폐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기구에 의한 중재소 설립

d) 등기소, 등기부

등기업무가 정규법원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 등기소의 결정과 등기부에 관련된 사안의 법원조사

e) 검사

일반적인 적법성에 대한 감독 폐지; 형사소송, 가족법상 업무, 세대상의 업무 및 금치산 관련 업무에 있어 이의 영향권 제한

f) 형사소송절차

이해지향적 검사와 변호사 활동 배제; 피의자 권리개선, 피의자의 자체 부담을 배제시키는 기본원칙의 확립

g) 부담금 및 사회 행정법 관련 법원 보호

기업과 기업활동의 제한과 부담, 특히 조세 및 부담금 징수 또는 기업에 대한 보장사항 취소 등과 관련된 모든 행정결정 및 사회보장법상, 특히 사회보험법, 고용촉진법 및 실업보험법 관련 모든 행정결정에 반하여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포함한 최소한의 권리보장

h) 법률상담

변호사 직업의 자유 선택, 변호사업 허가과 취소에 관한 법원 심사; 모든 법률문제에 관한 변호사의 무제한적 상담 및 변론권; 국제관계 거래를 우선적으로 서독지역변호사 권한의 기본원칙을 동독지역 변호사에 부여, 변리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규정 적용, 공증사무소의 독립성과 중립성보장

Ⅲ. 사회통합

1. 1990년 3월 6일 제정된 동독 노동조합 권리에 관한 법(GB1. I 제15호 110쪽)은 폐지된다.
2. 1990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청 및 기업의 임무,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명령(GB1. I 제181호 161쪽)은 폐지된다.
3. 1990년 2월 8일 제정된 직업알선기간 동안 주민에 지급하는 국가지원과 기업의 보상(Ausgleichzahlung)에 관한 명령(GB1. I 제7호 41쪽)은 폐지된다.
4. 1982년 3월 12일 제정된 분쟁위원회(Konfliktkommission)의 활동에 관한 동독 국가평의회 의결 -분쟁위원회규칙-(GB1. I 제13호 274쪽)이 노동법상의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폐지된다.
5. 1978년 2월 21일 제정된 동독 사회보험 항소위원회(Beschwerdekommission)의 선거, 임무 그리고 업무처리에 관한 동독국무회의 의결과 독일자유노동조합의 지침(GB1. I 제8호 109쪽)은 폐지된다.
6. 1979년 5월 4일 제정된 동독의 국가사회보험을 위한 항소위원회 선거, 임무 그리고 업무처리에 관한 명령 -항소위원회규칙(Beschwer-

dekommissionsordnung)-(GB1. I 제14호 106쪽)은 폐지된다.

이하 열거하는 법규정은 본 조약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다.

7. 1977년 6월 16일 제정된 동독 노동법(GB1. I 제18호 185쪽)
8. 1979년 11월 23일 제정되고(GB1. I 제43호 401쪽) 1990년 1월 25일 5번째 연금령을 통해 최종 개정된 연금 지급보장과 계산과 관련된 명령(GB1. I 제5호 24쪽)
9. 1989년 6월 8일 제정되고 1977년 11월 17일 4번째 FZR-규정에 의거 최종 개정(GB1. I 제19호 232쪽)된 임의추가연금보험령(GB1. I 제35호 395쪽)
10. 1977년 11월 17일 제정된 단순노동자 및 사무직 종사자의 강제사회보험(Sozialpflichtversicherung)에 관한 명령(GB1. I Nr. 35 S. 373)
11. 1977년 12월 9일 제정(GB1. I 제1호 1쪽)되고 1985년 1월 7일 두번째로 작성된 동독의 국가사회보험에 관한 명령(GB1. I 제2호 10쪽)
12. 1977년 12월 9일 제정되고(연방법지 특별호 제942호) 1985년 1월 7일 두번째 작성된(GB1. I 제2호 9쪽) 개업 중인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자유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명령
13. 1979년 11월 23일 제정되고(GB1. I 제43호 422쪽) 1990년 3월 8일 공적부조에 관한 제 4차 명령(GB1. I Nr. 18 S. 165)으로 최종 개정되어 향후 본 조약 24조 사회부조체제로의 전환 예정된 사회부조 급여 관련 명령 -사회부조령(Sozialfürsorgeverordnung)

부속문서 IV 동독이 신규 제정해야 할 법률

동독은 화폐, 경제, 사회연합의 실행을 위하여 본 조약 효력발생 이전까지 혹은 본 부속문서에 명시한 별도 시점까지 이하 본 부속문서에 준한 법률을 신규 제정한다.

I. 경제통합 관련

1. 동독지역에 거주지나 본점 또는 영업점을 가지지 않은 자의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유 직업활동에 관한 법
 - (1) 동독지역에 거주지, 본점, 또는 영업점을 갖지 않은 자연인, 법인 및 개인회사의 영업점 자유설치 원칙을 적용한다. 이들에 대한 영업 활동이나 자유직업 활동의 금지는 당해지역이 인정하는 조건에 상응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2) 영업활동이나 자유직업 활동에 있어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동독 규정은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
 - (3) 동독지역에서 은행업 및 보험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이에 상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금융업법과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을 적용한다.
2. 외환법 및 외환법에 의거 제정된 시행규정의 폐지와 동시에 동독은 서독정부의 동의를 얻어 대외무역상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이전거래의 자유화에 관한 법과 이에 상응하는 법규정을 발효시키고 본 규정들을 서독의 대외경제법에 일치시킨다.
3. 가격형성과 가격감시에 관한 법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요구되는 가격형성 및 가격감시에 관한 법의 제정: 국민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경제정책목표 달성에 불가결한 경우 외에는 자유가격형성 원칙 고수;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가격결정원칙의 예고 및 가격결정에 대한 규칙; 책정 가격 감시 및 자유가격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규칙
4. 동독의 통신국과 본 법 제17조 및 18조에 의한 통신법틀총괄법(Melderechtsrahmengesetzes:MRRG) 유효범위내의 통신관청 사이의 정보자료 중계에 관한 세칙, 통신관청과 여러 주 사이의 정기 정보중계에 관한 명령(1983년 7월 18일 제정 연방 자료중계 개시령 1. BMeld üV BGB1 I 943쪽)
5. 동독은 서독의 세무상담법과 회계감사법에 상응한 법규정을 늦어도

1991년 11월 1일부터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정한다. 이로써 화폐연합의 창설과 더불어 서독법에 의해 세무상담업, 회계사, 공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개인, 회사 및 단체는 동일내용의 영업활동을 동독지역에서도 행할 수 있다.

II. 사회통합 관련

동독은 서독법에 일치시키기 위해 다음에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1. 고용촉진법
2. 지체부자유인의 노동, 직업 및 사회 적응을 보장하기 위한 법(지체부자유인법)
3. 질병시 임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
4.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에 관한 법
5. 서독의 순연금수준에 기초한 기본연금 균등화에 관한 법과 기타 연금법규
6. 노동법과 관련된 중재소의 설치와 절차에 관한 법
7. 사회부조 청구에 관한 법(사회부조법:Sozialhilfegesetz)

III. 국가예산 및 재정

1. 국가예산법, 재정감독

- a) 동독은 서독연방예산령의 규정을 담고 있는 서독재무성 장관의 동의로 제정되는 예산령을 발효시킨다. 이와 동시에 서독의 예산기본원칙법상의 균형예산원칙(Haushaltausgleichsgebot), 복수예산금지(단일예산:Einheit des Haushalt) 및 실제액-결산(Ist-Abschluß)의 의무 규정을 도입한다.
- b) 동독은 행정기관의 재정감독을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독 감사원(Rechnungshof) 업무에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감사원 설립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

동독은 서독의 법과 명령에 상응하는 맥주, 증류주, 커피, 차, 조명용원료(Leuchtmittel), 석유, 설탕, 소금, 샴페인 및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법을 제정한다. 특별소비세법은 농업용 기체유류 사용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법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서독정부 동의를 얻어 서독법과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서독법이 개정될 경우, 상기 제1문 및 제3문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증류주 독점법

동독은 서독의 증류주독점에 관한 법과 명령에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나 실제 법제정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서독정부 동의를 얻어 서독법과는 다르게 제정할 수 있다. 서독법이 개정될 경우, 상기 제1문과 제2문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독의 증류주독점상의 정기 증류권은 서독정부의 동의하에 부여된다. 동독의 독점관리 행정기관은 증류주에 대한 연방독점 행정기관의 시장 및 가격정책을 따른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서독 독점관리 행정기관의 동의를 요한다.

4. 소유 및 거래세법

동독은 상기항의 제4문에 의거 서독의 법과 명령에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나 실제 법제정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서독정부 동의를 얻어 서독법과는 다르게 개정할 수 있다. 서독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제1문 및 제2문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할 수 있다. 이에 준하는 법은

판매세법

보험세법과 화재보호세금법

어음세법

재산세법

조세소송절차법 등이다. 동독의 조세처벌법 및 형사소송절차법상의 특별규칙은 서독법에 전반적으로 일치시켜 제정한다.

아래 제5번과 관련 1991년 1월 1일부로 다음의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소득세법 및 근로소득세법

법인세법

영업세법

재산세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토지세법

감정세법

토지취득세법

자동차세법

법제정에는 동독 농기업의 특별구조가 동독 농기업의 기회균등과 관련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5. 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규정

동독은 법으로 화폐연합 창설과 함께,

- a) 현재 서독에서 유효한 세법상 이익산정(Gewinnermittlung)에 관한 규칙이 효력을 발생한다.
- b) 임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1990년 이후 서독지역 조세등급 I에 의거한 월 임금 및 일일 임금소득세표에 의거 산정된다; 여기에는 자녀 1인당 연간 1,512서독마르크를 공제한다.

기타 감면 또는 근로소득세표에서 산정되는 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소득면세분은 1990년 5월 1일에 임금협상에서 합의된 한도내에서 인정한다.

국영기업연합소, 기업 및 설비들의 전환을 통해 설립된 기업들은 서독기업들의 조세부담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법인세, 영업세 및 재산세를 1990년 3월 6일 동독의 조세개정법에 의거 제정된 조세법에 의해 1990년 12월 31일까지 상기 a항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6. 관세법

동독은 서독의 관세규정에 상응하는 관세법 및 그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한다. 기타 유럽공동체 관세법상의 규정 및 공동관세법(Gemeinsame Zolltarif)은 점진적으로 도입 시행한다. 관세법 단일화는 서독의 동의를 얻어 추진한다.

7. 상용차의 도로사용료 징수규정

동독은 고속도로 및 원거리도로 사용료 징수와 관련, 서독법 규정에 상응하는 법률을 1991년 1월 1일부로 제정 발효시킨다. 제3국과 체결한 국제법상의 조약은 저촉되지 아니한다.

조약 당사국 지역에서의 사용료 납부시, 상대 조약당사국에서의 사용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IV. 자료보안

동독은 서독에 상응하는 자료보안 규칙을 도입한다. 본 규칙은 가능한 199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 이전까지는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제공은 본 부속문서 VII의 기본원칙들에 의거 처리된다.

부속문서 V 서독이 개정해야 할 법률

서독은 화폐, 경제, 사회연합의 창설을 위해 조약 발효전 일련의 법규정,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I.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7620-1에 의해 제정되고, 1986년 4월 21일 법 제32조(민법. I, 560쪽)로 최종 개정되어 공포된 연방은행법

연방은행법은 다음의 기준으로 개정한다.

1. a) 서독의 연방은행은 베를린에 연방은행 이사회의 관할을 받는 임시 행정사무소와 그 아래 15개의 지점을 동독지역 전체에 설치한다. 이들 행정사무소와 지점들은 동독지역 금융기관 및 동독정부와 거래를 관장하고 자체 공적업무를 수행한다. 임시행정사무소는 서독 연방은행 이사회 구성원에 의해 운영된다. 임시행정사무소에는 동독정부가 지명하는 10인이내의 자문기구가 설치된다.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

는 3년이다. 구성원의 절반은 각 금융산업분야에서, 나머지 절반은 산업, 상업, 농업 및 임금노동자와 사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다.

- b) 자문기구는 임시행정사무소 책임자와 함께 화폐 및 신용정책, 은행 업무 및 이전거래에 대한 상담에 응한다.
2. 제4절에 명시한 화폐정책적 권한과 연방은행법의 제5절에 명시한 영업 활동 범위와 관련 이하의 조정규정이 적용된다.
 - a) 연방은행법(BBankG) 제17조 유동자금의 예치의무는 동독정부 및 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
 - b) 동독에서 연방은행법(BBankG) 제19조와 제21조의 재할인정책과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연방은행은 연방은행법(BBankG) 제19조와 제21조에 규정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요구되는 요건에 상관없이 동독지역의 금융기관들과 연방은행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
 - c) 연방은행은 동독정부에 연방은행법(BBankG) 제20조 제1항 1호에 의거 현금으로 8억마르크까지 대부할 수 있다.
 - d) 연방은행은 동독정부 및 그 공공 행정기관과 연방은행법(BBankG) 제19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명시한 업무활동을 연방은행법(BBankG) 제20조에 의거 추진할 수 있다.
 - e) 동독정부와 그 지방자치단체, 동독철도와 동독체신은 연방은행법(BBankG)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공채, 국고증권 및 국고어음 등을 일차적으로 연방은행을 통하여, 다른 경우에는 연방은행과 보조를 같이 하여 발행할 수 있다.
 - f) 연방은행은 연방은행법(BBankG)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부속문서 I 제8조 제4항 재정기금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연방은행법(BBankG) 제24조의 제1항에 의한 대출을 행할 수 있다.
 3. 연방은행은 동독정부와 화폐정책적 중요사안과 관련, 긴밀하게 협조한다. 동독의 관할 장관들은 화폐 및 금융정책 문제에 관한 중앙은행 위원회의 회의에 초대된다. 동독정부는 연방은행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제공한다.

4. 연방은행에 의해 파견되지 않은 근로자와는 연방은행과 서독 및 동독법 또는 임금협약상의 규정과는 별도로 동독지역 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임시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방인사대리법은 본 부속문서 제12조에 의거 설치된 임시사무소 및 그 지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II. 특별신용기관에 관한 규정

1.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7628-1에 의해 공포된 법률로 1988년 6월 8일 법 제1조(민법. I, 710쪽)에 의거 최종개정된 저당은행법 본 법과 이에 준해 제정된 법령은 아래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 a) 동독정부의 공화국예산은 서독연방예산과 같다.
 - b) 부동산 저당은행은 동독지역에서 본 조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독지역의 부동산 저당은행 업무와 관련,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 c) 저당은행법 제35조에 의거 은행의 파산시 우선변제권은 청산명령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4135-1에 의해 공포된 법률로 1986년 4월 24일 법 제23조(민법. I, 560쪽)에 의해 최종 개정된 공공법상 신용업무기관의 저당증권(Pfanbriefe)법과 채무증서(Schuldverschreibung)에 관한 법

본 법과 이에 준해 제정된 법령은 아래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 a) 동독정부의 예산은 서독연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 b) 공공법상의 신용기관은 동독지역에서 본 조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독지역의 신용기관의 업무와 관련,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 c) 신용기관법 제6조에 의거 신용기관의 파산시 우선변제권은 청산명령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1983년 3월 29일 법 제2조 제22항(민법. I, 377쪽)에 의거 최종 개

정된 1972년 11월 16일(민법. I, 2097쪽)의 주택저축은행(Bausparkasse)에 관한 법

본 법과 이에 준해 제정된 법령은 아래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 a) 동독정부의 예산은 서독연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 b) 주택저축은행은 독지역에서 본 조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독지역의 건설저축기관의 업무와 관련,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Ⅲ. 1985년 7월 11일(민법. I, 1472쪽) 제정되고 1989년 12월 22일 법 제14조(민법. I, 2408쪽)에 의해 최종 개정된 금융업에 관한 법

본 법과 이에 준해 제정된 법령은 아래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1. a) 동독정부 재정에 대한 대출은 서독연방정부에 대한 대출 규정에 상응하여 이루어진다.
- b) 동독정부 예산에 의한 지급보증은 서독연방정부의 지급보증 규정에 상응하여 이루어진다.
- c) 서독 연방채신청의 체신 계좌이체거래(Postgiroverkehr)와 체신저금거래(Postsparverkehr)에 상응하는 동독체신의 업무활동은 서독 연방채신청의 업무규정에 상응하여 이루어진다.
2. 동독의 저축예금계좌 또는 보통예금계좌의 저축예금에 대해서는 그 예금이 1990년 7월 1일 이전 입금된 경우에는 금융업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지점에 관한 제53조는 동독지역에 소재하는 서독신용기관의 지점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3. 동독소재 신용기관이 본 조약의 효력발생 당시 제1조 제1항에 명시한 규모의 영업을 허가한 경우, 제32조에 따른 인가는 이미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61항도 이에 준한다.
4. 연방감독청(Bundesaufsichtsamt)은 서독지역의 법에 상응하는 동독지역의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그 시행에 공백을 보일 경우, 본 조약에 의거 동독소재 신용기관의 의무를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

5. 연방행정법원은 일심과 최종심에서, 제소자가 소재지나 거주지를 동독에 갖는 경우, 연방감독청의 결정 또는 연방감독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항소를 본 법 또는 여타 법에 의거 심의한다.
6. 금융업법 제28조 제2항, 제46조 제2항 그리고 제46조 a에 명시한 업무가 동독 법원으로 위임되지 전까지는 샤로텐부르크(Charlottenburg)법원이 이를 인수한다. 금융업법 제46조 b는 동독소재 신용기관에 적용하며, 파산절차는 청산(Gesamtvollstreckung)에 관한 명령으로 대처하며 청산은 연방신용감독청의 신청에 의해서만 시행된다.

IV. 1970년 1월 14일에 공포된(BGBI. I, 127쪽) 법률로 1990년 2월 22일 법 제1조(민법I, 266쪽)에 의거하여 최종개정된 자본투자회사(Kapitalanlagegesellschaften: KAGG)에 관한 법

본 법과 이에 준해 제정된 법령은 아래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1. 동독정부의 예산은 서독연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2. 제13조 제3항과 제4항은 청산절차 명령에 따라 동독지역 소재 자본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추적용한다.
3. 토지특별자산에 관한 제4절의 규정과 관련하여 동독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V. 1983년 10월 13일 공포된(민법I, 1261쪽) 법률로 1986년 12월 19일 법 제6조(민법I, 2595쪽)에 의해 최종 개정된 보험감독법

본 법과 이에 준해 제정된 법령은 아래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1. 본 법과 그에 의거 제정된 법령에서 내국(Inland)이라 함은 본 법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다.
2. a) 동독에서 보험감독업무는 연방보험감독청의 임무이다. 동독에서 보험업무 개시허가와 동독에 소재지나 지점을 갖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감독업무에 관한 허가는 부속문서 2의 제2절 제8호에 준해 부

여한다.

- b) 연방보험감독청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Anfechtungsklagen) 또는 연방보험감독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제소사항은 연방행정법원이 일심과 최종심에서 판결한다.
- 3. a) 피보험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동독지역에서의 보험자들의 의무수행을 위하여 서독의 소관부서는 보험약관상의 일반 보험조건을 법규정의 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기존 보험조건상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 b) 보험감독관청은 동독에서 발생될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체결시 서독 법에 의해 보험상 합의하는 것을 허용한다.
- 4. 자동차 책임보험상의 보험료율은 보험감독청에 의해 가격정책을 관장하는 동독장관과 보조를 같이하여 다음에 기술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될 수 있다.
 - a) 개별적인 보험회사 및 모든 다른 보험회사의 손비상황을 고려 그 보험료율로써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간에 적절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경우
 - b) 보험료율로써 효과적인 보험보장을 바라는 피해자의 보상요구와 피보험자의 보호희망 및 적절한 보험료납입으로 보험가입 의무자의 보험이해가 보장되는 경우
- 5. 동서독간 통화연합이 형성되는 시점에 이미 영업권을 가진 동독소재 보험회사는 별도의 보험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통상적 보험업무 감독에 대한 사항은 본 보험감독법이 정하는 규칙을 적용한다. 본 보험감독법의 규칙에 상응하는 영업행위의 조정을 위해 보험감독청은 경과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 6. 동독지역에 행한 보험회사의 재산투자에 대해서는 동서독을 막론하고 동등하게 취급된다.

VI. 사회보험부문의 후속규칙

1. 피보험자의 移送(Entsendung)규정은 이와 유사한 사안일 경우, 확대·적용할 수 있다.
2. 실업보험 및 고용촉진과 관련, 동독에서 수행한 근로시간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는 고용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노동시간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와 동일하다.
이 기간에 근거한 임금보조급여는 수혜권자가 동독지역에서 취득한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3. 의료보험 급여정지에 대한 서독규정은 동독 체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4. 서독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가입자로서 동독에서 질병이나 임신 및 산후기간 중 이에 해당되는 물적급여를 받을 경우, 서독의 소속 보험회사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의료보험법과 관련, 특별한 경우에 한해 동독 사회보장보험 가입기간이 서독 의료보험 가입기간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
6. 동독에서 보험가입기간은 서독에서의 연금 수혜권과 연금수혜 인정요건의 충족 및 연금액수 산정에 반영된다.
7. 異邦年金法(Fremdrentengesetz)상의 급여는 향후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의 이주자의 경우 배제되도록 한다.
8. 동독지역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9. 동독의 연금 수혜자로서 서독지역에 통상 거주할 경우, 이들에게는 연금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10. 동독으로부터의 이주자에 대한 질병, 임신 및 출산급여는 기본적으로 서독에서 일자리를 사직하고 법적으로 의무 의료보험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종료한 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대우한다.

VII. 연방법률공보 제3편, 분류번호 4101-1에 의거 공포되고 1989년 10월 23일 법(민법1. I, 1910쪽)에 의해 최종 개정된 상법전 도입에 관한 법

본 법은 아래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상법 제92조 c 제1항은 1990년 1월 1일 이후 동독지역과 유럽공동체지역에서 동일하게 그 효력을 발생한다.

VIII. 동독 변호사 및 변리사의 서독지역에서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정될 규칙

1. 동독 변호사는 국제거래와 관련, 서독 연방변호사령(Bundesrechtsanwaltsordnung)에 의거 서독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법정대리권에 대한 제한사항은 이의 예외로 취급한다. 연방변호사령 제52조 제2항은 상기 제1문에 명시한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상기 제1호의 제1문에 명시한 변호사는 국제거래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있어 변호사협회에 소속되거나 거주지와 사무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한, 서독지역에서 인정하는 변호사와 동일한 지위, 특히 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들은 국제거래와 관련된 연방변호사령으로 허가된 변호사의 직업규칙에 유의하여 활동한다. 직무에 대한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독 소관부서가 별도 직업법상 징계권을 갖는다. 이와 같은 부서는 직무위반 혐의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3. 동독지역에서 인가한 변리사는 국제거래와 관련, 변리사령에 의해 서독지역에서 변리사업무 활동을 행할 수 있다. 상기 제2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즉
 - 고발되지 않은 의도된 범죄행위에 대한 무처벌(제139조의 3항 2문)
 - 사적 비밀의 침해(제203조 제1항 3번,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4조, 제205조)

- 수수료 징수(제352조) 및 정당배신(제356조) 등에
형사처벌법상의 조문적용을 위하여 상기 제1번의 제1문 및 제3번에
명시한 자들이 변호사, 법률대리인, 변리사 등과 동등한 위치를 점하
고 있다.
- 5. 상기 제1번부터 4번까지 명시한 사항은 동독이 서독의 변호사 및 변리
사에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서독 법무부
장관은 연방법률공보에 그 효력발생일을 공고한다.

부속문서 VI 동독이 향후 제정해야 할 규정

화폐·경제·사회통합과정에 있어 동독은 다음의 규정들의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

I. 환경법 관련

동독은 환경보존지역에 서독법에 상응하는 규정들이 동독지역에 조만간 제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1. 연방 공해물질배출 방지법 및 시행규칙
2. 오물법 및 시행규칙
3. 有鉛석유법 및 시행규칙
4. 화학물질법 및 시행규칙
5. 수자원관리법 및 시행규칙

II. 경제 및 사회통합 관련

1. 화물운송법
2. 여객운송법
3. 지불불능에 관한 법
4. 직업교육과 관련, 서독의 기본제도와 직업구조의 도입 (직업교육법: 제

1편; 제3편 제2장, 제4장, 제6장, 제7장, 수공업령: 제2편; 제2장, 제4장, 제6장, 제7장, 제3편; 본 법에 의거한 직업교육 및 기능인시험규칙)

5. 1988년 12월 20일 제정된 임원대표자 위원회(Sprecherausschluss der leitenden Angestellten)에 관한 법(민법. I, 2312, 2316쪽)

부속문서 VII 조약 시행을 위한 개인신상정보 전달에 관한 기본원칙

본 조약 시행을 위한 개인신상정보의 전달과 관련, 조약체결 쌍방은 본 조약 제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둔다.

1. 개인신상정보를 수취하는 자는 그 정보를 단지 제공기관의 목적과 그 기관이 정하는 조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목적에의 사용은 정보를 제공하는 조약당사자의 동의와 정보를 취득하는 당사자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보의 다른 목적 사용에 대한 허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할 수 있다.
개인신상정보는 단지 관찰관청에만 제공되어 진다. 여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2. 개인의 신상정보의 전달이 국내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거나 당해자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상에 관한 정보전달은 중지된다. 개인신상의 정보전달은 특히 전달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칙에 어긋나거나 정보를 사용할 경우, 당해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을 경우 중지된다.
3. 정보 수령자는 정보 전달자에게 전달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정보 사용으로 얻은 결과에 대해 통지한다.
4. 정보제공자는 제공될 정보의 정확성에 주의할 의무가 있다. 만약 부정확하거나 또는 폐지되어야 할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즉시 정보 수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 수령자는 정보의 정확성을

- 확인하거나 폐지할 의무를 진다.
5. 자신의 인적 정보에 대한 내용과 정보의 사용목적에 대해 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안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보사용목적이나 보호를 요하는 제3자의 권익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6. 개인신상정보의 제공 및 접수는 문서로 한다.
 7. 개인신상정보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적정보의 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1981년 1월 28일 유럽평의회(Europarat)에 합의된 인권보호 기본원칙을 준수한다.

부속문서 VIII 중재법원에 대한 일반규정

제 1 조

공동통화지역내의 중재법원 소재지는 본 조약의 제7조 제3항에 의거 중재법원의 법관 임명 후 1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제 2 조

- (1) 본 조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의견 불일치가 조약 쌍방에 의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조약 당사자 일방은 1개월내 법원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중재는 특히 법규정의 도입여부가 본 조약상의 규정에 위배되는 지에 대해 쌍방이 의견불일치를 보일 경우 요청된다. 법원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은 조약 당사자의 일방이 타 조약 당사자에게 상호 의견불일치에 대한 조정이 실패했다고 판단, 이를 통보하는 즉시 시작된다.
- (2) 의견불일치가 어느 특정 법률의 시행, 개정 또는 보충이 본 조약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일 때, 법원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은 그와 같은 법률 공포 후 2개월 이내이다.

제 3 조

중재법원장은 분쟁제소 후 2주 이내에 중재법원을 소집한다.

제 4 조

- (1)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약 당사자중 어느 한쪽의 정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법원장은 상기 제2항에 명시한 기한이 개시된 지 5일 이내 중재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중재법원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법원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3일 이내 중재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한 신청은 제2조의 중재법원의 소집과 관련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 5 조

- (1) 중재법원은 중재법원장과 모든 중재법원 정규 구성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하였을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본다.
- (2) 중재법원의 결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

제 6 조

- (1) 중재법원은 조약당사자들에게 모든 증빙서류 및 증거물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2) 중재법원은 어느 조약당사자 일방이 신청하거나 자체 권한으로, 진술 또는 해명이 분쟁사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증인, 전문가로 내세우거나 여타 성격으로 그 의견을 청문할 수 있다.

제 7 조

- (1) 중재판결은 문서로 하며 중재법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에 서명한다.
- (2) 중재판결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중재법원장은 양쪽 조약당사자에게 공증된 중재판결 사본을 전달한다.

제 9 조

- (1) 중재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조약당사자들은 즉시 그 판결을 이행한다.
- (2) 중재판결의 의미 또는 효과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있을 경우, 중재법원은 조약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판결내용을 해석한다.

제 10 조

중재법원장 및 중재법원의 구성원은 전체 통화지역에서 직무수행상 면책 특권을 갖는다.

제 11 조

중재절차는 무료로 진행된다.

제 12 조

- (1) 중재법원장과 중재법원의 구성원은 조약쌍방 정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수준의 중재심의보상금(Sitzungsentschädigung)을 받는다.
- (2) 조약 쌍방은 각각 자신이 임명한 중재법원 구성원의 심의참가보상금을 부담한다. 중재법원장에 대한 심의참가보상비 및 기타 비용은 조약 쌍방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제 13 조

통상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히 법원중재신청 등을 접수하기 위해 중재법원은 조약 쌍방의 동의를 얻어 본 부속문서 제1조에 명시한 기한내에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사무소의 경상비용은 본 부속문서 제12조 제2항 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 조

본 조약 제1장의 규정 및 전술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중재법원은 중재절차에 관한 명령을 확정시킨다.

부속문서 IX 고용창출 투자사업을 위한 지원수단으로서의 토지, 대지 및 생산재에 대한 민간투자가의 소유권 취득

본 조약 제2조에 의한 토지, 대지 및 생산재에 대한 민간투자가의 소유권보장 -토지, 대지 및 기타 생산수단의 취득, 사용, 처분 포함-을 위해 동독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잠정조치를 취한다.

현재까지 동독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금지는 투자의 큰 장애요소였다. 기업은 토지와 생산수단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산업입지가 필요하다. 동독은 서독이나 해외로부터의 투자와 동독자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투자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동독경제의 발전을 위해 동독경제에 긴급하고도 절실한 충격을 가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독은 자체 법령을 개정하거나 위의 목적에 위배되는 조문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본 조약의 발효 및 법령개정과 동시에 동독은 토지 및 대지의 사적 소유가 실제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는다.

1. 동독정부는 기업의 정착(Gewerbeansiedlung)이 가능하고 기타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 사용목적에 부합하고 사적 소유가 가능한 충분한 수와 규모의 토지를 산업입지가 가능한 지역(Gewerbegebiet)에 제공한다. 그러나 기업의 집단적 정착과 관련하여 사회 환경적인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협조를 보장한다.
2. 동독정부는 특별한 입지 또는 도시지역내에 토지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예를 들면 상업, 제조업 그리고 서서비스업 등)의 토지 취득이 용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토지를 제공한다. 이로써 동독은 도시의 재개발과 발전을 기대한다.
3.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en)로의 전환에 합당한 동독기업의 선정 과정에 있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및 대지와 생산설비는 새로 평가된다. 평가후에는 국가소유 토지 및 대지는 신규설립된 자본기업에 그 소유권이 위임된다. 이럴 경우, 토지이용 가능성 -특히 신용대출 목적이 확대될 수 있으며 민간투자자의 자본참여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4. 토지와 관련, 제대로 기능을 하는 시장 및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일반적인 문구를 담은 내용의 계약을 자유로이 체결하는 범위내에서 먼저 再考(Überprüfen)하고 사후 조정(Anpassung)할 수 있는 과도기간이 지난 후에 쌍방이 합의한 가격을 치르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는 토지처분과 담보대여가능성(Beleihungsfähigkeit), 최소 과도기간, 토지 취득자의 부담계산가능성(Kalkulierbarkeit der Belastung)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정서 성명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연합의 창설을 위한 조약의 조인에서 본 조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1. 조약 쌍방은 본 조약 제2조 제2항 1문에 대해 다음을 명백히 한다: 본 조문에 명시한 통행자유는 서독 또는 동독의 신분증,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할 증명서를 소지한 소수민족의 자연인 -그 가족 포함-의 공동통화 지역으로의 입국을 포함시킨다.
2. 동독은 유럽공동체의 관할사항과 관련을 가지는 경우와 본 조약에서 명백하게 별도 합의한 사항이 아닌 경우와 관련하여, 유럽공동체의 모든 회원국 국민과 기업들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독의 자연인과 기업들과 동등하게 대할 것을 밝힌다. 내독교역에 관해 합의한 의정서는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
3. 조약 쌍방은 본 부속문서 I 제8조 제4항 제1번 제1문의 3개월짜리 프랑크푸르트 은행간 이자율(FIBOR)을 각각의 이자율로 해석한다. 이는 1990년 서독정부의 공채조건(유가증권 인식번호 113-478) 제2조 제3항에 상응하여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이자지급 개시기간이 시작되기 전 두번째 영업일에 책정되고 분기별 예시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4. 부속문서 IV의 제1절 제1번과 관련하여 동독은 다음을 명백히 한다: 동독은 경쟁에 입각한 공공사업의 발주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지침을 공공사업 발주자가 늦어도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가능할 수 있도록 제정한다.

본, 1990년 5월 18일

서독측

동독측

화 폐 통 합

빈 면

I. 독일 연방은행법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BBankG)]

제 정 : 1957. 7. 26(BGB1. I. S. 745)

최종개정 : 1986. 4. 24(BGB1. I. S. 560)

제 1 장 설립, 법인격, 임무

제 1 조 독일연방은행법의 설립

각 州중앙은행과 베를린중앙은행은 合併하여 독일 州연합은행(die Bank deutscher Länder)이 된다. 동 은행은 독일연방은행이 된다.

제 2 조 법인격, 자본금 및 소재지

독일연방은행은 公法上의 연방법인으로 한다. 동 은행의 資本金 2억9천 만 「마르크」는 연방에 귀속된다. 독일연방은행의 주소는 연방정부의 소재지로 한다. 단, 연방정부가 「베를린」에 소재하지 않는 동안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둔다.

제 3 조 임무

독일연방은행은 通貨價値를 安定시키기 위하여 이 법이 독일연방은행에 授權한 통화정책수단을 사용하여 독일경제에 공급된 通貨量과 信用을 규제하며 각 은행의 국내 또는 외국과의 지급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제 4 조 자본참여

독일연방은행은 國際決濟銀行에 자본참가를 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그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제통화정책, 국가간 지급

및 신용거래에 기여하는 기타 기관에 자본참여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5조 기관

독일연방은행에 중앙은행위원회(Zentralbankrat : 제6조), 집행위원회(Direktorium : 제7조) 및 州중앙은행이사회(Vorstande : 제8조)를 둔다.

제6조 중앙은행위원회

- (1) 중앙은행위원회는 이 은행의 통화 및 신용정책을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업무집행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정하며 이 법의 규정범위내에서 집행위원회와 각 州중앙은행이사회의 권한을 한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와 州중앙은행이사회에 지시할 수 있다.
- (2) 중앙은행위원회는 연방은행의 총재, 부총재 및 기타 집행위원회의 구성원과 각 州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된다.
- (3) 중앙은행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장을 연방은행의 총재 또는 부총재로 하여 진행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단순다수결에 의하고, 의결에 관한 기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중앙은행위원회의 위원이 상당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석할 것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7조 집행위원회

- (1) 집행위원회는 중앙은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또한 각 州중앙은행이사회의 관할사항을 제외한 연방은행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다음 업무는 동 위원회가 관할한다.
 1. 연방정부 및 연방정부특별회계와의 거래
 2. 연방내 전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본점과의 거래

3. 외국환 및 대외거래

4. 공개시장조작업무

- (2) 위원회는 독일연방은행의 총재, 부총재 및 8인 이내의 기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그 분야에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 (3) 총재, 부총재 및 위원회의 위원은 연방정부의 추천에 의하여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방정부는 그 추천에 있어서 중앙은행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8년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일 수도 있으나, 2년미만이어서는 안된다. 위원의 임면은 연방관보에 공고되어야 한다.
- (4) 위원회의 위원은 공법상의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다. 연방은행에 대한 위원의 법적 지위, 특히 봉급, 퇴직연금 및 유족수당등은 중앙은행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해진다. 이 계약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5) 위원회의 의장은 연방은행의 총재 또는 부총재가 된다. 위원회의 의결은 단순다수결에 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의결에 대한 기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원일치 또는 다른 의결정족수에 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제 8 조 州중앙은행

- (1) 독일연방은행은 각 州에 본점(Hauptverwaltung)을 설치한다. 이들 본점은 각각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바이에른(Bayern), 베를린(Berlin), 브레멘(Bremen), 함부르크(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헤센(Hessen), 니더작센(Niedersachsen),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라인란트 팔츠(Rheinland-Pfalz), 자르란트(Saarland),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big-Holstein)의 州중앙은행이라 명한다.
- (2) 각 州중앙은행이사회는 그 관할지역내의 업무와 내부경영을 수행한다.

특히 다음 업무는 州중앙은행의 업무로 한다.

1. 州정부 및 州공공기관과의 거래
 2. 제 7조 제 1항 제 2호의 집행위원회에 속한 업무를 제외하고 그 관할지역내의 금융기관과의 거래
- (3) 각 州중앙은행이사회는 총재와 부총재로 구성되며, 정관으로 1인 내지 2인의 이사를 더 둘 수 있다. 정관에는 이사회 의결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 (4) 州 중앙은행 총재는 연방참의원의 추천에 의해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방참의원은 그 추천에 있어 해당 州관할관청의 추천 및 중앙은행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州중앙은행의 부총재 및 이사회 다른 구성원은 중앙은행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독일연방은행 총재가 임명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8년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보다 짧을 수도 있으나 2년미만이어서는 안된다. 이사의 임면은 연방관보에 공고되어야 한다.
- (5) 이사회 구성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다. 연방은행에 대한 이사회 구성원의 법적지위, 특히 봉급, 퇴직연금과 유족수당등은 중앙은행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계약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州중앙은행의 자문위원회

- (1) 각 州중앙은행에 자문위원회(Beiräte beider Landeszentralbanken)를 둔다. 동 자문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州중앙은행 총재의 자문에 응하며, 州중앙은행이사회 임무수행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이사회에 자문에 응한다.
- (2) 자문위원회는 금융문제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그 반수이내는 금융계에서, 나머지 구성원은 상업, 공업, 농업 및 봉급소득자 중에서 선출된다.
- (3)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관련 州정부의 추천과 州중앙은행이사회 의 자

문을 거쳐 독일연방은행 총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4)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州중앙은행 총재 또는 그 대리인이 된다. 州정부의 관계장관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10 조 지점

연방은행은 支所(主지점과 副지점)를 둘 수 있다. 主지점에는 2인의 지배인을 두며 지배인은 州중앙은행의 지시를 받는다. 부지점에는 1인의 지배인을 두며 主지점의 지시를 받는다.

제 11 조 대표

- (1) 독일연방은행은 재판상 및 재판외에 있어서 집행위원회가 대표하며 州중앙은행의 관할지역내에 있어서는 州중앙은행이사회가, 主지점의 관할지역내에 있어서는 主지점의 지배인이 각각 대표한다. 제31조 제 2항과 제41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집행위원회 및 각 州중앙은행이사회 구성원중 2인 또는 主지점의 지배인 2인에 의한 의사표시는 독일연방은행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동의사표시는 집행위원회 또는 州중앙은행의 관할지역내에서는 州중앙은행이사회가 선임한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연방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는 연방은행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1인에게 행해지면 법률상 유효하다.
- (3) 연방은행을 대표하는 권한은 연방은행의 공증인에 의한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 (4) 州중앙은행 또는 主지점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연방은행에 대한 소송은 주 중앙은행 또는 主지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 3 장 연방정부와 연방은행

제 12 조 연방은행의 연방정부에 대한 관계

독일연방은행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편견이 없이 연방정부의 일반경제정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연방은행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연방정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제 13 조 협력

- (1) 독일연방은행은 통화정책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연방정부에 조언하며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 (2) 연방정부의 정부위원은 중앙은행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들은 의안을 제의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정부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이 최장 2주간 연기될 수 있다.
- (3) 연방정부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회의시에는 독일연방은행 총재의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4 장 통화정책에 관한 권한

제 14 조 은행권 발행

- (1) 독일연방은행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내에서 은행권을 독점적으로 발행할 권한을 갖는다. 연방은행의 은행권은 「도이체 마르크 (Deutsche Mark)」라 한다. 은행권은 유일 무제한의 통화이다. 10 「마르크」 미만의 은행권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발행할 수 있다. 연방은행은 은행권의 券種 및 見樣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독일연방은행은 은행권을 회수할 수 있다. 회수된 은행권은 회수당시에 정한 교환기간 만료시에 무효가 된다.
- (3) 독일연방은행은 훼손, 분실, 위조 또는 변조된 은행권이나 무효로 된

은행권을 교환해 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은행권의 소유자가 그 절반을 초과하는 훼손권을 제시하였거나 반쪽 또는 그 이하의 훼손권을 제시한 자가 그 나머지 부분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 15 조 할인, 여신, 공개시장정책

연방은행은 통화량과 여신규모를 규제하기 위하여 연방은행과의 거래에 적용될 이자율과 할인률을 정하며 여신 및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운용원칙을 정한다.

제 16 조 최저지급준비정책

- (1) 독일연방은행은 통화량과 여신규모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GIRO계정에 대한 지급준비와 같이 타금융기관에 최저지급준비가 적립된 부채를 제외하고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및 중단기 차입금에 대하여 일정률의 최저지급준비금을 연방은행에 당좌계정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불예금에 대하여는 30%,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20%, 저축예금에 대하여는 10%를 초과하여 지급준비율을 책정할 수 없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대외무역법 <Aussenwirtschaftsgesetz>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는 연방은행은 최고 100%까지 지급준비율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범위내에서 연방은행은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그 준비율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지급준비금의 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채무를 제외할 수 있다. 지준예치를 위한 경우에는 신용조직법(Gesetz über das Kreditwesen) 제53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차변계상잔액도 요구불예금에 의한 채무로 본다.
- (2) 금융기관의 독일연방은행에 대한 월평균 지급준비예치금(실제 지급준비금)은 적어도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비율의 월평균 필요 지급준비액(필요지급준비금)에 달하여야 하며, 독일연방은행은 실제 지급준비금

과 필요 지급준비금의 계산 및 확정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공포한다.

- (3) 독일연방은행은 실제지급준비금이 필요지급준비금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시의 어음대출금리(Lombardsatz)보다 최고 3%가 높은 특별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지준미달이 예견하지 못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거나 금융기관이 청산단계에 있을 때에는 특별이자를 징수할 수 없다. 연방은행은 지준미달액이 상당하거나 지준미달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기관(Bankaufsichtsbehörde)에 통지하여야 한다.
- (4) 중앙회(Zentralkasse)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독일연방은행에 당좌계정을 갖지 않는 신용협동조합(Kreditgenossenschaften)은 그 중앙회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동액을 연방은행 지로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 (5) 이 법에 의하여 보유하는 지급준비금은 다른 법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유동성준비금(Liquiditätsreserven)으로 계산된다.

제 17 조 국고금 예치

연방, 조정기금특별회계(das Sondervermögen Ausgleichsfonds), 유럽 부흥계획특별회계(das ERP-Sondervermögen) 및 주정부는 예산상 특정의 정해진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을 독일연방은행의 지로계정에 예입하여야 한다. 동 자산을 다른 곳에 예입하거나,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방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독일연방은행은 각 州가 국가은행 및 주은행에 갖는 이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18 조 통계의 산출

독일연방은행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 및 통화에 관련된 통계를 요구하고, 수집 처리할 수 있다. 연방통계법 제7조, 제10조와 제11조 제1항, 2항은 이 경우에 적절히 적용된다. 독일연방은행은

통계의 결과를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공표할 수 있다. 이 공표에는 개별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설명받을 권한있는자에 대하여는 통계준칙에 정함이 있는 범위내에서 상세한 개별항목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업 무

제 19 조 금융기관과의 업무

- (1) 독일연방은행은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내에서 금융기관과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다.
1. 3인에 의하여 배서되었거나 타수단으로 보증되고 2인의 배서가 된 지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음, 수표의 매매. 다만, 어음의 경우에는 買受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여야 하고 우량 상업 어음이어야 한다.
 2. 연방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연방정부 특별회계 또는 州정부에 의해 발행되고 매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재정증권의 매매
 3.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하는 다음의 증권을 담보로 한 이자부 대출(담보대출)
 - (a) 액면가액의 9/10 이내에서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어음
 - (b) 액면가액의 9/10 이내에서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재정증권
 - (c) 액면가액의 3/4 이내에서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할인이 가능한 재정증권
 - (d) 시가의 3/4 이내에서 연방정부, 연방정부 특별회계 또는 州정부가 발행자 또는 채무자로 된 확정이자부 채무증서 또는 등록채
 - (e) 시가의 3/4 이내에서 연방은행이 특정한 확정이자부 증권 또는 등록채
 - (f) 액면가액의 3/4 이내에서 화폐조정채권의 상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Tilg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제1조에 의하여 채무원부에 등록된 화폐조정채권

만일 위 (d), (e) 목의 증권에 대하여 거래소 시세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연방은행은 동 증권을 현금화할 경우의 가격을 평가하여 대출의 기초로 될 가격을 결정한다. 만일 채무자가 Lombard 대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방은행은 그 직원 또는 경매의 권한을 갖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담보를 경매할 권리가 있다. 또한 담보물의 거래소 또는 시장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자 또는 상사중개인을 통하여 시가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비용,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할 권리가 있다. 연방은행의 이러한 권리는 타채권자 및 파산채권자의 재산에 우선한다.

4. 무이자 GIRO계정의 수입
 5. 보증예수품(특히 유가증권)의 수입 및 관리. 연방은행은 보호예수 및 관리중인 유가증권에 따른 어떠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6. 추심을 위한 수표, 어음 지급지시증서의 추심대금의 貸記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를 제공받은 후의 추심대금의 지급
 7. 담보제공후의 위임에 따른 기타 금융거래의 수행
 8. 어음 및 수표를 포함한 외화표시지급수단, 청구권 및 유가증권과 금, 은 및 백금의 매매
 9. 외국과의 모든 금융거래
-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업무에 있어서는 할인을 및 Lombard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제 20 조 공공기관과의 업무

- (1) 독일연방은행은 공공기관과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다.
 1. 연방정부, 아래에 열거하는 연방정부 특별회계 및 각 州정부에 대한 당좌계정 대출 또는 재정증권에 의한 대출(현금대출) 형식에 의한

단기대출연방은행이 자기계산으로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확정된 재정증권에 의한 현금대출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 (a) 연방정부에 대하여는 60억「마르크」
- (b) 연방철도청에 대하여는 6억「마르크」
- (c) 연방우체국에 대하여는 4억「마르크」
- (d) 부채평형회계에 대하여는 2억「마르크」
- (e) 「유럽」부흥계획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5천만「마르크」
- (f) 각 州정부에 대하여는 최근의 인구조사에 따라 주민 1인당 40「마르크」. 다만, 베를린州정부, 브레멘 및 함부르크시에 대하여는 주민 1인당 80「마르크」씩으로 계산한다.

2. 삭제

- 3. 연방정부, 연방정부 특별회계, 각 州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과의 제1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 연방은행은 제1호에 열거된 업무수행에 있어 공공기관에 대하여 비용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다.
- (2)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공공기관은 먼저 연방은행을 통하여 공채,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증권발행에 있어 연방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1 조 공개시장조작

독일연방은행은 금융시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공개시장에서 시가로 다음 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어음
- 2. 연방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연방정부 특별회계 또는 州정부에 의하여 발행된 재정증권 및 재정할인증서
- 3. 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할 채무증서 및 등록채권
- 4. 기타 증권거래소에 공식으로 상장된 증권

제 22 조 일반인과의 업무

독일연방은행은 국내외의 자연인 및 법인과 제1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 23 조 수표의 지급보증

독일연방은행은 수표자금이 있는 때에 한하여 연방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수표를 지급보증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보증을 하면 그 수표의 소지인,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2) 수표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 할지라도 지급보증된 수표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3) 지급보증으로 인한 지급의무는 수표발행일로부터 8일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없으면 소멸한다. 지급제시의 증명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 40조를 적용한다.
- (4) 지급보증으로 인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 (5) 지급보증으로 인한 수표상의 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하는 경우 어음소송에 적용되는 관할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한다.

제 24 조 화폐조정채권 담보대출 및 화폐조정채권의 매입

- (1) 독일연방은행은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자의 지급능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건축조합에 화폐조정채권의 상환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조정채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
- (2) 독일연방은행은 화폐조정채권 매입기금이 부족할 경우 화폐조정채권의 상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형태의 화폐조정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제 25 조 기타 업무

독일연방은행은 제19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업무와 그와 관련된 업무 및 내부운영 또는 직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6 장 연말결산, 이익금 처분 및 보고

제 26 조 연말결산

- (1) 독일연방은행의 회계연도는 曆年으로 한다.
- (2) 독일연방은행의 회계는 적법한 부기원칙에 의거하여야 한다. 연말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독일연방은행의 임무를 고려하여 작성하고 석명하여야 한다; 책임관계는 표시할 필요없다. 회계원칙에 관하여는 자본회사에 관한 상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연방은행의 임무를 고려하여 합리적 상인의 판단으로 보아 허용되는 경우와 같이 결과조사와 관련되는 차변항목의 구성은 대내외거래의 통상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집행위원회는 지체없이 연말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 결산은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öf)의 동의를 받아 중앙은행위원회가 선임한 1인 또는 수인의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동 결산은 중앙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회가 공표한다.
- (4)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는 연방감사원이 행하는 회계감사의 기초자료가 된다.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와 이에 대한 연방감사원의 평가서는 연방재무장관에게 제출된다.

제 27 조 이익금의 처분

순이익금은 다음 순으로 처분된다.

1. 순이익금의 20% 또는 2천만「마르크」중 다액을 은행권 발행액의 5%에 달할 때까지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법정준비금은 감

가상각 총당과 기타 손실보전에 사용되며 동 목적을 위하여 다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정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2. 나머지 순이익금의 최고 10%까지 기타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적립금의 총액은 자본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3. 4천만「마르크」(1980회계년도부터는 3천만「마르크」)는 화폐조정채권의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화폐조정채권 매입기금에 동 기금의 청산시까지 적립한다.
4. 잔여이익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 28 조 보고

독일연방은행은 매월 7일, 15일, 23일 및 월말 현재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I. 資産

金

외국은행예치금 및 해외금융시장에의 투자금

外貨, 외국발행의 어음 및 수표

내국어음

어음대출채권(Lombardforderungen)

다음에 대한 현금대출

a) 연방 및 연방특별회계

b) 州

다음의 재정어음채권(Schatzwechsel) 및 무이자 재정증권

a) 연방 및 연방특별회계

b) 州

유가증권

鑄貨

우편예금

화폐조정채권(Ausgleichsforderungen)

기타 자산

II. 負債

- (1) 은행권 발행총액
- (2) 다음의 예금
 1. 금융기관예금
 2. 공공기관예금
 - a) 연방 및 연방특별회계
 - b) 각 州
 - c) 기타 공공기관
 3. 기타 국내예금
 4. 외국인예금
- (3) 해외거래상 발생하는 債務
- (4) 充當金(Rückstellungen)
- (5) 자본금
- (6) 준비금(Rücklagen)
- (7) 기타 부채

제7장 일반 규정

제 29 조 독일연방은행의 특별지위

- (1) 독일연방은행의 중앙은행위원회와 집행위원회는 연방최고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주중앙은행과 본점은 연방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 (2) 독일연방은행과 그 직원은 주택의 건축 및 임차와 관련하여 연방 및 그 직원이 갖는 혜택을 공히 향유한다.
- (3) 상업등기부예의 등기 및 상공회의소예의 소속에 관한 商法の 규정은 독일연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0 조 공증공무원

독일연방은행의 총재는 제11조의 목적을 위하여 數人의 공증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들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 31 조 독일연방은행의 공무원 (Beamte), 직원 (Angestellte), 고용직원 (Arbeiter)의 법적 지위

- (1) 독일연방은행은 공무원, 직원, 고용직원을 고용한다.
- (2) 독일연방은행총재는 이 은행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고위직인 경우에는 중앙은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중하위직의 임명에 관한 인사권은 州중앙은행총재에 위임할 수 있다. 독일연방은행총재는 최고위의 관리이며 재판상, 재판외적으로 연방은행을 대표한다. 연방은행총재는 징계법원(Disziplinargerichte)의 관할에 있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懲戒處分을 행하며, 합법적인 징계재판의 제소기관이 된다(연방징계규칙 제 35조).
- (3) 독일연방은행의 공무원은 연방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는다. 이 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연방공무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연방은행의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의 발효는 연방공무원법을 갈음하여 우선 적용된다.
- (4) 중앙은행위원회는 은행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연방정부의 同意를 얻어 人事內規로써 독일연방은행의 공무원 및 직원의 법적지위에 대해 규율할 수 있다. 인사내규는 다음의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
 1. 연방은행공무원에게는 다음의 연방공무원 관련법규정의 적용이 없는 사항
 - a) 연방공무원법 제21조 제2문, 제24조 제3문, 제26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3호, 제116조 제1항 제3호
 - b) 기본급의 30%까지의 취소가능하고 年金 대상이 아닌 은행수당, 업무집행비용의 補償 및 특별 能力給與 등이 지급되는 한, 현행규

정하의 1927년 12월 16일 公務員報酬法 제15조(제국법원공보 I S. 349);

- c) 研修段階에 있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
- 2. 연방은행공무원 및 직원은 그 배우자의 직업을 연방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
- 3. 연방은행의 직원(Angestellte)은
 - a) 연방공무원법 제 66조 제 1항 제 2호 및 5호가 규정하는 부업을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연방은행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전인가를 얻어야 한다.
 - b) 제 1호 b)에서 규정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
- (5) 제4항 제1호 b)에서 특별능력급여와 업무집행비용의 보상과의 총액은 연방은행공무원과 직원의 총급여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6) 중앙은행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연방은행공무원의 修習 및 경력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본 규정에서는 연수 및 수습기간, 중간관리직으로의 승급 대기기간 그리고 고위직 승진요건에 관하여 연방공무원 관련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제 32 조 비밀유지의무

연방은행에 근무하는 모든 자는 은행의 업무 및 시설 그리고 자기고유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퇴직후에도 업무수행과정에서 知得한 사실을 승인없이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공표하거나 진술하여서는 안된다. 연방은행의 이해와 관련되는 공표인 한 중앙은행위원회의 구성원은 동 위원회로부터, 기타 연방은행 근무직원(Bediensteten)은 연방은행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재판상 증언에 있어 그것이 연방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요청될 때에는 위의 승인은 거절될 수 있다.

제 33 조 공시

독일연방은행은 일반공중에게 특정의 공시사항, 특히 은행권의 회수, 이

자율 및 할인율의 확정, 最低支準率과 통계지표등을 연방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정관

독일연방은행의 정관은 중앙은행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연방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에 관하여도 같다.

제 8 장 처벌 및 위조화폐의 거래중지에 관한 규정

제 35 조 화폐표식의 불법 제조 및 사용

- (1) 다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권한없이 화폐표식(수입증지, 주화, 지폐, 또는 법률로 허용된 화폐에 대체하여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證券) 또는 무이자 無記名債券을 제조한 자. 이 경우 價値의 표시가 도이취 마르크로 표기될 필요는 없다.
 2. 권한없이 제1호에서 열거한 지불수단을 사용한 자
- (2) 미수범도 처벌한다.
- (3)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과실있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80일까지의 日數罰金刑에 처한다.

제 36 조 위조화폐, 권한없이 제조된 화폐표식 및 증권의 거래중지

- (1) 독일연방은행과 모든 금융기관은 위조 또는 변조된 은행권이나 주화(위조화폐), 위조화폐로 의심가는 은행권이나 주화 및 제35조에 열거된 것을 유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 경우 소지인에게는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위조화폐와 제35조에 규정된 형태의 것은 보고서와 함께 경찰에 송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 경우 동 내용을 연방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위조화폐로 의심이 가는 은행권과 주화는 감정을 위하여 독일연방은

행에 제출한다. 연방은행의 감정결과 위조화폐로 판명되면 그 위조화폐를 경찰에 송부하고 유치한 금융기관에 동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7 조 몰수

- (1) 제35조에 열거된 것은 몰수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하여 몰수된 것과 형법 제125조에 의하여 몰수된 위조화폐는 연방은행이 보관한다. 압수물건은 범법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몰수판결이 발효된 때로부터 10년후에, 범법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년후에 파기할 수 있다.

제 9 장 경과 및 종결규정

제 38 조 중앙은행 조직의 재구성

- (1) 이 법의 효력발생과 함께 州중앙은행과 「베를린」중앙은행의 자산과 부채는 독일 각 州은행에 이전된다. 부동산등기부의 정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 州중앙은행과 「베를린」중앙은행은 청산절차없이 해산한다.
- (2) 州중앙은행이 보유한 화폐조정채권에 관한 州정부의 채무는 통화개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57년 1월 1일부터 연방정부에 이양되며 1957년 8월 21일 개정된 예산부채와 보상기금의 연방정부에의 이관에 관한 제1법 제23조 제2항 제2단에 의거 연방정부가 보유한 증권에 대한 「베를린」주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 법 시행후에 州중앙은행의 전환계정이 조정되면 연방정부는 이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연방은행은 제27조 제4호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귀속하는 잔여이익금에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1천5백만「마르크」, 「베를린」주에 5백만「마르크」와 1957년 1월 1일 이후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州중앙은행 및 「베를린」중앙은행에 대한 각 州정부의 지분이 소멸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 州정부의 청구권은 위의 조치로서 결제

된 것으로 본다.

- (3) 연방은행은 1957년 1월 1일 이후 州중앙은행의 화폐조정채권에 대하여 각 州정부가 州중앙은행에 지급한 이자를 제27조 제4호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귀속하는 잔여이익금으로부터 제2항에 규정된 지급에 우선 충당한 후 각 州정부에 상환하여야 한다.
- (4) 제27조와 관련된 제 2조 제 2문의 효력은 195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연방은행의 최초 대차대조표는 1957년 1월 1일자로 작성되고 이 경우 제26조를 적용한다.
- (5) 이 법 시행당시 유효한 독일각 州은행의 은행권은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회수될 때까지 독일연방은행의 은행권으로서 유효하며 미발행은행권은 계속 발행할 수 있다.

제 39 조 연방은행의 기관에 관한 경과규정

- (1) 삭제
- (2) 삭제
- (3) 독일 각 州은행 이사회의 기타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독일연방은행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유임한다.
- (4) 州중앙은행 이사회의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독일연방은행의 본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유임한다.

제 40 조 고용관계의 변경

- (1) 독일각 州은행, 州중앙은행 및 「베를린」중앙은행의 정직원, 평직원 및 고용원은 이 법의 시행과 함께 독일연방은행의 정직원, 평직원 및 고용원이 된다. 상임정직원 또는 수습정직원은 연방공무원법상의 상임공무원 또는 수습공무원의 지위를 갖는다. 임명의 취소가 가능한 정직원은 연방공무원법상 임명의 취소가 가능한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다. 다만 이들이 연방공무원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들은 수습정직원으로 임명된다. 이미 수령한 봉급과 이

법 시행후의 봉급과의 차액은 봉급인상에 의하여 보전될 때까지 연금에는 계산되지 않는 조정수당에 의하여 보상된다. 이 경우 가족상황의 변화나 이동에 따른 봉급인상분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봉급인상분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 (2)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 제2장 제3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향후 5년동안 퇴직하는 연방은행 정직원의 연금은 그의 봉급수준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부양가족 수당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이 법의 시행과 함께 독일 각 州은행, 州중앙은행 및 「베를린」중앙은행의 퇴직 정직원, 미망인, 유자녀, 기타 다른 연금수혜자는 독일연방은행의 연금수혜자가 된다. 이 법은 연방공무원법의 시행을 대체하지만 그러나 연방공무원법 제180조는 적절히 적용된다. 연방공무원법 제180조 제4항은 독일각 州은행, 州중앙은행 및 「베를린」중앙은행의 정직원이었던 자와 그들의 부양가족에게 적용된다.
- (4) 제3항은 독일제국은행의 정직원으로서 1945년 5월 8일 이후 연방내의 독일제국은행 근무지에서 종전의 직위로서 복귀한 후 독일 각 州은행, 州중앙은행 또는 「베를린」중앙은행에 임용되지 못하고 퇴직한 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도 준용된다.
- (5) 국가사회주의자(나찌)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방공무원배상법과 국가사회주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방해외거주공무원배상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者의 청구권은 독일연방은행에 대한 청구권이 된다.
 1. 독일제국은행의 관할지역내에서의 불법행위의 상대방
 2. 독일 각 州은행, 州중앙은행 또는 「베를린」중앙은행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가 국가사회주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배상법 제2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사회주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배상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타 고용주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이 법 제41조는 기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자에게 적용된다.

(7) 삭제

제 41 조 기본법 제 131조가 적용되는 者の 법적 지위

- (1) 독일연방은행은 독일제국은행,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주 주민을 위한 은행, 외국중앙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1조상의 관할기관이 된다.
- (2) 제1항의 법 제62조는 1945년 5월 8일 현재 「베를린」주와 연방내에서 독일 제국은행의 정직원, 평직원 및 고용원이었던 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1. 공무원법 또는 보수법과 관계없는 사유로 면직당하여 복직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법 시행이전에 65세에 달했거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공무원법 또는 보수법과 관계없는 사유로 일반연금이나 특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
- (3) 독일공무원법상 연방에 적용하는 査定의 기초(연금상 급여, 연금 지급 비율)는 제1항의 법 제7조, 제8조, 제29조 제2항, 제3항, 제30조, 제31조 및 제35조 제3항과 연방공무원법 제108조, 제112조, 제117조 제1항, 제140조 제2항, 제3항 제1,2단, 제156조 제1항, 제181조 a 및 제181조 b에 따른 수정을 가하여 1953년 9월 1일 이전에 퇴직한 독일제국은행의 정직원에게 대하여도 계속 적용된다(제1항의 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35조 제1항 및 제48조). 연금지급 근무기간이 연방공무원법 제117조 제2항 또는 동 법 제181조 제5항 또는 1975년 6월 30일부터 발효된 연방공무원법 제181조 제5항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경우 연방공무원법 제117조 제3항이 준용된다. 연금은 연금성 급여의 7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은 부양가족에게도 준용되며 제1항의 법률 제64조 제1항 제 6문 후단을 적용할 수도 있다.
- (4)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최고 고용 기관이 된다. 이 권한내에서 연방은행 총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연방은행을 대표한다. 제1항의 법 및 제1항의 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법에서 연방재무장관의 참석이 규정된 경우에는 연방은행 총재가 참석한다.

제 42 조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화폐조정채권의 유통

- (1) 연방정부는 통화개혁규정에 의거 연방은행이 소유하는 청구권의 채무자로서 연방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화폐조정채권의 액면가액내에서 동은행이 정하는 종류와 조건의 재정증권이나 할인가능한 국고채권(유통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유통증권은 연방은행에서 지급한다. 연방은행은 연방정부에 대하여 유통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연방정부는 모든 청구권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한다.
- (3) 연방재무장관은 제1항에서 허용된 한도내에서 유통증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 유통증권은 제20조 제1항 제1호(a)의 여신한도에 계상되지 않는다.

제 42a 조 청산증서의 발행

- (1) 유통어음이 화폐조정채권 액면금액내에서 연방은행에 의해 유통되는 경우 연방은행의 요구시에 연방정부는 연방은행이 선택한 종류 및 조건의 재정증권이나 할인이 가능한 국고채권(청산증서)을 최고 80억 「마르크」 한도내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 (2) 발행된 청산증서의 액면금액은 독일연방은행의 특별계정에 계상된다. 특별계정에 계상된 금액은 연방은행이 만기전에 재매입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청산증서의 상환에만 사용된다.
- (3) 제42조 제2항 제1문 및 제2문과 제3항이 준용된다.

제 43 조

삭 제

제 44 조 해산

연방은행은 법률에 의해서만 해산된다. 해산법은 동 은행 자산의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 45 조 「베를린」조항

1952년 1월 4일 제정된 제3차 과도기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 이 법은 「베를린」주에도 적용한다. 연방은행은 동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특별규정에 의하여 「베를린」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46 조

삭 제

제 47 조 시행

- (1) 이 법은 공포된 다음 달의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5항과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은 195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베를린」주에서는 제41조 제1항과 제2항은 195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와 제37조는 베를린계수법률(Ubernahmegesetz)이 「베를린」법령공보에 공포된 다음 날로부터 시행한다.

II.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KredWG)]

제 정 : 1961. 7. 10

최종개정 : 1992. 12. 21

제1장 총 칙

제 1 절 금융기관과 금융중개기관

제 1 조 정의

- (1) 금융기관(Kreditinstitute)이라 함은 상인적 조직에 의한 경영을 요하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은행업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의 지급유무를 불문하고 예금으로서 타인의 금전수입(예금업무)
 2. 금전대출 및 인수신용의 제공(여신업무)
 3. 어음 및 수표위 매입(할인업무)
 4. 타인을 위한 유가증권의 매매(증권업무)
 5. 타인을 위한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보호예수업무)
 6. 투자신탁회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Kapitalanlagegesellschaften) 제1조에 규정된 업무(투자업무)
 7. 대출채권의 만기전 취득의무의 인수
 8. 타인을 위한 보증, 지급보증 기타 담보의무의 인수(보증업무)
 9. 대체지급 및 결제의 수행(지로업무) 기타업무로서 거래의 성격상 이 법의 감독목적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방재무장관은 독일연방은행의 의견을 들어 법규명령으로써 이를 은행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 (2) 이 법에서 이사(Geschäftsleiter)라 함은 법률, 정관 및 조합계약에

의하여 법인 또는 인적회사의 법적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를 대표하도록 임명된 자연인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연방 신용조직감독청(제5조)은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부여받은 다른 자가 신뢰할 수 있고 필요한 전문적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취소권유보부로 그 자를 이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 제2항을 적용한다. 개인상인(Einzelkaufman)이 금융기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소유주로부터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부여받은 자를 제2문의 조건하에서 취소권유보부로 이사로 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금융중개기관(Finanzinstitute)이라 함은 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주로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자본참여
2. 금전채권의 유상취득
3. 리스계약의 체결
4. 신용카드 또는 여행자수표의 발행 또는 관리
5. 자기계산 또는 고객의 위탁에 의한 외국지급수단의 거래 또는 교환 (환전업무)
6. 자기계산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7. 자기계산 또는 고객의 위탁에 의한 선물계약, 옵션, 환율 또는 금리수단의 거래
8. 유가증권 발행에의 참여 및 유가증권 발행 관련 용역제공
9. 자본구조, 산업전략 기타 관련문제에 관한 기업상담과 합병 및 기업 인수에 관한 기업상담 및 서비스 제공
10. 금융기관간의 대출중개(자금중개업무)
11. 유가증권 또는 제7호의 수단에 대한 타인의 투자자산관리 또는 투자자문

연방재무장관은 독일연방은행의 의견을 들어 법규명령으로써 금융중개기관을 보다 넓게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사업개시 및

실행에 관한 법규와 행정규칙의 조정과 EC지침법(Richtlinie) 77/780의 개정을 위한 1989년 12월 15일자 EC지침법 89/646 별지에 규정된 목록에 추가된다.

- (4) 설립가맹국(Herkunftsmitgliedstaat)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본점이 설립허가를 받은 EC회원국을 말한다.
- (5) 진출가맹국(Aufnahmemitgliedstaat)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지점을 설치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설립가맹국 이외의 EC회원국을 말한다.
- (6) 모기업(Mutterunternehmen)이라 함은 그 법적형태 및 주소지를 불문하고 상법(Handelsgesetzbuch) 제290조에 규정된 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7) 자기업(Tochterunternehmen)이라 함은 그 법적형태 및 주소지를 불문하고 상법 제290조에 규정된 자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8)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관계에서 모기업에 해당하거나 자연인 또는 법인과 기업이 동일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있는 것으로 한다.
- (9) 직접적 또는 하나 또는 수개의 자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자본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저한 자본참여가 있는 것으로 한다. 상장회사에 대한 자본참여의 취득 및 처분시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에 관한 1988년 12월 12일 EC지침법 88/627 제7조 제1문은 의결권 지분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참여는 전액 간접참여 기업에 계상한다.

제 2 조 예외

- (1) 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독일연방은행
 2. 〈삭제〉
 3. 개발금융공사
 4. 사회복지기금 및 연방노동국
 5. 공영, 민영보험회사
 6. 〈삭제〉
 7. 〈삭제〉
 8. 점유질에 의한 대출방식으로 전당업을 영위하는 기업
 9. 1986년 12월 17일자 기업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투자회사인 기업
- (2) 개발금융공사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48조에 의거한 규제를 적용한다. 사회복지기금, 연방노동국, 보험회사 및 기업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한다.
- (3)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그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4) 연방신용조직감독청은 영위하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감독을 요하지 아니하는 한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 법 제10조 내지 제29조, 제24조 내지 제38조, 제45조 내지 제46c조 및 제51조 제1항과 회의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을 전부 적용하지 않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연방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a 조 법적형태

제32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요하는 금융기관은 개인상인의 법적형태로 운영할 수 없다.

제 2b 조 현저한 자본참여자

- (1)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저한 자본참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그 자본참여규모를 연방신용조직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에는 그 신뢰성을 판단함에 중요한 것으로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법규명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감독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 제2문 제6호 d 및 e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참여자가 법인 또는 인적회사인 경우에는 신고시에 그 법률상 대표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신뢰성을 판단함에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저한 자본참여가 있는 한 새로 임명되는 모든 법률상 대표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은 지체없이 자신의 신뢰성을 판단함에 중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현저한 자본참여자는 그 자본참여 규모가 의결권 또는 자본금의 20%, 33% 또는 50%선에서 도달 또는 이를 초과하여서나 금융기관이 자기기업으로 될 정도로 자본참여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방감독청은 신고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 또는 인적회사인 경우에는 법률상 대표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계획하고 있는 현저한 자본참여의 취득 또는 확대를 금지할 수 있다; 연방감독청이 제33조 제1항 제1문 제2호의 a 또는 제2문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자본참여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 연방감독청은 기한을 정하여 이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인이 제1문 또는 제4문에 의하여 신고한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연방감독청에 통보토록 할 수 있다.

- (2) 연방감독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현저한 자본참여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자본참여기업의 소유주, 법률상 대표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금융기관에 해로운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게 하는 사실이 있을 때
 2. 금융기관에 대한 현저한 자본참여의 경우 자본참여기업의 소유주, 법률상 대표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하고 신중한 경영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게 하는 사실이 있을 때; 특히 신뢰성이 없을 때
 3. 금융기관이 현저한 자본참여자와 결합되어 있고 (주식법

〈Aktiengesetz〉 제15조) 그 기업결합관계 또는 현저한 자본참여자와 다른 기업과의 기업결합구조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게 하는 사실이 있을 때

4. 제1항 제5문에 의한 집행력있는 금지에 불구하고 자본참여를 취득하거나 확대하였을 때

제1문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는 관리인에게 위인할 수 있다. 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하고 신중한 경영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금융기관, 그 자본참여자 또는 연방감독청의 신청에 의하여 금융기관 소재지의 법원이 선임한다. 제1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연방감독청은 관리인 선임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정당한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그 직무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비용과 보수를 정한다; 그 외의 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비용과 보수는 연방에서 선급한다; 당해 자본참여자와 금융기관은 연방의 선급금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3) 현저한 자본참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EC회원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그러한 금융기관의 자기업 또는 그러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이고 자본참여대상 금융기관이 자본참여를 통하여 자기업으로 되거나 자본참여자의 지배를 받게 될 경우 연방감독청은 제1항 제5문 및 제2항 제1문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당해 회원국 관할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금융기관에 대한 현저한 자본참여를 포기하거나 현저한 자본참여규모를 의결권 또는 자본금의 20%, 33% 또는 50%선 아래로 축소 또는 당해 금융기관이 더 이상 자기업이 되지 않도록 자본참여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존하는 자본참여규모를 보고하여야 한다.
- (5) 연방감독청은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자본참여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EC지역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기업으로 됨에 있어 제2차 은행법조정지침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EC집행위원

회 또는 이사회가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본참여에 관한 결정을 연기하거나 유보하여야 한다. 연기 또는 유보는 동 결의시점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C이사회가 제2문의 기간을 연장할 것을 결의하는 경우 연방감독청은 그 기간연장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3 조 금지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금지된다.

1. 대부분의 예금자가 그 기업의 종사자이며(기업저축금고) 동 예금업무외에 다른 은행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예금업무의 영위
2. 대부분의 예금자가 그의 예치금에 의하여 대출청구권 또는 상품의 신용구입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목적저축기업)에 있어서의 금전의 수입; 다만 주택저축은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약정 또는 영업상의 관습에 의하여 대출금액 또는 예금의 현금인출이 금지 또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출업무 또는 예금업무의 영위

제 4 조 연방신용조직감독청의 결정

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 때에는 연방신용조직감독청이 결정한다. 그 결정은 행정관청을 구속한다.

제 2 절 연방신용조직감독청

제 5 조 조직

- (1) 독립된 연방상급관청으로 연방신용조직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 이하 “연방감독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연방감독청은 「베를린」에 둔다.

- (2) 연방감독청장은 연방정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방 정부는 제청함에 있어 독일연방은행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6 조 직무

- (1) 연방감독청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감독한다.
- (2) 연방감독청은 금융기관에 예탁된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은행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저해하거나 경제전체에 대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신용조직의 폐해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 (3) 연방감독청은 공익을 위하여서만 이 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독일연방은행과의 협력

- (1)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독일연방은행과 연방감독청은 쌍방의 직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관찰 및 확인사항을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독일연방은행은 독일연방은행법 제18조에 규정된 통계조사에 의하여 얻은 정보를 연방감독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독일연방은행은 그러한 통계조사를 지시하기 전에 연방감독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독일연방은행법 제18조 제5문을 준용한다.
- (2) 연방감독청장 또는 연방감독청장의 사고시 그 대리인은 독일연방은행 중앙은행위원회 회의사항이 그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 중앙은행위원회 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연방감독청장은 제안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8 조 타기관과의 협력

- (1) 연방감독청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개인이나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2) 금융기관의 소유주 또는 이사가 조세범소송절차에 관련된 경우 소송 절차 및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연방감독청에 통지함은 조세 통칙법 제30조에 반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행위를 하여 소송절차에 관련된 경우에는 이와 같다.
- (3) 다른 EC회원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감독하거나 연결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감독함에 있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은 관련회원국의 관할관청과 협력한다. 다른 회원국 관할관청의 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영업허가의 심사
2.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그룹(Kreditinstitutsgruppe)업무의 감독
3. 은행감독청의 명령제정 및 규칙위반(Ordnungswidrigkeiten)에 대한 제재
4. 은행감독청의 결정에 대한 법률상 구제에 관한 행정절차의 범위내
5. 행정법원, 파산법원, 검찰 또는 형사법원에서의 절차의 범위내

금융기관의 은행업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연방감독청은 당해 금융기관이 지점을 설치한 다른 회원국의 관할관청에 이를 통보한다.

- (4) 제53b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7항의 기업이 민법적용 지역내의 지점 업무 및 서비스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연방감독청이 그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연방감독청은 설립회원국의 관청에 그 위반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통보한다. 연방감독청은 이 법의 적용지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의 진출회원국 관할관청으로 부터 당해금융기관의 진출회원국 법규에 대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진출회원국의 관할관청에 통보한다.

제 9 조 비밀유지의무

- (1)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연방감독청직원 및 제8조 1항 또는

제30조 제2항 제3문에 따라 위임받은 자, 제46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선임된 감독인 그리고 독일연방은행의 직원은 직무수행상 知得한 금융기관 또는 제3자의 비밀유지의 이익이 있는 사실, 특히 영업 혹은 경영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流用할 수 없으며,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퇴직을 한 경우도 같다. 또한 직무상 보고서를 통해 제1문에 규정된 사실을 알게된 자도 위와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한 제1문에 규정된 권한없는 누설 또는 流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검찰 또는 형사법원
2. 법률 또는 공적 위임에 의하여 금융기관, 금융중개기관, 보험회사 또는 금융시장의 감독기능이 부여된 기관 또는 동기관의 위임을 받은 자
3. 금융기관의 청산, 화의 또는 파산을 관장하는 기관
4. 금융기관 또는 금융중개기관의 회계에 관한 법률상의 검사기능이 부여된 자
5. 보험예금기구

이들 기관에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제1문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를 준용한다. 이들 기관이 외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기관과 동기관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문의 규정에 상당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의 외국감독관청 또는 동 관청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에 상당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동 관청 또는 그 수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제1문 및 제2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조세통칙법 제93조, 제97조, 제105조 제1항, 제105조 제1항과 관련된 제111조 제5항과 제116조 제1항은 이 법의 집행과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한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당국이 공익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조세범처벌절차 및 이와 관계되는 조세부과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거나 정보제공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의 은행감독관청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의하

여 제1항 제1문 또는 제2문에 규정된 자에게 통보된 사실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2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금융기관에 대한 규정

제1절 자기자본 및 유동성

제10조 자기자본의 충실

- (1) 금융기관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 특히 예탁받은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적정한 책임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연방감독청은 독일연방은행과 협의하여 통상 제1문의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원칙을 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금융기관 최고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기준원칙은 연방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2) 다음 각 호는 책임자기자본으로 본다.
 1. 개인상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영업자본금 및 적립금으로부터 소유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인출분 및 그러한 자에 대한 대출액과 소유주의 개인재산을 초과하는 부채부분을 차감한 금액;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납입된 영업자본금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Grundkapital oder Stammkapital) 및 준비금으로부터 자기주식 또는 자기영업 지분 및 이익배당에 있어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을 차감한 금액; 주식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다시 무한책임사원의 인출분 및 그에 대한 대출액을 공제하고 자본금에 계상되지 아니한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출자를 가산한다.
 3. 등기된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출자액(Geschäftsguthaben) 및 준비금에 연방재무장관이 조합원의 보전책임을 고려하여 독일연방은행의 의견을 들어 법규명령으로써 정하는 부가액을 가산한 금액; 영업년도 종료시 탈퇴하는 조합원 출자액과 산업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Erwerbs-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제73조 제3항에 의한 대차대조표상 독립된 항목인 이익준비금에 대하여 동 조합원이 갖는 지분청구권은 차감한다; 연방재무장관은 범규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연방감독청에 위임할 수 있다.

4. 공법상의 저축은행(Sparkasse) 및 이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법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준비금
 5.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법상의 금융기관의 경우 납입된 출연자본금과 준비금
 6. 기타 다른 법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준비금 금융기관 자본금(액면자본금, 자본지분의 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의결권의 25% 이상을 행사할 수 있는 유한책임사원(Kommanditisten), 유한회사의 사원, 주주, 주식합자회사주주(Kommanditaktionär) 또는 공법상의 금융기관의 지분소유자에 대한 대출이 非시장합치적인 조건으로 제공되거나 통상의 은행활동에 반하여 충분한 담보 및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제2문의 백분율의 계산에 관해서는 주식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 (3) 순이익금은 영업자본금이나 준비금 또는 조합지분으로의 전입이 결정된 범위내에서 책임자기자본에 산입한다. 제2항의 준비금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시에 비로소 과세되는 대변항목(Passivposten)을 제외하고 준비금으로 명시된 금액만을 말한다.
- (4) 익명사원의 재산출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자기자본에 산입한다.
1. 전액 손실보전에 참여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의 파산 또는 청산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완제한 후에 상환될 수 있는 경우
 3. 적어도 5년이상 금융기관에 출연된 경우
 4. 상환청구권의 만기가 2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거나 사원계약에 의하여 2년 이내에 도래할 수 없는 경우

5. 금융기관을 익명회사로 설립할 때에 제2문 및 제3문에 규정된 법률 효과를 문서로써 명시한 경우 차후 손실보전참여는 변경할 수 없고 후순위 반환은 제한할 수 없으며 만기와 해약고지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만기전에 상환한 경우에는 반대의 약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재산출자가 책임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익명사원에 대한 대출이 비시장적 조건으로 제공 되었거나 통상적인 은행 업무에 비추어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책임자기자본으로부터 차감한다. 제4문에 규정된 백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주식법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4a) 다음 각호의 항목은 책임자기자본에 산입한다.

1. 상법 제340조의 f에 의한 비상준비금
2. 일반적인 은행위험을 위한 상법 제340조의 g에 의한 특별항목
3. 이익배당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주식
4. 미실현준비금
 - a) 토지, 토지와 유사한 권리 및 건물의 경우 장부가격과 담보가치 차액의 45% 범위내
 - b) 장부가격과 다음가격의 차액의 35% 범위내로 하되 이들 재산과 관련하여 적립한 비상준비금은 장부가격에 합산한다.
 - aa) 증권거래소에서 정규거래가 허가되어 있거나 다른 조직적인 시장으로서 공인되어 있으며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고 그 업무방법이 규칙적인 시장에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가격공시유가증권)의 경우 시장가격
 - bb) 대차대조표총액이 2천만DM이상인 신용협동조합협회 또는 저축은행협회 소속 물적회사에 대한 지분을 표창하는 가격 비공시유가증권의 경우 과세가격평가법 제11조 제2항 제2문 내지 제5문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격
 - cc) 유가증권신탁재산 또는 투자신탁재산중 폐쇄형 펀드(Spezialfonds)를 제외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투자신탁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지분증권 또는 유가증권 공동투자체계에 관

한 법규 및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1985년 12월 20일자 EC 이사회 지침법 85/611에 의하여 다른 EC회원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신탁재산에 대한 지분증권의 경우 공시된 상환가격

5. 소득세법 제6조의 b에 의한 준비금으로서 토지, 토지와 유사한 권리 및 건물의 양도 수익으로부터 편입된 준비금의 45%

미실현준비금은 제2항 내지 제4항, 이 항 제1문 제2호, 제6항 및 제7항 제3문에 규정된 책임자기자본 구성부분의 총액중 제2항 제1문 제3호에 의한 부가액을 제외하고 제6a항 제1문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액(기준자본금)이 최소한 연방감독청의 기준원칙I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의 4.4%에 달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미실현준비금은 동 위험가중자산의 1.4% 이내에서만 책임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미실현준비금은 제1문 제4호 a 또는 b에 규정된 자산이 모두 차액계산에 포함될 때에만 이를 감안할 수 있다. 미실현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완료 후 지체없이 중요한 가격평가의 명세를 포함하여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4b) 토지, 토지와 유사한 권리 및 건물의 담보가치의 사정에 관하여는 저당은행법(Hypothekenbankgesetz)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담보가치는 적어도 3년마다 가격감정에 의하여 사정하여야 한다. 담보가치의 사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은 적어도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자신탁회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담보가치가 장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만큼 미실현준비금을 차감한다.

- (4c) 가격공시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기준일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시장가격과 과거 3회의 대차대조표기준일에 확정된 시장가격의 평균가격이 이 시장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동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대차대조표기준일에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기준일 전 30일 이내에 최후로 확정된 시장가격을 기준으

로 한다. 고정자산에 관한 기준원칙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를 행한 경우에는 기준시장가격과 보다 높은 장부가격의 차액만큼 미실현준비금을 차감한다. 과세가격평가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가격비공시유가증권 가격과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지분증권의 상환가격의 사정에 관해서는 제1문, 제2문 및 제4문의 절차를 준용한다.

(5) 향익권을 부여한 대가로 납입된 자본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자기자본에 산입한다.

1. 전액 손실보전에 참여하고 손실발생시 금융기관이 이자지급을 유예하여야 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의 파산 또는 청산시 후순위 채권자 이외의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완제한 후에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
3. 적어도 5년이상 금융기관에 출연되고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이전에 상환될 수 없는 경우; 향익권 취득자에게 추가지급을 야기하는 과세변경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으로 표창된 향익권이 그 이전에 해약되고 이의 반환전에 동등가액 이상의 다른 책임자기자본의 납입에 의하여 자본금이 보충된 때에는 5년의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4. 상환청구권의 만기가 2년이내에 도래하지 않거나 약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도래할 수 없는 경우
5. 금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2문 및 제3문에 규정된 법률효과를 문서로써 명시한 경우

차후 손실보전참여는 변경할 수 없고 후순위 관계는 제한될 수 없으며 만기와 해약고지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만기전에 상환한 경우에는 반대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동등가액 이상의 다른 책임자기자본의 전입에 의하여 자본금이 보충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금융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향익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제2문 및 제3문에 규정된 법률효과를 청약약관 또는 발행약관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위탁을 받아 매입하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으로 표창된 자기향익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외에 금융기관은 향익권이 가격공시 유가증권으로 표창되어 있는 경우 시세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발행항의권 액면총액의 3% 까지 취득할 수 있다; 시세관리의 가능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법 제71조의 a, 제71조의 d 및 제71조의 e를 준용한다.

(5a) 후순위채무의 부담으로 인하여 납입된 자본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자기자본에 산입한다.

1. 금융기관의 파산 또는 청산시 후순위채권자 이외의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완제한 후에 상환한다.
2. 적어도 5년이상 금융기관에 출연되고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이전에 상환될 수 없다; 자본금의 반환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해약고지기간을 5년으로 한다. 반환하기 전에 동등가액 이상의 다른 책임자기자본의 납입에 의하여 자본금이 보충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을 위하여 보다 단기의 해약고지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채무증서의 취득자에게 추가지급을 야기하는 파세변경으로 인하여 채무증서가 그 이전에 해약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3. 반환청구권은 금융기관의 청구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후순위)채무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제3자가 약정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은 오직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기기업이 부담한 후순위채무를 위하여 후순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상계금지에 관한 보통거래약관법규제법 제11조 제3호는 금융기관의 후순위 채무에 대응되는 채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환청구권이 2년내에 도래하거나 약정에 의하여 2년내에 도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의 2/5만 책임자기자본에 산입한다. 차후 후순위관계는 제한될 수 없으며 만기와 해약고지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만기전에 반환한 경우에는 반대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해산되지 않았거나 동등가액이상의 다른 책임자기자본의 납입에 의하여 자본금이 보충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금융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약정체결시 제3문 및 제4문에 규정된 법률효과를 문서로써 명시하여야 한다; 후순위채무에 대하여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에는 그 법률효과를 청약약관 및 발행약관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5항 제5문 및 제6문을 준용한다. 후순위 채무에 관하여는 ‘spar(저축)’라는 문자를 포함하거나 파산 또는 청산의 경우 후순위관계를 은폐함에 적절한 기타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명칭으로 광고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40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금융기관의 소유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개인재산은 신청에 의하여 은행감독청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고려될 수 있다.

(6a)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책임자기자본으로 부터 공제한다.

1. 손실
2. 무형재산
3. 금융기관이 시세관리의 가능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공시유가증권으로 표창된 자신의 향익권 및 후순위채무 발행총액의 3%
4. 다음의 자본참여, 후순위채무 및 향유권으로 인한 채권과 우선주
 - a) 투자신탁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 및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그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자본참여; 연방감독청은 금융기관이 금융지원을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중개기관의 지분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b) 금융기관이 그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여 자본참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중개기관(투자신탁회사 제외)에 대한 제5a항에 규정된 후순위 채무에 대응되는 채권
 - c) 위의 b)에 규정된 기업에 대한 제5항에 규정된 향익권으로 인한 채권
 - d) 위의 b)에 규정된 기업의 제4a항 제1문 제3호에 규정된 우선주
5. 다음의 자본참여, 후순위채무 및 향익권으로 인한 채권과 우선주의 총액이 금융기관의 제4호 및 본 호에 의한 공제전 책임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총액
 - a) 투자신탁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10%

이내의 자본참여

b) 금융기관이 자본참여를 하고 있지 않거나 그 자본금의 10%이내에서 자본참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중개기관(투자신탁회사 제외)에 대한 제5a항에 규정된 후순위채무에 대응되는 채권

c) 위 b)에 의한 기업에 대한 제5항에 규정된 항의권으로 인한 채권

d) 위 b)에 규정된 기업의 제4a항 제1문 제3호에 규정된 우선주

금융기관이 투자신탁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10% 이상의 모든 자본참여를 제10조의 a에 의한 연결(Konsolidierung)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문 제4호 또는 제5호의 공제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 a 제5항 제2문을 준용한다.

(6b) 제4a항 제1문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5항 및 제5a항에 규정된 책임자기자본 구성부분과 제2항 제1문 제3호에 규정된 부가액의 합계는 기본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제1문 제3호에 규정된 부가액과 제5a항에 규정된 후순위채무의 합계액은 기본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제1문 제3호에 의거한 부가액규칙(Zuschlagsverordnung)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연방감독청은 특정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군에 대하여 비상상황인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제1문 및 제2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함을 승인할 수 있다.

(7) 책임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최근의 영업년도말에 확정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연방감독청은 연말결산서의 확정 이전이라도 증명된 책임자기자본 변경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중간결산이익(Zwischengewinn)은 이익배당 또는 조세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연말결산에 적용되는 요건에 준하는 중간결산에 의하여 계산된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중간결산은 결산검사인이 검사한다. 중간결산서와 그에 대한 검사보고서는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결산시 발생된 손실은 책임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한다. 금융기관은 중간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 절차는 최종의 중간결산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재개될 수 있다.

- (8) 금융기관은 제2항 제2문 또는 제4항 제4문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하여야 하는 대출을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설정된 담보 또는 대출조건을 약정에 의하여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연방감독청은 매 5년마다 제1문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대출의 총괄표(Sammelanzeige)를 자신과 독일연방은행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0a 조 금융기관그룹의 자기자본총실

- (1) 그룹소속 금융기관은 통합하여 적정한 책임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별금융기관의 자기자본총실에 관한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금융기관(지배금융기관: übergeordnetes Kreditinstitut)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금융기관(종속금융기관: nachgeordnetes Kreditinstitut)의 자본지분을 적어도 40% 이상 보유하거나(현저한 자본참여: erhebliche Beteiligung)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들은 이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그룹(Kreditinstitutsgruppe)에 속한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본지분과 그룹소속 금융기관의 계산으로 타인이 소유하는 자본지분은 이를 합산한다; 지배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그 자본지분의 40%미만을 보유하는 기업을 통하여 자본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자본참여를 확인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수개의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본지분에 관하여도 이와 같다. 의결권의 경우도 자본지분과 동일하다. 주식법 제 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음 각호의 자도 상당한 자본참여 또는 지배력의 행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종속금융기관으로 본다.
1. 금전채권의 유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2. 리스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3. 제2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기업을 제외하고 제1조에

해당하는 은행업무 또는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단지 보호예수 또는 투자업무만을 영위하는 기업은 종속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그룹소속 금융기관이 통합하여 적정한 책임자기자본을 보유하는지의 여부는 책임자기자본과 제10조 제1항 제2문과 관련된 제1항 제2문에 의한 기준원칙에 포함된 여타의 관련항목을 비례적으로 합산하여 판단한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종속금융기관의 경우 제1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구성부분을 책임자기자본으로 본다. 비례합산함에 있어 지배금융기관은 종속금융기관의 관련항목을 종속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비율에 상당하는 만큼 자신의 관련항목에 합산하여야 한다. 그룹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금융기관의 자본지분, 제10조 제4항 제1문에 의한 익명사원의 재산출자, 제10조 제5항 제1문에 의한 향익권부자본 및 제10조 제5a항 제1문에 의한 후순위 채무의 장부가격과 지배금융기관에 있어 고려되는 그룹소속 금융기관과 관련된 제10조 제4a항 제1문 제4호에 의한 미실현준비금은 제2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례적으로 합산하는 책임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간접적인 자본참여의 경우에는 제2문에 의한 장부가격을 비례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자본참여의 장부가격이 제2문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종속금융기관의 자본금 및 준비금 부분보다 클 경우에는 자본참여를 최초로 비례합산할 때의 차액을 최장 10년동안 매년 적어도 1/10씩 차감한 금액만큼 제3문에 의한 공제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로 본다. 그룹소속 금융기관간의 법률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항목으로서 기준원칙에 따른 산정과 관련되나 제3문에 의한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여타 항목은 이를 무시한다. 연방재무장관은 독일연방은행과 협의하여 법규 명령으로써 보충규정을 발할 수 있다.
- (4) 지배금융기관은 금융기관 그룹의 적정한 자기자본보유에 관한 책임을 진다. 지배금융기관은 제1문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반회사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속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배금융기관은 매월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적절한 자기자본 보유에 관한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종속금융기관은 지배금융기관에 비례합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배금융기관이 그룹소속 금융기관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그룹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제3항 제3문의 장부가격을 지배금융기관의 책임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 (6) 지배금융기관 자신이 종속금융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 금융기관, 제2항 제5문 제3호의 기업에 종속된 금융기관 또는 지배금융기관이 그 자본지분의 75%미만을 보유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한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의한 합산에 있어 그 자본지분의 10%미만이 포함되는 종속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유동성

금융기관은 그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항상 충분한 지급준비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방감독청은 독일연방은행과 협의하여 통상 금융기관 유동성의 충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원칙을 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금융기관 최고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기준원칙은 연방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원칙에는 금융기관 회계에 관한 규칙(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legung der Kreditinstitute)상의 저축예금, 특히 저축예금통장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독일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제 12 조 투자 한도

- (1) 토지, 건물, 영업시설, 선박, 금융기관 및 기타 기업에 대한 지분과 제 10조 제6a항 제1문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책임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되는 투자를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익명사원으로서의 재산출자, 향의권 및 제10조 제5a항에 의한 후순위채무로 인한 채권

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총액은 장부가격으로 계산하여 책임자기자본을 초과할 수 없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타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동 기업자본금(액면자본금: Nennkapital, 광산주식주: Zahl der Kuxe, 자본지분의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내외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허가되어 있거나 규제된 장외등록거래 (geregelter Freiverkehr)가 인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자기거래 및 시세관리를 위하여 보유하되 그 금액이 기업자본금의 5%이내이고 여타의 소유지분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
 3.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지분을 자기명의로 제3자의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를 2년이내의 기간동안 보유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여신업무에 있어서의 손실을 방어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선박 및 기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여 5년이내의 기간동안 보유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의 영업시설이 상품거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 (3) 연방감독청은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시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4) 1989년 12월 31일 현재 공동주택기업으로 인정되어 있고 그 영업활동이 주로 그의 구성원에 대해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된 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합이 은행업으로서 그 조합원과 조세통칙법 제15조에 의한 조합원의 친족과의 예금업무만을 영위하는 경우
 2. 예금이 조합원에 임대한 고정자산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조합이 1989년 12월 31일 현재 공동주택사업자로 인정되어 있던 기업인 경우 저축예금보험기구에 가입되어 있을 때
- (5) 공중으로부터 예금 또는 기타 상환의무 있는 금전을 수입하고 여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금융중개기관 또는 보험회사도 아니고 금융기관을 위한 보조업무를 영위하지도 아니하는 단일기업에

대하여 액면금액이 당해 금융기관 책임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현저한 자본참여를 행할 수 없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현저한 자본참여의 액면총액은 금융기관 책임자기자본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영속적인 결합관계를 통하여 자신의영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분은 현저한 자본참여규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문 및 제2문에 규정된 한도는 제10a조에 의한 기준원칙에 따른 연결기준으로도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그룹은 책임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문 및 제2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책임자기자본중 이 부분은 책임자기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제10조 제1항 제2문 및 제10조의 a 제1항 제1문에 의한 기준원칙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제1문 및 제2문에 규정된 두가지 한도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책임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제 12a조 기업관계의 창설

- (1)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0a조, 제13a조 및 제 25조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제10a조 제2항에 규정된 상당한 자본참여를 하거나 제10a조 제2항 제5문 제3호의 기업에 대하여 제13a조 제2항에 규정된 중대한 자본 참여를 행하는 경우
 2. 다수자본참여 또는 지배계약을 통하여 그러한 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관계를 창설하는 경우
- 제10a조 제3항 및 제13a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례합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10a조 제5항 제2문에 따라 장부가격을 공제함으로써 자본참여 또는 기업관계의 창설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고 연방감독청이 이러한 조건의 준수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0a조 및 제 13a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 제1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은 제1문에 규정된 자본참여 또는

기업관계의 개시, 변경 또는 폐지사실을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 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금융기관이 제10a조, 제13a조 또는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을 때에는 연방감독청은 그 자본 참여 또는 기업관계의 지속을 금지할 수 있다. 제1문에 규정된 금지권한에 관해서는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예외를 준용한다.

제 2 절 여신업무

제 13 조 거액여신

- (1) 여신총액이 금융기관 책임자기자본액의 15%를 초과하는 동일차입자에 대한 여신(거액여신: Grosskredite)은 지체없이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승낙 또는 공여한 금액이 5만DM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액여신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당해 금융기관 책임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미 신고한 거액여신이 최근 보고한 금액의 20%이상 증가하거나 책임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독일연방은행은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신고내용을 연방감독청에 송부한다; 연방감독청은 일정한 신고내용의 송부를 면제할 수 있다. 연방감독청은 매년 1회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거액여신의 총괄표를 자신과 독일연방은행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법인 또는 인적회사의 법적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은 법률행위의 유효성과는 관계없이 이사의 전원일치 결의로써만 거액여신을 공여할 수 있다. 이 결의는 여신을 공여하기 전에 행하여야 한다. 업무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사전결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후결의를 행하여야 한다. 결의는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사의 전원일치 사전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액여신을 공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후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를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미 공여한 여신이 책임자기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거액여신이 될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유효성과는 관계없이 지체없이 이사 전원일치의 사후결의를 행하는 때에 한하여 계속 거액여신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제4문 및 제5문을 준용한다.

- (3) 모든 거액여신의 총액은 법률행위의 유효성과는 관계없이 금융기관 책임자기자본의 8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승락은 하였으나 실제로 공여되지 아니한 여신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 (4) 각각의 거액여신은 법률행위의 유효성과는 관계없이 금융기관 책임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5) 중앙금융기관(Zentralkreditinstitute)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금융기관이 그 회원인 신용협동조합 또는 지로중앙은행(Girozentrale)을 통하거나 그 회원으로 등록된 신용협동조합 또는 저축은행을 통하여 최종차입자에게 공여한 여신은 대출채권이 중앙금융기관에 담보로서 양도되는 경우 최종차입자에게 공여된 여신액으로만 이를 고려한다.
- (6) 제19조 제1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여신을 위한 담보제공을 제외한 보증, 지급보증 및 기타 담보제공과 독일연방은행 적격어음의 매입으로 인한 여신은 거액여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반액만 계상한다.
- (7) 여신한도의 승낙에 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연방감독청이 정하는 기일에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8) 전항들에 규정된 책임자기자본은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 5항, 제6항과 제7항 제1문 및 제2문에 의한 자기자본구성부분을 말한다; 손실은 공제한다. 향익권을 부여한 대가로 납입한 자본금은 제10조 제2항 제1문 제3호에 의한 부가액을 제외한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책임자기자본에 산입한다.

제 13a 조 금융기관그룹의 거액여신

- (1) 그룹소속 금융기관이 공여한 여신의 총액에 대해서는 개별금융기관의 거액여신에 관한 제13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금융기관(지배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금융기관(종속금융기관)의 자본지분의 적어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중대한 자본참여: maßgebliche Beteiligung)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들은 이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그룹에 속한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본지분과 그룹소속 금융기관의 계산으로 타인이 소유하는 자본지분은 이를 합산한다; 지배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그 자본지분의 50% 미만을 보유하는 기업을 통하여 자본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자본참여를 확인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수개의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본지분에 관하여도 이와 같다. 그룹소속 금융기관에 관한 제10조의 a 제2항 제3문 내지 제6문을 준용한다.
- (3) 그룹소속 금융기관이 통합하여 거액여신을 행하고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룹소속 금융기관중 어느 금융기관이 공여한 여신이 당해 금융기관에 있어서 제13조 제1항 제1문의 거액여신에 해당하는 경우에 책임자기자본과 동일차입자에 대한 여신을 비례적으로 합산하여 판단한다. 비례합산에 관한 제10a조 제3항 제2문 내지 제6문을 준용한다.
- (4) 지배금융기관은 그룹소속 금융기관의 거액여신총액에 관하여 제13조 제1항과 관련된 제1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와 총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배금융기관은 그룹소속 금융기관의 거액여신총액이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한도를 준수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진다. 지배금융기관은 제2문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반회사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속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5) 자료제공의무, 공제절차 및 비례합산에 대한 예외에 관한 제10a조의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 14 조 백만DM여신: Millionenkredite

- (1) 금융기관은 1월, 4월, 7월 및 10월의 각 15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신고기일 이전 3개월중에 300만DM에 달하거나 이를 초과한 차입자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외국에서 제1조에 해당하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제13a조의 제2항에 의한 그 종속기업을 위하여 제1문의 준용에 의한 동기업의 차입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300만DM 이상의 공동여신에 있어 개별금융기관의 여신이 300만DM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문을 적용한다. 신고시에는 신고 전월말에 있어서의 차입자의 채무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 제1항 제3문을 준용한다.
- (2) 동일차입자에 대하여 다수의 금융기관 또는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기업이 제1항에 규정된 여신을 공여한 때에는 독일연방은행은 관련금융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시에는 관련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한다.
 1. 채무발생후 4년이후에 상환되거나 4년 이상의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분할 상환되는 여신
 2. 채무발생후 4년 이내에 상환되는 여신
 3. 차입자가 다른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갖는 어음여신
 4. 보증, 지급보증, 기타 담보제공, 타인의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에 따른 책임, 유상으로 양도한 금전채권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취득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환매하여야 하는 채무
 5. 연방, 연방특별재단, 주, 지방자치단체(Gemeinde) 또는 지방자치단체연합(Gemeindeverband)이 보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담보하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여신
 6. 제2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여신
- (3)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수인의 채무자를 동일차입자로 보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신고시에 개별채무자의 채무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에 의한 통지시에는 동일차입자로 보는 채무자의 채무총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채무자의 채무는 당해 채무자에게 자신이 직접 또는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그의 종속기업이 여신을 공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4) 이 규정에 의한 여신통지에 관하여 국제협정이 체결되거나 EC지침법이 시행된 후에는 독일연방은행은 외국에 있는 관련기업에 통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신고내용을 제2항 제2문 및 제3문 규정에 따라 종합하여 국제협정 또는 EC지침법에 규정된 기관에 송부하고 관련금융기관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있는 기업에 있어서의 차입자의 채무액을 통지할 수 있다.

제 15 조 기관여신: **Organkredite**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신은 금융기관이사의 전원일치 결의와 감사기관의 명백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이사
 2. 인적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법적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의 이사가 아닌 사원 및 주식합자회사의 법적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의 이사가 아닌 무한책임사원
 3. 업무집행감독을 위하여 설치된 금융기관의 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감독권한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기관(감사기관: Aufsichtsorgan)의 구성원
 4. 금융기관의 지배인 및 영업전반에 걸쳐 대리권을 부여받은 영업대리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6. 금융기관의 익명사원
 7. 법인 또는 인적회사의 법적형태를 취하는 기업으로서 금융기관의 이사, 지배인 또는 영업전반에 걸쳐 대리권을 부여받은 영업대리인이

당해 법인의 법률상 대표자 또는 감사기관의 구성원이거나 당해 인적 회사의 사원으로 되어 있는 기업

8. 법인 또는 인적회사의 법적형태를 취하는 기업으로서 법인의 법률상 대표자, 인적회사의 사원, 당해 기업의 지배인 또는 영업전반에 걸쳐 대리권을 부여받은 영업대리인이 금융기관의 감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9. 금융기관 또는 이사가 그 자본금의 10% 이상 자본참여하고 있거나 무한책 임사원으로 되어 있는 기업; 이 경우 기업의 주식, 광산주식 또는 영업 지분의 소유가 자본금(액면자본금, 광산주식주, 자본지분의 총액)의 1/4에 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자본참여로 본다.
 10.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10% 이상 자본참여하고 있는 기업; 이 경우 제9호 후문을 준용한다.
이사 또는 감사기관 구성원의 보수를 초과하는 인출 특히 보수의 선지급 승인도 여신과 동일하다.
- (2) 제1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에 종속되어 있거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Geschäftsführer), 이사회 또는 감사기관의 구성원, 지배인 및 영업전반에 걸쳐 대리권을 부여받은 영업대리인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여신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배하는 기업의 감사기관의 명백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배인 및 영업전반에 걸쳐 대리권을 부여받은 영업대리인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여신이 당해 지배인 또는 영업대리인의 1년 급여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1문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자 또는 기업에 대한 여신이 금융기관 책임자기자본의 1% 또는 10만DM에 미달하는 경우
 3. 여신이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의결된 금액의 10% 이상 증가되지 않은 경우

- (4) 이사의 결의 및 승인결의는 여신을 공여하기 전에 행하여야 한다. 결의는 여신이율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결의는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 제1문 제6호 내지 제11호의 여신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전원 및 감사기관이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사의 사후결의가 2개월 이내에 행하여지지 않거나 감사기관의 사후결의가 4개월 이내에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방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여신에 관한 이사의 결의 및 승인결의는 여신거래를 특정하거나 일정한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사전에 행할 수 있다.
- (5) 제1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여신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여된 때에는 이사전원 및 감사기관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그에 반대되는 약정에 불구하고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 16 조 기관여신의 신고업무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여신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자연인의 경우 여신액이 25만DM을 초과하는 경우
2. 기업의 경우 여신액이 금융기관 책임자기자본의 5%와 25만DM을 초과하는 경우

제1문은 소유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인출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무한책임사원에 있어서는 여신과 인출분을 합산한다. 연방감독청은 매 5년마다 신고대상인 기관여신의 총괄표를 자신과 독일연방은행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 책임규정

- (1) 제15조에 위반하여 여신을 행하는 때에는 그 의무에 위반한 이사 및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위반하여 의도된 여신에 간여하지 아니한 감사기관의 구성원은 그 결과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연대책임을 진다; 이사 및 감사기관의 구성원은 그 행위에 있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2) 금융기관의 채권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융기관의 면제 또는 화의에 의하거나 법인의 법적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그 여신이 당해 금융기관의 최고기관(주주총회, 총회,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 (3)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제 18 조 여신근거자료

금융기관은 10만DM을 초과하는 여신을 공여한 차입자에 대하여 그의 재무상태를 특히 연말결산서의 제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설정된 담보 또는 공동채무자에 비추어 공개를 요구할 명백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은행업무 이외에 상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의 유상매입에 의한 여신으로서 관련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계속적으로 취득하고 동 채권매도인이 채권의 이행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동 채권의 만기일이 매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여신 및 차입자의 정의

- (1) 제13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여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종류의 금전대출, 유상으로 취득한 금전채권, 인수신용, 기명식의 저당채권(Pfandbriefe) 및 자치단체채권(Kommunalschuldverschreibungen)을 제외한 기명채권에 의한 채권
 2. 어음 및 수표의 할인

3. 연지급기간이 거래관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상품거래업무로 발생한 채권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기타 상거래로 발생하는 금전채권
4. 금융기관의 보증, 지급보증, 기타 담보제공 및 타인의 채무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설정에 따른 책임
5. 유상으로 양도한 금전채권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취득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환매하여야 하는 채무
6. 차입자의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본참여; 이 경우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주식, 광산주식 또는 영업지분이 그 기업자본금(액면자본, 광산주식 수, 자본지분의 총액)이 1/4에 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자본참여로 본다.
7. 금융기관이 리스공급자로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목적물로서 동 리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이행 또는 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생긴 계정항목을 차감한 잔여분; 그러한 항목은 관련된 리스목적물의 장부가격을 한도로 차감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위한 담보 및 금융기관에 예치한 차입자의 예금잔액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동일차입자로 본다.

1. 동일콘체른에 속하거나 기업의모든 이익을 타기업에 양도하여야 하는 약정에 의하여 결합된 모든 기업, 다수지분소유하에 있는 기업과 다수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 또는 자연인. 다만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지역단체(Gebietskörperschaften) 및 특별재단은 제외한다.
2. 인적회사 및 그 무한책임사원
3. 자신의 이름으로 여신을 공여받는 자연인 및 기업과 그의 계산으로 여신을 공여받는 자연인 및 기업

금융기관이 수탁자로서 국내의 부동산에만 그 자산을 투자하는 합자회사의 자본지분의 다수를 보유하고 동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한 일시대출을 공여하는 경우에 제13조 제4항의 한

도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 회사를 제1문 제1호에 규정된 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3a조 제3항에 의한 합산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하여 제13a조 제2항에 의한 동일 금융기관그룹내에서 행한 여신에 대하여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 제1문 제1호에 의한 금전채권의 유상취득에 있어 동 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취득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환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을 제13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차입자로 본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채권의 채무자를 차입자로 본다.

제 20 조 예외

- (1)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3조 내지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방, 연방특별재단,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여신
 2. 투자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한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담보예금채권; 등기된 협동조합의 그 협동조합중앙금고에 대한 채권, 저축은행의 지로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및 협동조합중앙금고와 지로중앙은행의 그 중앙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은 3개월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3.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인수 또는 배서하거나 자기앞어음으로 발행하고 그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통상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어음
 4. 대손처리된 여신
-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거액여신에 관한 제13조 제3항 내지 제5항, 기관여신에 관한 제15조 제1항 제1문 제6호 내지 제11호 및 제16조 제1문 제2호와 여신근거자료에 관한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당은행법 제11조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여신
 2. 선박저당은행법(Schiffsbankgesetz)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문, 제

- 4항 제2문, 제11조 제1항,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선박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15년 이내 만기의 여신
3. 이 법의 적용지역에 소재하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법상의 법인,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또는 유럽투자은행에 대한 여신
 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가 보증한 여신
 5.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여신한도를 초과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가 보증하며 저당권, 토지채권 또는 선박저당권으로 담보된 여신
- (3)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여신에 대하여는 거액여신 신고 및 거액여신 결의에 관한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여신에 대하여는 백만DM 여신에 관한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삭제〉

제 21 조~제 22a 조 〈삭제〉

제 4 절 금융기관의 광고 및 고지의무

제 23 조 광고

- (1) 연방감독청은 금융기관의 광고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종류의 광고를 금지할 수 있다.
- (2) 연방감독청은 제1항에 의한 일반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금융기관 최고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3a 조 예금보험제도 회원자격의 결여에 관한 고지

예금을 수입하는 금융기관이 국내의 예금보험제도(Sicherungseinri-

chtung)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에게 보통거래약관, 가격계시판과 계좌개설前 계좌개설신청서에 명시적으로 인쇄한 형태로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계좌개설신청서상의 고지에는 다른 사항이 포함될 수 없으며 별도로 고객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제도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절 금융기관 및 이사의 특별의무

제 24 조 신고

- (1)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이사의 임명 및 금융기관의 영업전반에 걸친 단독대리인의 선임. 이 경우 그 신뢰성 및 전문적 자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사의 퇴임 및 금융기관의 영업전반에 걸친 단독대리인의 해임
 3. 다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참여의 인수, 처분과 자본참여규모의 변동; 이 경우 자본참여는 당해 기업의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함을 말한다; 자본참여규모의 변동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0%를 넘어서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매년 1회 상기한 직접적인 자본참여의 종합신고서와 간접적인 자본참여의 종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2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법적형태의 변경, 상호, 조합계약 또는 정관의 변경
 5. 책임자기자본의 25%에 달하는 손실발생 및 등기하여야 하는 자본금의 변경, 향익권 및 후순위채무의 해지와 인적회사 및 익명회사의 법적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회사의 해산 및 사원출자자금의 반환

6. 주소의 변경
7.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쇄; 제24a조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8. 영업의 폐지
9. 은행업무 이외의 영업의 개시 및 폐지
10. 다른 EC회원국에서 은행업무, 제1조 제3항 제1문 제2호 내지 제11호의 사업, EC설립조약(Vertrag zur Gründung der EWG) 제60조에 규정된 서비스로서 상사정보 또는 금고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계획
11. 신고 금융기관에 대한 현저한 자본참여의 취득 또는 처분, 의결권 또는 자본금의 20%, 33% 및 50%선의 도달, 초과 또는 하회 사실과 이러한 자본참여관계의 변동을 아는 경우 동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의 자기업으로 되거나 되지 않게 된 사실
12. 매년 신고금융기관과 제19a 제2항에 의한 그에 종속된 외국금융 기관에 대한 현저한 자본참여자의 성명과 주소 및 그 자본참여규모를 아는 경우 그 규모
 - (2)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시에 그 사실을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금융기관의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이사, 감사회 또는 이사회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취임 또는 종임
 2. 기업에 대한 자본참여의 인수, 처분 및 자본참여규모의 변경; 이 경우 제19조 제1항 제1문 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 (4) 연방재무장관은 독일연방은행과 협의하여 연방감독청의 임무수행 특히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통일적인 자료수집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규명령으로써 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자료제출의 방법, 범위 및 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연방재무장관은 연방감독청이 독일연방은행과 협의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권한을 법규명령으로써 연방감독

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4a 조 다른 EC회원국에서의 지점 설치

- (1) 금융기관은 다른 EC회원국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회원국명
 2. 영업의 종류 및 지점의 조직구조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업계획
 3. 진출회원국에서 금융기관의 자료를 요구하고 문서를 송달할 수 있는 주소
 4. 지점장의 성명
- (2) 금융기관의 조직구조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연방감독청은 완비된 서류의 접수후 2개월 이내에 제1항 제2문의 신고서류를 진출회원국의 관할관청에 송부하고 이를 신고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연방감독청은 그외에도 진출회원국의 관할관청에 자기자금의 규모, 자기자본의 적정성과 당해 금융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협회의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연방감독청은 제1항 제2문의 신고서류를 진출회원국의 관할관청에 송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 제2문에 의한 서류의 접수후 2개월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 그 이유를 통보한다.
- (3) 제1항 제2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 또는 소속된 협회의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은 적어도 1개월 전에 이를 연방감독청, 독일연방은행과 진출회원국의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4) 연방재무장관은 EC와 EC 비회원국간의 협정에 의한 거주권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EC지역외에 지점을 설치함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함을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5 조 월례보고서와 기타 자료

- (1) 금융기관은 매월말 이후 지체없이 독일연방은행에 전월의 월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독일연방은행법 제18조에 의하여 월별 대차대조표 통계조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제출하는 보고서를 제1문의 월례보고서로 본다.
- (2) 제13a조 제2항에 의한 지배금융기관은 매월말 이후 지체없이 독일연방은행에 비례합산한 월례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비례합산절차에 관한 제10a조 제3항,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제10a조 제5항 제1문 및 비례합산에 대한 예외에 관한 제10a조 제6항을 준용한다.
- (3) 독일연방은행은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월례보고서를 연방감독청에 송부한다; 연방감독청은 일정한 월례보고서의송부를 면제할 수 있다.
- (4) 연방재무장관은 독일연방은행법 제18조에 의한 월별 대차대조표 통계조사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례보고서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그리고 연방감독청의 임무수행 특히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통일적인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제출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독일연방은행과 협의하여 법규명령으로써 정할 수 있다. 기타 제출자료는 제13a조 제2항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종속되어 있는 외국에 있는 기업에도 관련될 수 있다. 연방재무장관은 법규명령으로써 연방감독청에 법규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a 절 회계자료의 제출

제 26 조 연차결산서, 영업보고서 및 검사보고서의 제출

- (1) 금융기관은 영업년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전영업년도의 연말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연말결산서와 추후 확정된 연말결산서 및 영업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그 영업보고서를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결산서는 부속명세서

(Anlage)로 설명하여야 한다. 연말결산서에는 인증 또는 인증거절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결산검사인은 검사 종료후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연말결산서의 검사에 관한 보고서(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검사협회에 속하거나 저축은행 및 지로협회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 (2) 금융기관협회의 보험제도와외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행한 경우에는 검사인은 동 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콘체른결산서 또는 콘체른 영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금융기관은 동 서류를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콘체른결산서 검사인이 검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검사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제3문을 준용한다.

제 6 절 검사 및 검사인의 선임

제 27 조 부속서류의 검사

상법 제340조의 k와 협동조합의 경우 산업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 의한 연말결산서의 검사에는 제26조의 제1항 제1문에 의한 부속서류도 포함한다.

제 28 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검사인의 선임

- (1) 금융기관은 그가 선임한 검사인을 선임 후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방감독청은 검사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다른 검사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의 및 항고소송은 연기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 (2) 금융기관소재지의 등기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방

감독청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1. 영업년도 종료후 지체없이 제1항 제1문에 의한 신고를 행하지 않을 때
2. 금융기관이 제1항 제2문에 의한 다른 검사인의 선임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지 않을 때
3. 선임된 검사인이 검사위임의 수락을 거절 또는 퇴임하거나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지체없이 다른 검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법원의 선임은 최종적이다. 상법 제318조 제5항은 준용한다. 등기법원은 연방감독청의 신청에 의하여 제1문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 (3) 신용협동조합검사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저축은행 및 지로협회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검사인의 특별의무

- (1) 검사인은 연말결산서와 제10조 제7항 제4문에 의한 중간결산서를 검사할 때에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도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연말결산서를 검사할 때에 금융기관이 제10조 제4a항 제4문, 제5항 제5문, 제5a항 제6문, 제8항 제1문 및 제2문 제12a조 제1항 제3문, 제13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 제2항 제5문 및 제6문, 제13a조 제4항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4문 후단, 제16조 제1문 및 제2문, 제24조, 제24a조 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 제10조 제8항 제3문, 제13조 제1항 제4문, 제13a조 제4항 제1문, 제16조 제3문,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12호에 의한 총괄표 또는 종합보고서 제출의무와 제12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제10조 제4a항 제1문 제4호에 의한 미실현준비금이 금융기관의 책임자기자본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연말결산서를 검사할

때에 동 준비금의 산정시 제10조 제4a항 제2문 및 제3문, 제4c항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는 검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2) 검사인은 검사과정에서 인증의 제한 또는 거절을 정당하게 하거나, 금융기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금융기관의 발전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거나 이사의 법률, 정관, 조합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인정케 하는 사실을 지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연방감독청 또는 독일연방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보고서를 설명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지득한 금융기관 업무의 부당한 집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3) 연방재무장관은 독일연방은행의 의견을 들어 연방감독청의 업무수행 특히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통일적인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우에 법규명령으로써 검사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연방재무장관은 이 권한을 법규명령으로써 연방감독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0 조 보관물 검사

- (1) 증권업무 또는 보호예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이러한 업무에 관하여 통상 매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보호예수검사: Depotprüfung). 검사는 금융기관의 통지에 관한 주식법 제128조 및 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주식법 제135조의 준수여부를 포괄하여야 한다.
- (2) 연방재무장관은 연방감독청의 임무수행, 특히 증권업무 및 보호예수업무의 평가를 위한 통일적인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우에 법규명령으로써 보호예수검사의 방법, 범위 및 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연방재무장관은 이 권한을 법규명령으로써 연방감독청에 위임할 수 있다. 보호예수검사인은 연방감독청이 선임한다. 연방감독청은 특별한 경우에 보호예수검사인 선임권을 독일연방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제 7 절 면 제

제 31 조

(1) 연방재무장관은 독일연방은행의 의견을 들어 법규명령으로써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1. 감독상 중요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 일정한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군에 대하여 제10조 제8항 제2문,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일정한 여신과 사실의 신고의무를, 일정한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군에 대하여 제25조에 의한 월례보고서 제출의무를, 금융기관이사에 대하여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본참여 신고의무를 면제
2.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군에 대하여 제12조,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제26조의 준수의무를 면제

연방재무장관은 이 권한을 연방감독청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방감독청은 특별한 이유, 특히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또는 범위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문 제6호 내지 제11호 및 제2항, 제16조,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에 규정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연방감독청은 개별 종속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총액이 2천만 DM 및 지배금융기관 대차대조표총액의 2%에 미달하고 이러한 종속금융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상 중요한 의미가 없으며 연방감독청이 그 요건의 준수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한 제19a조 제2항 및 제13a조 제2항에 의한 개별지배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0a조 제2항 및 제13a조 제2항에 의한 종속금융기관과 관련한 제10a조 제3항 및 제4항, 제12a조 제1항 제1문, 제13a조 제3항 및 제

4항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 3 장 금융기관의 감독에 관한 규정

제 1 절 영업의 허가

제 32 조 허가

- (1) 이 법의 시행지역내에서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은행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연방감독청의 서면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에 필요한 재산에 관한 적절한 입증
 2. 2인 이상의 이사에 관한 사항
 3. 신청인과 제1조 제2항 제1문에 규정된 자의 신뢰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4. 소유주와 제1조 제2항 제1문에 규정된 자의 금융기관경영에 필요한 전문자격 판단에 필요한 사항
 5. 영업의 종류, 조직구조 및 내부통제절차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업 계획
 6. 금융기관에 대한 현저한 자본참여가 있는 경우
 - a) 현저한 자본참여자에 관한 사항
 - b) 현저한 자본참여의 규모
 - c) 현저한 자본참여자, 법률상 대표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신뢰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 d) 현저한 자본참여자가 연말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과거 3 영업년도의 연말결산서. 독립된 결산검사인의 검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 검사보고서를 첨부
 - e) 현저한 자본참여자가 콘체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콘체른 조직에 관한 사항과 콘체른의 연결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과

거 3영업년도의 연결결산서. 독립된 결산검사인의 검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 검사보고서를 첨부

제2문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고지사항 및 근거자료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제24조 제4항에 의한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 (2) 연방감독청은 이 법의 목적 범위내에서 허가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연방감독청은 특정 은행업무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3) 연방감독청은 예금업무에 대한 허가를 하기전에 당해 금융기관과 관련된 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3 조 허가의 거부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1. 이 법 시행지역내에 영업에 필요한 재산, 특히 충분한 책임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공중으로부터 예금 또는 기타 상환의무 있는 금 전을 수입하고 여신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익배당시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총액을 제외하고 적어도 500만 ECU에 상당하는 납입자본금, 조합지분 또는 적립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 2. 신청인 또는 제1조 제2항 제1문에 규정된 자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사실이 있을 때
 - 2a. 금융기관에 대한 현저한 자본참여시 참여기업의 소유주, 법률상 대표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하고 신중한 경영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게 하는 사실이 있을 때; 특히 신뢰성이 없을 때
 - 3. 소유주 또는 제1조 제2항 제1문에 규정된 자가 금융기관 경영에 필요한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조 제2항 제2문 또는 제3문에 의하여 기타의 자가 임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때
 - 4. 금융기관이 명예직이 아닌 이사를 2명이상 두지 않을 때
 - 5. 제32조 제1항 제2문에 반하여 신청서에 고지사항 및 근거자료가 충

분하지 않을 때

연방감독청은 금융기관이 현저한 자본참여자와 결합되어 있고(주식법 제15조) 그 기업결합관계 또는 현저한 자본참여자와 다른 기업과의 기업결합구조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1문 및 제2문 이외의 사유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2) 제1항 제1문 제3호에 규정된 자의 금융기관 경영을 위한 전문자격은 은행업무에 관한 충분한 이론적, 실무적 지식과 경영경험을 전제로 한다. 유사한 영업규모로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에서 3년간 경영활동을 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통상 금융기관 경영에 필요한 전문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제 33a 조 EC지역이외에 주소를 둔 기업에 대한 허가의 연기 또는 유보

연방감독청은 제2차 은행법 조정지침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EC집행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EC지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또는 동기업의 자기업의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 또는 유보하여야 한다.

연기 또는 유보는 동 결의시점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문 및 제2문은 동 결의가 있는 후 제출된 허가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EC이사회가 제2문의 기간을 연장할 것을 결의하는 경우 연방감독청은 그 기간연장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33b 조 다른 EC회원국 관할관청과의 협의

다른 EC 회원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공중으로부터 예금 또는 기타 상환의무 있는 금전을 수입하고 여신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때 연방감독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설립회원국 관할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다른 회원국에서 설립허가된 제53b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7항에 의

한 기업의 자기기업이 설립될 때

2. 다른 회원국에서 설립허가된 제53b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7항에 의한 기업이 소속된 모기업의 자기기업이 설립될 때
3. 신청기업이 다른 회원국에서 설립허가된 제53b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7항에 의한 기업과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지배를 받을 때

제 34 조 사망시의 대리 및 업무의 계속

- (1)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영업규칙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금융기관은 허가를 받는 소유주가 사망한 후 1년 동안은 상속인을 위한 허가없이 2명의 대리인을 통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뢰할 수 없거나 필요한 전문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연방감독청은 그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대리인은 사망후 지체없이 선임되어야 한다; 선임된 대리인은 이사로 본다. 연방감독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5 조 허가의 실효 및 취소

- (1) 허가를 얻은 후 1년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 (2) 연방감독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Verwaltungsverfahrensgesetz)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영업을 1년동안 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금융기관이 개인상인의 법적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허가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a) 제33조 제1항 제1문 제2호 또는 제3호
 - b) 제33조 제1항 제1문 제1호 또는 제4호 또는 제2문
 4. 금융기관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 특히 금융기관에 예탁된 재산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고 이 법에 규정된 다른 수단으로는 그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에 예탁된 재산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는 것으로 본다.

- a) 제10조 제7항에 의하여 계산된 책임자기자본의 1/2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때
 - b) 3년이상 연속적으로 매영업년도마다 제10조 제7항에 의하여 계산된 책임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때
- (3) 개인상인형태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33조 제1항 제1문 제4호와 관련된 제2항 제3호의 b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1년기간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48조 제4항 제1문 및 제49조 제2항 제2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이사의 해임

- (1) 제35조 제2항 제3호의 a 및 제4호의 경우 연방감독청은 허가의 취소에 갈음하여 그 사실에 관련되거나 금융기관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한 위험발생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의 법적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직무집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
- (2) 연방감독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발한 명령 또는 연방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연방감독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그 이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7 조 불법영업에 대한 조치

제32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제3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연방감독청은 그 영업의 계속을 직접 저지할 수 있다. 연방감독청은 제1문에 의한 조치를 공고할 수 있다.

제 38 조 허가의 취소 및 실효의 효과, 청산시의 조치

- (1) 연방감독청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가 실효된 때에는 연방감독청은 법인 및 인적회사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청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연방감독청의 결정은 해산결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결정은 등기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법원은 이를 상업등기부 또는 조합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 (2) 연방감독청은 금융기관의 청산에 관하여 일반적 지시를 발할 수 있다. 청산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상적인 청산을 행할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법원은 연방감독청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등기법원의 처분에 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3) 연방감독청은 허가의 취소 또는 실효를 공고할 수 있다.
- (4) 공법상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은행” 및 “저축은행” 표시의 보호

제 39 조 “은행” 및 “은행업자” 명칭

- (1) “은행”(Bank), “은행업자”(Bankier)라는 명칭 또는 “은행”이나 “은행업자”란 문자를 포함하는 명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하여 상호로서, 상호에 부가하여, 영업목적의 표시를 위하여 또는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제53b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7항에 규정된 기업의 지정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그 명칭을 사용해 온 기타 기업
- (2) “국민은행”(Volksbank) 또는 “국민은행”이란 문자를 포함하는 명칭은 등기된 협동조합의 법적형태로 운영되고 검사협회에 가입한 금융기관만이 신규로 사용할 수 있다.
- (3) 연방감독청은 금융기관의 업무종류 또는 범위에 비추어 거래상 그러

한 명칭을 사용함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시에 제1항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정할 수 있다.

제 40 조 “저축은행” 명칭

- (1) “저축은행”(Sparkasse) 또는 “저축은행”이란 문자를 포함하는 명칭은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하여 상호로서, 상호에 부가하여, 영업목적 표시하거나 광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공법상의 저축은행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그 명칭을 사용해 온 기타기업
- (2) 주택저축은행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Bausparkassen) 제1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은 “주택저축은행”(Bausparkasse) 명칭을, 검사협회에 가입한 등기된 협동조합은 “저축대출금고”(Spar-und Darlehenskasse)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 41 조 예외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관을 작출하지 아니하면서 “은행”, “은행업자” 또는 “저축은행”의 표시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은 주소지국에서 이를 사용할 자격이 있고 그 상호에 주소지국을 지칭, 명시적으로 부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9조 제2항 및 제40조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은 주소지국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주소지국명을 부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영업에 있어 상호로서, 상호에 부가하여, 영업목적의 표시를 위하여 또는 광고목적으로 제39조 제2항 및 제40조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 42 조 연방감독청의 결정

기업이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연방감독청이 이를 판정한다. 연방감독청은 그 판정을 등기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43 조 등기규정

- (1) 은행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법원에 동 허가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 (2) 기업이 제39조 내지 제41조에 의하여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호 또는 부가명칭을 사용하는 때에는 등기법원은 직권으로 그 상호 또는 부가명칭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Gesetz ber die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제142조 제1항 제2문, 제2항, 제3항 및 제143조를 준용한다. 상호 또는 부가명칭의 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과태료(Ordnungsgeld)를 부과한다;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40조를 준용한다.
- (3) 연방감독청은 금융기관의 법률관계 또는 상호의 등기 또는 변경에 관한 등기법원의 절차에 있어 신청을 행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제 3 절 정보제공과 검사

제 44 조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및 검사

- (1) 연방감독청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금융기관 및 그 기관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전반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임의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방감독청 직원은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영업소 구내에 출입

할 수 있다; 기본법(Grundgesetz) 제13조의 기본권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2. 법인의 법적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총회, 총회 또는 사원총회와 감사기관 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발언할 수 있다.
 3. 법인격을 갖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호에 규정된 회의의 소집, 집행기관 및 감사기관 회의개최일의 결정 및 의결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감독청은 집행기관 회의에 관하여 제2호에 규정된 권한을 갖는다.
- (2) 연방감독청은 사실상 금융기관으로 인정되거나 제3조의 금지업무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도 업무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 및 조직도 그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독일연방은행도 이 법률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는 금융기관 및 그 기관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전반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정보제공의무자는 그 정보제공에 의하여 자신 또는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규칙위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처해질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정보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제 44a조 국가간 정보제공 및 검사

- (1) 금융기관 또는 금전채권, 자본참여의 취득이나 자본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직접, 간접으로 동 금융기관 또는 기업에 적어도 자본지분의 25%를 소유하는 외국에 있는 기업간의 자료제공이 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기준에 의한 은행감독규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자료제공을 제한하는 법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방

감독청은 호혜주의원칙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금융기관의 자료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

- (2) 연방감독청은 다른 EC회원국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은행감독을 관장하는 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연결기준에 의한 은행감독을 위하여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사하거나 요청관청,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가 이 자료를 검사하도록 용인하여야 한다. 행정원조의 한계에 관한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über die Grenzen der Amtshilfe)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검사를 인용하여야 한다. 국제협정에 규정된 은행감독 관청의 검사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3) 연방감독청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타국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제10a조 제2항 제5문 제3호에 규정된 종속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특히 제10a조 제3항, 제13a조 제3항 및 제25조 제2항에 의한 비례합산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검사할 수 있다.
- (4) 연방감독청은 금융기관이 제2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신고한 서비스사업을 신고 접수후 1개월이내에 진출회원국의 관할관청에 통보한다.

제 44b조 현저한 자본참여자에 대한 검사

현저한 자본참여자가 금융기관의 건전하고 신중한 경영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기업결합구조가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토록 하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현저한 자본참여자는 연방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제32조 제1항 제2문 제6호 d 및 e에 규정된 근거자료를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감독청은 자신이 선임하는 회계검사인으로 하여금 제32조 제1항 제2문 제6호의 d 및 e에 규정된 근거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4 절 특별한 경우의 조치

제 45 조 자기자본 부족 또는 유동성 부족시의 조치

- (1)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방감독청은 소유주 또는 사원의 이출, 이익배당 및 여신(제19조 제1항)공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책임자기자본이 제10조 제1항 제1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그 자금의 운용이 제11조 제1문 또는 제12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1문 제2호의 경우에는 연방감독청은 당해 금융기관이 가용자금을 제12조에 규정된 재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그룹소속 금융기관의 책임자기자본이 제10a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0a조 제2항에 의한 지배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문을 준용한다.
- (2) 연방감독청은 그가 정한 기간내에 금융기관이 그 부족분을 보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는 제1항에 의한 명령에 반하는 한 이를 무효로 한다.

제 46 조 위험시의 조치

- (1) 금융기관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 특히 금융기관에 예탁된 재산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는 연방감독청은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감독청은 금융기관의 영업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고 예금수입 및 여신(제19조 제1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소유주 및 이사의 직무수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감독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는 제1문 및 제2문에 의한 지시에 반하는 한 이를 무효로 한다. 개인상인 이외의 법적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직무수행이 금지된 이사는 금지기간 동안 업무를 집행하거나 금융기관을 대표할 수 없다. 선

임계약 또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다른 규정에 의한 권리에 대해서는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사가 사원으로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금지기간 동안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2) 요구되는 법적 대표자가 결원되었거나 개인상인 형태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소유주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법규에 의하여 법원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대표권을 가지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방감독청도 제1항 제1문의 조건하에서 그러한 신청권을 갖는다.

제 46a 조 파산위험시의 조치, 대표자의 선임

- (1) 제46조 제1항 제1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방감독청은 파산을 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하여 처분행위 및 지급행위 금지명령을 발함.
2. 금융기관의 고객과의 거래를 폐쇄할 것을 명함.
3. 금융기관협회의 보험기구가 채권자에게 완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급의 수령을 금지함. 보험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지급의 수입분은 보험기구를 위하여 제1호에 의한 처분행위 및 지급행위 금지명령을 발할 당시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재산과 별도로 보존, 관리한다는 조건을 붙여 채무부담을 할 수 있다.

제1문 제1호에 의한 처분행위 및 지급행위 금지명령을 받은 후 금융기관은 동 명령을 발할 당시 진행중인 거래를 완결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협회의 보험기구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든 채권자에 대한 완제를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감소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때에는 동 거래의 완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다. 연방감독청은 그

외에 금융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 범위내에서 제1문 제1호에 의한 처분행위 및 지급행위 금지명령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문에 의한 조치가 지속되는 한 금융기관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압류 및 가처분을 할 수 없다.

- (2) 개인상인 이외에 법적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제1문 제1호에 의한 조치가 행해지고 이사의 직무집행이 금지된 경우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집행 및 대표자가 부족하게 된 때에는 금융기관소재지의 법원은 연방감독청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업무집행 및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등기부에 등기된 금융기관의 경우 법원에 의한 대표자의 해임 또는 그 대표권 및 직위소멸은 직권으로 이를 등기한다. 대표자는 그 서명을 법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문의 조건이 존속하는 한 다른 법규에 의하여 업무집행 및 대표자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기관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3)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의 대표권은 그가 대신하는 이사의 대표권에 국한된다. 그의 업무집행권은 금융기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확대되지 않는 한 파산방지 및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집행에 국한된다.
- (4)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업무집행 및 대표자는 그가 정당하게 지급한 비용의 보상 및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기관소재지의 법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업무집행 및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비용 및 보수를 정한다. 다른 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확정된 결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실행한다.
- (5) 제1항 제1문의 조치가 지속되는 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업무집행 및 대표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감독청의 신청 또는 사원의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박탈하거나 업무집행 및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내부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만이 해임할 수 있다.
- (6)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업무집행 및 대표자의 직위는 제1항 제1문에 의한 조치 및 그 자가 대신하는 이사의 직무집행 금지명령이 철회되는 때에 소멸한다. 제1항 제1문의 조치만 철회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

여 선임된 업무집행 및 대표자의 직위는 다른 법규에 의하여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기관이 업무집행 및 대표자를 선임하고 필요하다면 제 32조에 의한 허가가 부여된 때에 종료한다.

(7) 공법상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6b 조 파산신청

이사와 개인상인의 법적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그 소유주는 금융기관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상태로 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방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들이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시 파산개시를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문에 의한 신고의무로 동 신청의무에 같음한다. 금융기관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는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경우에 개시한다. 금융기관의 재산에 대한 파산개시신청은 연방감독청만이 할 수 있다. 파산법원은 연방감독청의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화의법 제46조 및 제84조와 파산법 제107조 제1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 46c 조 기간의 계산

파산법 제31조 제2호, 제32조, 제32a조 제2문, 제33조, 제55조 제3호, 제183조 제2항, 상법 제342조 및 유한회사법 제32b조 제1문에 의하여 파산개시일로부터 계산하는 기간과 화의법 제75조 제2항 및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화의절차 개시일로부터 계산하는 기간은 제46a조 제1항에 의한 조치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47 조 지급유예, 은행거래 및 증권거래소 거래의 정지

(1) 금융기관의 경제적 파탄으로 인하여 전체 경제, 특히 일반적 지급거래의 정상적인 수행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방 정부는 법규명령으로써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채무이행의 유예를 인정하고, 유예기간중 금융기관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 및 가처분과 화의절차 또는 파산을 불허할 것을 명함.
 2. 금융기관의 고객과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대고객거래에 있어서 지급 및 대체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명함; 이 경우 연방정부는 동 명령을 일정한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군 및 특정한 은행 업무에 한정 할 수 있다.
 3. 증권거래소의 일시폐쇄를 명함.
- (2) 연방정부는 제1항의 조치를 행하기 전에 독일연방은행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연방정부가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행할 경우에는 이로 이하에 기간 및 기일에 관하여 민법, 상법, 회사법, 어음법, 수표법, 소송절차법 분야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법규명령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 48 조 은행거래 및 증권거래소 거래의 재개

- (1) 연방정부는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및 증권거래소의 일시적 폐쇄후 독일연방은행의 의견을 들어 지급거래, 대체거래 및 증권거래소 거래의 재개에 관한 규정을 법규명령으로써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정부는 특히 예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됨을 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일시적 폐쇄후에 수입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동 제한을 가할 수 없다.
- (2) 제1항 및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발한 법규명령은 이전에 폐지되지 않는 한 제정후 3개월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제 5 절 집행력, 강제수단, 비용 및 수수료

제 49 조 즉시집행력

연방감독청의 조치에 대한 이의 및 항고소송은 제2b조 제1항 제5문 및

제2항 제1문, 제12a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b 및 제4호, 제36조, 제45조, 제46조, 제46a조 제1항, 제46b조의 경우와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4a조 제2항 제1문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는 연기효과를 가질 수 없다.

제 50 조 강제수단

- (1) 연방감독청은 법률상의 권한에 의하여 발한 명령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강제집행법(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에 규정된 강제수단을 실행할 수 있다. 연방감독청은 공법상의 법인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강제수단을 실행할 수 있다.
- (2) 강제금(Zwangsgeld)의 최고한도는 5만DM으로 한다.

제 51 조 비용 및 수수료

- (1) 연방감독청의 비용이 수수료 또는 제3항에 의한 특별수입에 의하여 충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90%를 연방정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비용은 영업규모에 비례하여 개별금융기관에 할당되며 행정강제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감독청이 징수한다. 할당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방재무장관이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 (2) 연방감독청은 제32조, 제34조 제2항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100DM 이상 10,000DM 이하의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수수료 금액은 결정에 필요한 인건비와 관련기업의 영업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
- (3) 보호예수검사(제30조), 제38조 제3항에 의한 공고, 제4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4b조 제2문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 또는 감독자의 선임으로 인하여 연방에 발생하는 비용은 관련기업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방감독청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10a조 제3항, 제13a조 제3항 및 제25조 제2항에 의한 비례합산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4a조 제3항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로 인하여 연방에 발생하는 비용은 비례합산의무가 있는 지배금융기관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방감독청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 4 장 특 칙

제 52 조 특별감독

금융기관이 다른 국가의 감독을 받는 경우 그 감독은 연방감독청의 감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3 조 외국기업의 지점

- (1)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이 법의 시행지역내에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동 기업이 제1문에 규정된 지점을 다수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 (2) 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 법을 적용한다.
 1. 동 기업은 이 법 시행지역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연인으로서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갖는 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된 자는 이사로 본다. 선임된 자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은 그가 영위하는 영업 및 그 영업에 사용하는 기업재산에 관하여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고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회계보고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범위내에서 상업장부에 관한 상법규정을 적용한다. 매년도 재산목록(Vermögensübersicht)의 대변에는 동 기업이 그 금융기관에 제공한 영업자본금과 자기자금 보장을 위하여 그 금융기관에 유보된 영업잉여금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차변금액을 초과하는 대변금액의 잔액 또는 대변금액을 초과하는 차변금액의 잔액은 재산목록의 말미에 총괄하여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매 영업년도의 종료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재산목록은 수지계산서(Aufwands-und Ertragsrechnung) 및 부속서류와 합하여 연말결산서(제26조)로 본다. 연말결산서의 검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 k를 준용하되 검사인은 이사가 선임한다. 금융기관의 연말결산서와 함께 동 기업의 동일영업년도 연말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금융기관의 책임자기자본은 동 기업이 그 금융기관에 제공한 영업자본금과 자기자금 보장을 위하여 그 금융기관에 유보된 영업잉여금으로서 제25조에 의한 월례보고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의 총액으로 하되 차변 상각잔액(aktiver Verrechnungssaldo)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제10조 제5항에 의한 항의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제10조 제5a항에 의한 후순위채무를 부담한 대가로 그룹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제3자가 납입한 자본금은 제10조 제5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조 제5a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약정이 전체기업에 관련될 경우 책임자기자본으로서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제2문에 규정된 자기자본구성부분의 총액은 제1문에 의한 책임자기자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제5a항에 의한 후순위채무의 부담으로 인하여 납입된 자본금은 제1문에 의한 책임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책임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계산 당시에 있어 최근의 월례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5. 동 기업의 각 지점이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협약에 의하여 상호주의원칙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절할 수 있다. 외국에 있는 동 기업에 대한 은행감독을 관장하는 관청이 동 기업에 대한 은행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 허가를 취소한다.
 6. 제3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 금융기관을 법인으로 본다.
- (3) 제1항에 규정된 지점의 영업활동에 관계되는 소송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1조에 의한 소재지의 재판관할을 배제할 수 없다.

-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입법기관이 연방법률에 의하여 동의한 국제협정에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3a 조 외국기업의 사무소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이 법의 시행지역내에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쇄할 때에는 동 사무소의 장이 이를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3b 조 다른 EC회원국에 주소를 둔 기업

- (1) 다른 EC회원국에 주소를 둔 기업으로서 공중으로부터 예금 또는 기타 상환의무 있는 금전을 수입하고 여신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은 설립회원국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그 감독하에 있으며 그 업무에 대한 인가가 있으며 제2차 은행법 조정지침법과 지불능력지수(Solvabilitäts-koeffizient)에 관한 1989년 12월 18일자 EC지침법 89/647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 법의 시행지역내에서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연방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점 설치 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제1조 제1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업무와 제1조 제3항 제1문 제2호 내지 제11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상사정보와 대여금고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업법 제14조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2) 연방감독청은 이 법 시행지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설립회원국 관할관청이 동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송부해 온 근거자료의 접수후 2개월 이내에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그 사업에 관한 소정의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제3항에 의하여 공익상 동 지점이 계획한 사업의 수행에 적용되는 조건을 부가하여야 한다. 연방감독청의 통지를 접수한 후 늦어도 제1문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 (3)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지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1조, 제14조, 제

18조 내지 제20조, 제23조, 제23a조, 제24조의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제25조, 제30조,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 제43조 제2항 및 제3항,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44a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46조 내지 제5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동일한 기업의 하나 또는 수개의 지점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항 제1문에 의한 서비스제공에 관해서는 제3조, 제23a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4) 연방감독청은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지점의 유동성이 불충분함을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부족분을 보충하도록 명한다. 지점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방감독청은 설립회원국 관할관청에 이를 통지한다. 설립회원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그 조치가 부족분의 보충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연방감독청은 설립회원국 관할관청의 통지를 받은 후 제45조 내지 제46b조 및 제50조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긴급한 경우 연방감독청은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제45조 내지 제46b조 및 제50조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감독청은 지체없이 이를 EC집행위원회와 설립회원국의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방감독청은 EC집행위원회가 설립회원국의 관할관청과 연방감독청의 의견을 들어 조치의 변경 또는 철회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 (6) 설립회원국 관할관청은 연방감독청의 통보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지점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검사할 수 있다.
- (7) 다른 EC회원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제1조 제1항 제2문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중개기관인 기업은 단일 금융기관의 자기업 또는 수개의 금융기관의 공동 자기업이고 정관상 이러한 영업이 인정되어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법의 시행지역내에서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연방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점설치 또는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제1조 제1항 제2문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업무와 제1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11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상사정보와 대여금고를 제공할 수 있다.

1. 당해 모기업이 자기업이 주소를 두고 있는 EC회원국에서 금융기관으로서 허가받았을 때
 2.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설립회원국에서도 영위할 것
 3. 당해 모기업이 적어도 자기업의 의결권의 90%를 보유할 것
 4. 당해 모기업이 자기업의 신중한 경영에 관하여 설립회원국 관할관청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회원국 관할관청의 동의를 얻어 자기업이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
 5. 모기업에 대한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에 자기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제1문의 규정은 제1문에 규정된 기업의 자기업으로서上記조건을 충족하는 자기업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2문 내지 제6문을 준용한다.

제 53c조 EC지역외의 국가에 주소를 둔 기업

연방재무장관은 법규명령으로써 다음 각호의 행위를 행할 수 있다.

1. EC와 EC비회원국간의 협정에 의한 거주권 또는 서비스거래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EC회원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기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EC지역외에 주소를 둔 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함.
2. 상호주의원칙이 보장되어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EC지역외에 주소를 둔 기업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면제하고 제53b조의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토록 함.
 - a) 당해기업이 주소지국에서 적용이 면제되는 부문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원칙에 따라 감독을 받는 경우
 - b) 국내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의 지점이 동 국가에서 내국인대우를 받는 경우
 - c) 주소지국의 관할관청이 연방감독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간의 협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경우

제 53d조 EC집행위원회에 대한 통보

- (1) 연방감독청은 EC집행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한다.
1. 제1조 제1항 제2문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은행업에 대한 허가
 2. EC지역외에 주소를 둔 모기업의 자기법인 기업에 대한 제32조 제1항에 의한 허가; 이 경우 통지시에 콘체른의 조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금융기관이 EC지역외에 주소를 둔 모기업의 자기법으로 되게 하는 자본 참여
 4. 연방감독청이 제24a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신고내용을 진출회원국의 관할관청에 송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른 EC회원국에서 지점이 설치되지 못한 경우의 횡수와 내역
 5. 제53b조 제4항 제3문 및 제5항 제1문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의 횡수와 내역
 6. 금융기관이 EC비회원국에서 지점설치, 자기기업의 설립 또는 은행업 및 제1조 제3항 제1문 제2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
 7. 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EC지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기업의 자기법인 기업의 허가신청
 8. 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b조에 의하여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참여계획으로서, 이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EC지역외에 주소를 둔 기업의 자기법으로 자본참여계획
- (2)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의한 통보의무는 EC집행위원회가 EC지역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이 EC비회원국에서 EC가 당해 비회원국의 기업에게 부여하는 정도의 시장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EC지역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이 당해 비회원국에서 내국인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당해 비회원국과 EC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시장참여 및 내국인대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거나 당해 비회원국에 주

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허가신청이 제33a조에 의하여 더 이상 연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문과 관련된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통보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형벌규정, 벌금규정

제 54 조 금지업무, 무허가행위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3조 및 제53b조 제3항 제1문 또는 제2문과 관련된 제3조에 의하여 금지된 업무를 행하는 자
 2. 제32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
- (2) 과실범에 대하여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 55 조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신고에 관한 의무의 위반

- (1) 금융기관의 이사로서 또는 개인상인의 법적형태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의 소유주로서 제46b조 제1문 또는 제53b조 제3항 제1문과 관련된 동 조항에 반하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를 연방감독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2) 과실범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 56 조 규칙위반

-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규칙위반이 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항 또는 제3항 및 제53b조 제3항 제1문과 관련된 동조항에 반하여 정보의 제출을 해태, 지체하거나 불완전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출한 자, 장부 또는 서류의 제

- 출을 해태, 지체하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한 자 또는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후문, 제3항 제1문 및 제53b조 제3항 제1문과 관련된 동 조항에 규정된 권한행사를 인용하지 아니하는 자
2. 제24조 제4항 제1문 및 제2문, 제25조 제4항 제1문 및 제3문, 제30조 제2항 제1문 및 제2문, 제31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 제4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또는 제48조 제1항에 의한 법규명령이 특정한 구성요건에 관하여 과태금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동 법규명령을 위반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b조 제1항 제5문, 제12a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및 제53b조 제3항 제1문과 관련된 동 조항, 제32조 제2항 제1문, 제44조 제1항 제3호 전문,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2문 및 제53b조 제3항 제1문과 관련된 동 조항, 제46a조 제1항 제1문 및 제53b조 제3항 제1문과 관련된 동 조항 또는 제45조의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2문 또는 제46a조 제1항 제1문과 관련된 제53b조 제4항 제3문에 의하여 발한 집행력있는 명령을 위반한 자
 4.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의 b 제1항 제1문 내지 제4문 또는 제6문 또는 제4항, 제10조 제8항 제1문 또는 제2문, 제12a조 제1항 제3문, 제13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2문, 제2항 제5문 또는 제6문, 제13a조 제4항 제1문, 제14조 제1항 및 제53b조 제3항 제1문과 관련된 동 조항, 제15조 제4항 제4문 후단, 제16조 제1문 또는 제2문, 제24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1항 제6호 내지 제3호 및 제53b조 제3항 제1문과 관련된 동 조항, 제24a조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24a조 제4항에 의한 법규명령과 관련된 동 조항, 제28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53a조에 의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해태, 지체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 제13조 및 제13a조에 의한 신고의무에 있어서는 거액여신이 책임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제10조 제7항 제5문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감사보

고서, 제25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과 관련된 동 조항 또는 제2항 제1문 및 제53b조 제3항 제1문과 관련된 동 조항에 의한 월례보고서, 제2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연말결산서, 검사보고서, 콘체른결산서, 콘체른영업보고서 또는 콘체른결산 검사보고서의 제출의무의 이행을 해태, 지체 또는 불완전하게 하거나 월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6.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향의증권 또는 자기후순위채무 취득금지에 관한 제10조 제5항 제5문 및 제10조 제5a항 제6문과 관련된 동 조항, 투자제한에 관한 제12조 제1항, 현저한 자본참여에 관한 제12조 제5항, 기업관계창설에 관한 제12a조 제1항 제1문, 거액여신한도 준수에 관한 제13조 제3항 또는 제4항 또는 제13a조 제4항 제2문 또는 여신근거자료에 관한 제18조 제1문 및 제53b조 제3항 제1문과 관련된 동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고의 또는 과실로 제23a조 제1문 또는 제2문 및 제53b조 제3항 제1문 또는 제2문과 관련된 동 조항에 반하여 예금보험제도 회원자격 결여사실의 고지를 해태, 규정된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3a조 제3문 및 제53b조 제3항 제1문 또는 제2문과 관련된 동 조항에 반하여 탈퇴사실의 통지를 해태 또는 지체한 자
 8. 제36조 제1항 또는 제46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연방감독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소유주 또는 이사로서 직무를 계속한 자
- (2) 규칙위반은 10만DM 이하의 과태료(Geldbuße)에 처한다.

제 57 조 삭제

제 58 조 삭제

제 59 조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법인 또는 인적회사의 법적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과 이 법의 시행지역

내에서 지점의 설치 또는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 53b조 제1항 제1문, 제7항 제1문에 규정된 기업에 있어서 법률, 정관 또는 조합계약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이사가 범죄 또는 규칙위반을 범한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규칙위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제30조를 적용한다.

제 60 조 관할 행정관청

연방감독청은 규칙위반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행정관청으로 본다.

제 6 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제 61 조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허가

이 법 시행당시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의한 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제1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62 조 경과규정

- (1) 신용조직에 관한 기존의 법률규정 및 중전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일정한 종류의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이 법 이외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2) 연방의 법률규정에 규정된 은행감독관청의 직무 및 권한은 연방감독청으로 이관된다.
- (3) 화폐개혁법(Umstellungsgesetz) 제35차 시행령에 의한 재배치금전취급기관으로의 인정, 전환계정 및 구은행계정의 확인, 유가증권정리법

(Wertpapierbereinigungsgesetz) 및 독일외채정리법(Bereinigungsgesetz für deutsche Auslandsbonds)에 의한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주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이 법 시행전에 생긴 대출채권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당초부터 양도 및 재취득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경우 동 대출채권과 관련되는 의무에 관하여는 제1조 제1항 제2문 제7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38조, 제45조, 제46조 및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당시 존재하는 자신의 채무이행 보증장치를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989년 12월 31일 당시 공익주택사업자로 인정되어 있었고 1989년 12월 31일 현재 적용되는 주택공익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었던 업무만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그 고유업무에 속하는 은행업무에 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제32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
2. 은행업무의 영위에 관하여 제32조 제1항에 의한 허가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 제10a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3조 제2항 제2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9년 12월 31일 당시 국가 주택정책기관으로 인정되어 있던 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주로 은행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한 제1문 제1호를 준용한다. 결산검사인 또는 회계법인은 당해 기업이 기존의 업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등록조합이 그 회원에 대한 주택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게 되거나 고유한 업무가 아니거나 주로 은행업무를 영위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방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제23a조의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민영주택저축은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63 조 삭제

제63a조 [통일조약(Einigungvertrag)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 (1) 삭제
- (2) 삭제
- (3) 동베를린을 포함한 독일민주공화국(DDR)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이 1990년 7월 1일 당시 제1조 제1항의 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던 경우 제32조에 의한 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4) 연방감독청은 특별한 이유, 특히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법이 아직 연방법에 편입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종류별로 이 법에 의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5) 연방행정법원은 원고가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이 법 기타 법률에 의한 연방감독청의 결정 또는 연방감독청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에 있어 제1심 및 최종심으로 재판한다.
- (6) 제9조 제1항 제3문 제3호, 제46a조 제1항 제1문, 제3항 제2문, 제46b조 제1문 내지 제5문, 제46c조 및 제4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의 경우 파산절차는 공동집행법(Gesamtvollstreckungsordnung)에 의한 절차로 대신하고 공동집행은 연방감독청의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64 조 독일연방체신청 우편은행

독일연방체신청 체신은행(Postbank)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그가 영위하는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48조에 의한 조치만 적용을 받는다. 1996년 1월 1일부터는 제32조의 허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독일연방채신청 채신은행이 연방의 특별재산인 한 제23a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4a 조 기존금융기관의 투자의 한도

- (1) 금융기관이 제12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3년 1월 1일 현재 동 조항에 규정된 투자한도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연방감독청은 제1항의 기한내에 책임자기자본에 대한 제12조에 의한 투자의 비율이 축소된 경우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3)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그룹이 1993년 1월 1일 현재 제12조 제5항 제1문 또는 제2문에 규정된 자본참여 한도를 준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64b 조 기존금융기관의 자본금

- (1) 공중으로부터 예금 또는 기타 상환의무가 있는 금전을 수입하고 여신 업무를 영위하며 1993년 1월 1일 현재 제32조에 의한 허가가 부여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제33조 제1항 제1문 제1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시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금액을 제외한 납입자본금, 조합지분 또는 적립금을 500만 ECU상당금액에 미달되게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기자본은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금액을 미달할 수 없다. 1990년 12월 31일 이후에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책임자기자본이 허가 당시의 금액을 미달할 수 없다.
- (2)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 허가취소에 관한 제33조 제1항 제1문 제1호 후단과 관련된 제35조 제2항 제3호의 b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 규모에 관한 제33조 제1항

제1문 제1호 후단을 적용한다.

- (4) 제1항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는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된 금융기관의 책임자기자본은 당해금융기관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위협에 없는 경우 연방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500만ECU 상당금액에 미달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합병금융기관의 책임자기자본은 적어도 합병한 금융기관이 합병당시 보유하고 있던 책임자기자본의 총액에 달하여야 한다.
- (5) 연방감독청은 금융기관에게 제1항 제2문 또는 제3문 또는 제4항 제2문에 의한 자본요건을 이행하거나 그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동 자본금요건을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에 관한 제35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한다.

제 65 조 시행 (삭 제)

제4차 개정에 따른 신용조직법의 신조문

연방재무장관은 신용조직법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적용될 조문으로 연방관보(Bundesgesetzblatt)에 공고할 수 있다.

제4차 개정법의 시행

이 법은 제2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제43호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제1조 제10호, 제15호 및 제17호는 1993년 7월 1일부터 제1조 제4호의 a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Ⅲ. 信用組織法에 따른 特定義務의 免除에 관한 命令

[Verordnung über Befreiung von bestimmten Pflichten nach dem Gesetz ber das Kreditwesen(Befreiungsverordnung-BefrV)]

제 정 : 1985. 8. 20(BGBI. I. S. 1713)

1985년 7월 11일 公布된 신용조직법 제31조 제1항 제1문 제1호(BGBI. I. S. 1472)와 1985년 7월 28일의 은행감독의 권한 委任에 관한 命令(BGBI. I. S. 1255) 제1조를 근거로 독일연방은행의 청문절차를 거쳐 제정함.

제 1 장 與信의 申告

제 1 조 동법 제10조 제8항 제2문에 따른 공제 의무 있는 與信의 변경신고

신용조직법 제10조 제8항 제1문에 따라 신고한 여신은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조건의 변경이 금리연동부 이자율에 제한되는 경우 본법 제10조 제8항 제2문에 따라 재신고할 필요없다.

제 2 조 거액여신 및 기관여신의 변경신고

- (1) 이미 신고된 대규모여신 및 기관여신은 그 여신비용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조직법 제13조 제1항 제2문 및 제16조에 따라 재신고할 의무가 없다.
- (2) 신고하고자 하는 총액의 증액으로 책임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기 신고의 거액여신은 同法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금액이 위의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만 同法 제13조 제1항 제2문에 의하여 재신고하여야 한다; 同法 제13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대규모여신의 재신고

고 의무에 있어 그것이 최후로 신고된 금액의 20% 이상씩 與信의 증가로 인한 것인 때에도 동일하다.

- (3) 제1항 및 제2항은 신용조직법 제13a조에 따른 금융기관그룹의 대규 모여신에 대하여도 準用된다.

제 3 조 同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자본참가의 신고

신용조직법 제19조 제1항 제1문 제6호 소정의 자본참가는 同法 제14조 제1항에 따른 申告義務가 없다.

제 4 조 同法 제16조에 따른 機關與信의 증가신고

信用組織法 제16조에 따라 이미 신고한 여신은 최후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20% 씩 증가된 경우에만 再申告하여야 한다.

제 5 조 同法 제16조 제1문 제2호에 따른 責任自己資本 對比與信의 申告 義務

- (1) 代替決濟銀行(Girozentralen) 및 信用組合中央金庫(Zentralkassen) 는 그의 여신이 업무적으로 연결된 同法 제10조 제2항 제1문 제4호 소정의 私法상의 貯蓄銀行 또는 信用組合에 대해 이루어지는 때에 한 하여 同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여신신고 의무로 부터 면제된다.
- (2) 제1항은 독일신용조합은행의 신용조합중앙금고에 대한 與信에 대하여도 準用된다.

제 2 장 同法 제24조에 따른 申告義務

제 6 조 同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資本參加의 申告

信用組織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본참가액의 양수 또는 양도시 그 자본참가액이 10,000DM이하일때 금융기관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이 자본금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同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용조합의 자본변경신고

조합원의 입사 또는 탈퇴, 조합원의 出資持分の 取得 및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신용조합의 자본변경은 다음의 경우에만 신용조직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본변경에 의해 一人 조합원의 持分이 전조합원 출자지분의 5%를 초과하거나
2. 자본변경에 의해 이미 신고한 一人 조합원의 지분이 신고직전에 비하여 총조합원 출자지분의 2%이상씩 증가되었을 경우

제 8 조 同法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점에 대한 申告義務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쇄는 그 지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조직법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1. 지점이 6개월 내의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설치, 이전, 폐쇄되는 때 또는
2. 지점이 오로지 은행업무 이외의 업무만을 영위하는 경우.

제 9 조 同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비은행업무의 신고의무

(1) 비은행영업의 업무인수는 해당영업행위로서 250,000DM을 초과하는 연매출액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조직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다. 비은행업무의 영업행위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동 영업행위의 개시가 제1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었던 때에 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영업행위의 개시 또는 중단은 신용조직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다.

1.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有價證券 및 資本參加의 賣買와 국내에서의 읍

선 거래 참여

2. 어음, 수표, 借邊記帳, 支給指示證券 및 그와 유사한 증권의 회수와 여행 자수표의 판매
3. 주화, 메달, 가공되지 않은 귀금속의 매매
4.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외화의 賣買
5. 개인금고 및 대여금고의 임대와 폐쇄보관 업무
6. 민법 제795, 제808a조에 따른 국가의 승인을 요하는 債券의 발행
7. 신용조직법 제1조 제1항 제2문 제1호에 따른 고유업무가 아닌 금전 소비대차에 따른 채무의 負擔과 어음, 수표의 배서유통에 따른 채무의 부담
8. 주택저축계약 및 보험계약의 중개, 유가증권계약, 금전소비 대차계약, 보증계약, 그밖의 담보계약, 자산운영 자문 및 재산관리계약
9. 대출관리와 타금융기관을 위한 담보제공
10. 소속직원에 대한 음식료판매

제 10 조 同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영업관리자의 자본참여신고

금융기관의 영업관리자의 자본참가 금액의 변동은 그 금액이 자본금의 5%를 초과하거나 그 변동으로 인하여 다수 자본참가 지위를 획득하거나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조직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월례보고서의 제출

제 11 조 同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월례보고서 제출의무

- (1) 다음의 금융기관은 제2항을 조건으로 신용조직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월례보고서 제출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1. 투자신탁회사
 2. 유가증권 집중보관은행

3. 신용조직법 제1조 제1항 제2문 제8호에 따른 은행업만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2) 연방감독청은 제1항에서 열거한 특정의 금융기관에 대해 은행감독에
중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월례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4 장 종결규정

제 12 조

삭 제

제 13 조 베를린 조항

본 命書는 제3차 과도기법률 제14조와 신용조직법 제64조에 따라 베를
린州에서도 적용된다.

제 14 조 시 행

본 命書는 제2항과 제3항을 조건으로 公告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방은행감독청

IV. 등기된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의 責任自己
 자본의 計算에 있어 附加額의 確定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Festsetzung eines Zuschulages für
 die Berechnung des haftenden Eigenkapitals von
 Kreditinstituten in der Rechtsform der eingetragenen
 Genossenschaft(Zuschlagsverordnung-ZuschlagV)]

전면개정 : 1985. 7. 11(BGBI. I. S. 1472)

개 정 : 1989. 12. 22(BGBI. I. S. 2408)

1961년 7월 10일의 신용조직법(BGBI. I S. 881) 제10조 제2항 제3호
 와 1962년 1월 19일 연방감독청의 명령제정권 위임을 위한 명령 제1조를
 근거로 독일연방은행과 협의하여 제정함.

제 1 조

- (1) 등기된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의 책임자기자본의 계산에 있어 附加額은 다음의 금액으로 정한다.
1. 유한의 추가출자의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책임총액의 3/4
 2. 무한의 추가출자의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출자지분총액의 2배
- (2) 영업년도의 종료로 탈퇴하는 조합원의 책임총액과 출자지분은 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되지 아니한다.
- (3) 부가액은 다음의 曆年에 따라 각각 부가액을 공제하고 존재하는 책임 자기자본(신용조직법 제10조 제2항 제1문 제3호, 제3항, 제7항)의 다음의 백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985년도: 50%	1991년도: 35.0%
1986년도: 47.5%	1992년도: 32.5%
1987년도: 45.0%	1993년도: 30.0%
1988년도: 42.5%	1994년도: 27.5%
1989년도: 40.0%	1995년 이후: 25.0%
1990년도: 37.5%	

제 2 조

등기된 조합의 형태인 신용조합중앙금고의 경우 그 附加額은 책임총액의 35%에 달할 수 있으나 부가액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책임자본(신용조직법 제10조 제2항 제1문 제3호, 제3항, 제7항)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제1조 제2항은 이 경우 적용된다.

제 3 조

본 命命은 1952년 1월 4일의 제3차 과도기법률(BGBl. I S. 1) 제14조와 신용조직법 제64조에 따라 베를린주에도 적용된다.

제 4 조

본 명령은 公布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연방은행감독청

V. 抵當銀行法

[Hypothekbankgesetz(HypBkG)]

제정 : 1899. 7. 13(Reichsgesetz S. 375)
개정 : 1988. 6. 8(Bundesgesetz S. 710)

제 1 조

저당은행은 다음의 영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私法上的 금융기관이다.

1. 국내 토지부동산의 담보대출 및 취득한 저당권을 근거로 저당채권(Hypothekpfandbriefe)을 발행하는 행위
2. 국내의 단체와 공공법인에 대한 貸出 또는 위의 단체 및 공공법인에 의한 완전한 담보제공을 인수하는 대가로 대출을 보증하는 행위 그리고 취득한 債權을 근거로 債券을 발행하는 행위

제 2 조

- (1) 저당은행은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의 형태로서만 영위될 수 있다.
- (2) 저당은행의 최저액면자본금은 800만 DM이다.

제 3 조

연방은행감독청(이하 감독청)은 본법 규정 및 신용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저당은행에 대한 감독을 한다.

제 4 조

감독청은 동 은행의 영업이 본법, 정관 및 그밖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시를 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 5 조

(1) 저당은행은 제1항에서 열거한 영업이외에도 다음의 영업만을 영위할 수 있다.

1. 유럽공동체 회원국에 대한 도이취 마르크화 대출 또는 위의 회원국에 의한 완전한 담보제공의 인수대가로 보증을 공여하는 행위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해 취득한 債權을 동 대출총액이 제1항 제2호에서 제한한 대출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행위
2. 제11조 및 제12조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국내의 토지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대출하는 행위 및 국내의 토지부동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채무증서를 取得, 讓渡, 擔保貸出, 抵當을 설정하는 행위. 단, 토지부동산의 賣渡 價額의 3/5을 초과하기 때문에 債券의 상환에 사용될 수 없는 저당권설정 채권의 총액이 저당이 설정된 대출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2a. 유럽공동체의 타회원국에 소재하는 토지부동산을 제11조의 한도내에서 담보대출 총액이 책임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담보대출하는 행위
3. 信用去來 및 貸株를 제외한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을 賣買하는 행위
4. 저당대출(지방자치단체 대출 및 제1호, 2호 및 2a호에 따른 대출)의 공여목적으로
 - a) 利子附 또는 利子預金으로서 외부자금을 예치하는 행위
 - b) 대출을 공여하고 이러한 대출을 위한 보증을 주문하는 행위
 - c) 저당증권 또는 지방채권면에 그 償還을 명시하지 아니한 無記名債券의 발행행위

단, 대출자에 대해 그 담보를 위한 기명저당증권 또는 기명지방채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예금, 債券 및 대출의 합산총액은 책임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타인을 위한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행위

6. 어음, 지급제시 증권 및 그와 유사한 증권의 회수를 주선하는 행위
7. 다음 대상에 대한 자본참가지분을 인수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 a) 자본참가가 제1조에 따라 영위하는 영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경우 국내의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대한 자본참가, 단 개별적인 자본참가는 자본참가 대상기업의 全持分 액면총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 b) 외국의 대물담보대출금융기관(Realkreditinstitut) 또는 외국의 주택 건설회사에 대한 자본참가, 단 개별적인 자본참가는 자본참가 대상기업의 총지분 액면총액 또는 그와 유사한 출자규모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자본참가총액은 책임 자기자본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c) 자본참가가 제1조에 따른 영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경우, 조합원이 무한적인 추가출자를 부담하지 않는 국내의 등록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자본참가
모든 형태의 자본참가 총액은 책임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협동조합의 경우 인수한 출자지분액과 책임기금액은 자본참가액에 산입된다. 감독청은 만약 자본참가의 종류와 자본참가의 목적상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호 a와 b에서 정한 자본참가의 한도액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 (2) 연방재무장관은 유럽공동체 회원국간 자본거래의 장애를 제거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방재무장관의 양해아래 命命으로써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백분률에서 25%까지 감액할 수 있다.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입법기관이 承認하고 영업의 동등한 지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국가도 유럽공동체 국가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동 貸出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된 최고한도액으로 산입된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유럽 경제공동체, 유럽철강 및 석탄공동체, 유럽 원자력공동체와 유럽 투자은행도 국내의 단체와 公共法人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 (3) 저당은행은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이 가능한 금전을 이용할 수 있다.

1. 적절한 금융기관에의 예금
 2. 저당증권 및 지방채의 매입
 3. 다음의 매입
 - a) 독일연방은행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요청에 따른 어음, 수표,
 - b) 債券, 채무증서, 채무자가 연방정부, 연방정부의 특별회계 또는 州 정부인 국고증권, 재정증권
 - c) 이자지급과 상환에 있어 위의 b)에서 열거한 기관이 보증한 債券
 - d) 그 밖에 증권거래소에 正上場된 債券
 4. 저당은행의 지급지시에 의한 유가증권 담보대출

위의 지급지시는 담보능력 있는 증권 및 대출의 허용 최고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
- (4) 저당은행의 토지 부동산 취득은 오로지 저당의 손실보전과 영업장소의 확보 및 직원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 5a 조

저당은행이 아닌 私法상의 금융기관은 저당증권이라는 표시나 그 밖에 저당증권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표시의 債券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承認으로 船舶抵當證券의 표시로 발행되었거나 발행되는 債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 (1) 유통되고 있는 저당증권의 총액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여 항상 최소한 동일한 저당권 설정액과 이자소득으로 담보넣어 있어야 한다(原擔保). 원담보로서 다음에 사용수익할 수 있다.
 1. 화폐개혁법 제30차 施行令 제1조, 제2조 제1항과 화폐개혁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화폐조정채권(Ausgleichsforderungen)과 화폐개혁보완법(Umstellungsergänzungsgesetz) 제54조에 따른 담보청구권
 2. 화폐개혁의 완화 및 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담보

채권

3. 독일 해외채무에 관한 1953년 2월 27일 협정의 시행을 위한 법률 제 32조와 제44조 제3항에 따른 상환채권

신탁관리인이 저당증권을 제30조 제3항에 따라 발행하고 은행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유통되는 것으로 본다; 저당증권이 보관을 위해 신탁관리인에 반환되는 경우 보관기간동안은 유통거래기간으로부터 제외된다.
- (2) 농업용 토지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위와 같이 사용수익되는 한 원담보는 최소한 채무자의 연 분할상환액이 저당설정액의 100분의 0.25이상인 분할상환저당권의 절반이상으로 존속하여야 한다. 그러한 저당이 기한이전에 상환되는 경우에 은행은 그 대신에 예정된 상환기일까지 다른 종류의 저당을 담보로 설정하여야 한다.
- (3) 저당권의 손실보전을 위해 은행이 취득한 토지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일 경우 은행은 이 저당권을 저당증권의 담보로써 그 토지부동산 취득전에 은행에 의해 담보로 산정한 바 있는 가액의 최고 절반까지 산정할 수 있다.
- (4) 제1항에서 명시한 원담보는 다음의 가액으로 대체될 수 있다(代替擔保).
 1. 제5항 제3호의 b와 c에서 열거한 종류의 가액
 2. 독일연방은행과 적절한 금융기관의 예금
 3. 현금
 4. 화폐개혁법의 제30차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화폐개혁보완법률 제48조 제2항에 따른 화폐조정채권

이 경우 債券이 담보로 설정되는 가액은 최고 액면가의 5%만큼 증권거래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 (5) 제4항에 따른 대체담보는 1965년 12월 31일까지는 저당증권 거래총액의 20%를, 1966년 1월 1일부터는 동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

- (1) 저당은행의 저당증권과 지방채의 유통총액은 책임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용조직법 제10조에 따른 책임자기자본의 적정성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전이 저당은행에 의해 예금 또는 차입금으로 預入되거나 債券이 발행되는 경우, 예금주(대출자)에게 그의 채권확보를 위해 記名抵當證券 또는 記名の 地方債를 交付하지 않는 때의 그 금전과 債券은 제1항에 따른 저당증권 및 지방채의 발행한도액에 산입된다.

제 8 조

- (1) 저당증권의 券面에는 저당은행과 저당권자와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 특히 그 해약가능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2) 저당은행은 최고 10년간 저당증권의 상환지급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저당증권자는 解止權을 행사할 수 없다.

제 9 조

- (1) 저당증권은 다음의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 a) 저당증권의 기한이 저당은행의 담보대출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때
 - b) 새로이 발행되는 저당증권의 적정한 부분에 대한 저당증권의 상환이 늦어도 설정기환의 1/3 경과 후에 시작될 것이 예상되는 때
계약조건에서 정한 이자지급때로부터 원래 합의한 만기까지의 기간을 저당증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제1항 b) 소정의 적정부분이라 함은 신규발행 저당증권에 대한 지분이 15년 이상의 기한을 갖는 신규발행 저당증권과 합쳐 최소한 40%를 초과하는 경우 동 所에서 정한 저당증권의 持分을 말한다.

- (2) 상환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저당증권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10 조

부동산 저당증권을 위한 담보로서는 오직 제11항 및 제12항에서 열거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당증권만이 용익될 수 있다.

제 11 조

- (1) 삭제
- (2) 담보대출은 토지부동산 가액의 3/5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2 조

- (1) 담보대출시 토지의 인정가액은 충분한 조사에 의해 정한 매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가액을 정함에 있어 토지의 특성과 경제적으로 통상 점유자가 취할 수 있는 수익만이 고려된다.
- (2) 토지시세를 건축법 제192조 내지 199조를 근거로 조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조사가액이 담보대출액의 조사시 고려되어야 한다.
- (3) 부동산 저당증권의 담보에 사용되는 건축대지 또는 未竣工 혹은 아직 수익성이 없는 신축건물에 대한 저당권 총액은 저당증권의 담보용 저당권 총액의 1/10 및 책임자기자본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대지의 저당권 지분은 담보로 用益되는 건축대지와 신축건물에 대한 저당권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묘지, 교량과 같이 계속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은 저당증권의 담보를 위한 用益으로부터 排除된다. 광산에 대한 저당권에 관하여도 위와 같다. 부동산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는 기타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이 권리가 계속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 저당증권의 담보로써 용익될 수 없다.

제 13 조

부동산 저당은행은 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가격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감독청의 승인을 요한다.

제 14 조

- (1) 저당대출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 (2) 액면가의 저당증권으로 하는 대출은 은행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채무자가 명백히 동의한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는 증서로써 저당권의 상환을 현금 또는 수취인의 것과 同種이며 액면금액이 표시된 저당증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증권거래소 시세의 확정시 구별되지 않는 부동산 저당증권은 본 규정 상 항상 동일한 종목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 15 조

저당대출에 대한 조건의 개요는 저당은행이 정한다; 위의 개요는 연방 감독청의 승인을 요한다. 조건에는 적시에 지불하지 않는 때 채무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은행이 저당권의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저당은행이 사용하는 대출설명서와 신청서는 대출방식, 은행의 공제분, 이자율 및 그 만기, 그 밖의 채무자의 이행의무, 상환의 始期 및 계약해지와 환불에 관한 모든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17 조

- (1) 점유자의 비경제적 운용에 기인하지 않는 담보대출용 토지부동산 및

부속 부동산의 수지약화의 경우에는 저당은행을 위하여 채권자의 권리에 관한 민법 제1133조 및 제1135조의 규정이 해당 토지부동산으로부터의 즉시변제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토지부동산의 감소된 상태의 가액으로는 더이상 법률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담보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토지의 가액이 감소된 경우 은행은 위의 가액을 초월하여 저당권의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조건에서 제외할 수 없다.

- (2) 토지부동산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법률상 은행이 담보 또는 변제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상으로 행사하는 것이 유보되어 있는 때에는 그 양도로 인해 권리 있는 자에게 손해가 없음을 州法에 따라 관련 행정청이 확인함으로써 그 권리의 주장은 배제된다.
- (3) 저당은행은 은행이 해산하는 경우 만기전에 저당권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제한할 수 없다.

제 19 조

분할상환저당권에 있어 은행에 유리한 解止權의 제한을 약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은행이 채무자의 원인행위로 약정기한 이전에 저당권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정한 약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0 조

- (1) 상환의 시기는 10년 단위 기간동안 증가하는 기간으로 연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의 연기에 따라 약정이자 이외의 가액이 은행에 지급되는 때에는 대출증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자금조달 비용을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 (2) 상환을 시작한 이후 연 이자는 전년도말에 존재하는 잔여자본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연 상환액의 잉여금액은 점차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3) 감독청은 개별적으로 대출과 연관되어 있는 채무자의 채무가 담보대

출 부동산의 담보력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의 시기를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허용할 수 있다.

제 21 조

- (1) 저당의 분할상환에 관한 채무자의 권리는 점차 상환저당권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분할상환지급에 대해 그 지급이 지급까지의 연 상환액을 유지하면서 그 분할기간을 1년 또는 2년 이상씩으로 축소해 나가기에 적절한 경우에만 은행이 그 분할지급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은 상환액이 잔여자본의 1/10에 달하고 채무자가 이후의 연 상환액을 원래의 분할상환기간을 유지하면서 축소시키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제6조 제2항에서 열거한 저당권의 매년의 분할상환액은 원래의 자본금의 0.25% 미만일 수 있다; 은행은 새로운 분할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다.
- (2) 저당은행은 분할상환금액에 관련하여 토지대장의 정리, 저당권의 해소 및 민법 규정에 따른 부분저당증권의 발행등의 목적으로 은행에 부과된 의무를 사전에 免除하여서는 안된다.
- (3) 저당은행은 대차대조표의 공시후에 각 채무자에 대해 요구에 따라 전년도 말에 얼마큼의 저당설정금액이 상환되었는지를 알려야 한다.

제 21a 조

債券의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저당권의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제 22 조

- (1) 저당증권의 담보로 제공되는 저당권 및 그 밖의 原擔保로 제공되는 價値物은 은행이 개별적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제4항의 경우 대체

- 담보로 제공되는 가치물도 위와 같다; 유가증권의 등기는 그것이 혼장 보관대상의 지분이 아닌 때에는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2) 지난 6개월간의 저당등기소에 등기된 등기부등본은 제29조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에 의해 認證하여 每 曆年の 1월 이내에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본은 감독청이 보관한다.

제 23 조

삭 제

제 24 조

부동산 저당은행이 제46조 제1항에 따라 영업행위의 확장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동 은행은 저당은행의 영업에 속하지 않는 영업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제 25 조

비록 지급금액이 사소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저당권은 대차대조표상에 그 액면가액과 함께 기재된다. 이 경우 상법 제250조 제2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삭 제

제 27 조

삭 제

제 28 조

- (1) 연말결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저당권 등기부에 등기된 저당권의 수 및 담보에 제공된 금액에 따른 다음의 분류
 - a) 그 액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십만 마르크까지, 십만 마르크 이상부터 백만 마르크까지와 백만 마르크 이상 등으로 분류
 - b) 담보대출에 제공되는 토지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요지역에 따른 분류
 2. 상업적으로 用益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주거목적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건축대지 및 미준공건물과 아직 수입이 없는 신축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가액
 3. 결산기일에 계류중인 강제경매 및 강제처분절차의 件數와 사업년도에 집행된 강제경매의 件數
 4. 사업년도 기간동안 저당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이 부동산을 인수해야 했던 件數
 5.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의 연체총액으로서, 그 연체액이 전년도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6. 사업년도에 이루어진 저당권에 대한 상환의 총액으로서 분할상환과 기타의 방법에 의해 상환된 금액을 따로 분류하여야 한다.
- (2)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열거한 사항은 영업적으로 用益되는 부동산과 주거목적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따로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 29 조

- (1) 각 저당은행은 신탁관리인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2) 위의 선임은 저당은행의 의견을 들어 감독청이 행한다. 위의 선임은 감독청이 언제나 철회할 수 있다.
- (3) 신탁관리인은 그의 활동범위내에서 발생하는 판단과 관찰 등에 관하여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탁관리인은 감독청의 지시에 구속되

지 아니한다.

제 30 조

- (1) 신탁관리인은 저당증권을 위한 담보가 항상 규정대로 존재하는지를 注意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담보대출 대상부동산의 가액이 감독청에 의해 승인된 지침에 맞게 정해진 때에는 그 확정가액이 실재가액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
- (2) 신탁관리인은 저당증권의 담보를 위해 제공된 가치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저당권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지를 주의하여야 한다.
- (3) 신탁관리인은 저당증권의 발행전에 규정에 맞는 담보의 존재와 저당권 등기부에의 등기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 複本은 자필서명만으로 충분하다.
- (4) 저당권등기부에 등기된 가액은 신탁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만 해소될 수 있다. 신탁관리인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위의 동의는 신탁관리인이 저당권등기부의 抹消 확인란에 그의 서명을 첨부함으로써도 행해질 수 있다.
- (5) 신탁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유통거래되는 저당증권의 총액이 제7조에서 명시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위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탁관리인은 이를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 (1) 신탁관리인은 저당권등기부에 등기된 저당물 및 그에 관한 증서를 은행의 공동보관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들 대상물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서만 出納할 수 있다.
- (2) 등기부에 등기된 저당물의 여분으로도 저당증권의 담보를 충족시키거나 은행이 다른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한, 신탁관리인은 은행의 요구로 저당권등기부에 등기된 저당물과 그에 대한 증서를 인도하

여야 하고 등기말소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은행이 저당권설정자에 대해 저당권증서의 교부 또는 민법 제1145조에서 열거한 행위의 의무를 지는 경우 신탁관리인은 동소에서 열거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만 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상환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체담보물이 저당권등기부에 등기되고 신탁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관을 위해 넘겨진다.

- (3) 은행이 한시적인 이용을 위해서만 저당증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은행이 다른 담보제공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신탁관리인은 저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32 조

- (1) 은행의 각종 장부가 저당증권 및 저당등기부상의 저당물과 관련된 한 신탁관리인은 항상 동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2) 저당은행은 저당권등기부상의 저당가액 상당의 자본환급이나 그밖에 저당권자를 위해 현저한 변경사항으로서 저당물의 가액에 관계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탁관리인에게 계속적으로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 33 조

신탁관리인과 저당은행의 분쟁에 관하여는 감독청이 調停한다.

제 34 조

신탁관리인과 그 대리인은 감독청으로부터 적절한 보수를 취한다; 보수는 신용조직법 제51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감독청이 지급하며 감독청의 요구로 先拂할 수 있다.

제 34a 조

저당권등기부상의 저당물에 대한 押留 및 強制執行은 저당증권으로부터

의 청구권을 이유로 하여서만 허용된다.

제 35 조

- (1) 저당은행의 자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때에는 저당권등기부상의 저당물에 의한 변제를 고려하여 파산절차 개시이후의 이자채권이 포함된 저당권자의 채권은 다른 모든 파산채권자의 청구권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 각 저당권자의 경우 동일한 순위를 갖는다.
- (2) 은행의 특별회계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파산규정상의 別除에 관한 제64, 153, 155, 156 및 제168조 제3항이 유추적용된다.
- (3) 유통거래되는 유가증권계정의 은행고유 저당증권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경우, 개별저당증권에 해당하는 지분을 산정함에 있어 파산재단 귀속 저당증권은 제1항에서 정한 재산대상의 판매수익에 계정된다.
- (4) 저당은행의 파산절차 진행중 채권소지자의 공동의 권리를 규율하는 법 규정에 따라 소집된 저당권자 집회비용은 파산재단중 채권소지자의 우선적 변제에 제공되는 부분으로부터 계산된다.

제 35a 조

- (1) 저당은행의 영업인가(신용조직법 제32조)는 그 기본자본이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최저액면가액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 (2) 저당증권의 유통총액이 제7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은 동 은행이 연도순이익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이 정한 유통총액의 한도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저당은행이 감독청이 정한 기간내에 위의 흠결을 치유하지 않는 때에 비로소 위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배당결의는 제1문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한도내에서 무효로 한다.

제 36 조

삭 제

제 37 조

- (1) 저당권등기부상의 등기저당물에 의해 합법적으로 담보된 가액이상으로 저당은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저당증권을 유통시킨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2) 다음의 자도 제1항과 같은 형벌에 처한다
1. 등기부상 등기된 나머지 저당물이 저당증권의 합법적인 담보를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당은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저당권등기부상의 저당물을 양도하거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한 자
 2. 제31조 제2항 제2문에 위반하여 저당권의 상환시 적절한 대체담보물을 저당권등기부에 등기하지 않거나 신탁관리인에게 보관을 위탁한 자

제 38 조

- (1) 故意 또는 過失로 제30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없이 저당은행을 위하여 저당증권을 유통시킨 자는 규칙위반으로 처리한다.
- (2) 규칙위반은 십만 마르크이하의 過怠料에 처할 수 있다.

제 39 조

법률, 정관 또는 저당은행의 대리권 수여를 위한 조합계약에 따라 선임되지 않은 저당은행의 영업관리인이 불법행위 또는 규칙위반을 한 때에도 법인 또는 사단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인 규칙위반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적용된다.

제 39a 조

- (1) 규칙위반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은 연방은
행감독청이 된다.
- (2) 삭제

제 40 조

- (1) 저당권은 본법상 토지채무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 (2) 은행이 토지부동산으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토지채무의 損失補填을
위해 강제경매절차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채무를 말소되는
저당권 또는 토지채무 대신에 등기하도록 한 때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이에 準用된다.

제 41 조

저당은행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地方債를 발
행한 경우 그 지방채와 그의 기초가 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 제1
항, 제4항, 제5항과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2문, 제9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 및 제2항, 제22조, 25조, 29조 내지 35a조, 제37조 내지 39a조 와
제45조의 규정이 저당증권 대신에 地方債, 質權者 대신에 지방채의 債權
者, 저당권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대출, 저당권등기부 대신에 지방채의 담
보를 위해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대출 및 대체담보물을 위한 담보등기로 대
체하여 적용된다.

제 42 조

삭 제

제 43 조

삭 제

제 44 조

본법은 民法典과 동시에 施行된다.

제 45 조

1988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도 동 일자전에 시행되던 제25조의 구법규정에 따른 계산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46 조

- (1) 본법 시행당시 존속하는 저당은행이 1898년 5월 1일까지 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제5조에서 열거한 것 보다 넓은 영업행위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 따라 확장된 영업행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은행에 있어 저당증권 및 지방채의 유통총액은 책임자기자본의 48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신용조직법 제10조에 따른 책임자기자본의 적정성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제2항은 이 경우에 準用된다.

제 47 조

삭 제

제 48 조~제 53 조

삭 제

VI. 공공신용기관의 債權證書 및 유사 債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andbriefe und verwandten Schuldverschreibungen öffentlich-rechtlicher Kreditanstalten(PfandBrG)]

제 정 : 1927. 12. 31(RGB1. S. 492)
최종개정 : 1986. 4. 24(BGB1. I. S. 560)

제 1 조

“質權證書”라는 표시아래 공법상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債券은 이법 규정에 따라 담보가 설정되어야 한다.

제 2 조

(1) 질권증서의 유통총액은 그 액면금액상 항상 최소한 동일한 가액과 동일한 이자소득의 저당권을 통해 擔保되어야 한다(原擔保). 原擔保로서 다음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1. 화폐개혁법의 제30차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 제1항과 화폐개혁보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조정채권 및 화폐개혁법 제54조에 따른 담보채권
2. 통화개혁의 완화 및 강화를 위한 법률(노인저축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담보채권
3. 1953년 2월 27일 독일해외채무에 관한 협정의 시행법률 제32조 및 제44조 제3항에 따른 보상청구권

(2) 금융기관이 저당물의 손실방지를 위해 취득한 토지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이 취득저당권은 금융기관이 그 부동산취득권

에 담보를 제공했던 가액의 최고 50%가 질권증서의 담보로서 제공될 수 있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원담보는 다음의 담보물로 대체될 수 있다(대체담보).

1. a) 債券, 채무증서, 채무자가 연방, 연방특별회계 또는 주정부인 재정증권
b) 이자지급과 상환에 대해 a)에서 열거한 기관에 보증을 인수한 債券
2. 독일연방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
3. 현금
4. 화폐개혁법 제30차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화폐개혁보완법률 제48조 제2항에 따른 조정채권.

위의 채권은 최고 액면가의 5%만큼 증권거래소 시세에 미달되는 금액을 한도로 제공되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4) 제3항에 따른 대체담보는 1966년 1월 1일부터는 유통되는 쏘질권증서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연방신용감독청은 1966년 1월 1일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대체담보가 전질권증서 유통액의 20%에 달할 수 있음을 허용할 수 있다.

제 3 조

채권증서의 原擔保를 위해 정해진 저당권과 기타 담보대상물은 금융기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등기부에 등기된다(저당권등기부). 제2조 제3항의 경우 대체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은 위와 동일하게 저당권등기부에 등기된다; 유가증권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混藏保管대상이 아닌 개별증권별로 분류표시하여야 한다. 대체담보로 제공된 現金은 분류하여 보관된다.

제 4 조

금융기관은 저당권등기부에 등기된 담보물을 양도하거나, 부담을 지우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제1항을 위반한 처분행위도 유효하다.

제 5 조

저당권등기부에 등기된 담보물의 압류 및 강제집행은 질권증서로부터의 권리를 이유로 하여서만 허용된다.

제 6 조

- (1) 파산의 경우 저당권등기부에 등기된 담보물로부터 직접 변제시 파산절차 이후의 이자청구권을 포함한 질권자의 채권은 다른 모든 파산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한다. 질권자들은 서로 동순위를 갖는다.
- (2) 질권자가 금융기관의 기타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파산재산의 별제권한 있는 자에 대해 적용되는 파산법 제64, 153, 155, 156 및 제168조 제3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 (3) 유가증권잔고로 계정된 금융기관 자신의 질권증서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경우 그 질권증서는 개별 질권증서에 귀속되는 제1항에서 열거한 재산대상의 수익에 대한 지분을 계산하는데 산입된다.

제 7 조

삭 제

제 7a 조

질권증서는 다음에 한하여 발행될 수 있다.

- a) 질권증서의 만기가 금융기관저당권의 만기를 감안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b) 신규발행되는 질권증서의 적정부분은 적어도 만기의 1/3 경과후 저당증권의 단계적 상환이 시작되어야 한다.

질권증서의 만기는 계약조건에서 예정된 이자지급으로부터 원래 합의한 만기까지로 한다. 제1문 b) 소정의 적정부분이라 함은 同文상 질권증서의 신규발행 질권증서에 대한 지분이 15년이하 만기의 신규발행 질권증서와 합쳐 최소한 40%에 달하는 경우의 동 문 소정의 질권증서 지분을 말한다.

제 8 조

- (1) 공법상의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대출을 근거로 “지방채” 또는 “지방채무증서”라는 표시로 발행하는 債券에 대하여는 제2조 내지 제7a조 제1문 및 2문이 다음과 같이 대체하여 적용된다; 질권증서 대신에 지방채 또는 지방채무증서, 질권자 대신에 동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채권자, 저당권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대출, 저당권등기부 대신에 지방채 또는 지방자치단체 채무증서의 담보에 제공된 단체대출 및 대체담보물을 위한 담보등기부로 대체된다. 지방자치단체 대출은 국내의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이거나 동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인수대가로 공여하는 대출을 말한다.
- (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대출을 근거로 공공의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제1항에서 규정한 표시대신에 다른 표시로서 발행되는 債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단 위의 다른 표시에 부가적으로 “공법상의 금융기관 질권증서 및 유사 채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발행한다”라는 표시가 첨부되어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및 유럽투자은행은 국내의 공법상의 단체 및 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 (4) 또한 공법상의 금융기관은 유럽공동체 회원국에 마르크화로써 또는

동 회원국의 보증을 인수하여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위의 대출총액이 제1항 내지 3호에 따른 대출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득한 債權을 地方債의 擔保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연방법률상의 입법기관이 승인한 국가간 협약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명백히 규정한 경우 유럽공동체 비회원국도 제1문에 따른 대출거래에 있어 유럽공동체 회원국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위의 대출은 제1문에 따라 허용된 최고금액을 한도로 한다.

- (5) 연방재무장관은 유럽공동체 회원국간 자본거래의 장애를 제거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연방법무장관의 양해아래 命 命으로써 제4항 제1문에서 정한 비율을 최고 25%까지 삭감할 수 있다.

제9 조

- (1) 본 법상 토지채무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 (2) 금융기관이 토지부동산 저당권의 손실보전을 위해 토지부동산이나 토지채무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 그 토지채무를 말소되는 저당권 또는 토지채무 대신 동기하게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제2조 제2항이 준용된다.
- (3) 금융기관이 본법 시행전에 物上擔保의 불변금액 債券을 말한 경우에는 그 物上擔保 대상물은 본법상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제10 조

공법상의 금융기관은 질권증서, 지방채 또는 지방자치단체 채무증서에 관한 본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債券을 “질권증서” “지방채” “단체채무증서”라는 표시나, 위와같은 표시가 포함된 다른 표시로 하여 유통시킬 수 없다.

제 11 조

본법 제2조 내지 제7a조 제1문 및 제2문과 제9조의 규정은 공법상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연금증서와 이를 기초로 하는 물상담보물, 기타 담보물에 유추적용된다.

VII. 공공금융기관의 질권증서와 유사채권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제2차 시행령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Pfandbriefe und verwandten
Schuldverschreibungen öffentlich-rechtlicher
Kreditanstalten(PfandBrGDV 2)]

제 정 : 1938. 12. 20(RGB1. I. S. 1904)

1927년 12월 21일의 공공의 금융기관의 질권증서 및 類似債券에 관한
법률(Reichsgesetzbl. I S. 492) 제15조를 근거로 제정함.

제 1 조

- (1) 다수의 공공금융기관(회원금융기관)이 결합한 중앙금융기관에 의하여
질권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어느 한 회원금융기관이 질권증서의 擔保
를 위해 제공한 저당권으로 족하다. 동법 제2조 제2항의 경우로써 담
보를 위해 代替로 제공된 담보물에 대하여도 위와 같다.
- (2) 금전채권이나 압류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 및 중앙금융기관 또는
그 회원금융기관의 파산의 경우에도 회원금융기관의 담보등기부에 등기
된 저당권, 기타 담보물 그리고 담보로 정해져 회원금융기관에 존재하는
금전은 질권자를 위하여 중앙금융기관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 2 조

담보등기부(동법 제3조)는 각 회원금융기관에서 그의 관할 저당권 및
그밖의 담보물을 처리한다; 담보등기부에의 등기 및 그 말소는 중앙금융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 (1) 중앙금융기관을 관할하는 감독청은 동 금융기관의 주신탁관리인 및 대리인 뿐만 아니라 각 회원금융기관을 위한 부신탁관리인 및 代理人을 선임하여야 한다. 감독청은 언제든지 위의 선임을 철회할 수 있다.
- (2) 주신탁관리인은 질권증서에 대한 法定의 담보가 항상 존재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동관리인은 질권증서의 교부전에 법률의 규정에 합치하는 담보의 존재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신탁관리인은 질권증서의 담보를 위해 제공된 저당권과 유가증권이 동법 제3조에 따라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와 저당권이 각 회원금융기관의 정관규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담보대출용 토지부동산의 가액이 감독청이 승인한 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판정가액이 실제의 가액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다.
- (3) 담보등기부로부터 저당권 또는 유가증권 등기의 抹消를 위하여는 각 회원금융기관을 위해 선임된 부신탁관리인의 書面同意를 요한다; 이를 위해 담보등기부상의 말소확인란에 부신탁관리인의 서명을 첨부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 (4) 주신탁관리인은 언제든지 중앙금융기관과 회원금융기관의 질권증서와 담보등기부에 등기된 담보물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부신탁관리인도 그의 감독관할하에 있는 담보물에 관하여 위의 열람권을 갖는다. 각 회원금융기관은 저당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담보등기부에 등기된 저당권의 상환 또는 기타 질권자에 대하여 중대한 변동이 되는 사항을 수시로 주신탁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감독청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된 저당권증서 및 유가증권의 보관과 동법 제3조에 따라 질권증서의 담보를 위해 제공된 현금의 보관에 있어 각 신탁관리인간의 협력을 규율하는 지침을 발할 수 있다. 감독청은 각 금융기관과 주신탁관리인 및 부신탁관리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한다; 감독

청은 또한 신탁관리인의 선임에 따른 비용에 관한 지침을 발할 수 있다.

제 4 조

제1조 내지 제3조는 동법 제7조에 따라 발행하는 債券과 이들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권리 및 기타 담보물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제 5 조

삭 제

帝國法務長官

VIII. 住宅貯蓄銀行法

[Gesetz über Bausparkassen(BauSparkG)]

제 정 : 1972. 11. 16(BGBI. I. S. 2097)

최종개정 : 1983. 3. 29(BGBI. I. S. 377)

제 1 조 개념정의

- (1) 주택저축은행이라 함은 주택저축자의 예금(주택저축예금: Bauspareinlagen)을 受信하고 모아진 금액을 주택사업을 위하여 주택저축예금자에게 대출(주택예금대출: Bauspardarlehen)을 공여하는 업무(주택저축업무: Bauspargeschäft)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주택저축업무는 반드시 주택저축은행에 의해서만 영위된다.
- (2) 주택저축자라 함은 주택저축은행과 주택저축예금을 납부하고 주택예금대출의 권리를 취득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주택저축계약: Bausparvertrag)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 (3) 본법상 주택경제사업(Wohnungswirtschaftliche Maßnahmen)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건물과 주택, 특히 단독주택의 건축, 구입, 유지 및 개선
 2.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타 건물의 건축, 구입, 유지 및 개선
 3. 垆地의 취득 또는 주로 주거용으로 정해진 건물의 건축을 위한 地上權의 취득
 4. 垆地의 취득 또는 기타 건물의 건축을 위한 地上權의 취득, 단, 토지 위에 건축하는 건물중 주거용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건물 구조상 적합한 지분을 가져야 한다.
 5. 주거지역의 개발 및 조성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착수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채무의 상환
 7. 주로 주거용으로 제공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상환

또한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영업적인 건축계획의 시행도 주택경제사업으로 본다.

- (4) 공공의 주택저축은행에 특수한 주택건설임무 또는 그밖의 공적인 임무를 이양할 수 있는 각 州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 조 회사형태

- (1) 민영주택저축은행은 주식회사형태로서만 영위될 수 있다.
 (2) 공공의 주택저축은행의 회사형태는 각 州가 정한다.

제 3 조 감독

- (1) 연방은행감독청(이하 연방감독청)은 본법규정 및 1961년 7월 10일의 신용조직법[BGBI. I S. 881, 특별관리를 받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주택저축은행의 재산정리를 위한 법률(BGBI. I S. 465)로서 1972년 3월 21일 최종 개정됨] 규정에 따라 주택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사한다. 동감독청은 감독의 범위내에서 주택저축은행의 영업행위가 표준영업규칙과 주택예금계약의 표준약관에 합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침을 발할 수 있다.
 (2) 주택저축은행이 기타의 다른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방감독청의 감독을 제외한 범위에 한정된다.
 (3) 어떤 회사가 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때에는 연방감독청이 이를 판정한다. 이 결정은 각 행정관청을 구속한다.

제 4 조 인가영업

- (1) 주택저축은행은 주택저축영업 이외에는 오로지 다음의 영업만을 영위할 수 있다.
 1. 주택저축예금자와의 계약으로 주택저축은행의 지급이 선불 또는 중도금으로 공여되는 금전대출

2. 제2항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주택경제사업을 위한 기타의 금전대출
 3. 대출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제3자의 금전대출을 운영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및 제3자의 명의로 그의 계산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
 4. 주택저축은행이 그 권한이 있고 제7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보증된 제3자의 금전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인수하는 행위
 5. 금융기관 또는 기타 자본금융기관(Kapitalsammelstellen)으로부터의 외부 借入
 6. 제2항의 원칙에 따라 기타 債權者로부터의 借入
 7. 최고 4년이하의 만기를 갖는 무기명채권의 발행
 8. 주택저축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영업목적이 주택건설사업용 택지를 취득하여 건축희망자에게 양도, 중개하거나 주택사업자로서 주거 용건물을 양도하며 그러한 건물을 관리하는 국내의 회사에 대하여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자본참여행위
 9. 제8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피참가기업에 대한 금전대출
- (2) 제1항 제2호의 대출채권과 제1항 제4호의 담보의 총액은 주택저축은행의 자기자본금의 8배, 제1항 제6호의 외부차입금총액은 동 자본금의 5배, 제1항 제8호의 자본참가는 동자본금의 2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제2호의 대출에 따른 채권으로서 저당물 담보대출액의 2/5 범위내의 토지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총액도 동은행 책임자기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다.
- (3) 주택저축은행은 처분가능한 금전을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할 수 있다.
1. 적절한 금융기관에 투자예탁
 2. 다음의 매입
 - a) 債券, 채무증서, 연방, 연방특별회계 또는 州가 채무자인 국고 및 재정증권
 - b)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에 있어 a)호에서 열거한 기관이 보증을 인정한 債券

c) 기타 증권거래소에 正上場된 債券

- (4) 주택저축은행이 취득하는 토지부동산 및 지상권 그리고 주택소유권, 일부소유권, 주택지상권 및 일부지상권과 같은 권리의 취득은 오직 권리상실을 방지하거나 직원의 숙소 및 업무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 (5) 동은행은 주택저축계약의 할당전에는 특정시기까지 동예금총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조 표준영업규칙, 주택저축계약의 표준약관

- (1) 주택저축은행은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표준영업규칙과 표준약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2) 표준영업규칙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저축계약의 정산 및 長期, 中期, 短期의 대기기간
 2. 배분재산의 배합, 배분기일 및 배분을 위한 요건 및 순위의 조사(배분절차)
 3. 담보대출용 토지의 담보가액의 계산
 4. 주거지역의 개발 및 조성의 비용조달
 5. 제1조에 따라 허용되는 한, 배타적으로 혹은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비용조달
 6. 주택저축계약의 해지에 따른 예금반환절차
 7. 주택저축은행의 영업을 중단되거나 감독청이 영업인가를 취소한 경우 예금주의 이익을 고려한 주택저축계약의 간소화된 청산절차
- (3) 주택저축계약의 표준약관은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금주와 주택저축은행의 이행의무금액 및 그 만기와 이행지체의 법적 효과
 2. 주택저축예금과 주택예금대출의 이자지급
 3. 주택저축예금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수수료액
 4. 주택저축총액의 배당순위의 조사 및 그 요건과 지급조건
 5. 주택예금대출에 따른 채권의 확보

6. 주택저축계약이 공유되는 조건 또는 다른 주택저축계약과 통합하거나 저축총액을 증감할 수 있는 조건
7. 주택저축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入質할 수 있는 요건, 계약해지의 요건, 기타 동계약의 해지 또는 단순화된 청산에 따른 법적 효과
8. 관할법원 또는 중재계약
9. 사망사고에 대한 생명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액의 한도, 이를 위해 주택저축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주택저축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생명보험의 예상보상액

제 6 조 주택예금재산 사용의 사업목적에 의한 기속

- (1) 주택저축예금과 주택예금대출의 분할상환은 제4조 제3항을 요건으로 하여 오직 주택저축업무와 분배재산계정의 외부차입금의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4조 제1항 제1호의 대출공여에 관하여 제10조를 근거로 제정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대기기간을 적절히 축소할 수 있다.
- (2) 주택예금대출에 따른 債券 및 이들 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공된 토지저당권과 기타 담보는 오직 주택저축예금 거래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한 거래를 위해서만 양도, 대출을 위한 담보 또는 入質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제1호상의 대출에 따른 채권과 그의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土地質權 및 그밖의 담보에 대하여도 위와 같다.

제 7 조 대출채권의 담보

- (1) 주택예금대출과 제4조 제1항 제2호의 대출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출채권은 이들이 주택저축계약상 권리의 양도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한 국내의 질권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또는 토지채무로 지정함으로써 담보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신탁관리자로서 토지채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위와 같은 토지채무의 지정은 주택저축은행이 위의 금융기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토지채무의 전부인도 또는 일부

- 인도의 권리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담보대출은 충분한 추가담보 없이는 질권목적물의 대출담보가액의 4/5를 초과할 수 없다.
- (2) 충분한 추가담보가 제공되는 경우(대체담보)에는 토지질권 또는 대체담보에 의한 담보의무는 면제된다.
- (3) 대출을 받는 자가 주택저축은행에 대해 제1항에 따라 토지질권에 의해 가능한 담보를 다른 채무를 위하여 질권목적물과 유사한 물건을 入質하거나 매각하지 않도록 방해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 토지질권 또는 대체담보를 통한 담보의무는 면제된다.
- (4) 국내의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때에는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게 공여하는 대출을 위해 국내의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담보를 인수하는 때에도 그 범위내에서 담보가 면제된다.
- (5) 연방감독청은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質目的物에 대하여도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저당권 또는 추가담보가 예외를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적용범위외에서 대출을 위해 담보될 수 있다.
- (6) 담보대출시 인정되는 質權目的物의 가액(담보대출가액)은 거래시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담보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오직 질권목적물의 특성과 그 목적물이 정상적인 운용시 보통의 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수익만을 고려할 수 있다.

제 8 조 영업인가의 거부와 취소

- (1) 주택저축은행의 영업인가는 신용조직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유 이외에도 표준영업규칙 또는 주택저축계약의 표준약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 거부될 수 있다.
1. 주택저축계약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주택저축예금총액의 배분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저축예금 및 그 상환의 급부가 예상되는 때
 3. 주택저축은행이 예컨대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나 주택예금대출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저축예금자의 기타 이익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때

- (2) 연방감독청은 신용조직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사유이외에도 만약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저축자의 이익이 본법 또는 신용조직법상의 다른 조치를 통하여 충분히 보장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9 조 표준영업규칙과 주택저축계약 표준약관의 변경

- (1)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열거한 규정에 관련된 표준영업규칙과 표준약관의 변경 또는 보충은 연방감독청의 승인을 요한다. 기타의 변경에 대하여는 적어도 변경의 효력발생 3개월전에 연방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주택저축은행이 주택저축계약상 부담하는 의무를 더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방감독청은 주택저축은행에 대해 표준영업규칙과 표준약관을 새로운 계약체결전에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와 동일한 요건하에 연방감독청은 그의 신용조직법 제46조 제1항상의 권한과는 관계없이 주택저축은행의 새로운 계약체결을 금지할 수 있다.

제 10 조 명령제정

주택저축은행의 그의 채권자에 대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특히 채권자들이 신뢰한 재산가액의 확보, 주택저축예금총액의 배분을 위한 충분한 지급준비 및 가능한 한 동등한 배분순서의 유지에 관하여 연방재무장관은 독립연방은행 및 주택저축은행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으로써 다음에 대한 규정을 발할 수 있다.

1. 배분을 위해 축적된 금액과 배분되었지만 아직 예금자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금액의 한시적인 투자
2.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저축예금계약(대규모주택저축계약)이 어느 한 주택저축은행의 미배분의 계약총액잔고에 대해 허용될

수 있는 비율, 曆年상 1년동안 체결된 대규모 주택저축계약이 이 기간동안 주택저축은행에 의해 체결된 주택저축계약의 계약총액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12개월동안 체결한 주택저축자의 계약도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 대규모 주택저축계약의 허용비율에는 주택저축자가 배분을 위한 표준영업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예금총액을 계약체결 후 1년내에 납부시킨 주택저축계약도 산입된다.

3. 영업적 성격을 갖는 건축계획의 자금조달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의 조건과 그러한 대출이 주택저축은행의 대출채권총액에서 차지할 수 있는 허용비율; 그 비율은 최고 3%이하로 정해진다.
 4. 책임자기자본 한도내에서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출이 허용되는 동 자본금 對比比率 및 한 회사에게 대출할 수 있는 동 자본금 對比比率
 5. 대체담보의 제공이 허용되는 대출이 한 주택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의 잔고 총액에서 차지할 수 있는 허용비율
 6. 주택저축은행이 개별적으로 제7조 제3항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액
- 연방재무장관은 이상의 授權을 명령으로써 연방감독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영업관리인의 免職

연방감독청은 신용조직법 제36조에서 열거한 사유 이외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본법규정, 본법시행령, 연방감독청의 지침 또는 제5조 제2항, 제3항에서 열거한 표준영업규칙의 규정과 주택저축계약의 표준약관을 위반하고 연방감독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를 계속한 때에도 주택저축은행의 部署長을 解任할 수 있다.

제 12 조 管財人

- (1) 연방감독청은 각 주택저축은행에 管財人을 임명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는 때에는 주택저축은행은 위의 임명

전에 그 다른 국가기관의 意見을 청취할 수 있다. 임명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2) 管財人은 배분절차에 관한 주택저축계약의 표준약관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 (3) 管財人은 배분절차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 주택저축은행과 관재인 사이의 관재인의 책무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연방감독청이 조정한다.
- (4) 관재인은 자신의 판정과 관찰사항을 연방감독청에 보고한다. 관재인은 연방감독청의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5) 관재인은 연방감독청으로부터 적절한 보수를 받는다; 위의 보수는 신용조직원 제51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주택저축은행에 의해 별도로 지급된다.

제 13 조 檢査人의 특별의무

주택저축은행의 연말결산을 검사함에 있어 檢査人은 다음의 사항도 확인하여야 한다.

1. 주택저축예금총액(부금총액)이 주택저축계약의 표준약관에 따라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2. 주택저축은행이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열거한 표준영업규칙의 규정과 제5조 제3항 제5호에서 열거한 주택저축계약의 표준약관 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
3. 제10조에 의해 제정되는 명령의 규정이 준수되었는지의 여부
그 결과는 검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잔고의 양도

- (1) 주택저축예금계약상의 잔고를 부채 및 자산과 함께 다른 저축은행 또는 다수의 다른 저축은행에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계약은 연방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택저축예금자와의 법률관계를 포함하여

주택저축계약상 양도은행이 갖는 모든 권리의무는 위의 승인과 함께 양수은행에 승계된다; 이 경우 민법 제41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 양도를 통하여 양도은행 또는 양수은행의 주택저축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2) 양도계약은 書面에 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지급거래 금지

(1) 주택저축은행의 의무이행에 위험요소가 있고 주택저축예금자 또는 그밖의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한 파산절차를 회피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방감독청은 모든 종류의 지급거래를 잠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2) 삭제

제 16 조 “주택저축은행”의 상호표시

(1) “주택저축은행”이라는 표시나 “주택저축은행(Bausparkasse)” 또는 “주택저축예금(Bauspar)”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표시는 商號 또는 상호의 부가표시로서 오직 주택저축은행 영업인가를 취득한 회사에서만 그 영업목적의 표시나 광고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2) “주택저축은행”의 용어나 “주택저축은행” 또는 “주택저축예금”의 용어가 포함된 표시가 결합되어 쓰이지만 결합된 용어가 주택저축예금 업무를 영위한다는 外觀을 작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신용조직법 제42 및 43조의 규정은 준용된다.

제 17 조 예외

다른 특별한 국가감독을 받는 주택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 제1항 제1문 및 동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18 조 법적 독립성 없는 주택저축은행의 영업계속 및 신규인가에 관한 규정

- (1) 본법 시행당시 주택저축영업을 할 수 있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조직법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주택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용조직법 제35조 제1항에서 열거한 기간은 본법의 시행과 함께 개시된다.
- (2) 본법 시행당시 유한회사 또는 등기된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주택저축은행은 그 회사형태로서 계속할 수 있다.
- (3) 본법 시행당시 법적 독립성이 없는 부서를 통해 주택저축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그 범위내에서 주택저축은행으로 인정된다. 위의 금융기관은 주택저축은행영업분의 재산을 그밖의 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저축영업을 위해 별도의 연말결산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회계장부, 연말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의 검사에 관한 규정이 이에 준용된다. 주택저축은행부의 영업자본과 연말결산서에 별도로 계정된 준비금은 주택저축은행의 책임자기자본으로 본다.
- (4) 본법의 시행일까지 제4조에 따라 허용되는 영업과 다른 영업 또는 제 4, 6, 7조 및 제10조의 수권에 따른 명령의 규정상 허용되는 영업범위보다 넓은 범위를 갖는 영업을 영위하는 주택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때에 한하여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감독청은 위의 영업을 위한 적절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5) 본법 시행당시 존속하는 주택저축은행은 그의 표준영업규칙과 표준약관을 늦어도 1974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제2, 3항의 규정과 합치시켜야 하며, 위의 영업규칙과 약관이 없는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은 이 경우 준용된다.
- (6) 제3항은 본법 시행당시 법적 독립성이 없는 部署에 의해 주택저축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19 조 경과규정

- (1) 주택저축업 영역을 규율하는 법규정 및 현재까지의 법규정을 근거로 제정한 지침은 본법 규정 또는 신용조직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하다.
- (2) 법규정에 의해 보험 및 주택저축업무를 위한 연방감독청의 업무중 주택저축업무에 관한 임무와 권한은 은행감독청에 이양된다.
- (3) 별도의 국가기관 감독을 받는 주택저축은행의 화폐교환의 계산의 증명에 관한 州정부의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주택저축은행의 연말결산서는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지금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제 20 조

- (1)~(5) 삭제
- (6) 1932년 6월 14일의 권리구제 및 행정분야의 조치에 관한 제국대통령의 명령 제1편 제5장(제국법률공보 I S. 285, 288), 1933년 6월 9일의 주택저축계약의 정산 간소화에 관한 시행령 및 보충명령(제국법률공보 I S. 372) 및 1934년 9월 7일의 동2차 명령(제국법률공보 I S. 827)은 본법의 시행후에 체결된 주택저축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1 조 베를린 규정

본법은 1952년 1월 4일의 제3차 과도기법률(연방법률공보 I S. 1) 제 13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베를린주에도 적용된다. 본법을 근거로 제정된 명령도 동법률 제14조에 따라 베를린주에도 적용된다.

제 22 조 시행

본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X. 투자신탁회사법

[Gesetz über Kapitalanlagegesellschaften(KAGG)]

전면개정 : 1970. 1. 14(BGBI. I. S. 127)

최종개정 : 1990. 2. 22(BGBI. I. S. 266)

제1장 총 칙

제1조

- (1) 투자신탁회사는 자신에 預置된 금전을 자기명의로 그러나 預金者 공동의 계산으로 위험분산의 원칙에 따라 이 법에서 허용하는 재산투자대상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특별재산, 지분참여특별재산 또는 토지특별재산의 형식과 같은 고유재산으로 분류하여 투자하고 이로부터 생기는 지분소유자의 권리에 대하여는 지분증서(수익증권: Anteilsscheine)를 발행해 주는 것을 영업범위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 (2) 이 법상 특별펀드라 함은 투자신탁회사와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지분증서(Anteilsscheine)가 자연인이 아닌 10인이하의 지분소유자에 속한 특별재산을 말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이들 지분소유자의 합의(계약)에 있어 지분소유자에 의한 지분증서의 양도는 반드시 투자신탁회사의 동의를 요한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sicherstellen).
- (3) 투자신탁회사는 오로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만 영위될수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이 법의 적용범위내에서 정관에 따른 주소와 본점을 두어야 한다.
- (4)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신탁회사 주식은 記名株式이어야 한다. 그 주식은 白紙式背書(무기명배서: Blankoindossament)에 의해서는 양도할수 없다. 白紙式背書는 사후의 보충(Ausfüllung)에 의해서도 효력이 없다.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1문에서와는 달리 주식의 점유자가 백

지식배서가 아닌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또한 배서의 연속이 사후적으로 보충된 백지식배서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3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투자신탁회사의 주식(또는 유한회사의 영업지분)의 양도는 그 회사의 동의를 요한다. 동의는 이사회(유한회사의 업무집행이사: Geschäftsführer)가 행하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설립)계약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2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금융기관에 속하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2) 투자신탁회사의 영업허가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납입자본금이 최저 500만 DM에 달하여야 한다.
 - b) 회사대표는 신용과 투자신탁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일 것
 - c) 투자신탁회사의 정관(유한회사의 경우 회사계약)에서는 자기고유재산의 투자에 필요한 영업 이외에는 제1조 제1항에 열거한 영업과 그와 직접 관련된 부수적 활동만을 영위할 수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 회사자본금이 50만 DM 미만일 때에는 영업을 허가할 수 없다.

제 3 조

투자신탁회사가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때에는 감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 구성 및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株式法 제90조 제3항, 제4항과 제5항의 제1문 및 제2문, 제95조 내지 제114조, 제116조, 제118조 제2항, 제125조 제3항, 제171조, 제268조 제2항에 따른다.

제 4 조

- (1) 감사회 구성원은 인적, 물적 기능에 따라 지분소유자의 이익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 감사회의 구성원이 경영조직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로서 선임된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회사가 지분소유자 공동의 계산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투자신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이나 감사회 구성원은 특별재산을 회사로부터 매입하거나 회사에게 매각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지분증서를 취득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 (1) 지분증서의 발행으로 예입된 금액과 그 금액으로 형성한 재산은 특별재산을 구성한다. 특별재산에 속하는 대상은 투자신탁회사와 지분소유자의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신탁회사의 소유 혹은 지분소유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위의 특별재산은 투자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 관리된다.
- (2) 또한 투자신탁회사가 특별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의하여 혹은 특별재산과 관련한 법률행위에 의해 취득하거나, 특별재산에 대해 권리를 갖는 자가 그 권리에 갈음하여 취득한 모든 것들도 특별재산에 속한다.
- (3) 투자신탁회사는 다수의 특별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 특별재산들은 고유(Bezeichnung)표시에 의해 구분되고 분할, 관리된다.

제 7 조

- (1) “투자신탁회사(Kapitalanlagegesellschaft)” 및 “투자회사(Investmentgesellschaft)”라는 표시, 혹은 “자본투자(Kapitalanlage)”, “투

- 자(Investment)”, “투자자(Investor)” 또는 “투자함(Invest)”이라는 용어가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용어와 결합되어 있는 표시는 상호(Firma) 또는 부속상호(Zusatz zur Firma)로서 오로지 투자신탁회사와 외국투자회사, 해외투자관리회사와 해외투자영업회사(외국투자회사법 <Auslandinvestiment-Gesetz> 제2조 1호,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15조)의 영업목적이나 광고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 (2) “투자”라는 용어가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용어와 혼합되어 있는 표시를 갖는 지분증서의 발행은 오로지 투자신탁회사와 외국투자회사에게만 허용된다.
- (3) 제1항의 규정은 “자본투자(Kapitalanlage),” “투자,” “투자자” 혹은 “투자함”이라는 용어가 혼합되어 있고, 외관상 영업내용이 금전 재산에 의한 투자에 있지 아니한 회사(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신용조직법 제42조와 제43조는 준용된다.

제 2 장 유가증권 특별재산(Wertpapier-Sondervermögen)에 관한 特別

제 8 조

- (1) 투자신탁회사가 운영하는 유가증권특별재산은 본조의 제2항과 제3항 및 제8b조, 제8d조 내지 8f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유가증권으로 구성된다.
1. EC의 어느 한 구성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정상장(amtlichen Handel) 되어 있거나 기타 어느 한 구성국가가 승인하고 일반에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원활한 어느 한 구성국가의 조직화된 시장(organisierter Markt)에 등록(Einbeziehung)되어 있는 유가증권
 2. EC의 어느 한 구성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정상장이 신청되어 있거나 어느 한 구성국가의 조직화된 시장에서의 등록이 발행조건에 따라 신

청된 유가증권, 단, 해당유가증권의 상장허가 또는 등록이 발행후 1년 이내에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3. 증권거래소나 조직화된 시장의 선택이 계약조건에서 정해지는 경우에 있어서 EC 비회원국의 어느 한 증권거래소에서만 정상장되어 있거나 조직화된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유가증권
 4. EC 비회원국에 있는 어느 한 증권거래소에 정상장이 신청되어 있거나 조직화된 시장에의 등록이 계약조건에 따라 신청되어 있는 유가증권, 단 이 경우 증권거래소의 선택이나 조직화시장의 그것은 계약조건에서 정해져야 하고 이들 유가증권에 대한 상장허가나 등록은 발행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회사재산의 자본전입에 의한 자본증가(증자)시 특별재산이 배정받는 株式
 6. 특별재산에 속하는 신주인수권(Bezugsrecht)행사에 따라 取得한 有價證券
 7. 신주인수권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이 특별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그 신주인수권
- (2) 특별재산가액의 10%까지 다음 각호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
1. 本條 제3항에서 규정한 화폐시장증권을 제외한, 증권거래소에 정상장되어 있거나 조직화된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유가증권
 2. 금전대출에 의한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설정된 총대출액의 잔액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해 채무증서가 발행되어 있는 경우(채무증서 금전대출)의 그 채권, 단, 동 채권은 특별재산에의 취득후 적어도 2회 이상 양도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대출은 다음 각호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 a) 연방,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제협력 및 발전기구의 구성국가
 - b) 이 법의 적용범위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그 밖의 단체 또는 공공단체 또는
 - c) 내국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정상장이 허가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

- (3) 총 특별재산가액의 49%까지의 지분은 은행예금,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연방 또는 주정부의 국고증권 및 재정어음(Schatzwechseln)의 형태로 또는 경제협력 및 발전기구의 회원인 타국의 유사한 증서형태로 예치할 수 있다. 위의 금융시장증권은 특별재산을 위한 취득시점에서 최장 12개월에 대한 잔류경과기간을 보유할 수 있다.
- (4) 유가증권특별재산으로 귀금속과 귀금속에 대한 증서를 취득할 수 없다.

제 8a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유가증권과 동일인발행의 대출채무증서(Schuldschein-darlehen)에 전체 특별재산의 5%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단,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가 있고 유가증권과 위의 산업채권의 합계액이 특별재산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재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제1문에서 정한 한도의 계산에 있어서 저당증서(Pfandbriefe), 지방채 및 연방, 州, 유럽공동체, 유럽공동체구성국가, 기타 다른국가, 경제협력 및 발전기구의 구성원에 의해 발행된 채권, 산업채권과 그들 법에 의하여 그들의 통치권(Hoheitsgebiet)내에서 활동하는 투자신탁회사나 투자회사가 인수한 연방채 또는 州債 등은 그의 50%가 산정된다. 유럽공동체의 어느 한 구성국가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의 채권증서는 그 금융기관이 채권의 소지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공적 감독하에 있고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법률규정에 따라 채권상환 기간동안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고 발행자의 지불능력 부족시 부족분의 상환과 이자지급이 특정된 재산가치에 투자되는 한, 저당증서와 지방채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주식법 제18조상의 콘체른기업의 유가증권과 산업채권은 동일발행자(채무자)의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
- (2) 동일발행자의 채권은 그 액면총액이 동일발행자가 발행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전체 액면총액의 10%를 넘지 않는 한 특별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유럽공동체 구성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

럽공동체에 의해 발행되었거나 이자와 상환을 위해 이들 대신에 지급 보증된 채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문에서 정한 한도는 그 취득시에 만약 동일한 발행자가 발행하고 있는 액면총액이 투자신탁회사에 의해 인수주선될 수 없을 때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 동일한 발행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취득 액면총액이 동일발행자가 발행한 의결권없는 주식의 액면총액의 10%를 넘지않는 한에 있어서만 취득할 수 있다.

- (3) 투자신탁회사가 갖는 동일발행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동일발행자 주식의 총 의결권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 투자신탁회사는 그가 운용하는 유가증권특별재산에 있어 동일발행자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의 어느 다른 구성국가가 동일발행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보다 낮은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경우 투자신탁회사가 그에 의해 운용되는 특별재산을 위하여 그 국가에 주소를 둔 동일발행자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
- (4)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한도는 제8조 제3항에 따른 화폐시장유가증권의 취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동일 금융기관의 예금증서에는 특별재산의 최고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제 8b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특별재산의 계정으로 다른 특별재산의 지분과 해외투자지분(외국투자법 제1조 제1항, 제15조)을 취득할 수 없다. 本條 제1문과는 별도로 持分이 공중에 지분수의 제한없이 청약에 제공되고 持分所有者가 지분의 반환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재산의 5%까지는 다른 유가증권특별재산의 지분이나 유가증권재산에 대한 해외투자지분의 형태로 투자될 수 있다. 증권거래소에 正上場(Zulassung zum amtlichen Handel) 혹은 조직화된 시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지분의 취득에 있어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다른 특별재산의 발행지분이나 유가증권재산의

10% 이상은 취득할 수 없다.

- (2) 제1항에 따른 동일 투자신탁회사나 투자신탁회사와 직,간접으로 상당한 지분참여로써 결합되어 있는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다른 有價證券特別財産(anderen Wertpapier-Sondervermögens)의 지분취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특별재산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한 지리적 경제적 영역에 의한 투자로 특화되어 있고 지분의 취득이 은행감독관청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에만 그것이 허용된다. 은행감독관청은, 그 투자신탁회사가 그러한 종류의 지분취득의 목적을 통지하고 그 가능성이 계약조건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그 특별재산의 일부가 다른 유가증권특별재산의 지분형태로 투자되는 한 투자신탁회사는 수수료와 비용을 징구할 수 없다.
- (3) 제2항은 투자신탁회사와 제2항 제1문에서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외국 투자회사(ausländische Investmentgesellschaft)의 지분취득에 적절히 유추적용할 수 있다.

제 8c조

- (1) 회사재산의 轉入에 의한 자본증가에 따라 특별재산에 귀속된 주식의 취득이거나, 특별재산에 귀속된 유가증권으로부터의 新株引受權 행사로 인한 신주의 취득인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a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제8조, 제8a조 및 제8b조에서 정한 한도가 제1문의 경우 또는 투자신탁회사가 의도하지 않은 채 초과되었을 때에는 투자신탁회사는 그들을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賣却함에 있어 지분소유자의 이익보호를 고려하면서 위의 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8a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특별재산의 형성후 첫 6개월후에 위험분산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초과할 수 있다.

제 8d조

- (1) 투자신탁회사는 유가증권특별재산의 계산으로 제3자에게 유상으로(음

선가격) 일정기간동안 처음부터 합의한 가격(기본가격)에 따라 유가증권의 引渡나 購入을 요구할 수 있는 文書化되지 않은 權利를 부여하거나(유가증권 옵션권: Wertpapier-Optionrechte), 유가증권옵션권이 내국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옵션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옵션권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기본가격은 이미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획득한 다른 옵션권이나 제3자에게 부여한 다른 옵션권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기본가격과 합하여 특별재산가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체결된 옵션거래가 精算去來(Gegengeschäft)에 의하여 폐쇄되면, 위의 두 去來는 제2문에 따른 한도에 算定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옵션권은 특별재산의 계정으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즉 그 옵션권의 대상이 되는 동일발행자 유가증권의 기본가격이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이미 제3자에게 부여되어 있거나 스스로 취득한 다른 유가증권 옵션권의 대상이 된 동일발행인 유가증권의 기본가격과 합하여 특별재산가액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별재산의 계정으로 체결된 옵션거래가 精算去來에 의해 폐쇄된 때에는 위의 두 거래는 제1문에 따른 한도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 (3) 유가증권의 인도(Lieferung)를 요구할 권리(유가증권 買入옵션: Wertpapier-Kaufoption)는, 그 유가증권 매입옵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그 매입옵션의 권리부여 시점에 특별재산에 귀속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부여할 수 있다. 위의 유가증권은 매입옵션 기간동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 (4) 제3자가 합의한 가격에 따라 유가증권의 구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유가증권 매도옵션: Wertpapier-Verkaufsoption)는, 그 유가증권 매도옵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매도옵션의 취득시점에 특별재산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 (5) 투자신탁회사는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행한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체결 및 정산에 관하여 항상 保護預受銀行(Depotbank)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8e 조

투자신탁회사는 유가증권특별재산(Wertpapier-Sondervermögen)의 계산으로 선물외환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재산의 자산항목은 그 매각된 外換과 동일액과 동일통화단위로 對比되어 있어야 한다. 투자신탁회사는 契約書類에 先物外換賣渡(Devisenverkauf auf Termin)가 특별재산의 외화표시 재산대상의 시세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d조 제5항은 준용된다.

제 8f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유가증권특별재산의 계산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특별재산의 자산항목의 安全을 위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계약(Terminkontrakte auf einen Aktienindex)이나 金利先物去來契約(금융선물계약: Finanzterminkontrakte)에 의해 매도할 수 있다. 주가지수선물계약에 의한 賣渡는 어느 한 증권거래소에서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즉 선물거래소의 주소지 국가에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주식은 특별재산상으로 선물계약가격과 동일한 시세로써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 金利先物賣渡계약은 특별재산상으로 금리변동위험을 갖는 자산항목이 금리선물계약과 동일한 貨幣單位로 對比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질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금융선물계약에 의한 매도시 그 계약서류에 그 금융선물계약이 특별재산 자산항목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투자신탁회사는 뿐만아니라 내국 또는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유가증권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특별재산 자산항목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 금융선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체결 시점에 그 금융선물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계약가격은 이미 제1문에 따라 체결한 금융선물계약이 精算去來에 의해 폐쇄되면, 兩 去來는 제2문에 따른 한도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 (3) 제8d조 제5항은 준용된다.

제 8g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매 3개월마다 제8조 제2항과 제3항, 제8a조 제1항 제1문의 전반부 및 제4항 제2문, 제8b조 제1항, 제8d조 제1항 및 제2항, 제8f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한도초과에 대하여 資產項目과 함께 超過期間 및 理由를 즉시 은행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2) 제8조 내지 제8f조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신탁회사에 의해 체결된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자기명의로 특별재산에 속하는 資產項目을 本法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투자신탁회사가 특별재산에 속하는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분소유자의 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식법 제129조 제3항은 준용된다.
- (2) 투자신탁회사는 지분소유자의 공동의 계산을 위하여 金錢消費貸借를 供與해서도 보증 또는 담보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저서도 아니된다.
- (3) 특별재산에 속하는 자산항목은 저당설정에 供與되어서도 아니되고, 그 밖에 보증을 위해 공여되거나 보증을 위해 解體될 수 없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행사한 處分은 지분소유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제1문은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제4항에 따른 신용을 공여받거나 제3자에게 제8d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옵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투자신탁회사는 지분소유자 共同의 計算으로 특별재산의 최고 10%까지 短期信用을 공여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계약조건에서 정함이 있고 보호예수은행(Depotbank)이 그 신용공여를 동의하여야 한다. 보호예수은행은 신용공여의 조건이 통상의 시장여건에 따른(markt-üblich) 것일 경우에 한하여 同意할 수 있다.

- (5) 투자신탁회사는 계약체결시점에 유가증권이 특별재산에 속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지분소유자 공동의 계산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賣渡할 수 없다. 제1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6) 회사에 대한 債權(청구권)과 특별재산에 속하는 債權(청구권)은 相計할 수 없다.
- (7) 지분소유자와 투자신탁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保護預受法(Depotgesetz)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특별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注意義務로써(mit der Sorgfalt eines ordentlichen Kaufmanns) 지분소유자의 공동의 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투자신탁회사는 그의 임무를 인식함에 있어 보호예수은행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특히 특별재산과 결합되어 있는 의결권과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배타적으로 지분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여야 한다. 투자신탁회사는 본법의 적용범위 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회사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의결권을 보통은 독자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투자신탁회사는 議決權행사를 위하여 타인에게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만(不統一的으로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Weisungen für die Ausübung erteilen).
- (2) 특별재산은 투자신탁회사의 債務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는 또한 회사가 지분소유자 공동의 계산으로 체결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신탁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투자신탁회사는 지분소유자의 명의로 채무를 負擔할 권한이 없다. 本項의 규정을 배제하는 合意는 효력이 없다.
- (3) 투자신탁회사는 회사의 報酬請求, 지분소유자 공동의 계산으로 행한 去來의 費用 그리고 제12c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보호예수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이유로 오로지 특별재산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

다: 지분소유자는 개인적으로 회사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 (4) 완전히 納入되지 않은 주식이 특별재산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회사는 나머지에 대해 오로지 그의 고유재산으로서만 납입시킬 책임을 진다.

제 11 조

- (1) 어떠한 지분소유자도 특별재산을 고려하여 현존하는 지분소유자의 공동체를 해체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한 권리는 또한 저당채권자나 어느 한 지분소유자의 파산관리인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 (2) 모든 지분소유자는 지분증서의 交付와 함께 특별재산에 대한 그의 지분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계약조건에서 정하여진다. 계약조건에서는 지분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투자신탁회사가 지분증서의 상환을 중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지분증서)의 상환이 중지되는 한, 지분증서는 (새로) 발행할 수 없다. 투자신탁회사는 지분소유자에게 지분증서의 상환중지와 再開에 관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문 및 제5문은 특별펀드(폐쇄형 펀드: Spezialfond, 제1조 제2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은행감독청은 투자신탁회사가 지분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분증서의 상환을 중지하여야 함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제3문, 제5문 및 제6문을 준용한다.

제 12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특별재산의 保管, 지분증서 발행 및 상환에 관하여 다른 금융기관(보호예수은행: Depotbank)에 위탁하여야 한다. 保護預受銀行은 본법의 적용영역내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보호예수은행으로서 또한 다른 유럽공동체 구성국가에 주소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支店이 본 법의 적용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도 위탁이 가능하다.

보호예수은행의 영업관리인(Geschäftsleiter), 지배인(Prokuristen) 그리고 전체영업을 위해 대리권이 수여된 者들은 동시에 투자신탁회사의 직원(Angestellte)이 될 수 없다; 투자신탁회사의 영업관리인, 지배인과 전체영업을 위해 대리권이 수여된 자는 동시에 보호예수은행의 직원이 될 수 없다. 보호예수은행은 최소한 1천만 DM의 責任自己資本을 가져야 한다; 보호예수은행이 보호예수법 제1조 제3항의 유가증권집중보관은행(Wertpapiersammelbank)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보호예수은행은 그의 임무수행에 있어(bei Wahrnehmung ihrer Aufgaben) 투자신탁회사로부터 獨立的이며 지분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行爲한다. 그러나 보호예수은행은 법률규정이나 계약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신탁회사의 지시를 수행할 수 있다.
- (3) 보호예수은행의 선택 및 交替는 은행감독청의 승인을 요한다. 위의 승인은 보호예수은행의 예금 및 보호예수업무(신용조직법 제1조 제1문 제1호 및 제5호)가 허가되어 있고 금융기관 단체의 보호기구나 그와 유사한 다른 유럽공동체 구성국가의 보호기구에 加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질 수 있다. 은행감독청은 승인과 관련하여 부속규정에 기속될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펀드(폐쇄형 펀드: 제1조 제2항)를 위한 보호예수은행의 선택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 (4) 은행감독청은 언제나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보호예수은행의 交替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보호예수은행이 법적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거나, 제12조 제1항 제5문에서 규정한 책임자 기자본의 최저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 12a 조

- (1) 特別財産에 속하는 有價證券과 預金證書는 保護預受銀行에 의해 폐쇄되어 預置된다. 보호예수은행은 유가증권을 오로지 보호예수법 제1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보관은행(Wertpapiersammelbank)에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내국의 조직화된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외국은행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zur Verwahrung anvertrauen). 지분증서의 발행가격은 그 가격이 제21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특별재산에 歸屬되는 한 보호예수은행에서 納付하고 보호예수은행에 의해 특별재산만을 위해 개설한 口座에 入金된다; 이는 또한 유가증권이나 기타 특별재산대상의 販賣價額, 제3자가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그에게 부여된 유가증권옵션권을 위해 지불한 옵션가격이나 收益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2) 투자신탁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보호예수은행은 유가증권이나 기타 資産項目의 취득시의 매입가격, 금융선물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유가증권이나 기타 재산대상의 매도시의 인도, 지분의 상환에 따른 상환가액 및 利益持分の 配當등을 단독구좌(gesperrte Konten)나 보호예수물로부터 持分所有者에게 이르도록 한다.
- (3) 보호예수은행은 보호예수은행과 연결개설된 폐쇄구좌의 예금이 안전장치(제12조 제3항 제2문)에 의해 보호되는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單獨口座에 現存하고 있는 예금을 투자신탁회사와는 다른 명칭의 금융기관의 閉鎖口座(Sperrkonten: 당좌구좌)에 移替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이체된 예금은 그 다른 금융기관에서 안전장치(Sicherungseinrichten)에 의하여 전부 보호되고 있어야 한다.
- (4) 특별재산에 속하는 産業債券(Schuldscheindarlehen)의 처분은 보호예수은행의 동의를 요한다. 보호예수은행은 그 처분이 본법의 규정과 契約條件에 合致하는 경우에만 동의하여야 한다.
- (5) 특별재산을 위한 有價證券 및 新株引受權의 취득은 최고 당일시세(Tageskurs)에 의할 수 있고, 그 賣渡는 최소한 당일시세에 의하여야 한다. 만약 제3자에게 부여한 유가증권옵션권의 행사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제1문과는 달리 합의한 기본가격(Basispreis)에 의해 취득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조직화된 시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유가증권, 산업채권(Schuldscheindarlen),

화폐시장증권(Geldmarktpapiere) 등은 최고 제2조 제3항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다; 賣渡時의 반대급부는 보호예수은행이 미리 조사한 가액에 未達하지 않거나 極微하게 미달할 수 있다.

제 12b 조

보호예수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注意하여야 한다.

1. 持分證書의 발행과 상환 및 지분가액의 算定이 本法규정 및 契約條件을 위반하지 않을 것
2. 지분소유자 공동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 통상의 기간내의 보상은 은행이 관리한다는 점과
3. 특별재산의 收益은 本法의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사용된다는 점

제 12c 조

(1) 保護預受銀行은 특별재산에 속하는 口座로부터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오로지 특별재산의 관리를 위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보상과 은행이 할 수 있는 비용지출의 보상만을 지불할 수 있다. 은행이 스스로 특별재산의 보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신탁의 同意하에서만 差減할 수 있다.

(2) 보호예수은행은 自己名義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의무를 진다.

1.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지분소유자의 請求權行使
2. 특별재산이 責任을 지지 아니하는 청구로 인하여 특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771조에 따른 反訴의 提起; 지분소유자는 스스로 강제집행에 대한 異議를 제기할 수 없다.
보호예수은행은 그의 활동에 관하여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과 발생비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문 제1호는 持分所有者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를 排除하지 않는다.

- (3) 투자신탁회사는 自己名義로 보호예수은행에 대한 持分所有者의 請求權을 행사할 권한과 의무를 진다. 이는 지분소유자에 의한 위의 請求權의 행사를 排除하지 않는다.

제 13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특별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3개월의 解止通知期間을 준수하여 聯邦公報와 釋明報告書 또는 半期報告書에 公示함으로써 계약을 解止할 수 있다. 계약조건에서 보다 長期의 해지통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2) 투자신탁회사는 모든 특별재산 관리를 위한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보다 앞서 解散을 결정할 수 없다.
- (3) 투자신탁회사가 특별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權利는 투자신탁회사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의 開始가 있거나 또는 同 절차의 비용에 상응하는 破産財産의 欠缺을 이유로 파산절차의 개시를 拒否하는 법원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소멸한다. 특별재산은 투자신탁회사의 파산 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4) 투자신탁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解散되거나 法院에 의한 和議節次의 개시가 있거나 또는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一般的인 處分禁止措置(Verfügungsverbot)가 내려진 때에는 유가증권수탁은행은 보관하고 있는 특별재산과 관련하여 契約解止通知期間을 준수함이 없이 持分所有者를 위하여 투자신탁회사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 14 조

- (1) 투자신탁회사가 특별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소멸되면 특별재산이 투자신탁회사의 所有하에 있는 경우엔 그 특별재산이, 그리고 지분소유자의 공동소유하에 있는 경우엔 그 특별재산에 대한 處分權이 수탁은행에 移轉된다.

- (2) 受託銀行은 특별재산을 청산하여 持分所有者에게 配分하여야 한다. 투자신탁회사는 銀行監督廳의 승인을 얻어 위의 청산과 배분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재산의 管理를 지금까지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른 투자신탁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폐쇄형 펀드(제1조 제2항)의 관리를 다른 투자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은행감독청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 (1) 투자신탁회사와 持分所有者의 法律關係를 정하는 계약조건은 持分證書의 교부이전에 文書로써 확정되어야 한다.
- (2) 계약조건과 그 變更은 폐쇄형 펀드(Spezialfonds: 제1조 제2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은행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승인은 계약조건이 法律의 規定에 附屬하고 持分所有者의 利益을 충분히 保障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어진다. 은행감독청은 附屬規定(Nebenbestimmungen)에 의거하여 승인할 수 있다. 승인이 제1문에 따라 주어지는 경우에만 투자신탁회사는 계약조건에 賣却事業說明書(Verkaufsprospekt: 제19조)를 첨부할 수 있다.
- (3) 은행감독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계약조건을 승인할 수 있다.
1. 어떤 원칙에 따라 조달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선택이 이루어지는지, 특히 취득되는 유가증권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지 혹은 외국의 조직화된 시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특별재산에 歸屬되는 자산항목이 투자신탁회사의 소유하에 있게 되는지 혹은 持分所有者의 共同所有하에 있게 되는지 여부
 3. 특별재산의 얼마만큼의 지분이 최대한 은행예금자산(Bankguthaben)과 제8조 제3항에 따른 화폐시장유가증권으로 保有할 수 있는지 여부
 4. 특별재산의 최저지분이 은행예금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限度
 5. 어떤 방법, 한도와 계산에 따라 특별재산으로부터 투자신탁회사, 수

탁은행 및 제3자의 보수와 費用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6. 持分證書를 발행 교부함에 있어 프리미엄(Aufschlag: 제21조 제2항)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지분소유자의 支拂額중 어느정도의 액수를 비용을 위해 사용하고 어떻게 그 비용이 계산되는지의 여부
 7. 어떠한 조건과 지위하에 지분소유자가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持分證書의 引受(Rücknahme)를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8. 어떤 方式과 期日에 의하여 특별재산의 운영(Entwicklung)과 구성에 관한 釋明報告書와 半期報告書가 작성되고 公衆의 閱覽에 제공되는지 여부
 9. 특별재산의 受益이 配當되는지 혹은 再投資되는지 여부 그리고 지분증서의 발행가격의 受益計定部分이 配當을 위해 流出될 수 있는지(受益調整節次) 여부
 10. 특별재산의 계산을 위하여 유가증권옵션거래, 금융선물계약과 외환선물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11. 특별재산이 債券과 産業債券(Schuldscheindarlehen)에 집중하여 투자되어 있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精算될 것인지 및 지분소유자에게 配分될 것인지 여부
- (4) 제2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유가증권특별재산은 폐쇄형 펀드(제1조 제2항)나 다른 특별재산으로 轉換될 수 없다.
- (5) 투자신탁회사는 은행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 이후 지체없이 6개월간 積立되어 폐쇄된 폐쇄형 펀드(제1조 제2항)를 혼합하여 작성된 형태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 작성에 있어 특별재산의 표시 이외에도 투자자의 數, 수탁은행 및 계약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신고된 특별재산의 경우 위 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은행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그 변동의 효력발생후 2개월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5a 조

은행감독청은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승인함에 있어 3천 DM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위의 수수료의 절반을 부과한다.

제 16 조

讓渡利益의 配當은 계약조건에서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 17 조

삭 제

제 18 조

- (1) 持分證書에는 持分所有者의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請求權이 體化된다. 지분증서는 指示式 또는 記名式으로 발행할 수 있다. 지분증서가 記名式일 경우에는 주식법 제67조, 68조가 準用된다. 지분증서에는 투자신탁회사와 受託회사가 署名한다. 서명은 기계적 복제에 의할 수 있다.
- (2) 지분증서는 하나 또는 다수의 특별재산지분에 대하여 발행할 수 있다. 어느 한 특별재산에 대한 지분은 各種의 權利를 享有할 수 없고 특별재산에 속하는 전 자산항목을 포괄하여야 한다.
- (3) 특별재산에 속하는 대상이 지분소유자의 공동소유하에 있는 때에는 지분증서에 體化되어 있는 각종 청구권의 讓渡로서 특별재산에 속하는 자산항목에 대한 양도자의 지분도 역시 그 양도자에게 승계된다. 그 밖의 法律行爲에 의한 처분 및 강제집행이나 압류집행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는 특별재산에 속하는 자산항목에 대한 지분은 처분될 수 없다.

제 19 조

- (1) 계약체결 이전에 지분증서의 取得者에게는 투자신탁회사의 상세한 매각사업설명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위의 사업설명서에는 계약조건, 공표된 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公表된 釋明報告書(Rechenschaftsbericht)와 정기적인 半期報告書(Halbjahresbericht)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취득자에게는 발행 프리미엄의 액수와 매년 지불하는 보수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있는 계약청약서의 사본을 交付하여야 한다.
- (2) 투자신탁회사는 그가 관리하는 특별재산을 위한 사업설명서를 계약조건과 함께 일반의 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설명서는 取得時點에 있어 지분증서의 판단에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사, 회사형태, 주소 그리고 本店(Hauptverwaltung)이 주소지에 있지 아니한 경우 투자신탁회사의 본점소재지; 회사의 設立時期, 募集資本金 및 納入資本金(das gezeichnete Kapital und eingezahlte Kapital); 이사회 구성원(대표사원)의 성명과 투자신탁회사에게 중요한 경우 투자신탁회사의 외부에서 활동하는 주요기능에 대한 내용과 함께 감사회구성원의 성명
 2. 회사, 회사형태, 주소 및 본점이 주소지에 있지 아니한 경우 受託銀行의 본점 소재지; 受託銀行의 주요사업활동
 3. 특별재산의 명칭과 形成時期; 지분의 種類와 주요 분류기준(Hauptmerkmale), 특히 지분증서에 의하여 體化되는 권리와 청구권의 종류; 지분증서가 이 指示式 또는 記名式인지 여부와 어떻게 지분증서가 발행되는지에 대한 사항
 4. 財政的 目標(예컨데 자본 또는 收益增加)를 포함하는 특별재산의 투자 목표와 약간의 제약을 포함하는 투자정책(지리적 또는 경제적 영역에 의한 特化);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하는 은행차입(Kreditaufnahme)의 허용여부

5. 持分證書의 발행 및 償還條件; 價格算定의 方法과 回數, 발행 및 상환비용을 고려한 發行價格과 償還價格; 지분의 발행가격 및 상환가격 公示에 관한 사항; 지분의 상환이 중지될 수 있는 要件; 財産價額評價에 관한 規則
 6. 受益의 조사 및 사용에 관한 규칙; 특별재산의 事業年度末期; 利益配當의 回數
 7. 특별재산의 배당이익에 대한 源泉課稅控除여부를 포함한 지분소유자에 있어 중요한 稅務規定
 8. 투자자문회사 또는 투자상담사의 성명, 만약 위의 諮問이 契約에 의하여 그 보수가 특별재산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엔 報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지분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있는 계약의 詳細한 內容;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상담사의 중요한 기타 다른 營業활동
 9. 釋明報告書 및 半期報告書가 備置된 장소에 관한 사항
 10. 특별재산의 解體要件 및 지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詳細한 事項
 11. 지분소유자에 대한 支拂, 지분의 상환 및 각종보고서의 配布와 그 밖의 특별재산에 관한 情報를 지득키 위해 필요한 措置
 12. 지분이 다른 유럽공동체 회원국에서 매각된 경우, 그 국가에서 취해지는 조치와 그곳에서 공시하는 사업설명서를 승인하는 것에 관한 사항
 13. 투자신탁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그 밖의 특별재산
 14. 제23조에 따른 買受者의 撤回權에 대한 說明
- (3) 은행감독청은 取得者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發行事業說明書에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4) 發行事業說明書에는 최근의 상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5) 투자신탁회사는 發行事業說明書와 그 變更된 것을 첫 公示후 지체없이 은행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특별재산의 지분증서에 대한 買受의 請約廣告에서는 發行事業說明書 및 이를 교부받는 장소에 대해 알려야 한다.

- (7) 제1항 내지 제6항은 폐쇄형 펀드(제1조 제2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0 조

- (1) 持分證書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발행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不完全한 경우에는 발행사업설명서를 근거로 持分證書를 買受한 자는 투자신탁회사와 자기명의로 同 證書를 영업적으로 판매한 자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支拂金額의 환불대신에 同 持分證書를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買受者가 발행사업설명서의 허위사실을 안 시점에 지분증서의 所有者가 아닌 경우에는 賣渡時에 그가 지불한 금액이 상환가액을 초과한 만큼의 金額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19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발행사업설명서에 첨부해야 하는 보고서도 역시 제1항의 의미의 중요한 사항이다.
- (3) 투자신탁회사 또는 自己名義로 영업적으로 持分證書를 販賣하는 자가 발행사업설명서의 不正確性이나 不完全性を 알지 못했거나 그에 대한 중과실이 없음을 證明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持分證書의 買受者가 買受時點에 발행사업설명서의 부정확성 또는 불완전성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4) 발행사업설명서의 不正確性이나 不完全性を 알면서 持分證書의 賣却을 주선하거나 他人名義로 持分證書를 販賣하는 자도 또한 제1항에 따른 引受의무를 진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買受時點에 持分證書의 買受者가 동 사업설명서의 不正確性 또는 不完全性を 알았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5) 위의 請求權은 買受者가 同 사업설명서의 부정확성 또는 불완전성을 안 날로부터 6개월, 契約締結한 날로부터 3년의 消滅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

제 21 조

- (1) 지분증서는 발행가격의 완전한 給付履行에 의해서만 交付된다. 제2항 제1문에 따라 투자신탁회사가 발행비용의 控除를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基本價格(Gegenwert)은 지체없이 특별재산의 계정에 귀속된다. 現物出資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분의 價額이 특별재산의 계정에 귀속되지 아니한 채 지분증서가 거래되는 때에는 투자신탁회사가 그의 固有財産으로 부족액을 특별재산에 預入시켜야 한다.
- (2) 지분증서의 발행가격은 특별재산에 대한 持分價額에 계약조건에서 정한 프리미엄(Aufschlag: 제15조 제3항 f)을 부가한 금액이어야 한다. 지분의 價額은 특별재산가액을 去來되고 있는 持分の 數로 나눈 액수이다. 특별재산의 가액은 그에 속하는 유가증권, 新株引受權 및 유가증권옵션권의 時勢를 기초로 하여 그 밖의 기타 재산목록을 더하고, 금융기관 貸出分과 기타 債務額을 控除하여 산정하되 保護預受銀行(Depotbank)이 투자신탁회사와 공동으로 每 증권거래일에 조사한다; 폐쇄형 펀드(제1조 제2항)의 경우에는 위의 每 증권거래일별 調査에 의한 특별재산가액과는 달리 약정할 수 있다. 短期流動去來(schwebender Verpflichtungsgeschäfte)의 경우에는 투자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재산항목 대신에 계약체결후에 (직접) 同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反對給付에 대한 권리로서도 고려될 수 있다.
- (3) 증권거래소에 상장도 조직화된 시장에서의 등록도 되어있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경우에 그 거래가격은 전체여건을 고려하여 一見的 판단에 의해 적정하다고 인정된 가액을 기초로 한다. 증권거래소에의 상장 또는 조직화된 시장에서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債券 및 產業債券(Schuldscheindarlehen)의 價額算定은 이들과 비교가능한 債券 및 產業債券에서 약정한 가격과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자, 만기 및 利子支給이 유사한 債券의 時勢 그리고 필요한 경우 매매의 곤란함을 보완하기 위한 割引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8조 제3항의 貨幣市場有價證券(Geldmarktpapiere)은 각 시장원리에 따라 價額을 산출한다.

- (4)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제3자에게 부여한 매입옵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그 時勢가 基本價格(Basispreis)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문의 규정과 달리 약정한 기본가격에 따른다. 특별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옵션권의 時勢를 調査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일부분이라도 買受 또는 賣渡注文에 따라 마지막으로 확정된 時勢가 基準이 된다.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옵션권을 取得한 후에도 위와같은 시세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옵션권의 原買入價格(Anschaffungspreis)을 기초로 한다.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제3자에게 부여한 매도옵션의 경우 그 옵션이 설정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約定基準價格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保護預受銀行은 특별재산의 가액을 조사함에 있어 기본가격과 시세와의 差額만큼의 재산감소액의 控除를 예정해야 한다. 특별재산의 계산으로 주가지수 또는 金利先物去來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保護預受銀行은 증권거래소의 前日終價에 따른 評價損益을 산입한 후 契約履行先拂金을 특별재산의 계정에 산입처리하여야 한다.
- (5) 상환가격(Rücknahmepreis)은 제2항에 따라 보호예수은행이 조사한 持分評價額에 따른다.
- (6) 투자신탁회사 또는 保護預受銀行이 發行價格을 公表하는 경우에는 상환가격도 公表하여야 한다; 상환가격을 公表하는 경우 발행가격도 公表하여야 한다. 발행가격과 상환가격은 持分證書의 每 發行 및 償還마다, 적어도 월 2회 有力한 경제신문이나 일간지에 公示하여야 한다. 제2문은 폐쇄형 펀드(제1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7) 각 특별재산은 최초의 지분증서를 발행함에 있어 그 최초의 지분증서 발행시점의 持分評價額이 100 DM을 넘지 않는 方式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제1문은 폐쇄형 펀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수년에 걸쳐 持分の 引受를 約定한 경우에는 그 첫해에 약정한 各 支拂金額중 최고 1/3까지 費用의 填補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그후의 支拂金額으로 同等하게 分配處理되어야 한다.

제 23 조

- (1) 持分證書의 買入者가 口頭의 협상을 통하여 持分證書의 販賣者 또는 그 仲介者의 통상영업지역 이외에서 買受請約의 意思表示를 한 경우에는,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해 철회하지 않는 한 그 意思表示에 구속된다; 持分證書를 販賣한 者나 그 仲介者가 통상의 영업범위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같다.
- (2) 위의 期限을 保存하기 위하여는 철회의사표시를 適時에 發送함으로써 족하다. 同 期限은 發行事業說明書가 買受者에게 교부된 때로부터 起算한다. 同 사업설명서가 買受者에게 교부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時點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販賣者가 立證責任을 진다.
- (3) 販賣者가 다음의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撤回權은 존재하지 않는다.
 1. 買受者가 그의 영업상 持分證書를 取得했다는 것, 또는
 2. 販賣者가 持分證書를 판매에 이르게 된 협상에서 종전의 注文(영업규칙 제55조 제1항)을 근거로 했다는 점
- (4) 계약이 撤回되었지만 買受者가 이미 代金支給을 한 때에는, 투자신탁회사는 持分證書를 반환받고(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이행에 의해) 買受者에게 撤回의 意思表示의 受領日을 기준으로 持分證書의 支拂價額(제21조 제2항 제2문 및 제3문)에 해당하는 金額과 費用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 (5) 撤回權은 포기할 수 없다.

제 24 조

- (1) 持分證書가 無記名증권이거나 白紙式 背書로 된 경우에는 반드시 保護預受法(Depotgesetz)상의 混藏保管을 할 수 있다.
- (2) 持分證書가 분실 또는 별실된 때에는 그 證書에 反對의 규정이 없는

한 公示催告節次를 거쳐 無效化할 수 있다. 利益持分證書가 所持人出給式(無記名)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지분증서의 無效化와 함께 아직 지급제시되지 않은 利益持分證書상의 권리도 소멸한다.

- (3) 持分證書가 훼손으로 인하여 더이상 거래에 적절치 않은 때에는 그證書의 본질적 내용과 區別標識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한있는 자가 회사에 대하여 舊證書의 返還과 함께 新證書의 再交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費用은 위의 권한있는 자의 負擔으로 先拂하여야 한다.
- (4) 새로 발행한 利益持分은 만약 그 持分證書의 所有者가 반대할 때에는 새로 만들어지게 될 증서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위의 證書는 그 占有者가 原本證書(Haupturkunde)를 제시함으로써 占有者에게 交付된다.

제 24a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모든 사업년도의 결산에 대해 釋明報告書를 作成하여 늦어도 事業年度 경과 3월까지 聯邦公報에 公示하여야 한다. 釋明報告書는 當該 事業年度의 활동에 대한 보고와 持分所有者로 하여금 그 활동의 評價 및 특별재산의 決算에 대한 判斷을 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釋明報告書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財産項目, 産業債券, 銀行預金과 그 밖의 貸出金, 옵션거래, 통화안정, 금융선물거래에 따른 債務 및 기타 債務; 資産項目은 그 種類, 額面價額, 數, 時勢등을 適時하여야 한다; 有價證券 殘高는 다음과 같이 項目別로 分類된다: 증권거래소에 正上場(Zulassung zum amtlichen Handel)된 유가증권, 조직화된 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증권거래소에 上場 또는 조직화된 시장에 등록된 新規發行有價證券, 그 밖의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타 有價證券과 産業債券인 경우에는 투자정책 등(예컨대 경제적, 지리적

영역과 통화에 대한)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류기준에 따라 특별재산의 比例的 持分別로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 모든 財産項目에 대해서 각자의 특별재산價値에 대한 持分을 明示하여야 한다; 모든 有價證券 및 産業債券 項目에 대해서는 報告期間중의 賣買도 역시 額面價額 또는 數에 따라 分類하여 明示하여야 한다; 報告期間 중에 체결한 옵션거래, 外換先物去來 및 金融先物去來도 財産項目에 나타나지 않는 한 明示하여야 한다; 純殘高價(Nettobestand-wert)에 관한 사항

2. 報告書公示 當日의 持分の 去來量과 제21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持分 價額의 數量
 3. 收益 및 費用의 種類에 따라 분류한 利益處分計算書; 利益處分計算 (Ertrags und Aufwandsrechnung)는 이로부터 投資收益, 기타 收益, 특별 재산관리비용 및 보호예수은행에게 支出하는 기타 費用, 수수료와 純益 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作成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고기간중의 특별재 산운영에 관한 概要, 配當된 收益 및 再投資된 收益, 賣買去來에 따른 특별재산의 增減(實質損益), 資産項目의 名目損益에 관한 사항과 持分證書의 賣却에 따른 財産流入 및 持分證書의 償還에 따른 財産流出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지난 3개 事業年度에 대한 概要와 比較, 이 경우 각 사업년도말의 特別財 産價額과 단일持分の 價額을 明示하여야 한다.
- (2) 투자신탁회사는 사업년도 중간에 다른 釋明報告書を 作成하지 않는 한 제1항 제3문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는 半期報告書(Halbjahresbericht)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半年간의 中間配當이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한 제1항 제3문 제3호에 따른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半期報告書는 늦어도 그 기일의 2月內에 연방공보에 公示하여야 한다.
- (3) 투자신탁회사는 釋明報告書와 半期報告書의 첫 사용후 지체없이 은행 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 보고서는 持分所有者의 要求에 따라 無料로 提供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들 보고서는 사업

설명서에서 摘要한 장소에 공중의 열람에 제공된다. 투자신탁회사는 뿐만 아니라 은행감독청의 요청으로 그 중간에 해당하는 각 3개월간의 모든 특별재산에 대한 財産目錄을 연방은행과 은행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재산목록은 보호예수은행이 확인한다.

- (4) 특별재산의 석명보고서는 특별재산의 사업년도 末에 속하는 투자신탁회사의 年末決算을 검사하는 決算검사인에 의해 검사된다. 檢査는 특별재산의 관리에 있어 본법규정 및 약관조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심사된다. 檢査의 결과는 검사인이 감사의견의 표시에서 확정한다; 감사의견표시는 석명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반복된다. 연말결산검사인은 검사종료후 지체없이 특별재산의 檢査報告書를 은행감독청과 연방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폐쇄형 펀드 (제1조 제2항)의 경우 석명보고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한정할 수 있다. 폐쇄형 펀드에 관한 반기보고서와 석명보고서에 대한 檢査報告書는 요청에 의해서만 은행감독청과 연방은행에 제출한다. 폐쇄형 펀드의 檢査는 제4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계약조건이 本法規定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제 24b 조

- (1) 투자신탁회사가 1985년 12월 20일의 「특정한 유가증권 공동투자조직에 관한 법률 및 행정규칙의 조화에 관한」 EC지침법(Richtlinie 85/611/EWG: ABl. EG Nr. L 375 S.3)규정이 규율하는 유가증권특별재산의 지분을 EC의 다른 회원국가의 公衆을 대상으로 賣却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은행감독청, 독일연방은행 및 그 다른 회원국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 회원국의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위하여 은행감독청은 투자신탁회사의 요청에 의해 85/611/EWG 지침법의 규정을 충족시켰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 (2) 투자신탁회사가 유럽공동체의 다른 회원국가에서 지분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그 국가의 관할관청에 의해 의도하는 매각의 종류와 방법이 지

침법 85/611/EWG의 준수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없이 완전한 신고의 접수후 2月の 경과가 있어야 한다.

- (3) EC의 다른 회원국가에서 지침법 85/611/EWG의 규정에 따른 지분 매각을 할 경우에 투자신탁회사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이 지침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영역 또는 광고에 관련되는 그 다른 회원국의 현행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그 다른 회원국의 현행법규정을 준수하면서 지분소유자가 그 국가에서 투자를 회수하거나 지분증서를 반환하거나 또는 투자신탁회사로부터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리고
 3. 本法에 따라 공시하는 서류와 사항은 적어도 그 회원국가의 한 언어로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의 방법과 형태는 본법규정에 따른다.

제 25 조

- (1) 유럽공동체의 다른 회원국에서 持分을 매각하는 경우 은행감독청은 85/611/EWG 지침법 규정에 따라 그 규정 혹은 유가증권특별재산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 (2) 은행감독청이 EC의 다른 회원국가에서 85/611/EWG 지침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특별재산의 지분을 매각하는 투자신탁회사를 감독함에 있어 그 다른 회원국의 관할관청과 협력하고 그 관할관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용조직법 제9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상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위의 (타회원국의) 관할관청에 제공하는 정보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은행감독청이 다른 EC 회원국의 관할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지득하는 한 그 통지받은 사실은 반드시 감독청의 의무감독활동을 위해서 혹은 감독처분에 대항하는 권리구제절차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절차 범위에서의 통지받은 사실의 사용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은행감독청은 認可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모든 결정, 특히 지분증서 상환의 中止결정등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혹은 유가증권특별재산에 관련된 모든 중대한 처분조치를 위의 EC지침법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특별재산의 持分이 판매되고 있는 EC의 다른 회원국의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資本參加特別財産(Beteiligungs-Sondervermögen)에 관한 특별규정

제 25a 조

회사에 預託된 金錢을 匿名組合員(Stiller Gesellschafter)으로서 상법 제230조상의 자본참가(匿名자본참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는 本章 以下の 規定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第 2章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제 25b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자본참가특별재산을 위해서 오로지 다음 각호만을 취득할 수 있다.
1. 有價證券
 2. 本法의 適用範圍內에 주소와 本店을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한 匿名의 자본 참가, 단
 - a) 被參加企業의 유가증권은 국내 증권거래소의 1차시장(正上場: amtliche Notierung)이나 2차시장(規制市場: Geregelter Markt)에 상장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의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유가증권에 한한다.
 - b) 투자신탁회사의 연말결산검사인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회사에 의해 상법 제319조 제1항 제1문의 결산검사인으로 선임된 자가 이 때 사전에 자본참가특별재산으로부터 급부해야 하는 출자에 대해

급부시점에서 보아 적절한 반대급부가 합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의 검사인은 이를 위해 최소한 前事業年度를 위하여 상법 제267조 제3항상의 大資本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被參加企業(Beteiligungsunternehmen)의 연말결산서를 작성케 하여야 하며, 기대수익지분 및 예상되는 이익연동부 최저금리(기대수익), 기대상환가액, 익명자본참가의 양도가능성 및 위험도, 연방정부의 유통되는 채권 및 거의 같은 잔류기간을 갖는 독일국채와 우체국특별재산의 수익을 제25d조 제3항의 법규명령의 기준에 따라 고려하여야 하고, 기대 수익 및 기대상환가액을 위의 증명에서 포함하여야 한다; 상법 제319 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결산검사인에 대해 準用된다. 익명의 자본참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그것의 취득과 동일하다.

- (2) 어느 한 피참가기업에 대한 匿名의 자본참여는 그 持分の 取得時의 價額과 특별재산으로 있는 동 기업에 대한 기존의 匿名의 참여지분가액을 합친 합산가액이 특별재산가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만 단일 자본참여특별재산(Beteiligungs-Sondervermögen)으로 취득할 수 있다. 주식법 제18조상의 큰체른기업에 대한 익명의 자본참가는 똑같은 피참가기업에 대한 匿名의 자본참가로 간주한다.
- (3) 匿名의 자본참가는 그 취득시의 취득가액과 특별재산으로 편입된 기존의 匿名의 자본참가와 의 합계액이 총 특별재산價額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참가특별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 (4) 債券은 그 취득시의 가액과 특별재산에 편입된 기존의 채권가액의 합계액이 특별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참가특별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 (5) 제8a조 제2항 제4문과 제3항은 익명의 자본참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 25c 조

(1) 투자신탁회사와 피참가기업간의 회사계약(Gesellschaftsvertrag)에서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

- a) 익명의 資本參加가 행해지는 기간
- b) 투자신탁회사가 갖는 收益의 滿期, 그 수익과 상환액을 즉시 보호예수은행의 단독구좌(gesperretes Konto)에 預入해야할 被參加企業의 의무
- c) 익명의 자본참가를 被參加企業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의 그 요건 및 영업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취득자에게 양도할 경우 피참가기업이 그 취득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영업세의 범위
- d) 자본참가특별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경우 투자신탁회사 대신에 보호예수은행이 관리하며 이 은행이 제14조 제2항 제2문 및 제4문에 따른 경우 다른 투자신탁회사에게 그 익명의 자본참가를 양도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한 피참가기업의 동의에 관한 사항
- e) 피참가기업이 상법 제267조 제3항상의 대자본회사에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연말결산을 작성해야 할 의무
- f) 피참가기업이 제25d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연말결산감사인에게 상법 제320조 제1항 제2문, 제2항 제1문의 권리를 부여해야 할 의무
- g) 지분소유자의 이익을 保障하기 위한 투자신탁회사의 정보권, 통제권 및 동의권

保護預受銀行은 제1문의 규정에 따라 자본참가계약이 정해져 있는 지를 감독해야 한다.

(2) 익명조합의 해산시 투자신탁회사가 피참가기업 재산가액의 변경에 자본참가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 25d 조

(1) 匿名의 자본참가는 그 취득에 따라 계속하여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그 평가에 있어 기대수익, 예상상환액, 익명자본참가의 양도가능성 및 위험도, 연방정부의 유통채권수익율과 거의 같은 잔류만기를 갖는 연방철도 및 연방채신특별계정 등이 하나의 수익평가절차에서 고려된다. 기대수익과 예상상환액은 여기서 각각 연말결산검사인이 제2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가액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확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5b조 제1항 제2호 b의 확인금액이 기준이 된다.

- (2) 제25b조 제1항 제2호 b의 투자신탁회사가 선임한 연말결산검사인은 匿名의 자본참가취득후 제1항 제2문에 따른 이익과 상환액을 각각 늦어도 被參加企業의 영업년도말 6月이내에 확정하여야 하며 투자신탁회사를 위한 보고서의 형식으로 明示하여야 한다. 제25b조 제1항 제2호 b의 확인과 1문에 따른 확정간의 時差는 최장 12月이내 이어야 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히 被參加企業의 경제적 여건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위의 기대수익과 예상 상환액을 연말결산검사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문과 제3문에 따라 확정함에 있어 역시 匿名의 자본참가의 양도가능성과 위험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 (3)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命命으로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同 자본참가의 상시평가를 위한 산정절차를 상세히 규정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문에서 표시된 요소들의 확정원칙이 또한 제25b조 제1항 제2호 b에 따른 요소들을 고려하는 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정할 수 있다. 이 命命은 이익산정에 어느 시기를 기초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同 命命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匿名의 資本參加와 연방국채, 연방철도와 연방채신의 특별계정간의 양도 可能性 및 위험도에 관한 일반적 차이의 총규모, 그리고
 2. 匿名의 資本參加의 양도가능성과 위험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同 參加의 特殊性과 당시의 시장상황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제 25e 조

- (1) 단일 資本參加特別財産에는 이 특별재산 형성후 최장 8월이내에 적어도 10개이상의 被參加企業에 대한 匿名의 자본참가가 있어야 하고, 그 가액은 최소한 그 특별재산가액의 10%에 달해야 한다; 제25b조 제2항 제2문은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다.
- (2) 資本參加 特別財産에 편입된 匿名의 자본참가 總額 또는 總數가 제1항에서 명시한 한도 이하이고 투자신탁회사가 이 흠결을 1월이내에 치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신탁회사는 이 결함을 사후에 치유할 때까지 지분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同 欠缺이 2년내에도 治癒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감독청은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자본참가특별재산의 관리에 관한 契約解止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명시한 한도의 未達과 持分證書의 發行中止 및 再開는 지체없이 은행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5f 조

제6조 제1항 제2문의 규정과 달리 자본참가특별재산에 속하는 財産項目은 오로지 투자신탁회사의 소유권하에 둘 수 있다; 匿名의 사원(Stiller Gesellschafter)은 반드시 투자신탁회사이어야 한다.

제 25g 조

- (1) 保護預受銀行은 匿名의 資本參加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하고 제25d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항 제3문에 따라 자본참가특별재산의 가액을 확정함에 있어, 익명의 자본참가의 未支給 이익금은 특별재산가액의 조사기일 이전의 계정으로 시기별로 산입된다. 每 년도의 수익은 제25d조 제2항에 따라 연말 결산검사인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25d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제25b조 제1항 제2호 b에 따른 확

인(Bestätigung)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 (2) 자본참가 특별재산에 속하는 익명의 자본참가의 처분과 계약의 변경은 保護預受銀行의 동의를 요한다. 보호예수은행은 위의 처분이 本 법의 규정과 계약조건(제15조)에 합치하고 지분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同意하여야 한다.
- (3) 자본참가 특별재산에 속하는 금전재산은 특정한 특별재산을 위해 개설된 폐쇄구조(단독구조)를 통해서만 출납된다. 보호예수은행은 투자신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의 폐쇄구조로 부터 특별재산을 위한 익명의 자본참가의 매입가액을 지급하고 또한 특별재산관리에 필요한 기타 債務를 이행한다.
- (4) 그이외에 제12조 내지 제12c 조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5h 조

지분증서는 상환을 위한 지급제시의 순서에 따라 지급일 당일 조사한 상환가격으로 지급한다.

제 25i 조

자본참가 특별재산에 속하는 익명의 자본참가 지분은 그 반대급부가 제 25d조에 따라 조사한 가액을 미달하지 않거나 미달액이 극미한 경우에만 매도할 수 있다. 본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제 25j 조

- (1) 계약조건에는 투자신탁회사가 모든 자본참가계약에서 약정한 정보권, 통제권 및 동의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釋明報告書는 익명의 자본참가자산의 운영에 관한 기술과 특히 同 자산의 해산 또는 매각으로 인한 감소액을 각각 별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 (3) 투자신탁회사는 財産項目(제24a조)에서 자본참가특별재산에 속하는

익명의 자본참가지분을 기입해야 하고 각 피참가기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회사형태, 주소 및 설립년도
2. 영업의 목적
3. 자기자본금
4. 익명의 자본참가 규모와 그 조사가액
5. 취득시기와 익명의 자본참가의 만기
6. 익명의 자본참가분으로부터 발생한 전영업년도의 이익규모재산항목에
서는 피참가기업의 상호, 주소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익명의
자본참가가액을 총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 4 장 土地不動產 特別財産에 관한 特別

제 26 조

예치된 금전으로 토지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는 本章 이하의 규정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本法 제2장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27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건하에 토지부동산 특별재산을 위하여 오로지 다음에 열거하는 EC 회원국 소재의 자산만을 취득할 수 있다.
 1. 임대거주용 토지, 영업용 토지, 잡종사용목적의 토지
 2. 건축중인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1호에서 열거한 요건에 부합하고 준공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토지대금이 특별재산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
 3. 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곧 착공이 결정되었거나 적절한 미건축의 토지로서 취득시점의 가액이 기존 특별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미건축토지의 가액과 합쳐 특별재산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하의 地上權
- (2) 계약조건에서 정한바 있고 재산대상이 지속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특별재산으로 다음의 것도 취득할 수 있다.
1. EC의 타회원국에 소재하는 토지, 지상권, 기타 단독주택소유권이나 부분 소유권 형식의 권리, 또는 주택지상권과 일부지상권
 2. EC 회원국이 아닌곳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열거한 종류

土地와 제1호에 따른 諸권리는 취득시점의 가액이 이미 특별재산에 편입된 토지와 동종의 諸權利의 가액과 합쳐 토지특별재산총가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 제2호에 따른 토지는 그 취득시점의 가액이 이미 특별재산에 편입된 同種 토지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 제2호에 따른 토지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 특별재산가액 대신에 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으로 갈음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항목의 취득은 전문가위원회(제32조)가 사전에 評價한 바 있고 同 특별재산으로부터 지급하는 대금이 조사된 가격을 초과하지 않거나 그 초과액이 극미한 경우에 한한다. 이는 지상권 이자의 산정 및 그에 대한 사후의 변경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 (4) 토지특별재산을 위하여는 토지특별재산의 영리사업에 필요한 자산대상도 취득할 수 있다.
- (5) 앞의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다투지 못한다.

제 28 조

- (1) 토지특별재산은 최소한 10개 단위가상의 토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어느 한 토지의 가액은 그 취득시 총특별재산가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 (3) 여러단위의 토지로 구성된 토지일체도 제1항의 의미의 토지로 본다.

제 29 조

제27조 제1항 제3호와 제28조에 따른 한도가 어느 한 투자신탁회사의 토지특별재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특별재산의 형성후 4년의 기간이 지난 후라야 한다.

제 30 조

제6조 제1항 제2문과 달리 토지특별재산에 속하는 재산대상은 오로지 투자신탁회사의 고유한 소유권으로 할 수 있다.

제 31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다른 금융기관(보호예수은행)에 토지자산에 대한 계속적인 감독, 특별재산에 속하는 금전재산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지분증서의 교부 및 상환을 위임할 수 있다.
- (2) 투자신탁회사는 반드시 보호예수은행의 同意를 얻어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특별재산 소속의 재산항목을 처분할 수 있다. 보호예수은행의 동의없는 처분은 지분소유자에 대하여 效力이 없다. 무권한자로부터 권리가 유래하는 자를 위한 규정은 유추적용된다.
- (3) 보호예수은행은 본법규정과 계약조건에 합치하는 위의 처분에 대하여는 同意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가 아닌 때에 同意한 경우라도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못한다.
- (4) 투자신탁회사는 제2항 제1문에 따른 처분권의 제한을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보호예수은행은 위 규정의 준수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외국의 토지의 경우 처분권제한의 등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처분권제한의 효력은 다른 적절한 형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5) 보호예수은행의 지정은 은행감독청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등기소에 대해 증명하며, 위 증명서는 은행감독청이 그 금융기관을 보호예수은행으로 승인했다는 사실과 투자신탁회사가 보호예수은행을 변경할 권한

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6) 특별재산에 속하는 금전자산은 특별재산을 위해 개설한 하나 또는 다수의 폐쇄계좌에 記帳된다. 이들 계좌는 지불거래의 원활화에 필요한 경우 보호예수은행의 위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행하게 할 수 있다.
- (7) 투자신탁의 지시에 따라 보호예수은행은 위의 폐쇄계좌로부터 특별재산대상의 매입대금의 지불, 지분상환시의 상환대금의 지불, 지분소유자에 대한 이익배당과 기타 특별재산관리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 등을 집행한다.
- (8) 보호예수은행은 특별재산소속 재산대상의 취득자에 대하여 갖는 지분소유자의 권리를 자기명의로 행사할 권한과 의무를 진다.
- (9) 그 밖에 제12조 내지 제12c조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2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本法 또는 계약조건이 정하는 경우 재산대상을 평가할 권한을 갖는다. 투자신탁회사는 또한 제1문에 따른 전문가위원회를 다수 구성할 수 있다.
- (2)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성, 성실성과 함께 토지부동산 평가의 경험있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라야 한다.
- (3) 위 委員會의 구성은 은행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 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도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이 결여된 경우 은행감독청은 다른 전문가를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3 조

- (1) 계약조건에서는 장래 특별재산 재산대상의 결손보충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특별재산이익이 배당되지 않음을 정하여야 한다.
- (2) 계약조건에서는 어느 범위의 특별재산 이익배당이 이루어지는지와 특별재산 재산대상의 감가상각 보전을 위하여 이익이 유보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를 명문의 규정으로 明示하여야 한다.

제 34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재산항목(제24a조)에서 특별재산에 속하는 토지부동산 및 기타 재산대상의 현황을 그 크기, 종류, 위치, 건축 및 취득년도, 건물사용면적, 거래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4a조 제1항 제3문 제1호에 따른 재산항목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은 同種 토지부동산 집단을 위하여 單一價額으로 제시할 수 있다. 토지부동산의 재산대상은 전문가위원회가确定的한 평가액에 따른다. 제24a조 제3항 제4문에 의한 자산항목에 대하여는 취득 1년이하인 경우 제24a조 제1항 제3문 제1호에 따른 자산평가가 기준이 된다.
- (2) 특별재산에 대한 지분가치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持分證書의 발행 및 상환가격은 제1항 제3문의 평가방법을 토대로 적어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제 35 조

투자신탁회사는 모든 토지 특별재산에 대하여 최소한 특별재산가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호예수은행에 최장 1년 이상의 해지통고기한을 갖는 銀行預金으로 또는, 독일연방은행이 롬바르드거래(Lombardverkehr)를 허용한 유가증권으로 保有해야 한다. 위의 유가증권은 거래시 지분의 75%가 제1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제1문에서 정하는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재산가액의 또 다른 5%에 달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독일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이나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 36 조

지분소유자가 지분증서의 상환으로 자기의 특별재산에 대한 지분을 지불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신탁회사는 계약조건에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償還支拂을 거절할 수 있으나, 다만 은행예금과 제35조에 따른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수익이 상환가액 및 적절한 운영의 담보에 미달 또는 즉시 처분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제35조에 따라 투자한 자산이 위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특별재산의 재산항목을 처분할 수 있다. 적절한 조건에 따라 위의 재산항목을 매각할 때까지, 다만 지분증서 발행후 최장 1년까지 투자신탁회사는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위의 기한은 계약조건으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의 경과후 투자신탁회사는 지분증서 상환을 위한 자산을 적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재산의 재산대상을 담보대출할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적당한 조건이 허용되는 즉시 재산대상을 매각함으로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위의 부담을 면하여야 한다. 위의 부담과 그 면제에 대해 은행감독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 (1)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특별재산에 속하는 재산대상의 매각은 이를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 있고 그 대금이 전문가위원회가 조사한 평가액에 미달하지 않는 한에서만 제36조의 조건하에 허용된다.
- (2) 토지부동산의 일부가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매각되거나, 이런 절차 또는 다른 부동산과 교환되거나 또는 토지점유권의 완성을 위해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위해 支拂하는 대가가 고유토지의 동일 면적에 요구되는 代價에 미달되지 않는 한, 전문가위원회에 의한 가액평가를 배제할 수 있다.
- (3) 특별재산에 속하는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대상에 의한 부담은 다음의 경우에 제27조 제3항 제3문과 제36조의 요건하에서 허용된다: 즉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 있고 정상적인 운영범위내에서 허용될 때, 보호예수은행이 그 부담에 대해 그 부담의 조건을 시장의 관습에 따른(marktüblich) 것이라 판단하여 그 부담을 동의할 때. 위의

부담(Belastung)은 특별재산에 편입된 토지부동산의 총거래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각각의 효력은 다투지 못한다.

제5장 稅法規定

제1관 有價證券特別財産

제38조

- (1) 有價證券特別財産(제8조)은 法人稅法 제1조 제1항 제5호와 財産稅法 제1조 제1항 제2호 e상의 목적재산이다. 유가증권특별재산은 제38a조를 조건으로 法人稅, 營業稅와 財産稅의 免稅대상이다.
- (2) 무제한적으로 課稅의 의무를 지는 자본회사에 대한 참여지분이 유가증권특별재산에 속하는 때에는 산정가능한 法人稅는 신청에 의해 保護預受銀行에 환불된다. 무제한적으로 所得稅의 과세의무있는 持分所有者에 대하여는 法人稅 환불에 관한 所得稅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所得稅法 제36b조 제2항에서 명시한 증명서 대신에 유가증권특별재산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증명서가 제1항에서 의미하는 목적재산이 현존함을 증명한다. 유가증권특별재산에 대한 配當이 배당증권의 제출과 무관한 것일 경우에 산정가능한 法人稅도 환불된다.
- (3) 有價證券特別財産의 자본소득에 의해 보유하고 부담하는 資本所得稅는 신청에 의하여 보호예수은행에 환불보상된다. 所得稅法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상의 자본소득과 관련된 위의 환불보상에 대하여는 연방국세청이, 그 밖의 자본소득에 관하여는 資本利得稅를 납부하는 일반세무서가 관장한다. 그 밖에 자본소득세의 환불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무제한적으로 소득세 과세의무를 지는 지분소유자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제2항 제3문은 所得稅法 제44b조 제1항 제2문

을 배제하여 準用된다.

제 38a 조

- (1) 제39a조 제1항에 따라 法人稅를 보상 및 반환받는 有價證券特別財産에 대한 지분증서의 배당부분에 있어서 그 配當分은 法人稅法 제27조에 따른 법인세와 함께 산정된다. 法人稅는 배당이 지분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발생한다. 所得稅法 제44조 제2항은 유추적용된다. 법인세는 稅 발생후 1개월내에 納付하여야 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위의 시한까지 행정서식에 의해 稅務申告를 하고 신고서상 위의 세금을 스스로 산정하여야 한다.
- (2) 제39a조 네 2항에 따라 法人稅를 반환, 보상받는 有價證券特別財産(제39조 제1항 제1문)의 소득으로써 배당이나 비용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이 準用된다.

제 38b 조

삭 제

제 39 조

- (1) 有價證券特別財産의 지분증서에 대한 배당 및 所得稅法 제20조가 의미하는 소득으로서 유가증권특별재산에 의해 費用填補나 배당에 사용되지 않는 소득은, 이들이 납세의무자의 영업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所得稅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의미하는 자본자산(Kapitalvermögen)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속한다. 費用填補나 이익배당에 사용되지 않는 이자 및 배당금은 이들이 支給되는 영업년도의 경과로써 支給에 같음한다.
- (2) 본법의 적용범위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 어느 하나도 없는 자연인, 법인, 社團, 財團에 대한 배당의 경우, 이 배당이 제40조 제1항에

따른 免稅가 아닌 한, 자본소득에 대한 稅金減免은 法規命令이 정한 비율에 따라 配當額의 25%까지 부과된다. 연방정부에게는 연방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1문에서 규정한 法規命令을 발하고 이 명령에 따라 자본소득에 대한 稅額控除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委任한다.

제 39a 조

- (1) 특별재산의 지분증서에 대한 配當의 경우 法人稅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산정되거나 환급된다.
 1.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保護預受銀行에 法人稅의 환급을 정당화하는 특별재산의 소득
 2. 발행지분증서의 발행가격중 제1호상의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 法人稅의 납부 또는 환급을 근거지우는 배당분을 산정함에 있어 제38a조에 따라 납부의무 있는 法人稅는 제1호 및 제2호가 明示하는 금액을 控除한 금액으로 한다. 法人稅法 제45조는 이 경우에 準用된다. 이에 따라 交付되는 증명서에는 납부 또는 환급되는 배당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摘示하여야 한다.
- (2) 배당이나 費用填補에 사용되지 않는 有價證券特別財産의 소득이 제39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지급에 갈음한 경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은 유추적용된다. 法人稅法 제45조에서 명시한 증명서 대신에 제3문 내지 제5문상의 증명서가 갈음한다. 위의 증명서는 소득의 유입이 있는 시점에서 증명서의 소지자 姓名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을 하는 금융기관에 의해서만 발행된다. 위의 증명서에는 지분의 數, 및 표시, 지분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위의 증명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法人稅法 제45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稅務申告나 法人稅還給申請은 제45조상의 공시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지분증서가 유가증권 보관으로 부터 분리되어 交付되는 경우 위의 금융기관은 최근 발행된 증명서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때에는 法人稅는 納稅義務者가 실제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

제 39b 조

삭 제

제 40 조

- (1) 有價證券特別財産의 持分證書에 대한 配當은 다음의 경우 免稅된다,
1. 그 배당이 유가증권의 讓渡나 자본회사 지분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단 배당이 납세의무자의 영업이익에 기인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配當이 자본회사의 자유지분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 그 소득이 所得稅法 제20조상의 資本所得인 한 免稅는 고려되지 않는다.
 2. 그 配當이 所得稅法 제3a조상의 免稅대상 利子를 포함하는 경우
- (2) 有價證券特別財産의 持分證書에 대한 配當은 그것이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5호상의 利子를 포함하는 한 그 配當部分의 30%가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課稅된다. 이와같이 과세된 배당부분에 대하여는 營業稅法 제9조 제6호가 유추적용된다.
- (3) 有價證券特別財産의 持分證書에 대한 配當은 그것이 외국으로부터 발생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이 二重課稅防止協定을 근거로 課稅權을 포기한 소득을 포함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 부과로부터 제외된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施行留保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문의 적용에 앞서 算定의 기초가 되는 원칙에 따라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부과된다.
- (4) 有價證券特別財産의 持分證書의 配當내에 외국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으로써 그 국가에서 所得稅法 제34c조 제1항, 法人稅法 제26조 제1항 또는 二重過歲防止協定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될 수 있

는 所得이 포함된 경우 무제한 납세의무 있는 지분소유자에 있어 확정되어 납부되었거나 減稅請求權이 없는 외국의 租稅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부분으로 부과된다. 위의 부분은 납세의무 있는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의 소득 포함) 소득세법 제32a, 32b, 34조와 제34b조에 따라 발생하는 所得稅 혹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발생하는 法人稅는 외국으로부터의 소득과 소득총액의 比例에 따라 배분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산정가능한 외국조세의 最高限度額은 각 有價證券特別財産으로부터 발생하는 配當分에 대하여 종합하여 산정한다. 제1문과 제2문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소득에 해당하는 내국의 법인세 산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편의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존재하는 법인세가 근거(기초)가 된다. 소득세법 제34c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 경우 유추적용된다.

- (5) 배당에 포함되는 제1항 내지 제4항상의 금액과 발행 지분증서의 발행 가격중 배당에 포함되는 부분은 同一한 것으로 본다.

제 41 조

- (1) 투자신탁회사가 지분증서소지자에게 유가증권특별재산의 持分證書와 관련된 配當을 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公示하여야 한다.

1. 配當金額

2. 配當에 포함된 다음의 金額

- a) 所得稅法 제3a조상의 利子(제40조 제1항 제2호)
- b) 所得稅法 제43조 제1항 제5호상의 利子(제40조 제2항)
- c) 제40조 제1항 제1호 제1문상의 讓渡差益
- d) 소득이 所得稅法 제20조의 자본소득이 아닌한,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문상의 所得
- e) 제40조 제3항상의 所得
- f) 제40조 제4항상의 所得

3. 配當額중 法人稅 부과 또는 還給되는 부분

4. 法人稅 부과액 또는 그 還給額
 5. 所得稅法 제34c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고 所得稅法 제34c조 제3항에 따라 공제되는 해외의 租稅로서 배당에 포함되는 제40조 제4항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2) 투자신탁회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무서의 요구에 의해 해외소득과 해외에서의 納稅額에 대하여 課稅證明書 또는 納稅證明과 같은 證明書發行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위의 증명서가 外國語로 된 경우에는 공증된 독일어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 (3) 과세되는 稅額이 제1항에 따른 公示에 따라 최초로 확정된 후 사후적으로 引上, 또는 減免되거나 투자신탁회사가 그러한 稅額을 부정확하게 公示한 경우 투자신탁회사는 다음의 배당과 관련한 課稅額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差額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 42 조

제40조 제1항 제2호,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c 및 d를 제외하고 費用填補나 配當에 사용되지 않는 유가증권특별재산의 收入(제39조 제1항 제2문과 제39a조 제2항에서 明示)에 대해 유추적용된다. 제41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은 늦어도 영업년도 경과 3개월내에 公示하여야 한다.

제 43 조

- (1) 제38조와 제38a조의 규정은 최초로 1977년의 稅額查定에 대해 적용된다. 法人稅와 資本所得稅를 보호예수은행에 환불함에 있어 제38조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 이후 유가증권특별재산에 유입된 소득에 대해 최초로 적용된다. 위의 소득이 회사법 규정에 따른 이윤분배결의에 의한 것인 경우 그 결의가 1976년 12월 31일 이후의 사업년도에 대한 이윤분배에 관한 것인 한 최초로 적용된다는 식으로 적용된다.

- (2) 제39조의 규정은 1969년 12월 31일 이후 유가증권특별재산의 持分證書에 실시된 配當에 대해 최초로 적용된다.
- (3) 제39a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 이후 유가증권특별재산의 持分證書에 실시된 配當에 대해 최초로 적용된다.
- (4) 제39a조와 제42조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 이후 사업년도 마감의 유가증권특별재산의 소득으로서 費用填補나 配當에 사용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최초로 적용된다.
- (5) 제40조 제4항의 규정은 1979년 12월 31일 이후 유가증권특별재산의 持分證書에 대한 配當과 1979년 12월 31일 이후 마감사업년도분의 유가증권특별재산의 所得으로서 費用填補나 配當에 사용되지 않는 所得에 대해 최초로 적용된다.
- (6) 1988년 7월 25일(BGBl. I S. 1093)의 稅法改正法 1990의 제9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있는 규정에 의하여
1. 제38조 제3항은 1989년 12월 31일 이후 및 1989년 7월 1일 이전의 유가 증권특별재산 所得에 대해 적용된다.
 2. 제38b, 제39조, 제39b조, 제40조 제2항과 제41조 제1항은 1988년 12월 31일 이후 및 1989년 7월 1일 이전 유가증권특별재산의 持分證書에 실시된 配當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제38a조 제2항, 제38b조, 제39조, 제39a조 제2항, 제39b조,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과 제42조는 費用填補나 配當에 사용되지 않는 유가증권특별재산의 所得으로서 1988년 12월 31일 이후 및 1989년 7월 1일 이전에 마감하는 사업년도분의 所得에 대해 적용된다.
 4. 1988년 12월 31일 이후 및 1989년 7월 1일 이전의 配當내에 資本所得稅가 부과되지 않는(1989년 1월 1일 이전) 유가증권특별재산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한 제38b조도 적용된다. 이는 또한 1988년 12월 31일 이후 및 1989년 7월 1일 이전의 마감사업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가증권 특별재산 소득으로서 費用填補나 配當에 사용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2 관 資本參加 特別財産

제 43a 조

資本參加特別財産, 資本參加特別財産의 持分證書에 대한 配當, 匿名의 자본참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所得稅法 제20조 所定의 소득으로서 費用塡補나 配當에 사용되지 않는 소득, 匿名의 資本參加 持分の讓渡에 의해 발생하는 利益에 대하여는 本條 제3문의 요건하에 제38조 내지 제42조가 유추적용된다. 匿名의 자본참가가 稅法상 社員共同體(所得稅法 제15조 제1항 제2호)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자본참가특별재산에 대한 免稅는 排除되지 아니한다. 제2문 所定의 匿名의 자본참가에 귀속되는 持分證書에 대한 配當과 위의 자본참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費用塡補나 配當에 사용되지 않는 所得에 대하여는 제39a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43b 조

제43a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제38조와 제38a조의 규정은 최초로 1987년의 과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 이후의 資本參加 特別財産 持分證書에 대한 配當에 관하여 최초로 적용된다.
3. 제39조, 제39a조 및 제42조는 1986년 12월 31일 이후의 마감사업년도 분의 特別財産 所得으로서 費用塡補나 配當에 사용되지 않는 所得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38조 내지 제42조의 적용에 있어 제43조 제6항은 유추적용된다.

제 3 관 土地不動産 特別財産

제 44 조

土地不動産特別財産(제27조)에 대하여는 제38조가 유추적용된다.

제 45 조

- (1) 土地不動產特別財産의 持分證書에 대한 配當, 土地不動產特別財産의 취득한 수익중 費用填補나 配當에 사용되지 않는 제27조에서 열거한 재산의 賃貸所得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영업소득이 아닌 한 所得稅法 제20조 제1항 제1호상의 資本所得에 속하지 아니한다. 減價償却도 所得稅法 제7조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費用으로 處理된다. 費用填補나 配當에 사용되지 않는 所得은 취득 당시 사업년도의 경과로써 산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 (2) 제39조 제2항은 準用된다.

제 45a 조

삭 제

제 46 조

- (1) 土地不動產特別財産의 持分證書에 대한 配當에 대하여는 그것이 제27조 所定の 財産讓渡에 따른 利益을 포함하는 범위내에서 免稅된다. 단, 買入과 賣渡의 時差가 2년이내인 賣買去來이거나(소득세법 제23조) 그 배당이 납세의무자의 營業收益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 (2) 해외에서 발생하는 所得이 土地不動產特別財産의 持分證書에 대한 配當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40조 제3항 및 제4항이 準用된다.
- (3) 제1항 및 제2항 所定の 配當에 포함되는 금액은 기발행 持分證書의 발행가격중 위의 配當에 해당되는 부분과 同一한 것으로 본다.

제 47 조

- (1) 투자신탁회사는 土地不動產特別財産의 持分證書와 관련된 모든 配當에 있어 持分證書 所有者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配當額

2. 配當에 포함되는

- a) 제46조 제1항 所定の 讓渡差益金額
- b) 제46조 제2항 所定の 收益

3. 제40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配當중 제46조 제2항 所定の 所得에 해당하는 해외로부터 부과되는 稅金額

(2)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은 準用된다.

제 48 조

제40조 제3항 및 제4항,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b와 제3호의 규정은 토지부동산특별재산에 의해 취득한 소득중 제27조 소정의 재산임대 및 사용대차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費用填補나 配當에 사용되지 않는 所得에 대하여 準用된다.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실은 사업년도 경과후 늦어도 3월내에 告知하여야 한다.

제 49 조

銀行預金 또는 有價證券이 제35조에 따라 예치되어 있는 경우 제38조 내지 제42조는 準用된다.

제 50 조

- (1) 제45조 내지 제47조와 제49조의 규정은 1969년 10월 31일 이후의 토지부동산특별재산의 지분증서에 대한 配當에 대하여 최초로 적용된다.
- (2) 제45조, 48조와 제47조는 1969년 10월 31일 이후 마감되는 사업년도의 소득으로서 費用填補나 配當에 사용되지 않는 所得에 대하여 최초로 적용된다.
- (3) 1988년 7월 25일의 稅法改定法 1990 제9조 제13호 내지 16호에 따른 제45조, 제45a조, 제47조 제1항, 제48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43조 제6항이 準用된다.

제 50a 조

(1) 다음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규칙위반에 해당한다(ordnungswidrig).

1. 다음의 규정

- a) 有價證券特別財産의 투자에 관한 제8조, 제8a조 제1항, 제2항 제1문 또는 제4문, 동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2문, 제8b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문과 제3항, 제8d조 제1항 및 제2항, 제8e조 제1문, 제8f조 제1항 제1문 내지 제3문 또는 제2항 제2문
 - b) 資本參加特別財産의 投資에 관한 제25b조 제1항 내지 제4항
 - c) 土地不動産特別財産의 投資에 관한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문 내지 제4문, 제28조 제2항, 제35조 제1문
2. 法律行爲의 制限 또는 禁止에 관한 제9조 제2항, 제4항 제1문 또는 제5항 제1문

(2) 故意 또는 過失로 다음사항을 違反한 경우 규칙위반에 해당한다.

1. 다음의 告知사항

- a) 제8g조 제1항
 - b) 제15조 제5항
 - c) 限度未達에 관한 제25e조 제2항 제3문不告知, 不正確, 不充分 또는 적시에 告知하지 않는 경우
2. 제15조 제2항 제3문에 위반하여 계약조건에 賣却事業說明書를 첨부하는 경우
3. 제19조 제2항 제1문 또는 제3문에 위반하여 사업설명서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지 않거나 법정의 최소한의 公示事項을 缺如하는 경우
4. 제24a조 제1항 제1문, 제2문 또는 제2항 제1문, 제2문, 제3문을 위반하여 釋明報告書 또는 半期報告書를 公示하지 않는 행위, 법정의 공시의무사항의 缺如 또는 적시에 공시하지 않는 행위
5. 제24a조 제3항 제4문에 위반하여 資産項目을 제시하지 않거나, 不完全하게 또는 적시에 公示하지 않는 행위

- (3) 제1항 제1호의 a, 제2호와 제2항 제1호의 a 및 b,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25j조 제2항 및 제3항과 결합하여 자본참가특별재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1호의 b,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34조 제1항 제1문 및 제3문과 결합하여 토지부동산특별재산(제26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4) 규칙위반은 5천 DM까지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5) 규칙위반을 관할하는 제36조 제1항 제1호상의 행정청은 金融機關 監督廳이다(das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제 6 장 罰金一, 經過一 및 終結規定

제 51 조

- (1) 본법의 시행당시 제1조 제1항에서 열거한 영업을 하는 株式會社, 有限會社가 本法 所定の 投資信託會社가 된다. 이하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위의 회사에 대해서 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2) 위의 투자신탁회사는 새로운 營業許可를 요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특별재산을 위한 동 회사의 계약조건은 별도의 承認을 요하지 않는다. 기존의 영업허가 및 승인은 본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 (3) 투자신탁회사는 늦어도 1958년 12월 31일까지
1. 제3조, 제4조에 합치하는 監査會를 구성하여야 한다; 기존의 감사회는 동 규정에 합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2. 회사의 額面資本金과 定款을 제2조 제2항에 합치시켜야 한다.
 3. 본법의 시행당시 특정기일에 존재하는 특별재산은 有價證券 및 新株 引受權의 投資 및 取得에 관한 제8조의 규정과 합치시켜야 한다.
 4. 장래에 특별재산을 외국의 유가증권으로(제8조 제1항 c) 投資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銀行監督廳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5. 특별재산의 보관과 持分證書의 發行 및 償還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수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6. 제15조 제3항에 상응하는 契約條件은 제15조 제2항을 준수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의해 요청되는 계약조건의 변경과 보충은 지분소유자의 同意 없이도 그 變更이 연방공보에 公示된 날로부터 3월의 경과로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持分所有者는 지금까지의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연방공보에 變更의 公示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持分の 回收를 요구할 수 있다; 위의 회수에 따른 法的 請求權은 지금까지의 계약조건에 의해 정해진다.
- (5) 위의 투자신탁에 있어 지분소유자가 개인적 責任을 負擔하거나 특별재산으로 회사의 債務 또는 지분소유자의 共同計算으로 행한 영업행위에 대해 責任을 지는 경우 本法의 시행당시 이미 존재하는 請求權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계없이 有效하다.
- (6) 본법의 시행이전에 발행되었거나 1958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本法의 시행이전에 형성한 特別財産에 대해 발행한 持分證書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제4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의 持分證書는 지분소유자의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請求權이 體化되어 있는 證書이다. 위의 證書가 無記名式 또는 所持人 出給式으로 발행되어 있는 때에는 無記名債券(Schuldverschreibungen auf den Inhaber)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7) 제18조 제3항은 제6문 所定の 持分證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 52 조

本法 시행당시 존속하는 투자신탁회사가 제51조 제3항에서 명시한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1958년 12월 31일의 경과로 解散된다; 이 경우 회사의 계속을 결의할 수 없다.

제 53 조

本法 시행당시 제1조 제1항에서 열거한 영업을 目的으로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면서 상인의 상호가 “투자신탁회사” 또는 “투자회사”라는 표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이 상호의 표시는 1957년 7월 31일까지만 허용된다; “자본투자”, “투자”, “투자자”라는 표시를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 사용한 상호표시는 상호변경을 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 53a 조

투자신탁회사는 1990년 3월 1일 현재 존속하는 특별재산에 대하여 1990년 3월 1일 이전의 舊法에 따른 本法규정을 1991년 2월 28일까지 限時的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 53b 조

투자신탁회사는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8b조 제1항 제2문 및 제2항 및 제3항, 제8d조 내지 제8f조, 제9조 제4항,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特別財産의 計算으로 허용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1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특별재산에 관한 계약조건을 變更할 수 있다. 은행감독청은 위의 계약조건의 변경이 지금까지의 特別財産 投資原則과 합치하는 한 제15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의도하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釋明報告書, 半期報告書 또는 별도의 告知 형식으로써 지분소유자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위의 承認은 告知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의 경과로 效力이 발생한다.

제 54 조

本法은 1952년 1월 4일의 제3차 過渡期法律(das Dritten überleitungs

-gesetz: 연방재정제도상 베를린의 地位에 관한 法律)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베를린州에도 적용된다. 本法을 근거로 발하는 명령도 위의 過渡期法律 제14조에 따라 베를린州에 적용된다.

제 55 조

본법은 公告日로부터 施行된다.

X. 有價證券의 保管 및 豫受에 관한 法律

[보호예수법: Gesetz über die Verwahrung und Anschaffung
von Wertpapieren(Depotgesetz-DepotG)]

제 정 : 1937. 2. 4(RGB1. I. S. 171)
개 정 : 1985. 7. 17(BGB1. I. S. 1507)

제국정부는 다음의 법률을 의결 公布함.

제 1 조 총칙

- (1) 본법상 유가증권이라 함은 株式, 광업권지분(Kuxe), 假株券(Zwischenscheine), 이자증서, 이익지분증서, 更改證券, 무기명채권 또는 배서양도 가능한 채권, 은행권 및 지폐를 제외한 기타 위의 증서를 대표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2) 본법상 보관자(Verwahrer)라 함은 상행위로서 유가증권을 混藏保管의 위탁을 받는 商人을 말한다.
- (3) 유가증권 混藏保管銀行(Wertpapiersammelbanken)이라 함은 주의 영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중 형법상의 관할관청이 유가증권 混藏保管銀行으로 인가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유가증권 混藏保管銀行의 인가는 투자자보호상 임무의 수행과 무관하게 사후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인가의 철회 및 승인은 공시하여야 한다.

제 1 장 보 관

제 2 조 특별보관

보관(수탁)자는 유가증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로서 기탁자

의 고유잔고와 제3자의 것에 따라 각 기탁자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로써 예탁자를 위해 보관수탁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및 관리 행위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 조 제3자보관

- (1) 보관수탁자는 유가증권을 그의 명의로 다른 보관자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보관수탁자의 지점은 그 지점들 사이의 관계 및 지점과 본점사이의 관계에 있어 본항 소정의 다른 보관자로 본다.
- (2) 다른 보관자에게 유가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보관수탁자(중간수탁자)는 자신의 과실 뿐만 아니라 제3보관자의 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보관수탁자가 계약을 통하여 제3보관자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때에는 그가 제3보관자의 선임시에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책임진다; 단 유가증권이 위탁자의 명확한 지시에 의해 특정한 제3보관자에게 보관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質權 및 留置權의 효력제한

- (1) 보관수탁자가 유가증권을 제3자에게 예탁할 경우 그 유가증권이 보관수탁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린 것으로 간주한다. 제3보관자는 해당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보관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개별계약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이 책임을 부담하는 채권을 이유로 하여서만 해당 유가증권에 대하여 質權 또는 留置權을 주장할 수 있다.
- (2) 만약 보관수탁자가 개별계약에서 제3자에게 자신이 유가증권의 소유자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은행 또는 저축은행업을 영위하지 않는 보관수탁자가 제3자에게 유가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때에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 보관수탁자가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문이 적용된다.

제 5 조 混藏保管

- (1) 대체 가능한 동종의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보관수탁자가 자신의 또는 타인의 동종 유가증권잔고와 분리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위탁자의 授權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그러한 混藏保管을 위탁할 수 있다. 위의 授權은 서면에 의해 명확히 부여하여야 한다; 위의 授權은 보관수탁자 계약조건에 포함되거나 다른 증서로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유가증권이 混藏保管을 위해 혼장보관은행에 引渡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授權은 각 보관계약마다 별도로 부여하여야 한다.
- (2) 혼장보관을 위임한 자는 입고된 증권을 혼장보관하는 대신 보관위탁자에게 그에 상당한 혼장잔고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3) 제3자에게 혼장보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조가 적용된다.
- (4)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유가증권 혼장보관은행은 국가간 유가증권 지로결제가 가능하도록 합의하여 상호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외국의 보관자에게 유가증권의 혼장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1. 외국의 보관수탁자가 그의 소재지 국가에서 유가증권 混藏保管의 임무를 수행하고 공적인 감독 또는 투자자보호상 이와 동등한 여타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
 2. 외국의 보관수탁자의 混藏保管殘高와 관련하여 보관위탁자에게 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을 것
 3. 유가증권 混藏保管銀行이 외국의 보관자에 대해 갖는 유가증권의 출고인도의 권리에 관하여 외국의 보관자 소재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금지조치도 없을 것
 4. 당해 유가증권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 보관자 소재지 국가에서도 증권거래소의 正上場, 2차시장(등록장외시장: geregelter Freiverkehr) 또는 이와 유사한 규제시장에 등록되어 있을 것.

외국이 보관자의 과실에 대한 제3조 제2항 제1문 소정의 유가증권
混藏保管銀行의 책임은 당사자의 합의로도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混藏保管殘高의 共同所有

混藏保管시 보관수탁자의 관리권한

- (1) 유가증권이 混藏保管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混藏
保管者에게 보관수탁되는 시점부터 보관자의 보관잔고에 속하는 동종
의 유가증권에 대한 持分에 따른 공동소유권이 발생한다. 지분을 정합
에 있어 유가증권의 액면액이 기준이 되고 무액면 유가증권의 경우에
는 유가증권의 수가 기준이 된다.
- (2) 混藏保管者는 다른 지분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混藏保管殘高로부터 각
위탁자에게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을 인도하거나 그 자신의 몫을 출
고할 수 있다. 본항은 제3자보관의 경우에 있어 중간보관자에 대하여
도 유추적용된다.

제 7 조 混藏保管시 보관위탁자의 引渡請求權

- (1) 混藏保管의 경우에 보관위탁자는 混藏保管殘高로부터 유가증권을 액
면금액에 따라, 무액면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그가 混藏保管을 위해 위
탁한 유가증권의 수를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가 위탁한 증권
자체를 반환할 수 없다.
- (2) 混藏保管殘高의 손실로 인하여 제6조에 따라 보관위탁자의 귀속부분
도 감소된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混藏保管者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
다. 混藏保管者는 混藏保管殘高의 손실이 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8 조 混藏保管시 공동소유자 및 物權的 청구권자의 권리

보관위탁자의 청구권에 적용되는 제6조 제2항 제1문, 제7조의 규정은

모든 공동소유자 또는 기타 물권적 권리를 갖는 자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된다.

제9조 혼장보관시 질권 및 유치권의 효력제한

제4조는 混藏保管殘高持分에 대한 질권 및 유치권의 권리주장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된다.

제9a조

- (1) 보관의 위탁자가 제5조에 따른 위임을 수여한 때에는 보관수탁자는 각 권리마다 동종의 유가증권에 의해 體化 가능한 다수의 권리를 體化 시킨 증서(混藏保管證書)를 유가증권 混藏保管銀行에 보관을 위해 發行 交付할 수 있다. 그 발행자는 기타의 지분소유자의 동의없이 항상
 1. 유가증권 混藏保管銀行에 의해 보관되는 混藏保管證書를 혼장보관코자 하는 개별 유가증권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할 수 있으며
 2. 보관은행의 混藏保管殘高상의 개별유가증권은 단일 혼장보관증서에 의해 대체할 수 있다.
- (2) 유가증권 보관은행이 단일 混藏保管證書만을 또는 그 증서로써 體化 된 종류의 권리에 관해 발행된 개별 유가증권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제3항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6조 내지 제9조 및 기타 混藏保管과 混藏保管의 殘高持分에 관한 본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3) 제8조와 제9조를 근거로 개별 유가증권의 인도가 요구되는 경우 보관증서 발행자는 인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보관증서를 개별 유가증권에 의해 대체하여 인도할 수 있다; 유가증권 보관은행은 개별 유가증권의 發券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증서발행자가 그 근거가 되는 권리관계에 따라 증서상 體化된 권리의 소유자에 대해 개별 유가증권을 交付해 줄 의무를 지지 않는 때에는 유가증권 混藏保管銀行도 개별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제 10 조 교환보관

- (1) 보관위탁자가 보관수탁자에게 보관을 위해 위탁한 유가증권 대신에 동종의 유가증권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授權의 의사표시는 각 보관계약마다 서면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그 의사표시는 보관자의 계약조건에 포함될 수도, 또한 다른 증서로써 대신할 수도 없다.
- (2) 보관위탁자가 보관자에게 보관위탁된 유가증권을 同種의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授權의 의사표시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3) 삭제

제 11 조 교환보관의 授權範圍

보관위탁자가 보관수탁자에게 보관을 위해 위탁한 유가증권 대신에 동종의 유가증권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授權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에서 명백히 배제된 바 없는 한, 동종의 유가증권을 반환하기 전에 이미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授權을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처분을 위한 授權을 포함하거나 그 수권을 통해 이미 유가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관자에게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제 12 조 質權設定의 授權

- (1) 보관수탁자는 오로지 수권을 근거로 하고 보관의 위탁자를 위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그리고 1인 보관수탁자에 대해 유가증권 또는 混藏保管持分을 入質할 수 있다. 授權은 각 보관계약마다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授權은 보관수탁자의 계약조건에 포함될 수도 또한 다른 증서로서 대신할 수도 없다.
- (2) 보관수탁자는 그가 보관위탁자에게 제공한 신용공여총액 범위내에서만 유가증권 또는 혼장보관지분을 대상으로 재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다. 유가증권 또는 보관잔고지분은 위의 재신용의 담보를 위한 質權에

의하여서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入質된 유가증권 또는 잔고지분의 가액은 최소한 보관위탁자에게 공여한 신용액에 달하여야 하지만 과도하게 초과할 수 없다.

- (3) 보관위탁자가 유가증권 또는 보관잔고지분의 入質에 관하여 오직 보관수탁자가 보관위탁자를 위해 제공한 신용액을 한도로 할 것을 보관수탁자에게 授權한 때에는 그 授權은 제1항 제2문의 형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2항 제3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보관위탁자가 보관수탁자에게 유가증권 혹은 보관잔고지분의 入質에 관한 授權을 함에 있어 보관위탁자를 위해 공여한 신용액과 관계없이 보관수탁자의 모든 채무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고 한 때에는 그 授權의 의사표시에는 보관수탁자가 質權을 무제한적으로, 즉 보관위탁자를 위해 제공한 신용액과 관계없이 그의 모든 채무를 위하여 설정할 수 있다는 명백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 보관위탁자가 보관수탁자에게 제2항의 개별적 한도의 준수를 免除하는 때에도 위와 같다.
- (5) 유가증권 또는 보관잔고지분의 質權設定에 관하여 수권을 받은 보관수탁자는 그가 수여받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再授權할 수 있다.

제 13 조 財産權處分の 授權

- (1) 보관수탁자에게 수탁된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同種의 유가증권을 반환할 의무만을 지도록 하는 授權의 의사표시는 각 보관계약별로 서면으로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 의사표시내에는 授權의 행사로 소유권이 보관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것과 이로써 보관위탁자에게는 오직 同種 또는 同數의 유가증권의 引渡에 관한 채권적 청구권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의 의사표시는 다른 증서로 대신하거나 보관위탁자의 여타의 의사표시와 결합할 수 없다.

제 14 조 보관장부

- (1) 보관수탁자는 각 보관위탁자, 보호예수되는 유가증권의 종류, 액면가액, 券數, 記番號 및 기타 표시번호 등이 등재된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번호 기타 표시번호가 보호예수장부와는 별도로 索引化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이 索引을 원용함으로써 족하다.
- (2) 유가증권의 보호예수가 종료한 때에는 등기가 충분한 계약절차 완성 후에 이루어질 수 있기 전에 그 유가증권의 등기를 중지할 수 있다.
- (3) 보관장부의 작성에 관한 규정은 混藏保管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된다.
- (4) 보관수탁자가 유가증권을 제3자에게 보관위탁한 때에는 제3자의 소재지를 보관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이 기타의 장부나 보관장부 이외의 명세서 또는 교환문서에도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의 성명은 보관장부에 기재할 수 있다. 보관수탁자가 혼장보관, 교환보관, 질권설정 또는 재산권의 처분에 관하여 授權을 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장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 (5) 보관수탁자가 제3보관자에게 자신이 제3자 보관을 위탁한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아님을 고지한 때에는 제3보관자는 이를 보관장부에 명시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 (6) 帝國法務長官은 帝國經濟長官의 諒解아래 보관장부에 관하여 기타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5 조 非定期保管

유가증권대출

- (1) 유가증권의 보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 즉시 보관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고 보관수탁자는 오직 동종의 유가증권만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합의한 때에는 本章의 규정은 그와같은 보관계약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서 명시한 종류의 합의는 만일 보관위탁자의 그러한 의사표시가 각 개별계약별로 서면으로 명백히 표시된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

위의 의사표시에는 소유권이 즉시 보관수탁자나 제3자에게 이전되고 이로써 보관위탁자는 오로지 동종 또는 동수의 유가증권의 引渡에 관한 채권적 청구권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의사표시는 다른 증서에 의해 대신되거나 보관위탁자의 다른 의사표시와 결합할 수도 없다.

- (3) 本條는 만약 유가증권이 상인에게 고유의 상행위상 대출로서 공여되는 경우에 유추적용된다.

제 16 조

제 5, 10, 12, 13, 15조 제2항 및 제3항의 형식에 관한 규정은 보관위탁자가 은행 및 저축은행업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 조 入質保管

상인이 고유의 상행위로서 유가증권을 質物로서 수탁받은 때에는 質權者는 보관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2 장 買入의 委託

제 18 조 증권표시

- (1) 위탁매매인(상법 제383, 406조)이 유가증권매입의 위탁을 수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매입증권의 索引簿를 送付하여야 한다. 증권 의 색인부에서 매입유가증권은 종류, 액면금액, 記番號 기타 표시기호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 (2) 증권별 索引簿의 송부시한은 만약 위탁매매인이 위임의 실행에 대한 고지시에 제3자를 매도인으로 지명한 경우에는 증권 의 취득과 함께, 그밖의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이 실행의 告知후에 지체없이 증권을 적

절한 계약단계로 이끌 수 있었거나 증권의 색인을 증권의 보관을 위해 지정된 제3의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었을 기간이 경과하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 (3) 위탁매매인이 그 처분의 권한이 있는 한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미 그 이전에 소유권이 그에게 이전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색인부에 표시된 유가증권의 소유권은 증권색인부의 송부로서 위탁자에게 이전한다.

제 19 조 증권색인 송부의 중단

- (1) 위탁매매인은 만약 위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債權을 면제받지 못하고 지불유예신청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증권색인부의 송부를 중지할 수 있다. 매입대금을 상호계산계정에 算入시키는 것은 지불유예로 보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의 권한은 그가 위탁인에 대해 증권색인의 송부와 그로인한 증권의 소유권이전을 위탁업무의 이행에 따른 債權의 辨濟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중지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위의 의사표시는 각 개별계약에 따라 별도로 서면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이행의 告知가 있는 후 일주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하며, 다른 증서로써 대신하게 할 수 없다.
- (3) 위탁매매인이 제1항 소정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색인부 송부의 기한은 위탁매매인이 그의 계약이행에 따른 채권이 변제되는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 (4) 당사자가 상호계산계정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55조) 자산변의 총액이 차변의 총액에 최초로 도달하거나 초과한 때로부터 辨濟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일의 자산평가가 부기된 모든 항목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위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때에는 위탁매매거래가 부기되는 계좌만이 기준이 된다.
- (5) 위탁매매인이 일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변제잔액이 매우 경미

- 한 것과 같이 증권색인부의 송부중지가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때에는 증권색인부의 송부를 중지할 수 없다.

제 20 조 증권색인부의 송부요구

- (1) 위탁매매인이 그와 상호계산계정을 개설하고 있는 위탁자에 대해 거래약정기간동안 또는 한시적으로 그가 일정한 범위에서 또는 특별한 제한이나 매입가격의 즉시 수정없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를 이행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증권색인부의 송부를 유보할 수 있다.
- (2) 위탁매매인은 그가 위탁자에게 이행의 고지시에 서면으로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증권색인부의 송부와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점을 통지한 때에만 제1항의 유보를 행사할 수 있다.
- (3) 위탁자가 증권색인부의 송부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증권색인부 송부의 기한은 그의 의사표시가 위탁매매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그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증권색인부에 포함될 유가증권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 21 조 送付中止權 및 送付要求權

위탁매매인이 그의 채권이 辨濟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제19조) 또한 그가 위탁자와 개설한 상호계산계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권색인부 송부의 중지를 유보했다는 이유로(제20조) 증권색인부의 송부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색인부의 송부와 그에 따른 유가증권의 소유권이전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후 그리고 위탁의 이행에 따른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해외거래시 증권색인부

- (1) 합의로써 유가증권을 해외에서 매입하고 보관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때 비로소 증권색인부를 송부한다. 위탁자는 위의 송부를 언제나 요구할 수 있으나, 증권색인부의 송부에 의한 유가증권 소유권이전이 해당 외국법에 반하거나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탁매매인이 그 송부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위탁자가 증권색인부의 송부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송부의 기한은 의사표시가 위탁매매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위의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증권색인부에 포함될 유가증권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증권색인부 송부의 免除

증권색인부의 송부기한이내에 유가증권이 위탁자에게 인도되거나 위탁자의 再賣渡委託이 실행된 때에 한하여 유가증권의 송부는 면제될 수 있다.

제 24 조 혼장보관잔고의 공동소유권이전에 의한 이행

- (1)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호예수은행의 혼장보관하에 있는 유가증권의 공동소유권을 취득케 함으로써 그가 부담하는 특정 유가증권의 소유권이전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다른 보관자의 혼장보관잔고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공동소유권을 취득케 함으로써 위의 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 명백히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 (2) 위의 공동소유권이 위탁매매인 보관장부의 양도확인란에 기재함으로써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기 위하여는 위탁매매인이 처분권한이 있고 민법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에 이미 그에게 이전된 적이 없어야 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공동소유권의 취득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3) 공동소유권이 계약에 따라 합의한 각각 매월, 매2개월, 매3개월마다

지급하는 지급금에 의해 취득되고 이 지급금의 연총액이 제4차 근로자재산형성법(Vermögensbildungsgesetz)의 시행시기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최고한도액을 3배이상 초과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제2항 제2문, 민법 제675, 666조 및 상법 제384조 제2항의 적용을 排除하고 고객에 대하여 13개월 이내에 混藏保管 유가증권의 공동소유권 취득사실과 계약이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증권색인부의 不送付시 위탁자의 권리

- (1) 위탁매매인이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권한없이 증권색인부의 송부의무를 해태하고 위의 송부기한 경과후에 그에 대해 제기되는 위탁자의 이행요구에 대한 이행지체가 3일이내에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 위탁자는 계약이 그의 계산으로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서 취소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위탁매매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연유로 위의 해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위탁자의 이행요구는 만일 그가 위탁자에게 제1항 소정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자치유기간의 경과후 3일 이내에 하지 않는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 26 조 교환위탁및 신규증권인수권 행사의 위탁과 증권색인부

유가증권간 또는 혼장보관지분과 유가증권간의 교환위탁이나 신규증권인수권 행사의 위탁을 이행하는 위탁매매인은 2주이내에 신규증권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한 신규증권 취득일로부터 위의 기한이내에 신규증권의 색인부를 위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의 색인부에는 유가증권을 종류, 액면가액, 記番號 또는 그밖의 표시기호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5조는 위탁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 27 조 보수청구권의 상실

제26조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위탁매매인은 보수청구권(상법 제396조 제1항)을 상실한다.

제 28 조 위탁매매인의 의무의 강행규정성

제18조 내지 제27조에 따른 위탁매매인의 의무는 당사자의 합의로써 혹은 일방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단, 위탁매매인이 은행업 또는 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위탁매매인에 의한 보관

위탁매매인은 점유하고 있는 위탁자소유 또는 공동소유의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보관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 30 조 위탁매매거래시 질권 및 유치권효력의 제한

- (1) 위탁매매인이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매매는 제3자를 위해 타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 (2) 제4조의 규정은 이 경우 유추적용된다.

제 3 장 파산우선권

제 32 조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 (1) 제1조, 제17조, 제18조에서 열거한 보관자, 질권자 및 위탁매매인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의 경우 다음의 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갖는다.
 1. 매매위탁자로서 파산절차 개시당시 아직 유가증권에 대한 소유권 또

는 공동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위탁매매인에 대하여 당해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자신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한 자; 만일 파산절차 개시당시 위탁매매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아직 매입하지 않은 때에도 이와 동일하다.

2. 보관위탁자, 질권설정자 또는 매매위탁자로서 자신의 유가증권에 대한 소유권 또는 공동소유권이 보관수탁자, 질권자, 위탁매매인 또는 그들의 피용자의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된 자, 단 그들은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채권자로서 同號에서 정한 채무불이행부분이 파산절차 개시당시 유가증권 인도청구가액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요구가 있는 후 불이행부분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
- (2) 전항의 규정은 私人과 직접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자기매매업자(딜러: *Eigenhändler*)의 파산절차와 개입권을 행사하여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교환의 위탁을 수행하는 위탁매매인의 파산절차에도 준용된다(제31조).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은 다른 모든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특별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받는다; 특별파산재단은 동파산재단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동종의 유가증권과 그 유가증권 인도의 권리로 구성된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은 기존의 유가증권으로 모든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한 기존 유가증권의 명도에 의해 변제된다. 위와 같은 분배가 불가능한 때에는 미분배된 유가증권을 전부 매각하여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자는 우선권 행사에 관하여 파산규칙 제139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위의 채권자는 별채권자에 관한 파산규칙 제64, 153, 155 및 제156조의 규정과 제168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서만 채무자의 기타재산으로부터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 (5) 파산법원은 필요한 경우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보전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위의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파산법원이 후견법원을 대신한다. 1931년 7월 6일의 민영보험회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항 내지 제5항은 이 경우에 준용된다.

제 33 조 보관자의 파산시 질권설정자에 대한 변제

- (1) 보관자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 있어 그의 질권자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그를 위해 질권설정된 유가증권 또는 混藏保管持分을 전부 또는 일부 자신의 변제를 위해 사용한 때에는 질권자에게 위의 유가증권 또는 혼장보관지분을 보관위탁자를 위하여 동등한 변제의 목적을 갖는 보상절차가 개시된다.
- (2) 보상절차에 참여하는 위탁자는 특별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받는다. 이 특별재단은 다음 각호에 의해 구성된다.
 1. 질권자를 위해 제12조에 따라 질권설정된 유가증권 또는 혼장보관지분으로서 질권자를 위해 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것
 2. 질권자가 그의 변제를 위해 사용한 유가증권 또는 혼장보관지분의 매 각대금으로서 자신만을 위한 몫이 아닌 경우
 3. 보상절차에 참가한 보관위탁자에 대한 채권중 그에게 공여한 신용 또는 긴급한 질물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비용에 따른 채권
- (3) 특별파산재단은 보상절차에 참가한 보관위탁자에 대하여 보관자에게 위탁한 유가증권 또는 혼장보관지분의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유가증권 또는 혼장보관지분이 파산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변제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절차개시 당일의 평가액이 기준이 된다. 보상절차에 참가한 모든 보관자에 대하여 변제가 있을 후 특별파산재단(Sondermasse)에 잔존하는 금액은 파산재단(Konkursmasse)에 귀속된다.
- (4) 보상절차에 참가한 모든 자는 그가 보관자에게 위탁한 보관위탁물과 특별파산재단 소속의 유가증권 및 혼장보관지분을 파산절차개시일의 평가액에 따라 인수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위의 평가액이 특별파산

재단으로부터 변제에 충당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특별파산재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위의 유가증권 및 혼장보관지분은 그러한 채권을 위한 질물로서 책임을 진다. (5) 각 보관의 위탁자는 그가 특별파산재단에 의한 변제로부터 제외되는 때에 한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6)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은 유추적용된다.

제 4 장 형벌규정

제 34 조 보관물횡령

(1) 형법 제246, 266조의 경우와는 관계없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상인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보관자 또는 질권자로서 위탁을 받았거나 위탁매매인으로서 위탁자를 위해 점유하고 있거나 제31조의 경우와 같이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제1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을 위법하게 처분하는 행위
2. 그러한 유가증권의 혼장보관잔고나 그 혼장보관지분을 제6조 제2항에 위반하여 감소시키거나 위법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삭제

제 35 조 소유권에 관한 허위사실

상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4조 제2항에 따른 의사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다른 가증처벌규정이 없는 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 36 조 고 소

제34, 35조의 경우에 있어 그 행위로 인하여 그의 가족(형법 제11조 제

1항 제1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제 37 조 지불정지 또는 파산개시에 대한 처벌

제2, 14조의 규정 또는 제18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4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상인이 지불을 정지하거나 자신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가 있거나 또는 유가증권의 別除權을 갖는 자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방해 또는 좌절시킨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 38 조 삭제

제 39 조 삭제

제 40 조 삭제

제 5 장 종결규정

제 41 조 저축은행 등 공법상 은행에 대한 본법의 적용

본법은 상인성이 없는 공법상의 은행, 공공의 저축은행 또는 공적인 거래에 관여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42 조 신탁관리인에 대한 적용과 시행규정의 제정

- (1) 제국법무장관은 동 경제장관 및 재무장관의 합의아래 상인인 신탁관리인이 타인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점유, 취득하거나 지분참가 및 그밖의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 취득하거나 공적인 채무장부 및 기타장부에 登載하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 (2) 삭제

(3) 삭제

제 43 조 경과규정

본법은 193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XI. 보험감독법

[Gesetz über die Beaufsichtigung der Versicherungsunternehmen (Versicherungsaufsichtsgesetz-VAG)]

1차개정 : 1983. 10. 13(BGBI. I. S. 1261)

2차개정 : 1986. 11. 19(BGBI. I. S. 2595)

제1장 총 칙

제1조

- (1) 이 法下에서 監督對象은 保險事業을 영위하는 企業으로 하며 社會保險을 영위하는 자는 監督對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再保險만을 專業으로 하며 상호보험회사의 형태가 아닌 회사는 제55조 내지 제59조, 제83조, 제84조 제1항 제2문, 제3문 제3항, 제110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 제138조, 제146조 및 제150조의 적용을 받으며 제2조에서 정하는 규정도 적용을 받는다. 公共機關의 被雇傭者를 위한 공법상의 보험회사 또는 노약자, 불구자, 무의탁자에 대한 자선기금을 제공하는 교회는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54조 제2항 제1문 a호 및 제2문, 제55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1문, 제55a조, 제81조, 제81a조, 제82조에서 제84조,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의 적용하는 바에 따른다. 州法 및 州의 감독을 받는 보험기업은 州法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설립 및 보험회사와 그의 경영자간의 합의에 관한 본법규정에 따라 감독이 피보험자의 이익상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방재무장관은 제2문상의 공영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법규명령으로써 이 법에 따른 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3) 이 法下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법률적인 의무없이 그 소속회원에 대하여 寄附金을 공여하는 사단, 특히 직장단체의 출연기구 및 출연재단
 - 1a. 匠人法(Handwerksordnung)에 따라 장인조합에서 出捐한 출연기금
2. 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가 결합한 법인격있는 결합체로서 연금지급 약속에 따라 그의 소속회원에게 발생하는 연금지급액을 위험분산의 방법으로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의 법인격을 국가가 부여하는 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의 결합법인체
3. 그 事業의 목적이 회원 또는 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위험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損害를 分擔金의 방법으로 分散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연합이 결합한 법인격없는 결합체로서 이들 결합체에 대해 지역회원 또는 -b의 경우- 지역단체가 최소한 50%의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
 - a) 회원 또는 그 회원의 피고용인이 법률의 責任義務規定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賠償責任을 지는 損害
 - b) 자동차 유지로 부터 발생하는 損害
 - c) 자치단체의 事故補償法에 따른 支給金
4. 법률에 의해 직접 관계가 발생하거나 法的 強制에 의하여 보험인수 또는 독점권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체 및 협회
5. 극히 제한된 지역내에서 불확실한 사고 발생시 給付金의 지급이 현금 형태의 지급이 아니거나, 損失金 全額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거나, 또는 제3자에 대한 賠償責任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경우 미리 약정된 價格으로 지급하는 營業行爲를 하는 기업

제 2 조

감독청은 일정기업이 제1조에 따라 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은 法院 및 행정청에 대하여 拘束力을 갖는다. 법원이나 행정부의 결정이 1931년 4월 1일 이전에 행해진 것일지라도 감독기관의 결정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 조

이 법에서 법규정이 이사회 및 감사회에 관한 것이고 공법상의 보험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회사기관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이사회에 갈음하여 그에 상응하는 업무집행기관이, 감사회에 갈음하여 그에 상응하는 감사기관이 대신하여 적용받는다.

제 4 조

삭 제

제 2 장 保險事業의 免許

제 5 조

- (1) 保險會社는 監督機關의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험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
- (2) 事業計劃은 免許申請時 제출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회사의 事業目的, 그 機構 및 事業領域이 明示되어야 하며, 특히 그 회사가 장래에 負擔하게 되는 의무를 계속적으로 履行할 수 있음을 立證하여야 한다.
- (3) 사업계획서의 부속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定款
 2. 普通保險約款 및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전문 서류
 3. 株式法 제291조 및 292조에서 열거한 종류의 회사계약
 4.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의 영업, 잔고관리, 보험금지급처리, 회계, 재산투자 또는 재산관리를 전부 또는 상당부분 다른 회사에게 지

속적으로 양도하는 계약

(4) 사업계획서에는 保證基金(제53c조 제2항)의 최소금액에 相應하는 資產의 可用可能性을 立證하여야 한다. 資產은 그 구성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부가적으로 첫 3개사업년도의 手數料支給, 事業經費, 豫想保險料收入, 豫想損害額 및 豫想流動性등에 관한 推定評價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재정수단이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의무이행을 위하여 可用될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내어야 한다.

(5) 기타 제출사항으로서

1.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保險料率
2. 再保險契約意圖에 관한 사항
3. 사무실개설 推定經費 및 募集人 확보비용; 회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資產(組織펀드)을 積立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4. 附屬書 A部 제18호에서 열거한 보험종목의 영업허가가 신청되는 경우, 회사가 약정한 보조금지급을 위한 자산에 관한 사항

(6) 附屬書 A部 제4호 내지 7호 및 제12호에 규정되고 있는 보험종목과 附屬書 A部 제10호 b에 규정된 위험에 대하여는 契約條件과 料率의 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附屬書 A部 제14호 및 제15호에 규정된 보험종목에 대하여는 요율의 제시가 불필요하다.

제 6 조

(1) 免許는 사업계획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면허신청 지역에서 지체없이 허가된다.

(2) 면허는 개별보험종목마다 부여된다. 사업계획서에서 그 회사가 특정종목의 위험에 대한 擔保範圍를 制限하고자 아니하는 한 모든 종목에 대한 면허를 허가한다.

(3) 附屬書 B部に 규정된 바에 따라 몇개 종목의 共同免許도 가능하다.

(4) 보험종목간의 위험이 상호관련이 있거나, 보험목적물이 동일하거나 동일계약에 의하여 擔保되는 경우, 한종목 또는 다수종목의 면허는 다른

종목의 추가위험의 담보를 포함한다. 첫째문장은 보증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 (1) 면허는 株式會社, 相互保險會社, 公營法人 및 단체에 대해서만 부여한다.
- (2)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외에 그 보험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다.

제 8 조

- (1) 다음의 경우 면허는 拒否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소유주 및 그 경영진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충분한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또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격 및 경험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 제4항 제3문 및 제4문, 제5항에 의거 제출된 事業計劃書 및 관련서류에 被保險者의 利益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사업으로 발생한 義務履行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경우
- (1a) 生命保險事業의 免許(Anlage Teil A Nr. 19-21)와 다른 보험종목에 대한 사업면허는 상호 별개로 한다. 질병보험, 보증보험, 소송보험에 대한 면허와 다른 보험종목에 대한 면허가 상호 별개라는 사실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된다.
- (2) 면허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 9 조

주식회사의 定款은 영위하게 될 保險種目, 資産投資의 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사업이 原受保險事業만을 수행하는지 또는 再保險事業

을 영위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普通保險約款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보험금지급을 해야 하는 손해발생 및 免責事項 혹은 支拂中止사항 (예컨데 청약서 허위기재, 계약기간중 주요변경사항 虛僞通知)
2. 보험금지급의 종류, 범위 및 만기
3. 보험료산정 및 納付에 관한 사항, 滯納時 법적 효과에 관한 사항
4. 保險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특히 默契의 기간연장 인정과 그 방법에 관한 사항, 解約의 인정과 그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전부 내지 일부해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등과 더불어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契約의 소멸, 保險料還給, 保險更改, 減額處理 등)
5. 보험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保險金請求權 喪失에 관한 사항
6. 保險契約上 서로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관할법원 문제 및 仲裁者 지명문제
7. 利益剩餘金의 보험계약자에게 還給하는 규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8. 보험료의 환급이 있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있어 先給金 및 대출의 조건 및 한도

(2) 상호보험회사이나 공법상의 보험사업자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이 보통보험약관에 같음하여 정관에 포함될 수 있다.

(3) 보통보험약관의 적용배제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표시한 때에 한한다.

제 11 조

(1) 생명보험사업자는 사업계획서상 세부적인 保險料率體系 및 保險料算定은 물론 保險積立金算定基準을 삽입하여야 한다. 특히, 이자율 및 순보험료에 추가되는 부가보험료도 나타내어야 한다. 生命表, 障礙率,

疾病率表도 첨부되어야 한다.

- (2) 每保險種目(예: 生命保險, 死亡保險, 일시지급 또는 年金保險)마다 보험료 및 보험료적립액산출에 관한 공식이 제출되어야 함은 물론 수 치에 의한 실례로써 설명되어야 한다.
- (3) 추가보험료 부담으로 위험을 인수할 경우 사업계획서상 이에 대한 특별 적립금 근거규정이 나타나야 한다.

제 12 조

제11조는 생명보험과 동일한 방식의 確率表를 기초로 영업하는 疾病 및 傷害保險事業者에게도 적용된다.

제 13 조

- (1) 사업계획서의 변경사항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제8조가 적용된다.
- (1a) 제1항은 기능분할(제5조 제3항 제4호)과 관련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法下의 감독대상인 보험사업자와 체결된 이런 계약은 감독청에 제출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되나, 비감독대상사업자와 체결된 이런 계약은 감독청에 제출된 뒤 그리고 감독청이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첫 3개월이 경과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감독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까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감독청이 동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직전에 滿了된다. 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합기업(株式法 제15조)과 제53d조 제3항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회사와의 계약상 보험료의 변경은 계약안이 감독청에 제출될 때 유효하게 된다. 제53d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만약 사업이 認可外의 종목이나 이 법 적용영역내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표시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自己資産이 支拂能力(Solvabilitätsspanne: 제53c조 제

- 1항 제1문)정도나 신규사업에 필요한 最小保證基金(이 금액이 더 크다면)정도로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3) 사업이 이 법 적용지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될 경우 사업확장후에도 사업자가 이 법의 적용지역내에서 財源에 관한 규정을 충족시킴을 증명해야 하고 만약 적용지역외에 營業認可를 받은 支店을 개설할 경우 계획된 營業保險種目 및 종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 14 조

- (1) 보험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讓渡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인의 관할 감독청으로부터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인수사업자는 양도후에도 自己資產이 支拂能力에 달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가 준용된다. 감독청은 양도되는 기업의 고용인들의 사회적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가를 감독하여야 하며, 讓渡에 따른 讓受人의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자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讓受人에게 적절히 移轉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民法 제 41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讓渡契約은 반드시 書面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民法 제3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장 相互保險會社

제 15 조

相互扶助의 원칙에 따라 소속회원의 보험을 영위하고자 하는 團體는 감독청으로부터 “相互保險會社”로서 영업할 수 있음을 認可받음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제 16 조

상법 제1편, 제3편의 제1장과 제4편의 상인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相互保險會社에도 準用된다.

제 17 조

- (1) 相互保險會社의 조직은 이하의 규정과 관련없는 경우에 한하여 定款으로 정한다.
- (2) 상호보험회사의 定款은 公證人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제 18 조

- (1) 정관은 회사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회사의 명칭내에 회사소재지가 나타나야 하며, 명칭이나 부가명칭에 相互保險을 영위한다는 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9 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회사의 모든 채무는 회사의 자산으로 책임진다. 소속회원은 회사채권자에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정관은 회원의 가입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오직 이 회사와 보험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회원이 될 수 있다. 定款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보험관계가 종료될 때 회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제 21 조

- (1) 회원에 대한 보험료 및 보상금은 동일조건하에서 동일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2) 회사는 정관상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비회원과도 確定保險料를 기준으로 보험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제 22 조

- (1) 정관상 보증 및 운영기금과 설립비용을 충족시키는 회사설립기금의 조성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관은 기금의 운영조건 및 특히, 基金出資者가 회사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2) 회사설립기금은 法定通貨, 獨逸聯邦銀行 保證手票, 독일연방은행 또는 독일내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 혹은 회사 혹은 이사회에의 체신당좌좌구좌로 입금되어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예금에 대한 이사회에의 권리는 회사의 권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정관상 현금 지급 대신 약속어음에 의한 납입도 허용된다.
- (3) 회사설립기금을 사용수익한 자는 계약해지권이 없다. 정관은 위의 자에게 연간수입에 따른 이자외에 貸借對照表상의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허용할 수 있다; 감독청은 자유재량에 따라 현금수입에 대한 이자지급이나 배당액의 지급가능 백분율을 결정한다. 회사설립기금은 지분증서의 발행이 가능한 지분으로 분화될 수 있다.
- (4) 회사설립기금은 연간수입으로부터만 그리고 제37조의 損失準備金의 인상분만큼만 償還될 수 있다. 그 상환은 첫 사업년도의 설립 및 운영비용을 공제한 후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제 23 조

삭 제

제 24 조

- (1) 정관은 지출금을 보전함에 있어 1회의 분담보험료, 先納가능한 계속

보험료 또는 필요에 따라 회원에 할당되는 분담보험료중 어느 것으로 충당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 (2) 분담보험료를 선납할 경우는 보험료의 추정이 유보 또는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면제될 경우에도 정관은 보험금청구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정하여야 한다.
- (3) 정관에는 추가분담금 및 할당분담금의 最高限度額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분담금 및 할당분담금이 회원의 보험금청구권을 충당하기 위하여서만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25 조

- (1) 추가분담금(Nachußbetrag)이나 할당분담금(Umlagebetrag)에 대한 負擔義務는 영업년도중 퇴직한 회원 및 신입회원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의 분담보험료는 영업년도중 그들이 회사에 소속된 기간에 비례하여 算出된다.
- (2) 회원의 추가분담금이나 할당분담금이 선불된 보험료나 保險金額(Versicherungssumme)에 따라 결정될 경우 영업년도중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때와 보험금액이 감액되었을 때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때에만 적용된다.

제 26 조

상호보험회사의 채권은 회원의 보험료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 27 조

- (1) 定款은 추가분담금 및 할당분담금의 부과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특히 우선적으로 충당될 자산(設立基金, 積立金)의 사용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定款은 또한 추가분담금 및 할당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 28 조

- (1) 정관은 회사의 공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2) 보험회사의 영업범위가 일개 州 이상인 경우 공개매체에 의한 공시사항은 연방공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청은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만일 회사의 영업범위가 일개 州에 한정되어 있을 경우 州의 최고행정청은 연방공보에 같음하여 다른 1개의 신문을 지정할 수 있다. 정관은 그밖의 다수의 신문을 지정할 수 있다.

제 29 조

정관은 이사회, 감사회 및 대표기관(최고기관: 회원총회, 대표자총회)의 선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 30 조

- (1) 모든 이사 및 감사는 商業登記簿에의 등기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법원에 상호회사설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동 신고서상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권한도 포함되어야 한다.
- (2) 監督廳은 영업인가를 등기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 (1)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업인가증원본
 2. 정관
 3. 이사회 및 감사회 선임에 관한 서류
 4. 회사설립기금의 조성에 관한 서류, 동 서류에는 동 설립기금의 조

성범위와 방법 그리고 이사회가 납입된 설립기금액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이사회와 감사회의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 (2) 모든 이사는 서명을 법원에 보관하여야 한다.
- (3) 신고를 위해 첨부된 서류는 법원에 원본과 사본으로 보관된다.

제 32 조

- (1) 상업등기부의 등기사항은 상호, 所在地, 영위하는 保險種目, 회사설립기금액, 인가일 및 경영진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자의 권한도 기재되어야 한다.
- (2) 정관상 회사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 33 조

등기내용과 함께 아래의 사항이 公示되어야 한다.

- 1. 支出計定이 先支給保險料 또는 추가분담보험료에 의하여 充당되는지 보험료가 선지급되는 경우 추가분담금이 유보되거나 면제되는지 여부, 보험료 부담의무가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보험금 청구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제24조)
- 2. 제28조에 따라 정한 사항
- 3. 회사대표(회사기관)의 선임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4. 첫 감사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성명, 직업, 주소)
- 5. 최고대표기관의 선임에 관한 사항

제 34 조

이사회는 최소한 2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식법 제76조의 제1항 및 제3항, 제77조 내지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가 이사회구성에 準用된다. 동 법상의 株主總會決議는 본법에서는 最高代表者會議 決議와 동일

하다. 주식법 제93조의 제3항은 다음 규정으로 代替된다: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진다.

1. 회사설립기금이 償還되거나 利子が 支給될 때
2. 회사자산이 配分될 때
3. 회사가 채무에 대하여 支給不能이 되거나 債務가 資産을 초과한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단 利子支給이 그 시점에서 선량한 管理者의 주의의무로써 합의한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貸出이 허용된 경우

제 35 조

- (1) 감사회는 3인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3의 배수로 하여야 한다. 감사회 구성원은 최대 21인을 넘지 못한다.
- (2) 經營組織法(Betriebsverfassungsgesetz)의 제77조 제2항에 따라 經營組織法 제76조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감사회는 最高代表機關에서 선출된 監事와 근로자중의 監事로 구성된다. 기타조합들의 감사는 오로지 最高代表者會에서 선출된 감사로서만 구성된다.
- (3) 주식법 제30조 제2항과 제3항의 제7문과 제2문의 전반부 및 제96조 제2항, 제97조 내지 제100조, 제101조 제1항과 제3항, 제102조, 제103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104조 내지 제116조가 감사회에 대하여 준용된다. 동 법상 株主總會에 위임된 의무는 본법상으로는 社員總會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최고대표자회의 모든 구성원은 주식법 제98조 제2항 제3호와 제104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발언권을 갖는다. 회사법 제113조 제3항은 다음 규정으로 代替되며 제116조는 다음 규정으로 補充된다.
 1. 만일 감사회의 구성원이 利益配當에 참가하는 경우 그 배당금은 損失填補와 利益準備金の 積立후의 差減殘額으로 하여야 한다; 出資基金의 處分權이 있는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자에게 약정된 이익에 대한 지분도 차감된다. 이에 반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監事는 특히 제34조 제4문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를 그들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입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35a 조

주식법 제117조는 準用된다.

제 36 조

주주총회에 관한 주식법 제118조, 제119조 제1항 제1호 내지 3, 5, 7호 그리고 8호와 제2항, 제120조, 제121조 제1항에서 제3항과 제4항의 제1문, 제122조, 제123조 제1항, 제124조 내지 제127조와 제129조 제1항과 제4항, 제130조 내지 제133조, 제134조의 제1항, 제136조 제1항과 제3항, 제142조 내지 제147조, 제241조 내지 제253조, 제257조 내지 제261조는 準用된다. 또한 주식법 제256조도 준용된다. 만약 會員總會가 最高代表者會일 경우 주식법 제134조 제3항이 준용된다. 각종의 향익권은 最高代表機關의 의결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同議決은 有效投票의 3/4의 定足數를 요한다. 定款은 이와 다른 議決定足數와 要件을 정할 수 있다.

제 36a 조

監督廳은 事業認可를 함에 있어 첫사업년도의 創立費用이 총 회사설립기금의 1/2 또는 現金納入分을 넘지 않는 한에서 최장 첫사업 5년간 조직기금 및 설립기금의 분할납입과 每 營業년도의 분할납입잔액을 貸借對照表上 資產計定에 부기하는것을 허용할 수 있다. 상법 제269조와 제28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6b 조

제34조, 제35a조와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주식법규정이 소수주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인 한(주식법 제93조 제4항 제3문, 제117조 제4항, 제120조 제1항, 제122조, 제142조 제2항과 제4항, 제147조, 제258조 제2항 제3문, 제260조 제1항 제3문과 제3항 제4문), 정관은 最高代表機關의 구성원중 소수사원에 대해서도 정함이 있어야 한다.

제 37 조

정관은 사업운영상 발생가능한 특별한 손해를 擔保하기 위하여 準備金(損失準備金, 積立金)을 적립하여야 하며 또한 매년 추가적립해야 할 금액 및 적립 최소금액도 규정하여야 한다.

제 38 조

- (1) 貸借對照表上 이익금(정관에 따른 損失準備金, 기타 積立金 保險料支給 익년 이월금액 제외)은 정관상 기재된 회원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제53c조 제3a항은 적용이 排除되지 아니한다.
- (2) 정관은 利益配當金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특히, 이 利益金을 사업년도후에도 잔존하는 회원들에게만 配當할 것인지 또는 전회원에게도 배당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 (3) 이 이익금은 조직비용 및 첫 설립비용(제36a조)을 상환한 후에 비로소 배당할 수 있다.

제 39 조

- (1) 최고대표자만이 정관의 변경권한을 갖는다.
- (2) 최고대표자회는 정관의 형식변경에 관한 권한만을 감사회에 委任할 수 있다.
- (3) 만약 監督廳이 정관변경결의를 승인하기 전에 그러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 (4) 총회의 결의로 보험종목의 폐지 혹은 새로운 보험종목을 영위할 경우

재적 3/4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관은 또다른 추가전제조건을 정할 수 있다. 만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決議도 위의 다수결을 요한다.

제 40 조

- (1) 정관의 변경은 상업등기부의 등기를 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承認證明書도 반드시 신고서에 添附되어야 한다; 정관의 전문도 역시 제출되어야 한다. 定款의 變更規定은 定款變更 결의에 일치하고, 변경이 안된 규정은 최근에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정관전문과 일치한다는 공증인의 證明書를 요한다.
- (2) 제32조에 따른 내용변경을 제외하고, 그 등록에 있어서 변경에 대한 법원에 제출된 증명서가 참조될 수 있다. 모든 변경사항은 만약 제33조가 규정하는 고지사항인 경우 반드시 公告하여야 한다.
- (3) 정관변경은 조합소재지 관할법원의 상업등기부에 登記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제 41 조

- (1) 제39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0조에 규정된 保險標準約款의 變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2) 정관이나 최고대표자회는 保險標準約款의 긴급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 감사회에게 임시변경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그 임시변경은 차기 최고대표자회의에 제출되어야 하고, 총회의 요구에 의해 그 임시변경은 효력을 잃는다.
- (3) 기존의 保險契約관계는 만일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變更同意를 하지 않는 한 정관의 변경이나 保險標準約款 變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관상 기존 보험계약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시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42 조

다음의 경우 회사는 解散한다.

1. 정관상 규정된 存續期間이 滿了된 때
2. 최고대표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3. 회사자산에 대한 破産節次開始에 의하여
4. 절차진행비용에 불충분한 破産財團을 이유로 破産節次開始를 拒否하는 결정이 있는 때. 그 拒否決定에 대해 회사는 즉시 抗訴할 수 있다.

제 43 조

- (1) 만약 정관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最高代表者會議의 재적 3/4의 찬성으로 회사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해산결정에 반대한 대표자회의 회원은 의사록에 해산결의를 抗辯으로 남겨둘 수 있다.
- (2) 그 결의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청은 이 承認事項을 商業登記所 法院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最高代表者會議 決議에 의하여 회사가 解散되었을 경우, 회원과 회사와의 保險關係는 결의한 날로부터 終了되지만, 최단 만기 4주일전(4주의 猶豫期間을 둔다)이어야 한다. 이 기간 이전의 保險事故는 유효하다. 그밖의 경우 향후 保險期間에 대하여 선불한 보험료에서 사용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조는 生命保險約款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계약관계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44 조

회사 보험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회사에 讓渡하는 계약은 최고대표자회의의 승인없이 효력이 없다. 동 결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투표권자의 3/4의 同意를 요한다.

제 44a 조

- (1) 회사는 清算節次없이 다음 경우에 合併할 수 있다.
1. 한 회사나 다수회사(讓渡會社)의 모든 자산과 채무를 타사(引受會社)에게 讓渡함으로써 양도회사의 회원은 인수회사의 회원이 된다(吸收合併).
 2. 통합할 회사 각각의 모든 자산과 채무를 인수한 新規會社設立으로 統합할 회사들의 회원은 新規會社의 회원이 된다(新設合併).
- (2) 합병계약은 각회사의 이사회 承認없이 효력이 없으며, 이사회 결의는 투표권자의 3/4의 同意를 요한다. 회사정관에는 보다 강화된 다수결 및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합병은 감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 (3) 吸收合併에 대하여는 株式法 제339조 제2항, 제340조 제1, 2항 제1, 2, 6호 및 8호, 제340a조, 제340d조 제1, 2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항 내지 제6항, 제341, 345, 346조 제1항 제1문 및 제3문과 제3항 내지 제6항, 제347, 348조 제1항과 제349조 내지 제352a조의 규정이 準用된다.
- (4) 新設合併에 관하여는 주식법 제339조 제2항, 제340조 제1항, 제2항 제1, 2, 6호 및 8호, 제340a조, 340d조, 340d조 제1, 2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항 내지 제6항, 제341조, 345조 제2항과 제3항, 제346조 제5항 및 제6항, 제347조 제1항 제1문 및 3문과 제2항, 제348조 제1항 그리고 제349, 350, 352, 353조 제1항 제2문, 제3항과 제4항 제2문, 제5항 내지 제9항이 準用된다.

제 44b 조

- (1)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주식회사에 모든 자산과 채무를 讓渡할 수 있다.
- (2) 다음의 규정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339조 제2항, 제340조, 제341조, 제343조, 제347조, 제348조 제1항 그리고 제349조에서 제352a조의 주식법이 讓渡에 관해 準用된다.

- (3) 이사회결의는 유효투표수의 3/4의 동의를 요한다. 회사정관에 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나 기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讓渡의 효력발생 즉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양도에 관한 이사회결의 이전 적어도 3개월 기간동안에 양도회사에 속했던 전 회원에게 書面으로 동 계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사항중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합당한 補償額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相互會社의 자산과 부채를 讓受한 주식회사는 이사회결의시에 양도한 상호회사의 자산과 수입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讓渡契約을 承認하는 決議는 동 결의이전 적어도 3개월 기간동안에 양도회사에 속했던 모든 회원들에게 補償額을 分配할 것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동 결의에는 회원간의 보상액 분배에 대한 규정을 명기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법 제385e조의 제2항이 적용된다. 회원이나 제3자가 회사정관에 따라 잔여이익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한 不可侵의 권리가 있는 경우, 讓渡의 결의는 상기 관련회원이나 제3자의 同意를 요한다. 위의 동의는 公證人의 認證을 요한다.
- (5) 合意된 補償額이 적절치 않을 때에는 讓渡會社가 소재하는 지역 관할 지방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적당한 補償額을 결정한다. 제4항의 제1문과 달리 보상액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동 신청은 상법 제10조에 따라 주식회사 주소지의 商業登記簿에 財産讓渡의 등기가 公示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할 수 있다. 그 밖에 1969년 組織變更法(1982년 10월 25일 개정)의 제30조 제2문 내지 제4문, 제31조, 32조 제2항 및 제3항, 제33조 내지 제37조와 제39조가 準用된다.
- (6)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과 부채의 讓渡에 따른 補償額이 결정되면 보상액의 收取를 위해 信託管理者를 지명해야 한다. 信託管理者가 자신이 補償額을 보관할 것을 법원에 통지할 때까지 讓渡의 登記를 할 수 없다.
- (7) 법원이 제5항의 제2문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상액을 收取할 信託管理人을 직접 지명한다. 양도에 관한 이사회결의

이전 적어도 3개월기간 동안에 양도회사에 속했던 모든 회원은 보상액을 공평히 分配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에 의해 지명된 信託管理人을 주식회사에 대해 동 업무에 따른 報酬 및 諸經費를 요구할 수 있다.

- (8) 자산의 讓渡에 따른 보상액이 양도회사의 貸借對照表상의 각종 자산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동 차액은 資産으로 移越시킬 수 있다. 동 금액은 별도로 표기되어야 하며, 차년도부터 적어도 매년 1/5씩 貸損處理해야만 한다.
- (9) 자산의 讓渡는 감독기관의 承認을 요한다. 동 承認은 만일 資産讓渡에 관한 동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승인에 관한 서류는 財産讓渡의 등기신청과 함께 첨부된다.

제 44c 조

- (1) 회사는 清算節次없이 모든 자산과 채무를 공법상의 보험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 (2) 讓渡契約은 최고대표자회의의 승인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 계약이 효력을 갖기 위하여 공법상의 보험회사의 대표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와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공법상의 보험회사를 규율하는 聯邦法과 州法에 따른다.
- (3) 財産讓渡에 관하여는 그밖에도 제44b조 제2항 내지 9항이 準用된다. 주식법 제349조, 제351조 내지 제352a조를 준용함에 있어 讓受會社の 주소지 商業登記簿 대신에 양도회사 주소지의 상업등기부가 적용된다. 양도회사 주소지의 등기부에 讓渡登記됨으로써 양도회사는 소멸한다. 양도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公營 保險會社가 承繼한다.

제 45 조

讓渡會社の 이사회는 登記所에 동사의 解散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破産節次가 開始되거나, 그 開始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제42조 제3호 및 제4호) 법원은 해산을 직권으로써 등

기해야 한다. 破産法院은 등기소에 파산개시결정의 인증증서나 법적 효력을 갖는 파산개시신청 기각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46 조

- (1) 회사의 解散에 따라 회사재산에 대한 破産節次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 회사청산(整理)절차가 개시된다.
- (2) 정리절차 기간동안에는 이하의 규정이나 청산의 목적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정리절차전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精算이나 追加精算(제24조 내지 제27조)과 債券回收가 이루어질 수 있다. 新規保險契約의 引受를 할 수 없으며, 既存契約이 증가되거나 연장될 수 없다.

제 47 조

- (1) 會社定款이나 理事會決議에 의해 달리 지명하지 않는 경우 理事가 清算人의 職務를 수행한다. 법인도 清算人이 될 수 있다.
- (2)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등기법원은 정관상에 명기된 소수회원 또는 감사회의 요청에 따라 清算人을 任命하거나 解任시킬 수 있다. 非訟事件節次에 관한 帝國法 제146조가 이 경우에 준용된다. 법원에 의해 지명되지 않은 清算人은 이사회가 언제나 解任할 수 있다. 동 選任契約에 따른 請求權에 대하여는 일반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3) 清算에 관하여는 그밖에 주식법 제265조 제4항, 제266조 내지 제269조, 제270조 제1항과 제2항 제1문, 제272조 및 제273조가 準用된다. 準用되는 주식법 제270조 제2항 제3문과 제3항과는 관계없이 開始貸借對照表, 설명보고서 및 연말결산서에 대하여는 상호보험회사의 연말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검사에 적용되는 규정 및 주식법 제175조, 제176조와 상법 제325조, 제328조가 준용된다.

제 48 조

- (1) 設立基金은 회사가 모든 다른 채권자, 특히 保險關係에 따른 회원의 請求權이 변제 또는 담보된 후에야 상환될 수 있다. 상환을 위해서 어떠한 부가비용이나 보험료의 인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2) 債務의 정산후 회사의 殘存資產은 해산시점에 잔존하는 회원에게 분배된다. 分配는 剩餘金의 분배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
- (3) 정관에 資產의 分配에 대해 따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가 다른 적법한 受取人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49 조

- (1) 회사가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解散되더라도, 이사회가 적격자에 대한 자산의 분배를 집행하지 않는 한 회사의 계속을 결의할 수 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동 결의는 유효투표수의 3/4의 동의를 요한다. 또는 동 결의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 승인은 登記法院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相互會社가 破産節次의 開始로 해산하거나 破産節次가 強制和議(조정) 혹은 회사신청으로 중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 (3) 清算人은 회사의 存續을 登記所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 신고에는 적격자에 대한 資產의 分配가 아직 開始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 (4) 회사의 存續決議는 회사 주소지의 商業登記簿에 登記될 때까지는 효력이 없다.

제 50 조

- (1) 회원 또는 탈퇴회원이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分擔金 負擔義務가 있는 한 파산시 相互會社에 대하여 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破産節次의 開始가 있기전에 탈퇴한 회원은 아직 精算되지 않은 회사에 대한 債務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51 조

- (1) 會社設立基金의 還給에 참여하는 청구권은 모든 다른 債務 辨濟후 이루어진다. 또한 破産節次의 開始당시 회사의 회원이었거나 破産節次開始 전년도에 미리 탈퇴한 회원의 보험관계에 따른 請求權도 다른 債務의 辨濟후 지급되어야 한다.
- (2) 會社設立基金의 還給을 목적으로 어떠한 추가비용이나 보험료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52 조

- (1) 破産시 破産管理人은 파산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분담금이나 할당분담금을 결정해야 한다. 貸借對照表가 법원에 제출된 후(破産規則 제124조) 즉시 財産管理人은 貸借對照表상에 표기된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先給이나 기타 追加支給에 관한 산출에 관해서는 協同組合法 제106조 제2항, 제3항, 제107조 내지 제113조가 적용된다.
- (2) 최종의 配分이 개시된 후 즉시 財産管理人은 회원이 부담해야 할 최종 부담액을 산출해야 한다. 査定 및 附屬處理節次에 대해서는 협동조합법 제114조 제2항 및 제115조 내지 제118조가 적용된다.

제 53 조

- (1) 物的, 地域的, 人的 범위가 한정된 범위로서 운영되는 회사(소규모상호회사)에 대해서는 제3장의 다음 규정만이 적용된다. 제15조,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내지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 내지 제44조, 제4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고정보험료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회원이 되지 않고는 인수될 수 없다.

- (2) 제1항에 의해 다른 정함이 없는 小規模會社는 민법 제23조 내지 제23조의 조합에 관련된 總則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민법의 제29조, 제37조 제2항의 경우 地方法院 대신 監督廳의 규율을 받는다.
- (3) 정관에 따라 감사회가 선임되는 경우 협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1문, 제6항,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제37조 내지 제40조가 적용된다.
- (4) 회사가 小規模會社인지 여부는 감독청이 결정한다.

제 53a 조

(1) 小規模會社는

1. 소규모가 아닌 회사와 회사정리절차없이 合併할 수 있고,
2. 회사정리절차없이 그 재산을 주식회사나 공법상의 보험회사에게 讓渡할 수 있다.

이하의 규정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44a조 내지 제44c조가 合併 및 資產의 讓渡에 관해서 類推適用된다. 이 경우 小規模會社에 있어서는 등기부예의 登記申請 대신에 監督廳에 대한 承認申請으로, 그리고 등기부의 등기와 그의 公示 대신에 제3항에 따른 연방공보예의 公表로써 같음할 수 있다.

- (2) 小規模會社의 合併이나 資產의 讓渡에 관한 이사회결의는 단지 이사회 회의에 의해서만 採擇될 수 있다. 이 결의는 公證人에 의해 公證되어야 한다.
- (3) 소규모회사의 合併이나 재산양도계약이 모든 관할감독청에 의하여 승인되는 즉시 양수하는 소규모상호회사의 관할감독청은 신설합병인 경우 신설상호회사의 관할감독청, 공법상의 보험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회사 관할감독청은 각각 합병 또는 재산양도 및 그 승인에 대하여 연방공보 및 해당 소규모상호회사 소재지의 간이재판소가 지정한 기 타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53b 조

감독기관은 擔保力이 영업의 특수성이나 특별한 계약에 의해 확보된다면 생명보험을 영위할 小規模會社의 設立基金을 면제하거나 損失準備金의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 4 장 保險會社의 經營

제 1 절 財源, 投資

제 53c 조

- (1) 계약상 의무를 이행키 위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총영업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支拂能力만큼의 任意資産을 積立해야 한다. 지불능력의 1/3은 보증기금으로 간주된다.
- (2) 연방재무장관은 보험분야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지침법을 시행키 위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법규명령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발할 수 있다.
 1. 支拂能力의 金額과 算出方式
 2. 保險種目별 保證基金의 最低限度額
 3. 生命保險會社에서 貸借對照表상에 나타나지 않는 任意資産의 算出방법 및 동 資産이 支拂能力 및 保證基金에 편입되는 한도
 상기 제1항의 유럽공동체지침법상 금액이 유럽의 화폐단위로 정해지는 한, 연방재무장관은 도이취 마르크로 동등금액과 동 換率 變경사항을 公表하여야 한다.
- (3) 다음사항은 1항에 의한 任意資産으로 본다.
 1. a) 주식회사의 경우, 基本資本金에서 납입되지 않은 가액의 1/2을 공제한 금액
 - b) 相互會社의 경우, 設立基金에서 未納入金額을 공제한 금액; 설립기금의 최소 25%가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未納入金額의 1/2만을

공제한다

- c) 公營保險會社인 경우 株式會社의 基本資本金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납입되지 않은 價額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 최소한 25%가 납입
된 경우 납입되지 않은 부분의 1/2을 공제한다.

2. 법정 및 任意準備金

3. 移越利益金

3a. 享益權附與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資本金, 이 경우 제3항 a)의 기준
에 따른다.

4. 회사가 활동하는 모든 유럽공동체(EC) 구성국가의 감독기관의 합의
와 예외성 없이 인정되는 秘密準備金

5. 상호보험회사와 상호보험형태의 공영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을 제외하
고, 정관상에 영업년도에 허가된 評價額의 1/2該當額으로 동 금액은
任意資產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생명보험회사인 경우

a) 예정된 配當金에 관련없고, 損失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적립금

b) 제2항을 근거로 발해지는 규정과 감독기관의 동의에 將來剩餘金과
保險料에 포함된 보험모집비용으로써 擔保準備金을 결정하는데 고
려대상이 되지 않는 수준의 금액

제1문 제1호에서 제6호에 명기된 총금액으로부터 貸借對照表상의
移越損失金과 無形財產이 차감된다. 특히 다음 사항들

1. 資產으로 표기되는 創業費(本法 제36a조 및 商法 제269조)

2. 資產으로 표기된 營業 또는 會社價値(商法 제255조 제4항)

(4)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연말결산서, 사업보고서와 함께 支拂能力算出
과 任意資產의 證憑書類를 매년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53d 조

(1)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아닌 결합기업으로부터 用役契約, 生産契約,
貸借契約 및 類似契約에 의거 용역을 제공받을 때, 동 補償額은 선량

한 관리자가 피보험자의 이익을 감안하여 非結合社와 합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의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런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경비 및 산출내역은 매년 보험회사에 보고되어야 한다.

- (2) 제1항하의 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은 관련 양사의 다수 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동일인에 의해 소유되었다면, 非結合會社와 맺는 계약에 대해서도 準用된다.

제 54 조

- (1) 保險會社의 資産은 영업의 종류와 회사의 구조를 감안하여 적절한 配合과 分配를 통해 流動性을 유지하면서, 가장 큰 안정성과 이익을 示顯할 수 있는 방식으로 投資되어야 한다.
- (2) 제54d조와 관계없이 다음 사항은 감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a) 不動產과 不動產에 동등한 權利取得事項
 - b) 株式 또는 기타 持分에 의해 他社의 額面資本金의 10%를 초과하는 持分參與인 경우 그 持分の 取得; 또한 주식법 제18조의 콘체른에 속한 多數保險會社의 參與持分과 支配會社의 參與持分은 합산하여 계산된다.
 - c) 株式法 제15조상의 結合企業에 대한 保險會社의 投資 및 회사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退職年金 또는 死亡年金의 投資. 위의 신고는 취득 또는 투자가 있는 翌月の 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 54a 조

- (1) 擔保基金(제66조) 기타기속자산(gebundenes Vermögen)은 다음항의 각호에 따라 동 법의 적용지역내에 소재하거나 또는 有價證券 信託法(Depotgesetz)의 제5조 제4항에 의한 적용지역외에 소재하는 자산에만 투자될 수 있다. 기타기속자산은 보험계약과 관련한 保險契約準備金, 未支給金, 責任準備金 등을 말하며 재보험계약분은

무시한다. 기타 기속자산의 계산시 惡性負債를 감안하여 최근 3개월간 지불만기된 原保險 保險料의 50% 償還金額까지 공제될 수 있다. 생명보험에서 기타 기속자산은 익년도말까지 지급예상되는 契約者配當準備金を 포함하는 바, 기타 기속자산 계산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전년도 貸借對照表상의 모집비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다. 再保險契約과 관련한 재보험금과 상응하는 동 재보험계약의 미지급금 및 적립금은 기속자산 계산시 공제될 수 있다.

(2) 기속자산은 다음 각호에 투자될 수 있다.

1. 국내토지에 抵當權이 설정된 債券 또는 그러한 토지 또는 유사한 권리에 대한 土地債務, 단
 - a) 그러한 抵當權 및 土地債務(Grundschulden)가 抵當銀行法 제11조 및 제12조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리고 地上權일 경우에는 地上權에 대한 규정 제21조를 충족시켜야 하거나
 - b) 국내의 단체(K rperschaft) 또는 공공기관이 보증하여야 한다.
2. 국내에 등록된 선박 또는 조선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債券 단, 그러한 저당권이 船舶銀行法(Schiffsbankgesetz)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총발행 有價證券의 일부로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無記名債券, 법령에 의한 특별기금을 위한 記名債券 또는 국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고 도이취 마르크화로 표시되는 해외에서 발행한 債券, 그러나 해외발행채권의 持分取得은 기속자산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債務帳簿에 기장된 債權과 유통어음(Mobilisierungspapieren) 및 清算證書(Liquiditätspapieren: 獨逸聯邦銀行法 제42조 제1항, 제42a조 제1항)
5. 국내 證券去來所에 正上場 또는 2차시장에 上場된 株式, 조직화된 장외시장에 등록되고 전액 납입된 株式의 取得, 기타기속자산도 외 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액 납입된 株式을 取得할 수 있다. 동일 발행 회사의 주식은 新規買入株式額面價와 기속자산이 이미 투자한 주식액면가액의 총합계액이 그 회사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득될 수 있다. 외국회사 주식의 취득금액은 保險料積立金 및 기타기속자산에 관한 제4항 제1문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6. 국내 투자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유가증권특별재산 계정의 취득, 단 계약조건에 따라 그 계정은 주로 正上場株式 및 제2차시장 上場株式 또는 제3호에서 정의한 국내에서 발행한 債券 등으로 구성될 경우이다. 기타기속자산도 약관에서 동 基金이 외국증권시장의 上場株式를 포함하는 경우, 上場株式 또는 제2차시장 上場株式 취득에 이용될 수 있다. 제1문 및 제2문의 投資金額은 유가증권특별재산이 외국회사주식 취득을 포함하는 한, 그리고 외국회사주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면 保險料積立金 및 기타기속자산에 관한 제4항 제1문에서 허용된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7. 다음 각호를 擔保로 하거나 보증을 위해 讓渡된 債券
 - a) 상기 1항 a)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抵當權 또는 土地債務 및 제2호에 따른 抵當權
 - b) 이 항에서 언급된 有價證券이 국내에서 발행되고 獨逸聯邦銀行法 제19조의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독일연방은행이 대부시 擔保될 수 있는 그러한 有價證券
 - c) 법령에 의거 特別基金을 위하여 등록된 債權
8. 貸付
 - a) 연방정부, 주정부, 자치구, 자치구협회 등에 대한 貸付
 - b) 기타 국내 公共法人 및 公共機關
 - c) 이자지급 및 a)에 언급된 연방정부중 하나에 의해 보증되는 換拂
 - d) 과거 발전상황, 장래수익성, 자산 등을 고려, 이자지급 및 환불이 保障되고 貸付하면 일순위 土地抵當權에 의해 債權이 확보되거나 또는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借用者가 保險會社에 상당한 擔保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국내기업체
 단, b), c)의 경우 信用機關에 대한 貸付는 제외됨.
9. 독일연방은행 또는 적절한 국내금융기관

10. 獨逸建築法 제137조에 따라 建物鑑定人 또는 監督機關이 요청할 시 鑑定人協會 등이 建物取得時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그러한 建物 또는 건축중이거나 조만간 건축예정된 不動産. 건축중이거나 건축예정인 不動産의 取得金額은 기속자산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商業用不動産의 取得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동 규정은 부동산에 따른 권리에도 적용되는 바, 첫번째 문장에서 명시한 한도를 역시 초과하지 못한다. 부동산 및 건물의 건축에 대한 투자는 그것이 만일 保險會社の 영업을 위한 것인 경우 監督機關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만일 보험영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독일건축법 제137조에 따라 鑑定人 또는 監督機關의 요청시 鑑定人協會가 不動産取得費 및 建築費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監督機關은 이에 대한 投資를 承認하여야 한다.
 11. 토지부동산특별재산에 대한 지분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주로 국내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투자당시 그 計劃이 투자신탁회사법(KAGG)의 제27조 제1항 제3호와 제28조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12. 표준보험약관(제10조 제8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증권을 擔保로 하는 貸付 또는 先給金
 13. 資本參加特別財産이 계약조건에 따라 匿名의 자본참가 이외에 집중적으로 완전 납입된 國內의 上場株式, 제2차시장 上場株式 혹은 國內의 場外市場에 등록된 株式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내국의 투자신탁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자본참가특별재산의 지분. 뿐만 아니라 기타 자본참가 이외에도 대부분 완전납입된 외국 상장주식에 투자된 경우 내국의 투자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본참가특별재산의 持分에 투자할 수 있다.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持分項目이 외국회사의 주식에 대한 匿名의 자본참가형태로 투자되어 있는 경우 외국회사의 주식투자분과 합쳐서 각각 제4항 제1문에 따른 補償基金財産과 그 밖의 허용되는 責任財産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3) 외국환으로 지급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담보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동일 外國換表示로 투자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 즉, 기타기속자산은 동일 방법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사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기타기속자산도 제2항에 규정한대로 투자될 수 있다.

- (3a) 만약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가 EC 회원국내의 물건과 관련하여 공동보험계약에 참여한다면 기속자산도 역시 幹事會가 영업하는 회원국내에 투자될 수 있다.
- (4) 제2항 제5호, 제5a호, 제6호 그리고 제13호에서 언급한 투자는 擔保基金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기속자산의 25%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내투자회사가 관리하고 전액 債權으로만 구성된 유가증권특별재산의 취득은 무시된다. 감독기관은 신설보험회사에 대해서는 保險營業免許 취득후 3년 이내 기간동안은 이러한 投資限度額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제2항 제5호 제3문, 제6호 제3문에서 명시된 限度額을 1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제2항 제10호와 제11호의 투자는 담보기금의 25% 및 기타보험료적립준비금의 25%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5) 감독기관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언급되지 않거나 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투자를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는 제2항, 제3항의 투자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감독기관은 투자가 보험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투자에 대한 特別條件, 특수한 投資與件 또는 그 회사의 구조 등을 이유로 하여 제2항에서 제4항에 명시된 限度額을 초과하는 투자를 허락할 수 있다.

제 54b 조

감독기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해 生命保險契約이 투자신탁회사가 관리하는 특별재산의 配當時 또는 投資會社의 특별재산에 대해 현금을 제외한 기속자산에 나타난 保險給付를 제공하는 한, 擔保基金의 別途計定資産(別途基金)은 사업계획에 명시한대로 투자되어야 한다. 제54a조는 이러한

別途基金의 資産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54c 조

만일 보험계약관계가 한 보험회사의 독립적인 해외잔고의 일부인 경우 제54a조와 제54b조는 외국법에 의해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계약에 관한 기속자산에 적절히 적용된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부동산 및 부동산에 따른 권리 또는 特定貨幣를 명시하지 않은 有價證券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유가증권발행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貨幣로 投資되는 것으로 한다.

제 54d 조

보험회사는 감독기관이 지정한 양식과 기한내에 新規投資와 既存投資를 분리하여 모든 투자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항 제6문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a 장 會計, 監査

제 55 조

- (1) 이사회는 大規模資本會社(商法 제267조 제3항)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年末決算書(商法 제242; 264조)와 事業報告書를 전년도 사업년도에 대해 당해 사업년도의 첫 4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決算檢查人에게 검사를 위해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264조 제1항 제2문의 기간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年末決算書와 事業報告書는 監督廳에 제출하되 늦어도 株主總會 또는 이와 유사한 보험회사 社員總會의 소집 1개월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3편 제1장의 규정은 小規模 相互保險會社(제53조 제1항 제1문)와 商人이 아닌 기타 보험회사에 대하여 準用된다.

- (2) 재보험만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제1항 제1문의 전 반부에서 명시한 10개월의 기한은 영업년도가 曆年과 일치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年末決算書를 확정하거나 부결하는 株主總會 또는 보험회사 社員總會는 株式法 제172조 제1항 제2문과는 달리 늦어도 지난 사업년도말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상법 제325조 제1항 제1문은 그 기한을 15개월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제1문 및 제2문은 再保險의 보험료가 기타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3) 투자신탁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의 年末決算書와 事業報告書에 대하여는 大規模資本會社의 年末決算書, 事業報告書 및 그 公示 및 複寫, 登記法院의 檢査, 罰金規定 및 過怠料에 관하여 규율하는 상법 제3편 중 제2장의 제1, 4, 6관의 규정이 類推適用된다. 상법 제325조는 小規模 相互保險會社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保險會社의 年末決算書 및 事業報告書에 대하여는 상법 제265조 제6항 및 제7항, 제266, 268, 275, 277, 285조 제1호 a, 제288, 289조 제2항 제3호 대신에 명령과 기타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 제265조 제2항, 제280조, 제281조 제1항 제2문, 동조 제2항, 제284조 제2항 제4호, 제285조 제3호 내지 6호, 제12호는 적용이 排除될 수 있다.
- (5) 명령의 制定에 관한 상법 제330조는 제3항에서 명시한 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의 지점(제106조 제2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상법 제330조에 따른 授權이 小規模 相互保險會社(제53조 제1항 제1문)에 적용될 때에는 이들 보험회사가 적당한 규모로 단순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聯邦保險監督廳의 감독하에 있는 소규모 상호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명령으로써 授權의 일부를 연방감독청에 移讓할 수 있다. 州의 감독청의 감독을 받는 소규모 상호보험회사에 대해서 州정부는 연방보험감독청과 협의하여 명령으로써 상법 제330조의 규정을 발할 수 있다; 州정부는 이 권한을 命命으로써 州감독청에 委任할 수 있다.

- (6) 株式會社, 株式合資會社, 相互會社의 형태가 아닌 보험회사에 대하여
주식법 제152조 제2항 및 제3항, 제170조 내지 176조가 準用된다;
주식법 제160조는 享益權에 관한 것이 아닌 한 準用된다.
- (7) 보험회사는 보고년도에 이은 毎사업년도에 모든 피보험자에게 年末決
算書와 事業報告書를 송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附屬明細書와 事業
報告書는 반드시 상법 제325조에 따라 연방공보에 公示할 필요는 없
다. 附屬明細書와 事業報告書가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1문에 따
른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의무는 존속한다.

제 55a 조

- (1) 연방재무장관은 주감독청의 감독을 받지 않는 보험회사에 대해 연방
참의원의 同意를 요하지 않는 명령을 통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발할 수 있다.
1. 本法에 따른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목적에 위해 작성한 貸借
對照表, 보험종목에 따라 분류된 損益計算書, 위의 대차대조표 및 손
익계산서에 대한 별도의 說明書 등으로 구성된 提出報告書의 기재방
법, 내용, 형식 및 항목에 관한 사항
 2. 감독청에 제출되는 內部報告書의 제출시한. 연방보험감독청의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제1문에 따른 授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
방보험감독청에 移讓할 수 있다.
- (2) 연방보험감독청의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정
은 州監督廳과 협의하여 발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公布 이전에 보험
위원회의 청문절차를 거친다.
- (3) 주감독청의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주정부는 연방보험감독청
과 협의하여 命令으로써 제1항에 따른 규정을 발할 수 있다. 위의 권
한은 命令으로써 주감독청에 委任할 수 있다.

제 56 조

- (1)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상법 제253조 제1항 제1문, 제3항, 제5항, 제254, 256, 279조 제1항 제1문, 제2항에서 규정한 대로 가격을 評價하여야 한다.
- (2) 保險契約 募集費用은 資産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
- (3) 보험기술상 필요한 적립금은 합리적인 상인의 판단으로 보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 (4) 제54a조 제3a항에서 언급된 공동보험계약인 경우, 미지급보험금은 적어도 幹事社가 자국의 규정 및 관습상 적립해야 하는 금액과 비례하여 積立되어야 한다.

제 56a 조

株式會社의 경우, 理事會는 감사회의 同意를 얻어 契約者配當準備金을 결정한다. 그러나 契約者의 법적 권리상 발생하여 準備金에 計上되지 않는 금액은 貸借對照表의 利益剩餘金이 株式資本의 최소 4%의 株式配當金을 허용치 않는 한, 契約者配當金으로 사용될 수 없다. 契約者配當金은 保險料未支給으로 代替되어야 한다.

제 57 조

- (1) 保險會社의 附記, 年次報告書 및 財務諸表는 會計監査를 받아야 한다. 會計監査가 없는 때에는 財務諸表는 확정할 수 없다.
- (2) 상법 제3편의 제2장 제3절의 규정은 監査에 準用된다. 본법 제58조는 적용이 없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감사실시와 보고방법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한 수시보고 등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21조 제2항의 경우에는 年末決算檢査人은 감독관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58 조

- (1) 年末決算檢査人은 감사회가 매 사업년도말 이전에 選任할 수 있다.
- (2) 理事會는 감사회가 選任한 檢査人을 지체없이 監督機關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監督機關이 選任된 檢査인을 반대하는 경우 監督機關은 적당한 시일내에 다른 檢査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그 기간내에 새로 선임하지 못하거나 새로 선임된 檢査人을 다시 인정하지 않을 경우 監督機關이 직접 檢査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 (3) 理事會는 지체없이 상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선임된 檢査人과 監査契約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59 조

理事會는 檢査人의 의견 및 감사회의 의견을 첨부한 監査報告書를 株主總會 또는 유사총회후에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은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監事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감사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보충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60 조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州法에 의해 설립되고 州의 감독하에 있는 公營保險會社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를 위하여 年末決算監査에 관한 州法の 규정이 적용된다.

제 61 조~제 63 조

삭 제

제 64 조

제57조~제59조는 小規模의 相互保險會社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53

조). 감독기관은 小規模會社를 지정하고 감사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 2 절 生命保險의 보험료적립금 (Deckungsrücklage)에 대한 특별규정

제 65 조

- (1)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료적립금은 각 보험종목별로 전보험계약기간에 대하여 산정하고 장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 산정원칙이 적용된다.
- (2) 生命保險, 疾病保險, 傷害保險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保險料積立金 계산시 최소한 1인의 전문가가 貸借對照表를 기초로 한 保險料預託金이 보험회사 대표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1항의 규정에 부합토록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동 조항은 小規模 相互會社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53조).

제 66 조

- (1) 이사회는 해당 사업년도중에 擔保基金을 추가적립해야 하며, 예상되는 保險料積立金 초과분을 적법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제65조), 감독기관은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달할 수 있다.
- (2) 擔保基金의 자산이 보험료적립금과 일치하지 않을 시 理事會는 지체 없이 그 부족분을 移轉해야 한다.
- (3) 監督機關은 필요하다면 被保險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保險積立金 외에 추가로 일정금액을 擔保基金에 가산할 수 있다.
- (3a) 擔保基金의 목적을 위하여 抵當이 설정되지 않은 土地 및 그와 유사한 權利가 帳簿價額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감독기관은 만일 전문가가 市場價格이 적어도 帳簿價格의 100%를 초과한다고 평가하면 帳簿價額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저당설정된 不動產 및 不動產權利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그 價額을 평가한다. 價額算定內容은 제54d조에 언급된 報告書의 일부로서 감독기관에

報告되어야 한다.

- (4) 擔保基金에 대한 추가금액은 保險料收入으로 부터의 特別擔保금이 보험계약의 이익을 위해 외국에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략될 수 있다.
- (5) 擔保基金(現金, 有價證券, 證書)은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회사내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고, 그 보관방법이 감독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감독기관은 擔保基金을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 (6) 擔保基金은 개별적으로 그 目錄이 작성되어야 한다. 擔保基金에 관한 규정은 동 目錄에 기재된 모든 資産에 적용된다. 擔保基金에 속하는 資産으로부터의 收益에 대한 權利는 目錄에는 없지만 擔保基金의 일부를 구성한다. 保險會社가 발행한 保險證券을 擔保로 하는 貸付 또는 先給金으로부터 발생하는 請求가 擔保基金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그러한 請求는 總額으로 계산될 수 있다. 分割方式을 換拂될 수 있는 부동산을 擔保로 하는 負債에 관련한 目錄은 감독기관에 의해 정정될 수 있으며, 이것은 개인부채를 擔保하지 않는 不動產抵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매 사업년도말에 해당년도의 目錄寫本이 감독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理事會는 동 寫本の 진위를 확인해야 하고 감독기관은 동 寫本을 보관해야 한다.
- (7)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담보기금내에 別途計定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擔保基金 및 擔保基金에 대한 請求權 관련규정은 각 別途計定에도 준용된다.

제 67 조

再保險의 경우 원보험회사는 재보험에 따른 재보험금액을 제65조 및 제66조에 명시된 保險料積立金으로 계정하여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 68 조~제 69 조

삭 제

제 70 조

擔保基金의 감독을 위하여 信託管理人 및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小規模會社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만 위의 규정이 적용된다(제53조).

제 71 조

- (1) 信託管理人은 감사회가 임명하며, 감사회가 없는 小規模會社는 理事會가 信託管理人을 임명한다.
- (2) 임명된 信託管理人의 성명이 감독기관에 통보되어야 하는 바, 만약 감독기관이 同意하지 않으면 적정시일내에 다른 信託管理人의 임명이 요청될 수 있다. 만약 다른 信託管理人이 임명되지 않거나 새로 임명된 信託管理人을 감독기관이 다시 동의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이 직접 信託管理人을 지명해야 한다.
- (3) 제2항 제2문, 제3문은 既任命된 信託管理人의 재임명여부에도 적용된다.

제 72 조

- (1) 擔保基金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信託管理人의 承認하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監督機關은 이의 세부사항을 시달할 수 있다.
- (2) 信託管理人은 특히 擔保基金資產이 보험회사의 관리하에 있도록 해야 하며, 信託管理人은 이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한도내에서만 동 資產을 解除할 수 있다. 그러나 抵當銀行法(Hypothekbankgesetz)의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이 이에 적용될 것이다.
- (3) 信託管理人은 書面으로만 동 資產의 처분을 승인할 수 있다. 만약 擔保基金目錄중 한 항목이 削除되기 위해서는 削除項目 옆 또는 밑 부분에 信託管理人의 署名만 있으면 가능하다.

제 73 조

信託管理人은 위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대표로 선임된 기관의 책임과 관계없이 보험료적립금이 적법하게 投資되고 管理되고 있다는 사실을 貸借對照表상에 증명하여야 한다.

제 74 조

信託管理人은 언제든지 擔保基金과 관련하여 장부와 기록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75 조

信託管理人의 의무와 관련하여 信託管理人과 보험회사간에 발생한 紛爭은 감독기관에 의해 調整된다.

제 76 조

제71조 내지 제75조는 신탁관리인의 代理人에게도 적용된다.

제 77 조

- (1) 投資에 필요한 基金 및 투자금액의 변동금액은 증권만기 또는 讓渡에 의해 또는 保險契約의 終了나 事業計劃變更 등을 이유로 擔保基金으로부터 회수될 수 있다.
- (2) 擔保基金資產은 충족시켜야 하는 특별청구를 위해 擔保基金에 追加資產이 요구되거나 실제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強制處分이나 押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3) 生命保險契約은 破産節次를 인정하면 終了되는 바, 保險契約者는 破産節次가 시작되는 시점에 保險料積立金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여타 보험금 등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78 조

- (1) 破産法院은 제77조에 규정된 被保險者의 권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에 대하여 破産法院은 後見法院을 代替한다.
- (2) 管理人은 責任準備金의 額數와 被保險者의 支給要求를 확인하고 동 내용을 제출한다.
- (3) 管理人은 가능한 한 제출에 앞서 被保險者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 후에는 被保險者에게 동 내용을 알려야 한다. 요구가 있을 때에는 被保險者의 支給請求와 관련된 기타사항 또한 被保險者에게 알려야 한다. 個別 被保險者의 支給請求權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被保險者의 제출 내용과 管理人의 제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被保險者에게 유리한 내용이 옳은 것으로 간주된다.
- (4) 破産管財人은 管理人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檢査를 허용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때에는 責任準備金의 내용에 대한 證憑資料를 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5) 管理人은 직무수행에 따른 적절한 報酬를 받을 수 있다. 管理人의 소요경비와 보수는 責任準備金에 附加된다.
- (6) 管理人 選任전에 또한 報酬決定전에 監事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 79 조

제12조에서 정한 종류의 질병보험에 대하여는 제65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이 準用된다; 제12조에서 정한 종류의 상해보험에 대하여는 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 및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9a 조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은 公營保險會社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損害保險의 경우 破産節次에 대한 優先權에 관한 規定

제 80 조

제69조 내지 제79조에 따른 담보준비금에 관한 특별규정과는 관계없이 보험종목에서 保險契約者의 보험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험료 還給要求와 破産宣告전의 발생사고에 대한 保險金請求는 破産의 경우에도 제61조 제1항 제6호에 열거된 여타 보험종목의 支給請求에 대하여 優先權을 가진다. 保險料 還給請求權은 보험금 支給請求權의 후순위에 속하며, 동일 지위의 請求權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제 5 장 保險會社에 대한 監督

제 1 절 監督機關의 義務와 權限

제 81 조

- (1) 감독기관은 특히 法律規定의 존수여부와 사업계획과의 일치여부에 중점을 두고 보험회사의 모든 영업활동을 감시한다. 본 법률과 여타 법률에 의해 부여된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監督機關은 오직 公共의 利益을 추구하여야 한다.
- (2) 監督機關은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이 법률규정과 사업계획에 일치하도록 하고 被保險者의 利益을 侵害하는 보험회사의 권리남용을 배제하며, 영업활동이 정당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命令權을 행사할 수 있다. 監督機關은 특히 資金貸付 條件附 保險契約에 대한 制限措置로서 貸出額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일반적으로 혹은 個別保險種目에 대하여 保險會社와 保險仲介人이 어떠한 종류의 특혜도 제공하거나 保險會社가 差等保險契約을 체결 또는 연장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特惠 및 差等優待에 대한 상기 제한은 聯邦公報를 통하여 공표된 날로부터 1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 각 주정부의 감독하에 있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각 주정부의 언론매체를 통한 공시로써 갈음할 수 있다.

- (2a) 감독기관이 제81조 또는 제89조에 규정된 被保險者의 利益保護를 위하여 代理人을 選任한 경우에는 代理人에게 法律 또는 보험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委任할 수 있다. 監督機關에 의해 選任된 代理人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 代理人 選任에 따른 제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 (3) 감독기관은 명령사항의 강력한 執行을 위하여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다. 過怠料는 公營保險會社에도 적용된다. 過怠料는 5만 도이취 마르크를 초과할 수 없다.
- (4) 監督機關은 아래와 관련있는 어떠한 기업에 대하여도 직접 제2항 제1문의 命令權을 행사할 수 있다.
- a) 職務分掌契約에 포함되는 分掌業務의 遂行(제5조 제3항 제4호) 또는
- b) 제53d조에 의한 契約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 出版業者 자신이 발행한 잡지 또는 신문의 購讀者를 위하여 保險會社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은 동 出版業者에 대하여도 동일한 命令行使權을 갖는다. 상기 제1문과 제2문의 경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 81a 조

감독기관은 新種保險契約 체결전에 사업계획의 修正을 요구할 수 있다. 被保險者의 利益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은 사업계획을 修正 또는 廢棄하여 기존의 保險契約 또는 체결전의 保險契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81조 제3항이 準用된다.

제 81b 조

- (1) 보험회사의 임의자산이 支拂能力에 미달할 경우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회사는 건전한 재정상태로의 復舊計劃書(支給能力計劃書)를 제출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 (2) 보험회사의 임의자산이 保證基金에 미달하거나 필요한 경우 保證基金의 계정에 산입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 임의 자산의 當期充當計劃書(財政計劃書)를 제출하여 監督機關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또한 감독기관은 제81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유로운 資產運用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3) 제81조 제3항이 準用된다.
- (4) 보험회사가 적정한 적립금을 積立하지 않거나 그에 상당하는 資產을 保有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제54a조 제1항과 제3a항의 投資의 分散에 관한 요건을 위반한 때에는 제2항 제2문을 準用한다.

제 81c조

- (1) 生命保險會社의 최근 3사업년도의 平均還給率이 전 생명보험회사의 평균치에 의거 산출된 標準還給率을 下廻할 경우 監督機關의 요구에 따라 保險料還給留保金の 적절한 增額을 내용으로 하는 計劃書(還給計劃書)를 제출하여 監督機關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제8조와 제81조 제3항이 準用된다. 제81조 제2항과 제87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還給率은 계산상의 利子和 보험료환급적립금에 산정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표준위험잉여금과 표준이자수익금의 合計額으로 나눈 비율을 百分率로 표시한다.
- (3) 聯邦財務長官은 被保險者의 利益保護를 위하여 또한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은 법규명령을 통하여 標準還給率을 결정하고 표준위험잉여금과 표준이자수익금의 算出方法에 대한 규정을 발할 수 있다. 동 權限은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규명령으로써 聯邦保險業監督廳에 委任할 수 있다.

- (4) 제1항에서 제3항에 이르는 규정은 養老年金 및 葬禮基金에는 적용치 아니한다.

제 82 조

- (1) 보험회사가 감독을 받지 않는 다른 기업에 대하여 資本參加를 하고 있고, 동 참가가 성격과 금액에 있어 보험회사의 경영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감독기관은 참여의 계속을 금할 수 있고, 제57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동 기업의 비용으로 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監査의 실시에 동의하는 기업에 대하여 참여의 계속을 허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監査를 거부하거나 감사결과가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일 때는 감독기관은 동 참여의 계속을 금한다.
- (2) 보험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타회사의 經營에 參與하거나 지배적인 影響力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자본참가로 본다.

제 83 조

- (1) 감독기관은 보험회사의 업무집행과 재정상태를 감독함에 있어 공시된 연말결산서 및 사업보고서가 진실 또는 장부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법정 준비금이 실재하고 적법하게 투자 및 관리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 (2) 보험회사의 소유주, 경영자, 수권대리인 및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를 위해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던 보험중개인은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영업소내에서 모든 장부, 증빙서류와 영업 및 재산상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산 및 재산상황에 대한 釋明을 하여야 한다. 동 의무는 監督機關이 保險事業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모든 企業에 대하여 賦課되며 또한 이 검사의 목적은 해당기업이 監督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제81조 제3항이 준용된다.

- (2a) 어떤 기업이라도 보험회사에 대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항의 적용을 받는다.
- a) 職務分掌契約에 포함되는 分掌업무의 遂行(제5조 제3항 제4호), 또는
 - b) 제53d조에 따른 契約에 의한 서비스의 遂行
- (3) 보험회사가 理事會, 株主總會, 社員總會 또는 이와 유사한 機構를 갖고 있을 경우 감독기관은 위 회의에 代理人을 派遣할 수 있으며 동 회의의 개최는 항상 대리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감독기관은 會議의 召集, 討議案件의 上程 및 表決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이 회사의 비용으로 직접 회의를 召集하여 討議案件을 上程할 수 있다. 監督機關이 소집한 회의에서는 감독기관의 代理人이 회의를 주재한다. 公營保險會社の 管理者나 職員은 감독기관의 代理人이 될 수 없다.

제 84 조

- (1) 감독기관은 제83조 제1항 제1문에 의거 정기적으로 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監査를 위하여 제57조 제2항 및 상법 제319조에 따라 檢査人의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또한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監査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경우 追加調査를 통하여 保險會社를 監査할 수 있다.
- (2) 제1항 제2문 내지 제3문은 소규모상호회사(제53조)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상법 제323조는 제1항 제2문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과 그 補助員 및 회계법인의 법률적 代表에 대해 준용된다.

제 85 조

삭 제

제 86 조

保險事業의 禁止處分이나 자의에 의한 영업중단 또는 보험사업인가가 철회된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기존보험계약의 청산에 대하여도 실시된다.

제 87 조

- (1) 아래의 경우 감독기관은 개별 보험종목 또는 전 보험종목에 대한 영업인가를 取消할 수 있다.
1. 회사가 영업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더 이상 充足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2. 회사가 法令에서 또는 事業計劃에서 정한 義務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3. 영업의 계속이 被保險者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2) 감독기관은 회사가 제81b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支拂能力計劃書 및 재정계획서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에 措置를 취할 수 없을 경우 회사의 인가를 영업전체에 대하여 取消할 수 있다.
- (3) 영업인가의 取消시에는 새로운 契約締結이 불가하며, 既存契約의 증액 또는 연장을 할 수 없다.
- (4) 영업인가의 取消시에는 감독기관은 被保險者의 利益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특히, 감독기관은 資產의 자유로운 處分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資產의 管理를 자격있는 인사에게 委託할 수 있다. 제81조 제3항이 準用된다.
- (5) 相互保險會社의 경우 영업인가의 取消시에는 회사의 解散決議의 효과를 갖는다. 監督機關의 通知 즉시 取消處分은 公表한다.

제 87a 조

만일 보험회사가 主幹事保險者로서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유럽공동체의

회원국 보험사를 共同保險引受에 참여시킬 가능성에 관하여 권리의 남용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은 해당보험회사에 대하여 권리남용의 배제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 악용의 정도가 심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共同保險引受周旋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으며 혹은 제87조 제1항에 따른 措置를 취할 수도 있다. 제81조 제3항 및 제87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준용된다. 특히 保險會社가 幹事保險會社로서의 통상적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保險會社가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共同保險引受를 허용하는 경우 權利的 濫用으로 간주된다.

제 88 조

- (1) 破產法院은 감독기관의 요청에 의해 보험회사의 資產을 관리할 破產節次를 개시하여야 한다. 단, 제107조 제1항에 언급된 여타보험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감독기관만이 破產節次의 開始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 제1문 내지 제3문은 破產節次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公營保險會社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保險會社가 지급불능의 상태가 된 경우에는 理事會는 즉시 監督機關에 通知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이 더이상 그의 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된 때에도 위와 동일하다. 위의 신고의무는 다른 법규정에 의해 이사회에 대해 부과한 지불능력부족 또는 채무초과시 파산절차개시신청의무를 갈음한다. 만일 상호보험회사 또는 相互性 原則에 따라 운영되는 公營保險會社가 추가분담금 또는 필요에 따라 할당되는 분담금을 추정함에 있어 이들 분담금이 변제일을 5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理事會는 현금납입이 아닌 분담금납입분을 제외한다면 負債가 資產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위의 5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관리인도 위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 89 조

- (1) 회사의 경영 및 재정상태를 監査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負債를 辨濟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도 被保險者의 最大利益을 위하여 破産節次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은 적절한 命令을 발하며 또한 회사의 대표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營業의 기초를 修正하거나 息絶을 치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지급 특히, 보험금지급, 배당 및 생명보험의 경우 환급, 보험증권담보대출 그리고 證券先給金의 支給을 暫定的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 (2) 제1항 제1문의 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은 생명보험회사의 負債를 회사의 資産에 비례하여 경감하여 줄 수 있다. 감독기관은 특별한 상황으로서 正當한 경우 특히 多數契約集團중 하나가 회사의 재정난에 크게 작용하는 경우 差等輕減比率을 적용할 수 있다. 保險契約에 대한 통계적 책임준비금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동 준비금을 우선적으로 경감의 대상으로 한 후 비로소 새로운 保險金額이 결정된다. 그러한 적립이 없는 경우 직접적으로 保險金額이 減額된다. 保險金額 減額에도 불구하고 保險契約者의 約定保險料 納入債務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措置는 責任基金의 別途計定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66조 제7항).

제 2 절 監督機關의 組織과 運營

제90조

- (1) 삭제
- (2) 연방보험감독청의 총재는 연방정부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任命한다. 대통령은 또한 聯邦財務長官의 추천에 따라 연방보험감독청의 상임위원을 任命한다. 그 常任委員은 종신직이다.
- (3) 그 밖의 공무원은 聯邦財務長官이 임명한다.

- (4) 연방감독청의 직원은 동시에 公營保險會社의 관리자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 91 조

- (1) 聯邦監督廳과 감독을 받는 保險會社와의 공식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방재무장관은 州政府의 동의를 얻어 州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인사중에서 특별대리인을 任命하여 연방감독청을 대신하여 또한 연방감독청의 特別指針에 따라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2) 제90조 제4항이 準用된다.

제 92 조

- (1) 보험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연방감독청에 설치하여 감독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연방재무장관이 추천하여 5년의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보험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연방감독청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諮問하고 표결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 (3) 자문위원직은 명예직이며 報酬가 없다. 위원의 회의참석시 일당을 받으며, 연방재무장관이 정한 액수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제 93 조~제 100 조

삭 제

제 101 조

- (1) 연방정부는 연방보험감독청의 유지 및 활동에 대한 비용을 제2항의 감독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동 비용에는 제84조 제1항 제2문의 검사인의 고용에 따른 지출도 포함된다. 전년도에는

- 납입되지 않은 分擔金은 차년도의 비용에 합산된다.
- (2) 분담금총액은 상기 제1항의 비용의 9/10에 해당한다. 분담금은 수입 보험료의 1/1,000을 초과할 수 없다. 분담금의 계산은 각 회사의 전년도에 동 법의 시행지역에서 거수한 總收入(總保險料, 出捐金額, 추가분담보험료 및 할당분담보험료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總收入은 계약자잉여금과 계약자배당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 (3) 연방감독청은 1년단위로 收入保險料의 1/1,000 해당액을 分擔金으로 정한다. 연방감독청은 연방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라 수입에 따른 分擔金 및 特別分擔金을 확정할 수 있다. 연방재무장관은 최저분담금 액수를 규정할 수 있다.
- (4) 연방감독청은 개별회사의 분담금을 결정하며, 회사에 拂入追徵計劃書를 송부하여 분담금을 聯邦基金에 1개월내에 납입하도록 지시한다. 따라서, 既賦課分擔金은 세금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 102 조

만약 조사가 誣告에 의한 請願이나 告訴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연방감독청은 그 신청자에 대해서 실제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03 조

- (1) 연방감독청은 보험분야중 보험사업업무와 관련한 그들의 調査나 監督상의 情報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2) 또한 법원칙 및 운영원칙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 104 조

삭 제

제 6 장 外國保險會社

제 105 조

- (1) 국내에서 대리인, 수권대리인, 대리점 또는 기타 仲介人을 통해서 原保險營業을 하고자 하는 外國保險會社는 영업인가를 얻어야 한다.
- (2) 제106조 내지 제111조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外國保險會社에 대하여도 본법이 적용된다.

제 106 조

- (1) 認可申請에 대한 決定은,
 1. 유럽공동체 회원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聯邦保險監督廳이 결정하며,
 2. 非유럽공동체 회원국에 소재하는 保險會社에 대해서는 연방재무장관이 결정한다.
- (2) 보험회사는 본법의 적용지역내에서만 支店을 설치해야 하며, 支店設置에 관한 相關장부를 비치해야만 한다. 支店의 營業活動은 獨立採算制이다. 제55조와 제55a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1. 회사의 주소지국가에서 公表된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는 독일어로 연방공보에 公示하고 附屬明細書 및 事業報告書도 함께 독일어로 各被保險者의 요구에 따라 송부된다.
 2. 회사의 주소지국가에서 그 주소지국가 언어와 독일어로 公表된 年末決算書와 事業報告書, 또한 EC 지역외에 주소를 둔 회사의 경우 주소지국가의 監督官廳에 주소지국가의 언어로 제출된 報告書는 내부의 報告로 간주한다.
- (3) 支店은 반드시 代理人을 선임하여야 하며, 동 대리인은 본법의 적용지역내에 거주해야 한다. 代理人은 본법이 이들 회사의 代表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대리인은 특히 내국의 保險契約者와의 保險契約 및 동 국가내에 소재해 있는 不動產을 擔保하는 保險契約을

체결하는 등 제3자와 거래에 있어 보험회사에게 의무를 이행토록 할 권한과 행정청과 법원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委任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主수권대리인은 商登記부에 登記하여야 한다.

- (4) 保證基金預託에 관한 規定에 따라 連邦보험감독청은 보험계약자의 利益을 위하여 保證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留保한다.

제 106a 조

- (1) 유럽공동체 회원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는 連邦보험감독청에 認可申請書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事業計劃書, 支店에 관한 제5조 제4항 제3문, 제4문, 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報告書 및 서류, 會社定款 및 會社代表機關 및 理事會任員名單
 2. 保險會社가 소재하는 본국의 關係當局에서 발급하는 다음의 내용을 진술하는 證明書
 - a) 保險회사의 認可營業種目 및 실제 인수한 危險의 種類
 - b) 保險회사는 支拂能力이나, 營業種目에 따라 規定된 最低 保證基金이 높은 경우에는 保證基金에 相當하는 資產을 保有하고 있는 사실
 - c) 設立基金으로 유용가능한 財源의 金額
 3. 保險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證明書
 4. 最近 3개사업년도의 各년도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 만약 設립년도가 3년미만인 경우는 이미 마감된 사업년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2) 제1항은 保險事業을 타보험종목 또는 본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경우에 적용한다.
- (3)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가 없는 한, 본국에서 허용된 합법적인 형태의 保險회사에 대한 認可는 제106조 제2항, 제3항에서 명시된 規定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단체를 구성하는 개별 보험자는 단체가 개별 보험자를 대신하여 제109조 제2항 제3문

의 강제집행시 동 단체는 어떠한 權利도 열거되지 않은 개별 보험자들의 資産까지 확장 집행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으며, 권리포기는 본법의 적용범위내에서 체결된 保險契約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取消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힌 경우에만 통합표시되어 認可될 수 있다.

- (4) 보험회사가 본국에서 營業認可를 상실하면 따라서 認可도 취소된다. 제87조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본국의 관할청의 조사가 완결될 때까지 보험사업은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 (5) 만약 본국의 관할청이 불충분한 自己資本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資産處分에 제재를 가하면, 연방보험감독청은 그 당국의 요청에 따라 본법의 적용범위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1b조 제4항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제 106b 조

- (1) 유럽공동체 회원국지역외에 소재하는 보험회사는 연방보험감독청에 인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구비 제출해야 한다.
 - 1. 事業計劃書, 支店에 관한 제5조 제4항 제3문, 제4문, 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報告書 및 書類, 會社定款 및 會社代表機關 및 이사회임원 명단
 - 2. 보험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할관청에서 발급하는 다음의 내용을 진술하는 증명서
 - a) 보험회사는 회사의 이름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債務를 負擔하며, 訴訟 適格者가 된다.
 - b) 보험회사의 認可營業種目 및 실제 引受하고 있는 危險의 종류
 - 3. 최근 3개사업년도의 각년도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 만약 설립년도가 3년미만인 경우는 이미 마감된 사업년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2) 財源에 관하여는 제8조가 적용된다. 보험회사는 최소한 支店の 사업

규모에 따라 정해진 支拂能力에 상응하는 自己資本을 구성해야 한다. 동 자기자본은 보증금액 한도까지는 본법의 작용범위내 또는 EC 회원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최소 기금은 제53c조 제2항에 명시된 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규정상 확정되거나 추가된 安定基金을 예치해야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확정된 安定基金은 최소한 제53c조 제2항에 명시된 최소 보증기금의 25%가 되어야 하며, 이는 자기자본 계산시 포함된다. 保險契約移轉시(제14조) 감독기관은 保證基金이 인수하는 보험회사에게도 요구된다면, 인수된 계약에 대해 예치된 보증기금은 그대로 예치토록 명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항은 보험사업을 타보험종목 또는 본법의 적용을 받는 타 지역으로 확장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認可가 승인된다.

1. 연방보험감독청이 보험자문회의와 협의후 인가거부를 위한 제8조 제1항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하거나
2. 제196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거나
3. 확정된 安定基金으로써 요구되는 금액이 예치되었을 경우

(5) 타 EC회원국에서 인가를 취득하거나 인가신청을 낸 보험회사에게는 신청에 의해 다음 사항이 허용된다.

1. 支拂能力은 보험회사의 EC 회원국내 전체보험사업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2. 보증기금금액의 自己資産은 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타EC 회원국에서 증명될 수 있다.
3. 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保證金을 예치할 의무를 면제한다.

영업인가에 관한 허가는 재무장관이, 그외 다른 모든 허가는 연방보험감독청이 내린다. 허가취소에 대하여는 연방보험감독청이 권한을 갖고 있다.

(6) 삭제

(7) 연방보험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認可를 取消한다.

1. 보험회사가 주소지국가에서 營業認可를 喪失한 경우

2. 제5항의 경우, 保險營業認可는 불충분한 自己資産을 이유로 타EC 회원국에서 取消된다.

제87조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재무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8) 만약 EC 회원국내에 전영업활동을 위한 보험회사의 財源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관청이 불충분한 自己資産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자산처분에 대해 제재조치를 명하면, 제106a조 제5항 제1문이 적용된다. 제81b조 제4항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제 106c 조

생명보험과 기타보험종목을 함께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본법의 적용범위내에서는 生命保險取扱認可를 받지 못한다.

제 107 조

제105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는 본법의 적용범위내에 거주하는 보험계약자들과의 保險契約이나 또는 본법의 적용범위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擔保하는 保險契約을 본법의 적용범위내에 거주하는 代理人을 통해서만 체결할 수 있다.

제 108 조

삭 제

제 109 조

- (1) 국내의 보험영업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支店(제106조 제2항)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법원이 裁判管轄權을 갖는다. 위의 裁判管轄權은 계약에 의해 배제될 수 없다.
- (2) 단체를 구성하는 個別保險者(제106a조 제3항 제2문)에 의해 국내에

서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請求權은 代理人에 의해서만 또는 代理人을 상대로 하여서만 법원에서 제소될 수 있다. 제1문에 따라 발한 명령은 보험거래에 관련된 개별보험자들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代理人에게 취해진 명령은 본법의 적용범위내에 소재하고 代理人에 의해 관리되는 단체안에 조직된 모든 個別保險者들의 資產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 110 조

- (1) 제57조 내지 제59조 그리고 제64조는 연방보험감독청에 의해 명시된 범위까지 외국보험회사에게 적용된다. 제54조 내지 제54b조, 제54d조, 제65조, 제66조 제1항 내지 제3a항 그리고 제5항 내지 제7항 그리고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9a조는 국내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해서만 외국보험회사에게 적용된다.
- (2) EC 회원국의 보험회사들은 제70조 내지 제79조에 따라 信託管理人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보험계약에 대한 擔保基金은 처분시 반드시 연방보험감독청의 승인을 득하도록 동 감독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제 111 조

- (1) 본법의 적용범위내에서 부속서 A부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에 명시된 보험종목만을 영업하는 EC 회원국에 소재하는 외국보험회사들은 EC 설립조약상의 서비스교류의 방식으로 原保險契約을 인수하는 한, 동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1. 共同保險은 핵에너지 또는 제약품에 관련된 賠償責任危險을 제외한 부속서 A부 제4호 내지 제9호, 제11호에서 제13호 그리고 제16호의 보험종목에서 기업 또는 전문적인 위험만을 담보한다.
 2. 공동보험은 다음에 의한다.

- a) 부속서 A부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3호 그리고 제16호의 보험
종목에서 승인을 얻은 보통보험약관
 - b) 主幹事보험자의 保險料率
3. 主幹事보험자는 본법의 적용범위내에서 상기 종류의 위험의 인수가
許可된다.
 4. 공동보험에 참여함에 있어 공동보험자는 主幹事保險者의 개입에 의한
경우 이외에 본법의 적용을 받는 지점을 통해서는 활동할 수 없다.
 5.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규명령을 통해 확정된 위험의 범위 이하에서
는 안된다.
- (3) 재무장관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다음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 경제적 수요가 있는 한 제1항은 비EC 회원국에 소개하는 외국보험회
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항
 2. 보험에 관한 EC 위원회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항에 의거
담보될 수 있는 위험의 금액에 관한 규정을 발할 수 있다는 사항

제 6a 장 EC의 他會員國의 所管官廳과 聯邦監督廳과의 협력

제 111a 조

연방보험감독청은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資料 및 書類를 타회원국의
관할관청에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제 111b 조

- (1) 본법의 적용범위내에 주소를 갖는 보험회사가 다른 EC회원국에서 영
업인가신청을 하는 경우 연방보험감독청은 해당회원국의 관할청이 추
천서와 함께 송부해온 사업계획서 및 인가서류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다. 연방보험감독청이 서류접수후 3개월이내에 의견을 表明하지 않는
때에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간주한다.

- (2) 제106a조 제1항의 경우 연방보험감독청은 사업계획서와 제5조 제4항 제3문, 제4문 및 제5항에서 명시된 기타서류를 연방감독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험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청에 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송부한다. 만일 위의 관할청이 서류접수후 3개월 이내에 답신을 하지 않으면 연방보험감독청은 긍정적인 의견으로 추정한다.

제 111c조

- (1) 만일 연방보험감독청이 제81b조 제2항 제2문을 근거로 보험회사의 자산항목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연방감독청은 이를 당해 보험회사의 영업을 認可한 타회원국의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연방보험감독청은 위의 관할청에 동일한 제한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2) 연방감독청이 제81b조 제2항 제2문을 근거로 EC회원국에 주소를 둔 보험회사의 지점에 대해 재산처분제한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이를 주소지국가의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연방보험감독청은 자산양도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관련 회원국의 관할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4조).

제 111d조

- (1) 연방보험감독청이 제87조에 따라 타EC 회원국내에서도 認可를 取得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인가를 取消하는 경우 동 감독청은 회원국의 관할청에 이를 통보하여 제87조 제4항에 의해 취해질 措置에 관해 협의한다.
- (2) EC 회원국에 소재하는 외국보험회사들의 認可取消전에 연방보험감독청은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청과 협의해야 한다. 만일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이 금지되는 경우, 동 감독청은 지체없이 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할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1e조

- (1) 제106b조 제5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한 승인은 보험회사가 인가를 취득하거나 현재 인가를 신청중인 EC회원국의 관할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2) 연방보험감독청은 인가신청을 승인한 EC회원국내의 총보험사업규모에 대한 財源을 감독한다.
- (3) 연방보험감독청이 財源을 감독하는 경우 동 감독청은 제81b조 제2항 제2문의 조치를 관련 회원국의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연방 감독청은 위의 관할청에 대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장 주택저축은행**제 112 조~제 121 조**

삭 제

제 8 장 경과규정**제 122 조**

1902년 1월 1일 1개이상의 州에서 州法에 따라 保險營業認可를 얻은 보험회사는 1902년 1월 1일 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영업인가기한을 도과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그들의 營業免許가 特別認可에 근거한 경우 認可에 의해 설정된 시한을 도과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때에는 본법에 따른 인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 123 조

1974년 12월 29일 현재 그때까지 시행하고 있던 법규정이나 감독청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하고 있거나 감독청의 개별적 인가에 의하여 취득하고 있는 資産은 기속자산에 편입된다; 그러나 동 자산이 이미 擔保基金에 편입되어 있거나 담보기금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擔保基金에 남아있게 된다.

제 124 조~제 127 조

삭 제

제 128 조

1902년 1월 1일 相互扶助의 원칙하에서 그들의 회원사의 危險을 擔保하고 法人으로 조직된 회사도 역시 設立基金 및 損失準備金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상호보험회사에 관한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198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損失準備金을 적립해야 한다.

제 129 조~제 133a 조

삭 제

제 133b 조

- (1) 會社形態가 제7조에 따르지 않는 회사는 1976년 7월 31일까지 허용되는 會社形態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2) 타보험종목이나 타지역으로 보험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認可申請은 보험회사가 제7조에 따른 회사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만 承認된다.

제 133c 조

- (1) 본법의 적용범위내에 소개하고 있는 보험회사로서 1981년 9월 14일에 生命保險取扱認可를 얻은 보험회사는 1984년 3월 14일까지 財源

에 관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감독기관은 支拂能力(제53c조 제1항)의 금액으로 적립된 自己資本은 再保險에 대한 공제없이 최소 保證基金(제53c조 제2항)에 도달하지 못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년도종료년에 支拂能力의 금액으로 적립된 自己資本이 再保險에 대한 공제없이 최소 保證基金에 달하는 금액으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규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1989년 3월 14일 이전에는 承認되지 않는다.

- (2) 제1항에 명시된 형태의 보험회사의 타보험종목 또는 타지역으로의 사업확장을 위한 認可申請은 財源에 관한 규정이 충족된 경우에만 承認된다.
- (3) 自己資本이 1984년 3월 14일까지 정해진 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제1항에 명시된 형태의 보험회사에 대해서 감독기관은 보험회사가 支拂能力計劃書를 제출하면, 2년이내의 기간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 (4) 본법의 적용범위내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1976년 1월 31일에 부속서 A부 제1호 내지 제17호에 명시된 보험종목의 取扱認可를 얻고, 1978년 7월 31일 현재 보험료가 최소 보증기금의 6배에 못미치는 회사에 대해서 감독기관은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험료가 자기자본의 6배에 달하는 자기자본이 있다는 것의 증명의무를 免除할 수 있다. 동 免除는 EC 위원회가 면제의 결정이 있는 경우 撤回될 수 있다. 동 철회는 회사가 본법의 적용범위내에서 타보험종목이나 타지역으로 보험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특정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기간 제한있는 免除는 1983년 7월 31일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 133d 조

만약 EC 회원국에 소재하는 외국보험회사가 그들의 정해진 財源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그들이 예치한 保證基金은 요구에 따라 解除된다.

제 133e 조

제133c조 제1항 제1문, 제2항은 비 EC회원국에 소재하는 외국보험회사에 적용된다.

제 133f 조

- (1) 본법의 적용범위내에 소재해 있는 주식회사로서 1989년 3월 14일 이전에 생명보험 事業認可를 取得하고, 최소한 95% 이상 생명보험과 함께 타보험종목을 취급하는 EC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의해 소유된 경우, 후자의 보험회사의 재정보증금 적립은 사업인가가 허용된 이후 제7사업년도 종료전까지는 支拂能力(제53c조 제1항)이 최소 보증기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保證基金(제53c조 제2항)의 1.5배까지 自己資産으로 간주된다. 그 경우 납입되지 않은 資本金은 보증금 적립금액과 함께 최소 보증기금의 1.5배를 초과하는 한 제53c조 제3항 제1문 제1호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保證金積立은 他自己資産(제3항)에 의해 완전히 代替되기 전까지는 取消될 수 없다.
- (2) 제1항은 EC 회원국에 소재하는 피참가기업이 生命保險을 제외한 보험종목 취급을 위한 支店을 설치하지 않고, 생명보험 및 타보험종목 모두 취급시 요구되는 自己資本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여기서 保證金積立金額내의 自己資産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 (3) 株式會社는 保險事業免許가 허가된 후 제3사업년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他自己資本으로 保證金積立을 代替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事業認可 신청서와 함께 계획서를 감독기관의 承認을 위해 제출해야만 한다.

제 133g 조

機能分離(제5조 제3항 제4호)를 위한 기존계약은 사전에 제출되지 않

있을 경우 감독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9장 罰則規程

제 134 조

보험회사의 사업인가, 인가연장 또는 기초서류 및 보험계약내용(제14조)의 變更에 필요한 承認을 얻기 위해 감독기관에 虛偽報告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제 135 조~제 136 조

삭 제

제 137 조

- (1) 검사인 또는 그 보조자로서 검사결과에 대해 虛偽報告하거나 보고서에 主要事項을 보고하지 않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 (2) 그 자신이나 타인의 不當利得을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에게 害를 끼칠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제 138 조

- (1) 주식법 제404조와 상법 제333조의 경우와는 별도로 권한없이 보험회사의 비밀을 누설한 자, 특히 다음의 者로서 그가 事業上 또는 영업상 지득한 비밀을 공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속한다.
 1. 제5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인 또는 검사보조자
 2. 이사, 검사 또는 청산관리인
- (2) 만약, 그 자신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不當利得을 피하거나 타인에게 害를 끼칠 목적으로 法律을 違反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에 처한다. 권한없이 제1항에 명시된 종류의 비밀을 惡用한 자, 특히 제1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가 사업상 또는 거래상 지득한 비밀을 惡用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 (3) 법률위반은 保險會社의 請求에 의해서만 起訴된다. 이사나 청산관리인이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감사회가, 감사가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나 청산관리인에게 기소할 권한이 주어진다.

제 139 조

- (1) 생명보험, 질병보험 또는 상해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산정을 검사하는 專門家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른 證明書를 허위로 發行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2) 담보기금의 관리를 위해 선임된 信託管理人 또는 그 代理人으로서 (제70조) 제73조에 따른 증명서를 虛僞로 發行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제 140 조

- (1) 국내에서 認可없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2) 過失犯은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180일내의 일할계산 벌금형에 처한다.

제 141 조

- (1) 보험회사의 이사, 그 수권대리인(제108조) 또는 청산관리인으로서 제 88조 제2항에 따른 監督機關에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 (2) 過失犯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제 142 조

삭 제

제 143 조

이사, 감사, 그 대리인 또는 상호회사의 清算管理人是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위보고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1. 상호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사보고서상 사업보고서 또는 사원총회에 대한 자료나 구두진술에서 동사의 재산상황을 허위보고하거나 은폐하여 報告할 경우,
2. 본법에 따라 상호회사의 검사인에게 제출할 자료, 설명서에 동사의 재정 상태를 허위보고하거나 은폐하여 진술할 경우

제 144 조

(1) 理事, 監事, 그 수권대리인(제108조) 또는 보험회사의 청산관리인으로서는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규칙위반에 해당한다.

1. 준비금 및 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법규정이나 認可사업계획서를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제안하거나 허가하는 행위
2. 擔保基金에 대한 資産投資 및 책임준비금 또는 담보기금의 계산, 부기, 보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66조 제6항 제6문에 따른 證明書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3. 현금자산의 투자에 관한 認可사업계획서를 위반하는 행위
4. 認可事業計劃書에 명시하지 않은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영업을 허가하는 행위

(2) 규칙위반은 100,000DM 이하의 過料에 처한다.

제 144a 조

(1) 故意 또는 過失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규칙위반에 해당한다.

1. 본법의 적용범위내에서 보험영업의 認可를 받지 아니한 회사와 保險契約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회사와의 보험계약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2. 제81조 제2항 제3문, 제4문을 근거로 발한 지시를 違反하는 자
- (2) 규칙위반(Ordnungswidrigkeit)은 150,000 DM 이하의 過料에 처한다.

제 145 조

제141조와 제143조의 형벌규정 및 제144조의 過料에 관한 규정은 理事, 監事 및 제128조에 따라 상호회사로 취급되는 단체의 清算管理人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 145a 조

연방보험감독청은 보험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한 규칙위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의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行政廳이다.

제 10 장 종결규정

제 146 조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법규명령으로써 「1951년 6월 19일 나토조약 당사국 군대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 제1항 a호 내지 c호에서 열거한 者와의 보험계약중 개별보험종목에 대하여, 본법의 적용범위내에서 다른 피보험자의 利益과 다른 보험계약의무 이행능력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법규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제 147 조~제 149 조

삭 제

제 150 조

본법에 따른 감독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는 연방보험감독청이 요구하는 보험사업의 통계적 증명자료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자료의 항목에 관하여는 보험자문위원회가 심의한다. 제151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영보험회사도 연방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본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통계자료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2 조

聯邦監督廳 또는 각州的 監督廳들은 법원칙 및 운영원칙을 상호 통지할 의무를 진다. 공영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각주의 감독청이 제정한 諸원칙도 위와 동일하다.

제 153 조

본법은 공영보험회사에게 특정한 보험영업을 유보하는 州法の 규정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54 조

- (1) 화재보험계약의 체결과 화재보상액의 지급에 관한 경찰의 감독을 규율하는 州法の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삭제
- (3) 보험회사가 州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州法에 따라 營業認可를 받고, 州감독청의 합의 또는 州법률에 따라 1901년 1월 1일자로 각주에서 화재보험의 물건을 인수할 의무 또한 영향을 받지 않는

다. 감독청은 동 법률의 의무이행을 감시한다.

제 155 조

삭 제

제 156 조

제34조 제1문과 제39조 제3항은 주식회사에도 적용된다.

제 156a 조

- (1) 제5조 제4항과 제53c조, 제81b조 제1항,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등록필요가 없는 상호회사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 경우는
 - a) 責任保險 또는 信用保證保險을 취급치 않는 보험회사의 定款에 附加稅 納付條項과 保險料 引下條項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 b) 책임보험 또는 신용보증보험을 취급치 않는 보험회사의 연간 보험료가 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이다.
 2. 사망자의 장례기금은 평균장례비, 종업원장례비 및 연금을 초과하는 경우
- (2) 연방재무장관은 보험분야에 관한 EC 지침법의 시행을 위하여 연방의 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법규명령으로써 제1항 제1호 b의 적용 기준이 되는 연보험료를 정할 수 있다.
- (3) EC 회원국에 주소를 두고 그 주소지국가의 법에 따라 보험분야에 관한 EC 지침법에서 요구하는 자본요건을 충족시킬 의무가 없는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 제2문, 제106a조 제1항 제1문 제2호 b와 제111b조내지 제111e조 및 제133d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제1항 및 제3항에 열거한 보험회사의 경우 필요한 자산금액은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한다. 연방보험감독청은 외국보험회사에게 본법의 적용범위내에서 保證金(確定 및 變動保證金) 및 적정한 組織基金을 예치토록 명할 수 있다.

- (5) 公營保險會社の 질병보험은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 157 조

- (1) 監督廳은 등록이 필요치 않는 相互會社の 認可, 업무집행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55조,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2) 위의 적용배제는, 그것이 업무집행 및 회계에 관한 것일 경우, 상호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가 수년간 회사의 경영과 재산상태를 검사하고 그 검사보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도로 허용된다.

제 157a 조

- (1) 감독청은 등록이 필요치 않는 相互會社에 대하여 보험계약과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감독청이 피보험자의 利益을 고려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본법에 따라 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위의 조건은 특히 保險料規模와 保險契約者數가 적고, 지리적으로 협소한 영업범위를 갖는 상호회사에 적용한다.
- (2) 제1항의 면책은 기한을 두거나 추가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免責條項이 더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청은 위의 면제를 철회할 수 있다.
- (3) 감독청이 제1항의 免責條項을 부여할 경우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4항, 제37조, 제53a조는 적용받지 않는다. 제2항에 적용되는 규정 또는 제83조 제2항의 감독청에 대한 권한이 실시되고 있는 한 제83조 제2항, 제81조 제3항의 예외조항과 함께 제4장 내지 제5장의 규정 역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 158 조

1983년 1월 1일에 시행한 합병 및 자산양도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동 기간전에 合併 또는 讓渡의 合意있는 契約이나 株主總會나 社員總會에서 결정된 契約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 159 조

- (1) 제국보험규칙의 제762조 제1항에 명시된 기관, 정관 및 사업계획서에 관련된 대표자회의의 결의안은 감독청의 承認을 받아야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14조, 제54조 제2항 제1문 제2호 및 제2문, 제55조 제1항 제2문 및 제2a항 내지 제2c항 및 제81조, 제81a조, 제82조 내지 제84조,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는 동 조항에 적용된다.
- (2) 제7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54조, 제54a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 그리고 제5항, 제54d조,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 제81a조, 제82조 내지 제84조, 혹은 제86조는 제55조 제1항 제1문의 기한의 예외와 함께 독일연국인 및 고전음악가를 위한 연금기금에도 적용된다. 감독청은 연말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의 형식과 구성을 결정하며,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 적어도 10개월 이상 감독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 (3) 제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회사들을 본 법률의 규정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기타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60 조

- (1) 본법의 적용범위내에서 생명보험과 함께 타보험종목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생명보험만 혹은 타보험종목만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라 보험자산을 양도할 경우, 이러한 자산양도를 통하여 부담하게 될 증권거래세 및 부동산취득세는 신청에 의하여 免稅된다. 단, 위의 면세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양도자산가액이 양도되는

보험기술상의 적립금, 양도자산과 관련된 부채, 기타적립금, 연금채무 및 연금적립금을 포함한 이전항목 및 분리계정된 자기자산 및 조정자산의 총액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외국보험회사가 생명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生命保險業을 讓渡했을 경우 제1문, 제2문은 본법의 적용범위내에서 생명보험만 취급하도록 인가된 생명보험과 타보험종목을 취급하는 외국보험회사에 적용된다. (2) 보험회사가 資本去來稅法에 의하여 제1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國內株式會社の 株式과 交換하여 讓渡하였을 경우, 첫 取得者의 株式은 讓渡된 實際價格과 적당한 自己資產을 초과하지 않는 한 資本去來稅法(Kapitalverkehr-steuergesetz)의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稅金을 免除받을 수 있다.

- (3) 제1항및 제2항에서 언급한 적정한 自己資產이란 제53c조 제4항에 따라 양도시점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감독청에 제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은 1979년 3월 14일 이후와 1984년 3월 15일 이전의 양도계약에만 적용된다.
- (5) 부속서 A부 제1호와 제19호에서 열거한 보험항목에 속하는 위험을 단일보험계약의 형식으로 인수하는 보험회사는 이들 保險契約중 傷害保險 부분을 다른 회사에 讓渡할 수 있다. 이경우 제14조가 준용된다. 1984년 3월 15일 이전의 讓渡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이 準用된다.

부속서 (Anlage)

생 략

XII. 保險會社의 財源에 관한 설명

[Verordnung über die Kapitalausstattung

von Versicherungsunternehmen

(Kapitalausstattungs-Verordnung-KapAusstV 1983)]

개 정 : 1983. 12. 13(BGB1. I. S. 1451)

최종개정 : 1987. 10. 7(BGB1. I. S. 2278)

1983년 10월 13일에 施行 公告된 保險監督法 제53c조 제2항 및 제 156a조 제2항을 근거로 발효되는 명령:

제 1 장 生命保險을 除外한 其他 全種目에 관한 規定

제 1 조

- (1) 支拂能力金額은 연간 收入保險料(保險料指數)이나 최근 3개 영업년도의 平均保險金(損失指數)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이 경우 높은 指數가 기준이 된다. 주로 폭풍, 우박 혹은 서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損失指數는 최근 7개 영업년도의 平均保險金을 기초로 한다.
- (2) 保險料指數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최근 영업년도에 原保險 및 再保險營業(全體保險營業)을 통해 거수한 총수입보험료(補助金포함)가 집계된다. 이들 총보험료에서 해약환급보험료, 세금 및 부과금은 공제된다. 그 나머지 보험료중 36.6백만 DM까지는 18%의 비율로 계산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의 비율로 계산된다. 두 결과와 함께 추가로 얻어진 금액은 최근 영업년도의 전체영업에서 순수재보험으로 인한 보험금액과 총보험금간의 구성비율에 의해 계산된다. 그 구성비는 최저 50%가 되어야 한다.

- (3) 損失指數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명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總支給保險金과 전체영업에 대한 최근 영업년도말에 형성된 總損失準備金이 집계된다. 이들 금액으로부터 전체영업에 대한 영업개시년도의 기존 損失準備金 그리고 제1항에 명시된 기간에 대위를 통해 실현된 금액은 控除된다. 나머지 금액은 해당년도로 나누어 그 결과중 25.62백만 DM까지는 26%의 비율로 계산되며 그 초과분은 23%의 비율로 계산된다. 제2항 제4문과 제5문을 準用한다.
- (4) 제2항 제3문과 제3항 제4문의 산출비율은 生命保險의 영역으로 취급되는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3로 감소될 수 있다.
1. 예측표상의 금액이 保險算術原則에 따라 算定되는 경우
 2. 노후보장적립금이 형성되는 경우
 3. 적절한 보장추가지급금이 인상되는 경우
 4. 保險標準約款에 따라
 - a) 보험회사의 契約解止權이 최장 3차 보험계약년도의 경과로 消滅되거나
 - b) 보험료의 인상 또는 保險金의 감액이 現存하는 保險의 效力에 의해 지속되어 있는 경우

제 2 조

積立保障基金은 최소한 다음의 금액에 달해야 한다.

1. 부속서 A부 제10호 내지 15호에 의해 법으로 열거한 保險種目에 속하는 위험이 전부 보상되는 경우에는 1,464,000 DM
 2. 부속서 A부 제1호 내지 8호, 제16호 및 18호에 의해 법으로 열거한 保險種目에 속하는 위험이 전부 보상되는 경우 1,098,000 DM
 3. 부속서 A부 제9호 및 17호에 의해 법으로 열거한 보험종목에 속하는 위험이 전부 보상되는 경우 732,000 DM
- 위험이 다수의 보험종목으로부터 보상되는 때에는 최고의 금액이 기

준이 된다.

제 3 조

연 보험료중 본법 제156a조 제1항 제1호 b의 기준에 따른 금액은 3,660,000 DM으로 확정된다.

제 2 장 生命保險에 대한 규정

제 4 조

- (1) 資本保險 및 年金保險에 있어 支拂能力은 다음 금액에 달해야 한다.
- a) 보상적립금의 4/100와 종합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분 만큼 감소된 保險料移越額의 4/100를 합한 후 작년의 종합보험 사업년도에 보상적립금과 비용분 만큼 保險料移越金額을 각각 재보상에서 주어지는 부분을 뺀 금액과 보상적립금과 비용분 만큼 감소한 保險料移越額을 더한 금액의 比率 (최소한 85%)로 곱한 액수
 - b) 전체영업에서 危險資本의 0.3%에 總危險資本에 대한 재위험부분을 제외한 위험자본의 構成比를 곱하되 최저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최장계약 기간이 3년으로 단기간의 死亡保險의 경우에 비율은 0.3%에서 0.1%로 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0.3%에서 0.15%로 감소된다. 명시된 계약기간이 合意에 의해 更新되는 死亡保險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으로 계산된다. 保險契約상의 危險資本은 支拂能力의 계산기준일이 되는 보험사고 발생시에 지급될 약정된 보험금으로 부터 擔保基金額과 費用分만큼 감소한 보험료이월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을 의미한다.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被保險額보다 낮은 할인된 價額이 계산된다. 만일 보험자들이 정확한 계산에 의해 보다 낮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방법이 危險資本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不良危險資本은 0 상태에서 계산된다.

- (2) 投資基金과 관련된 保險의 경우에는 投資危險을 가정하고 있는 保險會社에 대하여는 제1항 제1a호가 적용된다. 만약, 保險회사가 投資危險을 勘案하지 않으나, 계약기간이 5년이상을 초과하고 保險료에 포함된 附加行政費用이 5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제1항 제1호 a에 따른 비율이 4%가 아닌 1%를 적용하게 된다. 제1항 제1b호는 사망 위험을 가정한 保險회사에 한정해서 적용된다.
- (3) 追加危險(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支拂能力이 追加危險에 대한 保險料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保險料指數와 관련한 제1조 제2항의 규정이 적절한 것으로서 적용된다. 즉, 36.6백만 DM의 금액은 10백만 ECU의 금액에 대신한다.

제 5 조

- (1) 保證基金은 최소 800,000 ECU에 달하여야 한다.
- (2) 계속되는 3개 사업년도중 처음으로 제7조에서 명시한 限度金額을 초과한 본법 제156a조 제1항 제1호 所定の 相互會社의 保證基金은 200,000 ECU에 달하여야 한다. 保證基金은 年金額이 500,000 ECU에 달할 때까지 점차로 제1항에서 명시한 금액에 매년 100,000 ECU씩 증액할 수 있다.
- (3) 제2항은 다른 별도의 保險종목 또는 다른 지역에까지 營業활동범위를 갖는 相互保險會社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6 조

- (1)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保險으로부터 保險회사에 移越되는 將來移越價額에 대한 50%는 固有財産으로 본다. 장래이월가액은 예상되는 年移越額을 평균잔여계약기간에 상응하는 상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수는 최대 10으로 한다. 예상되는 年移越額은 지난 5개 營業년도의 損益計算書로부터 도출한 금액으로서 年移越額과 移越 參加費用의 算術的 平均額으로 한다. 평균잔여계약기간은 증도해약된 지난

5년간의 계약을 고려하여 연 보험료가 납입된 잔여경과기간의 평균기간이며 이 경우 1회 보험료나 保險料가 免除된 보험에 있어서는 위에 상응하는 연 保險料가 그 기준이 된다. 감독청은 제4문에 따른 接近節次方式의 算定을 함에 있어 특정의 보험종류는 대상에서 除外될 수 있음을 허용할 수 있다. 장래 이월액의 예상가액과 貸借對照表상의 自己資産의 합계액이 支拂能力에 도달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감독청의 同意를 얻어 제4문에 따른 算定을 중지할 수 있다.

- (2) 책임적립금이 전혀 계산되지 않았거나 보험모집을 위해 保險料에 산입된 附加額 이하로 계산된 경우, 계산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계산된 위의 積立金과 계산상 보험료에 산입된 보험모집의 부가액으로 인한 積立金과의 差額은 피보험자가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 한 自己資産으로 간주한다. 위의 계산수치가 보험금액 또는 피보험 연금의 12배의 35/1,000를 초과하는 경우 自己資産에서 排除된다. 대차대조표상 확정된 보상적립금은 이미 집행된 보험모집비용만큼씩 감소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任意資産은 제53c조 제3항과 제6호 b의 조건 하에서 支拂能力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들 任意資産과 제53c조 제3항 제4호와 관련한 任意資産은 最低保證金額 혹은 保證金額의 1/2에 한해 계산되지 않는다.

제 7 조

제156a조 제1항 제1호 b와 관련된 연간 保險料金額은 500,000 ECU를 설치한다. 만약 이 금액이 3개년도 동안에 계속해서 초과된다면 제156a조 제1항에 언급된 규정은 네번째 영업개시년도에 적용된다.

제 8 조

본 명령에서 ECU로 명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독일 마르크화의 금액은 유럽공동체의 法的措置(ABl. EG Nr. L 345 S. I)에서 유럽통화단위를 ECU로 制定한 1980년 12월 16일 이사회명령(EWG, EURATOM Nr.

3308/80)의 제1조와 함께 原受生命保險事業의 영위와 관련한 諸般法規 및 行政措置의 상호협력에 관한 1979년 3월 5일의 제1차 지침법 79/267/EWG 제5조 a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3장 終 結 規 定

제 9 조

삭 제

제 10 조

본 명령은 1983년 3월 29일의 제14차 보험감독법 개정법률 제4조와 제 3차 과도기법률(das Dritte überleitungsgesetz) 제14조에 따라 베를린州에도 적용된다.

제 11 조

이 명령은 公告된 날로부터 施行된다.

연방재무장관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 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일 WORKSHOP :

KOREAN PENINSULA DEVELOPMENTS AND U.S.-JAPAN-
SOUTH KOREA RELATIONS (vol. 1)

KOREAN PENINSULA ISSUE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2)

KOREAN PENINSULA TREND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3)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貨弊·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資料 94-0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9月 日
發行日 1994年 9月 日
